

연구보고 2014-25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IV)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유해미 배운진 김문정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저출산 대응 등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현상과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시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기준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0%선에 머물고 있고, 합계출산율은 1.19명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2013년 0~5세 전계층 무상보육이 실현되었으나, 정작 보육 실수요층인 맞벌이 가구들은 기관 이용 시에 역차별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된다.

이 연구는 주요 저출산 대응 방안이 여성과 아동에 대한 투자임을 상기하고, 여성경제활동참여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변수가 미취학 자녀 여부임에 주목하여 맞벌이 가구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의 실효성을 규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 1,736명과 1,746개 기관(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특히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육아휴직 등 시간 지원의 강화와 서비스 부문의 선택권 보장을 강조하였으며, 세부 방안으로 맞벌이 가구 특성별 접근에 주력하였다. 자녀양육 실태와 요구 측면에서 맞벌이 가구는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는 점을 규명하고, 자녀 특성, 근로 특성, 소득 등 이외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맞벌이 부모들이 자녀 출산과 양육에도 불구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하고, 이들의 자녀들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와 면담에 응해주신 영유아를 둔 일하는 부모님,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 기관, 그리고 유익한 검토 의견을 주신 전문가들께도 감사를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14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차 례

요 약	1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 내용 및 분석틀	13
3. 연구 방법	14
II. 연구의 배경	24
1. 일·가정 양립지원, 여성고용, 출산율간의 관계	24
2.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특성	34
3.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관련 요인	43
III.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현황 및 한계점	50
1.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의 방향	50
2. 서비스 지원 정책	57
3. 시간 지원 정책	74
4. 한계점	82
IV. 맞벌이 가구의 육아지원서비스 및 제도 이용 실태와 요구	85
1. 맞벌이 가구 일반의 이용 실태와 요구	85
2. 맞벌이 가구 특성별 이용 실태와 요구	128
3. 요약 및 시사점	153
V. 맞벌이 가구 대상 육아지원서비스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	156
1. 기관보육·교육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	156
2. 시간연장형보육/방과후과정 운영 사례 및 시사점	174
3.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 운영 사례 및 시사점	182
VI. 정책 방안	192
1. 기본 방향 및 세부 전략	192
2.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내실화 방안	199

3. 맞벌이 가구 특성별 지원 방안	210
참고문헌	213
부 록	221
부록 1. 심층면담 질문지: 기관 대상	223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부모 대상	226
부록 3. 맞벌이 가구 양육 실태 및 요구 조사 질문지: 부모 대상	229
부록 4. 맞벌이 가구 보육·교육서비스 운영 실태 조사 질문지: 기관 대상	259

표 차례

〈표 I-3-1〉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15
〈표 I-3-2〉 조사대상 가구의 근로 특성	16
〈표 I-3-3〉 설문조사 내용 - 맞벌이 가구 조사	16
〈표 I-3-4〉 조사대상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일반적 특징(가중치 적용 전) ..	18
〈표 I-3-5〉 설문조사 내용-기관조사	19
〈표 I-3-6〉 심층면담 실시 일정 및 내용-취업모	20
〈표 I-3-7〉 심층면담 참여자 일반적 특성-취업모	21
〈표 I-3-8〉 심층면담 실시 일정 및 내용 -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21
〈표 I-3-9〉 사례조사 기관 일반 현황-어린이집/유치원	22
〈표 I-3-10〉 사례조사 실시 일정 및 내용 - 지역사회 육아지원 사례	22
〈표 I-3-11〉 사례조사 심층면담 참여자 일반적 특성 - 지역사회 육아지원 사례 ..	23
〈표 II-2-1〉 자녀연령별 모의 취업 상태(2012)	35
〈표 II-2-2〉 영유아를 둔 부모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2009)	36
〈표 II-2-3〉 일·가정 양립의 장애 요인에 대한 인식	38
〈표 II-2-4〉 취업 여성(20~44세)의 자녀수별 일·가정 병행 어려움	38
〈표 II-2-5〉 영유아 가구 맞벌이 여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39
〈표 II-2-6〉 취업모 자녀의 시간대별 이용 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	40
〈표 II-2-7〉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	41
〈표 II-2-8〉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월 평균 보육·교육비용	41
〈표 II-2-9〉 자녀 양육이 어려운 이유	42
〈표 II-2-10〉 맞벌이 여부별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정책	43
〈표 II-3-1〉 일·가정 양립 갈등 및 애로사항 관련 변인	46
〈표 II-3-2〉 육아지원서비스 및 제도 이용 실태 및 요구 관련 변인	48
〈표 III-1-1〉 제1, 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중 저출산 대응 부문	51
〈표 III-1-2〉 제1,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정책 과제	52
〈표 III-1-3〉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관련 세부대책	57
〈표 III-2-1〉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2014)	58
〈표 III-2-2〉 영유아 보육 시설 및 영유아 비율(2012)	62

〈표 III-2-3〉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이행율(2006-2013)	66
〈표 III-2-4〉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2014)	70
〈표 III-2-5〉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금액(2014)	71
〈표 III-2-6〉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금액(2014)	71
〈표 III-3-1〉 모성보호사업 활용 현황(2012)	75
〈표 III-3-2〉 여성근로자 출산휴가 평균 사용일수(2013)	76
〈표 III-3-3〉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현황(2012)	77
〈표 III-3-4〉 배우자 출산휴가-유급일수(2013)	77
〈표 III-3-5〉 배우자 출산휴가-수혜자격(정규직 여부)(2013)	78
〈표 III-3-6〉 성별 육아휴직 이용 현황(2003-2013)	79
〈표 III-3-7〉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적용제도 적용 여부(2013)	80
〈표 III-3-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유무	82
〈표 IV-1-1〉 양육지원정책 인지도	85
〈표 IV-1-2〉 육아지원서비스 유형별 이용 현황	87
〈표 IV-1-3〉 육아지원서비스 유형별 이용 빈도	88
〈표 IV-1-4〉 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89
〈표 IV-1-5〉 이용 기관별 대기 여부/대기 기간	89
〈표 IV-1-6〉 기관 최초 이용 시기	92
〈표 IV-1-7〉 근로 형태별 기관 최초 이용 시기	92
〈표 IV-1-8〉 최초 기관 이용 시기의 적절성 인식	93
〈표 IV-1-9〉 기관 최초 이용 시기의 희망 양육 방식	93
〈표 IV-1-10〉 이용 기관 유형	94
〈표 IV-1-11〉 이용 기관 유형별 평일 등원 시각	95
〈표 IV-1-12〉 이용 기관 유형별 평일 하원 시각	96
〈표 IV-1-13〉 퇴근 시각 이전 하원 비율 및 해당 사유	97
〈표 IV-1-14〉 시간연장형보육 이용 경험	97
〈표 IV-1-15〉 시간연장형보육 이용 현황	98
〈표 IV-1-16〉 시간연장형보육 이용 중단 사유	98
〈표 IV-1-17〉 시간연장형보육 미이용 사유	99
〈표 IV-1-18〉 기관보육·교육 이용 만족도	99
〈표 IV-1-19〉 이용 기관 유형별 만족도	100

〈표 IV-1-20〉 이용 기관 불만족내용	100
〈표 IV-1-21〉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사유	103
〈표 IV-1-22〉 비혈연 대리양육자 구인 시 어려움 정도	103
〈표 IV-1-23〉 비혈연 대리양육자 구인 시 애로사항	104
〈표 IV-1-24〉 비혈연 대리양육자 이용 만족도	105
〈표 IV-1-25〉 비혈연 대리양육자 불만족내용	105
〈표 IV-1-26〉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 필요도	106
〈표 IV-1-27〉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지원사업 인지도	107
〈표 IV-1-28〉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지원사업별 이용 빈도	108
〈표 IV-1-29〉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지원사업별 이용 만족도	108
〈표 IV-1-30〉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지원사업 불만족내용	109
〈표 IV-1-31〉 육아종합지원센터 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110
〈표 IV-1-32〉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별 이용 기관	110
〈표 IV-1-33〉 직장내 출산·양육지원제도 시행/이용 현황	111
〈표 IV-1-34〉 직장내 임신·출산지원제도 시행률	112
〈표 IV-1-35〉 직장내 임신·출산지원제도 실제 이용 가능성	113
〈표 IV-1-36〉 직장내 임신·출산지원제도 이용률	113
〈표 IV-1-37〉 직장내 양육지원제도 시행률	114
〈표 IV-1-38〉 직장내 양육지원제도 실제 이용 가능성	115
〈표 IV-1-39〉 직장내 양육지원제도 이용률	116
〈표 IV-1-40〉 여성 육아휴직제도 이용 기간 및 수요	117
〈표 IV-1-41〉 남성 육아휴직제도/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이용 기간 및 수요 ·	119
〈표 IV-1-42〉 제도 이용 시 자녀연령	119
〈표 IV-1-43〉 부모가 일할 때 적합한 양육방식	120
〈표 IV-1-44〉 대상별 어린이집/유치원 우선 입소·입학 중요도-맞벌이 가구 ·	121
〈표 IV-1-45〉 대상별 종일제 보육 필요도-맞벌이 가구	121
〈표 IV-1-46〉 영유아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122
〈표 IV-1-47〉 영유아 자녀 양육 시 가장 힘들었던 순간	122
〈표 IV-1-48〉 경력단절 경험	123
〈표 IV-1-49〉 일·가정 양립지원 요구	124
〈표 IV-1-50〉 긴급 상황 시 희망 돌봄자	125

〈표 IV-1-51〉 근로시간 변경 희망	125
〈표 IV-1-52〉 변경 희망 근로 유형별 희망 근로시간	126
〈표 IV-1-53〉 후속출산 의향	127
〈표 IV-1-54〉 후속출산 미의향 사유	128
〈표 IV-2-1〉 자녀 특성별 주양육자	129
〈표 IV-2-2〉 자녀 특성별 이용 기관 유형	130
〈표 IV-2-3〉 자녀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이용 만족도	131
〈표 IV-2-4〉 자녀 연령별 이용 중단 사유	132
〈표 IV-2-5〉 자녀 특성별 월 평균 총 보육·교육비용	132
〈표 IV-2-6〉 자녀 연령별 개인양육서비스 비용 지불	133
〈표 IV-2-7〉 자녀 특성별 조부모/친인척 월 평균 이용비용/이용부담 정도	134
〈표 IV-2-8〉 자녀 연령별 영유아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134
〈표 IV-2-9〉 자녀 연령별 양육지원정책 필요도	135
〈표 IV-2-10〉 근로 특성별 주양육자	136
〈표 IV-2-11〉 근로 특성별 기관 이용 병행 시 돌봄 제공자	137
〈표 IV-2-12〉 근로 형태별 조부모/친인척 이용률/이용 만족도	138
〈표 IV-2-13〉 근로 형태별 아이돌보미 이용률/이용 만족도	138
〈표 IV-2-14〉 근로 형태별 (민간)베이비시터 이용률/이용 만족도	139
〈표 IV-2-15〉 근로 특성별 어린이집/유치원 등원 시각-평일	139
〈표 IV-2-16〉 근로 특성별 어린이집/유치원 하원 시각-평일	140
〈표 IV-2-17〉 근로 특성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시간	141
〈표 IV-2-18〉 근로 특성별 이용중단 기관 불만족내용	141
〈표 IV-2-19〉 근로 특성별 월 평균 총 보육·교육 이용비용	142
〈표 IV-2-20〉 근로 특성별 개인양육서비스 비용 지불	143
〈표 IV-2-21〉 근로 특성별 조부모/친인척 월 평균 이용비용/이용부담 정도	143
〈표 IV-2-22〉 근로 특성별 아이돌보미 월 평균 이용비용/이용부담 정도	144
〈표 IV-2-23〉 근로 특성별 (민간)베이비시터 월 평균 이용비용/이용부담 정도	145
〈표 IV-2-24〉 근로 특성별 근무시간 관련 일·가정 양립 애로사항	145
〈표 IV-2-25〉 근로 특성별 일·가정 양립지원 필요도	146
〈표 IV-2-26〉 소득별 주양육자	148
〈표 IV-2-27〉 소득별 기관 병행 이용시 돌봄 제공자	148

〈표 IV-2-28〉 거주 지역규모별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의 대기 유경험율/대기 기간 ..	149
〈표 IV-2-29〉 이외 개인 특성별 (민간)베이비시터 이용률/이용 만족도	150
〈표 IV-2-30〉 이외 개인 특성별 월 평균 총 보육·교육비용	150
〈표 IV-2-31〉 이외 개인 특성별 조부모/친인척 월 평균 이용 비용/이용부담 정도 ...	152
〈표 IV-2-32〉 이외 개인 특성별 (민간)베이비시터 월 평균 이용비용/이용 부담 ...	152
〈표 V-1-1〉 대상별 우선 입소·입학 중요도-어린이집/유치원	156
〈표 V-1-2〉 대상별 종일제 보육 필요도-어린이집/유치원장	157
〈표 V-1-3〉 어린이집/유치원 연간 휴원 일수	158
〈표 V-1-4〉 어린이집 방학 운영 현황	158
〈표 V-1-5〉 유치원 기본교육과정 방학 운영 현황	159
〈표 V-1-6〉 유치원 방과후과정 방학 운영 현황	159
〈표 V-1-7〉 토요일 운영 현황	160
〈표 V-1-8〉 평일 운영 시간	161
〈표 V-1-9〉 평일 운영 시작 시각	161
〈표 V-1-10〉 평일 운영 종료 시각	162
〈표 V-1-11〉 맞벌이 가구 증빙서류 확인·관리 실태	163
〈표 V-1-12〉 유치원의 맞벌이 가구 자녀 우선입학 여부	164
〈표 V-1-13〉 부모참여 프로그램 운영 현황	164
〈표 V-1-14〉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 운영 여부/필요성/운영 의향	165
〈표 V-1-15〉 어린이집 야간보육 운영 여부/필요성/운영 의향	166
〈표 V-1-16〉 어린이집 24시간보육 운영 여부/필요성/운영 의향	166
〈표 V-1-17〉 어린이집 휴일보육 운영 여부/필요성/운영 의향	166
〈표 V-1-18〉 어린이집 시간연장형보육 미운영 사유	167
〈표 V-1-19〉 어린이집 시간연장형보육 인력 배치	168
〈표 V-1-20〉 어린이집 시간연장형보육 배치 인력 자격	168
〈표 V-1-21〉 어린이집 특수보육 유형별 운영 시 애로사항	169
〈표 V-1-22〉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방식	170
〈표 V-1-23〉 유치원 오후 재편성 방과후과정의 담당교사 자격	170
〈표 V-1-24〉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시 애로사항	171
〈표 V-1-25〉 맞벌이 가구 대상 보육지원 개선사항	172
〈표 V-1-26〉 시간연장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173

〈표 V-1-27〉 유치원 방과후과정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173
〈표 V-2-1〉 맞벌이 가구 보육·교육 현황	174
〈표 V-2-2〉 어린이집 시간연장형보육 운영 사례	175
〈표 V-2-3〉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사례	180
〈표 VI-1-1〉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정책 부문간 설계	197
〈표 VI-1-2〉 자녀 연령별 정책 설계	198
〈표 VI-1-3〉 근로 특성별 정책 설계	198
〈표 VI-1-4〉 자녀 연령별 × 근로 특성별 정책 설계	199

그림 차례

[그림 I-2-1] 연구 분석틀	14
[그림 II-1-1] 합계출산율 변화(1970, 1995, 2011)	25
[그림 II-1-2] 여성취업률과 유자녀 여성취업률 변화(2000, 2007, 2011)	26
[그림 II-1-3]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2000, 2013)	27
[그림 II-1-4] 막내자녀 연령에 따른 여성취업률	28
[그림 II-1-5] 여성취업률과 합계출산율간의 관계(1980, 2010)	30
[그림 II-2-1] 취업부모의 근로 및 근로 소요시간(2012)	37
[그림 III-2-1] 연간 휴원 일수 변화(2004, 2009, 2012)	60
[그림 III-2-2] 토요일보육 운영 비율 변화(2004, 2009, 2012)	60
[그림 III-2-3] 시간연장형 보육 개념	62
[그림 III-2-4]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2014. 3)	73
[그림 IV-1-1] 입소·입학 대기 신청기관	90
[그림 IV-1-2] 기관 이용 부모의 타 기관 대기 사유	91
[그림 IV-1-3] 타 기관에 대기 신청 중인 경우 현재 이용기관의 불만족 내용	91
[그림 IV-1-4] 이용 기관유형별 총 이용시간	94
[그림 IV-1-5] 기관 이용 중단 사유	102
[그림 IV-1-6]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 주 대리양육자	104
[그림 IV-1-7] 혈연/비혈연 대리양육자가 갑자기 못 오는 빈도	106
[그림 V-2-1] A어린이집의 시간대별 이용 아동 수	176
[그림 V-2-2] B어린이집의 시간대별 이용 아동 수	177
[그림 V-2-3] C어린이집의 시간대별 이용 아동 수	177
[그림 V-2-4] A유치원의 시간대별 이용 아동 수	178
[그림 V-2-5] B유치원의 시간대별 이용 아동 수	179
[그림 V-2-6] C유치원의 시간대별 이용 아동 수	179
[그림 V-2-7] D유치원의 시간대별 이용 아동 수	181
[그림 V-3-1]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의 비전 및 목표	183
[그림 V-3-2]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주요사업-직장맘의 직장내 권리 확보, 임 신출산에 대한 모성보호 상담	185

[그림 V-3-3]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주요사업-직장맘과 사업주간의 분쟁해결 지원	185
[그림 V-3-4]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주요사업-직장맘의 출산·육아기 법적지 원 서비스	185
[그림 V-3-5]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주요사업-직장맘 대상 원스톱 연계정보 제공	186
[그림 V-3-6] 서울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과제	188
[그림 V-3-7] 서울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지원 주요사업	190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일·가정 양립지원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취업모의 경력단절과 맞벌이 가구의 양육 시 어려움은 여전하여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에 불과하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0%선에 머물고 있음.
- ☐ 최근 정부는 여성고용률 증진 노력과 더불어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세부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대책은 기존 정책의 강화에 그치고 있어 그 효과가 의문시됨.
-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 일·가정 양립지원이 맞벌이 가구의 욕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특히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 내부의 차이에 주목하여 맞벌이 가구 특성별 지원 방안에 주력함.

나. 주요 연구 내용

-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OECD 국가들의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규명하고, 일·가정 양립지원의 주요 내용과 정책 효과를 파악함.
 -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을 서비스 지원과 시간 지원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정책 설계 차원의 한계점을 규명함.
 -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육아지원서비스 및 제도 이용 및 요구를 자녀 특성, 근로 특성, 가구소득 등 개인 특성별로 규명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교육서비스 운영 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를 규명함.
 -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의 기본 방향 및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맞벌이 가구 일반에 대한 양육지원 내실화 방안과 특성별 지원 방안을 모색함.

다. 연구 방법

- ☐ 주요 연구 방법은 1) 문헌연구 2) 설문조사 3) 심층면담 4) 사례분석임.
- 전국 지역의 영유아를 둔 취업모 1,736명을 대상으로 양육지원정책 이용 현황 및 수요를 조사하고, 어린이집 850개소와 유치원 896개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운영 실태 및 개선 요구를 조사함.
- 어린이집의 시간연장형보육,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운영 사례와,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는 대표 사례로서 서울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다룸.

2. 연구의 배경

- ☐ 일·가정 양립지원, 여성고용, 출산율간의 관계
 - 일·가정 양립은 공보육서비스, 남녀가 공평하게 활용하는 휴직제도, 일·가정 양립이 용이한 유연한 노동 환경이 강조되며, 여성고용 증진과 출산율 제고 차원의 동시 효과는 시간 지원에서 보다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됨.
- ☐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 특성
 -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대략 40%선이며, 홀벌이 가구에 비해 조부모 의존성이 높고, 서비스 이용시간이 길며, 월 보육·교육비용이 더 높고(약 13만원), 현금지원보다 서비스 지원과 시간 지원에의 수요가 높음.
- ☐ 맞벌이 가구 자녀양육 관련 요인
 - 개인·가족 특성과 근로 특성(전일제, 시간제)에 따라 일·가정 양립 실태, 출산력, 정책 수요가 다르므로 각 변인에 따른 양육지원 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3.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현황 및 한계점

- ☐ 정책 방향

-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은 별도의 종합계획 없이 저출산 대응정책, 가족정책, 여성고용정책에 포함되어 다루어지고 있어 고유의 목표와 전략이 부재한 실정임.
-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은 서비스 지원 특히 기관보육 지원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돌봄)시간 지원은 휴가·휴직제도 위주로 이용되는 추세이나 전반적으로 시행 수준이 낮음.
 - 기관보육 지원은 맞벌이 가구의 입소우선권 보장, 어린이집 종일제 보육 운영 의무화,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시간연장형보육(시간연장,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등임.
 - 가정내보육 지원은 시간제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긴급보육시 아이돌봄 특별서비스가 제공되며, 아이돌보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 내용과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2014년에 우선 지원대상이 맞벌이 가구 위주로 개편됨.
 - 휴가·휴직제도로는 산전후휴가, 배우자휴가 최대 5일(유급 3일) 휴가, 유사산휴가, 만 8세까지 최대 1년까지 가능한 육아휴직제도가 있으며, 2001년 이후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남성의 이용률은 2013년 기준으로 3.3%에 불과함.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합하여 최대 1년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할 수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 시행률은 7.1%로 저조함.
- 한계점
 - 일·가정 양립지원을 명시한 각종 기본(종합)계획과 세부대책들은 각자 목표를 지니므로 맞벌이 가구 고유의 양육지원 수요에 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관련 사업들의 관할 부처도 다양하여 해당 사업들의 총괄 관리와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어려운 실정임.
 -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이 기관보육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종일제 보육 등이 맞벌이 가구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여 가정내보육 병행 이용 및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 시간 지원 제도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시행률이 미흡하고, 주로 대기업 위주로 실시되며, 남성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여 정책 효과가 의문시됨.

4. 맞벌이 가구 육아지원서비스 및 제도 이용 실태와 요구

취업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영유아 대상 양육지원정책 전반의 인지도와 서비스 지원과 시간 지원 제도 이용 실태 및 요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맞벌이 가구 일반의 이용 실태와 요구

1) 인지도

- ☐ 양육지원 관련 제반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휴가·휴직제도가 90% 이상으로 가장 높고, 임신·출산비 지원과 양육수당제도 순이며,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1%에 불과하여 그 격차가 심함.

2) 서비스 이용 실태 및 만족도

☐ 이용 현황 전반

- 전반적으로 어린이집과 조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유치원과 방문서비스 등 교육서비스 이용률은 8~27%선이고, 아이돌보미와 민간베이비시터 이용률은 5%선임.
- 월평균 이용비용은 각 서비스별로 민간베이비시터 70만원, 조부모 및 친인척 약 44만원, 아이돌보미 약 34만원, 유치원 약 30만원, 어린이집 약 21만원 선으로, 가정내보육 이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됨.

☐ 기관보육

- 입소 대기 유경험률은 약 41%이고,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해당 비율은 각각 약 75%와 약 67%에 달하며, 평균 대기 기간은 7.9개월임.
- 기관 최초 이용 자녀 연령은 평균 약 21개월이며, 해당 시기가 0세와 1세 아인 경우 '너무 이르다'는 응답률은 각각 72.5%와 75.2%에 달함.

- 이용 기관 유형은 0~2세아는 가정어린이집, 5세아는 (사립)유치원 이용률이 가장 높음.
- 이용 시간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부모 공히 약 8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퇴근 시각 이후 자녀를 하원시키는 취업모의 비율은 18.2%에 불과함.
- 이용 만족도는 운영 일수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부모 참여, 이용비용, 긴급보육 대응 순으로 낮음.

□ 가정내보육

-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사유는 기관 이용 병행이 주를 이루나, 0세와 1세아의 경우는 '기관 적응이 어려워서'라는 응답률이 각각 69.1%와 61.4%로 나타나, 이들 연령의 가정내보육 선호도를 말해줌.
- 대리양육자는 조부모가 90%선을 넘어 대다수를 차지하며, 서비스 만족도는 기관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주된 불만족 내용은 돌보미의 전문성과 신뢰성 부족으로 조사됨.

□ 지역사회 육아지원

-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 중 특히 아동발달 검사, 도서 대여, 육아정보 제공 등이 높은 필요도를 보임.
-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지원사업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가운데, 전일제 근로 가구에서 보다 낮게 나타남.
- 이용 만족도는 장남감과 도서 대여, 체험프로그램이 높고 특히 0세아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며, 불만족 사항으로는 프로그램 전문성과 다양성 미비, 이용시간 조정 어려움 등이 지적됨.

□ (돌봄)시간 지원 제도

- 제도 시행률은 산전후휴가 69.3%, 휴직제도 56.7%, 배우자 출산휴가 33.5% 순이며, 300인 이상 기업에서 높게 나타나고, 제도 이용가능성은 남성육아휴직이 가장 낮게 나타남.
- 평균 이용 기간은 육아휴직은 약 11개월, 근로시간단축은 약 13개월이며, 희망 이용 기간은 각각 약 26개월과 약 37개월로 나타남.

☐ 양육 시 애로사항 및 수요

- 일하는 부모의 적합한 양육 방식에 대해 0세아와 1세아는 부모 직접돌봄이 압도적으로 높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우선 입소와 종일제 보육 필요 대상으로는 맞벌이 가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자녀 양육 시 주된 애로사항으로는 직장과의 병행 어려움과 자녀 돌봄 시간 부족이며, 특히 자녀가 아플 경우 가장 힘들다고 지적됨.
- 일·가정 양립지원 요구로는 시간 지원 즉 육아휴직 활성화 18.3%,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5.4%, 시차출근제 14.3% 순으로 높은 수요를 보임.
- 후속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녀 1명인 가구에서 약 50%선에 달하며, 후속출산 미의향 사유는 직장 일과 자녀 양육의 병행 어려움(41.5%)과 과도한 양육비용(30.6%)으로 지적됨.

나. 맞벌이 가구 특성별 이용 실태와 요구

☐ 자녀 특성별

- 주양육자는 0세아의 경우 조부모 돌봄이 60%선을 육박하며, 어린이집 이용률은 1세 이후 점차 증가하여 1세아 53.1%, 2세아 69.6%, 3세아 64.8%를 차지하나 4세 이후는 유치원 이용률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4세아 33.5%, 5세아 46.8%에 달함.
- 기관보육에 대해서는 0세아의 불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가정어린이집의 이용률은 0~2세아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영아보육 전반은 물론 가정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 노력이 요망됨.
- 월평균 보육비용은 특히 0세아와 1세아의 경우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각각 72만원과 65만원선에 달하며,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이용비용은 감소하므로 영아를 둔 부모에 대한 비용 지원과 출생순위에 따른 차등 지원을 고려할만함.
- 0세와 1세아의 양육 시 어려움이 전반적으로 과중한 가운데, 직장과의 병행의 어려움과 자녀돌봄 시간 부족이 주된 애로사항으로 지적됨.

☐ 근로 특성별

- 전일제 근로가구는 시간제에 비해 기관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조부모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는 야간근로자에서 더욱 그러하며, 이들의 일·가정 양립 애로사항이 보다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전일제 근로가구가 시간제 근로가구에 비해 서비스 이용률이 2배 이상 높고, 실제 서비스 이용 시간도 더 길게 나타남.
- 전일제 근로가구의 서비스 이용비용은 시간제 근로가구에 비해 약 2배 높고 비용 부담도 큰 것으로 조사됨.

☐ 이외 개인 특성별

-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조부모 등 지원인력의 도움이 미약하고,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부담이 과도하므로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기관 보육이 유일한 실정임.
- 특히 대도시 지역의 어린이집 입소 문제가 심각하며, 읍면 지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접근성 강화가 요구됨.

5. 맞벌이 가구 대상 육아지원서비스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 설문조사와 시간연장형보육, 방과후보육 운영 사례 조사를 토대로 기관보육 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를 파악하고,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와 서울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가. 기관보육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

- ☐ 기관보육 실수요자와 관련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모두 맞벌이 가구를 우선 입소·입학과 종일제 필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 ☐ 연간 휴원 일수는 어린이집 약 26일, 유치원 약 37일로 나타나며, 토요 운영 비율은 각각 40.8%와 20.7%로 차이를 보임.
- ☐ 입소·입학 시에 맞벌이 가구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비율은 어린이집 54%, 유치원은 40.5%에 불과하며, 해당 빈도는 입학 시 한 차례에 그침.
- ☐ 운영위원회 등 부모참여 프로그램은 평일 주간에 이루어는 비율이 높아 맞

별이 가구의 참여에 어려움이 예상됨.

- ☐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의 운영 비율은 각각 24.2%, 1.4%, 1.4%, 6.5%이며, 운영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률은 각각 68.7%, 28.6%, 18.6%, 36.3%임.
- ☐ 맞벌이 가구 보육지원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로는 교사 인력 배치, 가구특성별 비용지원, 기관 이용시간 유연화, 방과후과정 프로그램 질 향상 등이 제기됨.

나. 시간연장형보육/방과후과정 운영 사례 및 시사점

- ☐ 유치원은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맞벌이 가구 위주로 운영되며, 어린이집의 하원 시각은 매우 다양함.
- ☐ 시간연장형보육과 방과후보육 시 활동내용은 기관별로 매우 상이하므로 해당 시간의 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함.
- ☐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의 추가 지원인력이 원활하게 배치되고 있음.

다.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 운영 사례 및 시사점

-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 주된 목표는 취업모의 경력 단절 예방이며, 주요 사업은 원스톱 종합상담, 자녀돌봄지원, 직장맘 커뮤니티 지원, 일·가정 양립지원 등임.
 - 특히 노무사를 상근 인력으로 배치하여 노동권 보장 차원의 다양한 전문상담을 제공하며, 커뮤니티 사업을 통해 당사자 역량 강화에 주력함.
- ☐ 서울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맞벌이 가구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관 운영은 격주 수요일은 야간(10시까지), 매주 토요일은 상시 운영함.
 - 특히 부모-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아빠놀이터 프로그램'은 2014년부터 아버지와 자녀만 참여토록 하여 아버지의 부모 역량 강화에 기여하며, 남성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토요일에 운영함.

6. 정책 방안

가. 기본 방향 및 세부 전략

- ☐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의 목표는 일하는 부모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함과 동시에 자녀를 돌봄 권리를 보장하여 남녀 모두 노동권과 부모권을 동시에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음.
- ☐ 기본 방향은 1) 일하는 부모의 돌봄 권리를 강화하고, 2) 남성의 부모권 강화를 통해 양성평등적 돌봄을 실현하며, 3) 노동환경의 개선을 통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임.
- ☐ 세부 전략으로는 1) 서비스 지원과 (돌봄)시간 지원을 균형적으로 설계하는 방안과 2) 맞벌이 가구의 자녀 특성과 근로 특성별 설계 방안을 제시함.

나.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내실화 방안

- ☐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의 체계적 기반 조성
 -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고, 범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총괄기구를 마련하며, 취업모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서비스기관을 설치·운영함.
- ☐ 기관보육 내실화
 - 실수요자에 부합하는 입소 우선순위 조정, 전일제 근로자 위주의 입소관리 강화, 유치원의 운영 일수와 방학 운영의 맞벌이 가구 부합성 제고, 영아 대상 공보육인프라 강화, 시간연장형보육 대상 선정 적정성 제고와 인력 지원 강화, 맞벌이 가구의 기관 운영 참여 지원 등
- ☐ 가정내보육 선택권 강화
 - 영아 종일돌봄서비스 강화와 관련 인력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등
- ☐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 접근성 강화
 - 육아종합지원센터 평일 야간 또는 토요일 상시 운영을 의무화하여 맞벌이 가구의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 기업의 (돌봄)시간 지원 실효성 강화

- 가족돌봄휴가제도 분할 사용 단위 축소, 가족친화제도 기업내 홍보 의무화,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사업주 거부 규정 삭제 및 적용 기간 3년으로 확대 등

다. 맞춤형 가구 특성별 지원 방안

□ 전일제근로 가구/비전형적근로 가구

- 전일제근로 가구는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애로사항이 가장 과중한 대상으로, 기관보육, 아이돌봄사업의 우선 지원대상임은 물론 특히 (돌봄)시간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핵심 대상임.
- 비전형적근로 가구는 현행 기관보육이 근로시간과 부합하지 않아 보편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양육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일차적으로는 육아기에 한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의 선택권 보장을 강화함.

□ 0~1세아를 둔 맞춤형 가구

- 0~1세아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 고충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야기되지 않도록 기관 입소 시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에 일차적인 지원 대상으로 규정함.

□ 저소득층 맞춤형 가구

- 저소득층 맞춤형 가구는 조부모 등 지원인력이 미흡하고 민간서비스를 통한 보육 기능의 보완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일차적인 비용 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6년 이후 강화된 사회적 돌봄 정책에 따라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지원은 핵심 과제로 부상하였다. 2008년부터 추진된 제4차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에서는 취업모 대상 양육지원이 모성보호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고 지적하고 전 사회에 걸친 일·가정 양립지원을 강조한다(노동부, 2008: 3). 또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이 저소득층 위주의 보육지원에 주력하여 맞벌이 가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한계로 인식하고 육아휴직제도 개선, 유연한 근로 형태 확산, 그리고 가족친화 여건 조성을 세부 과제로 제시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10). 또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인 '새싹플랜'에 이어 '아이사랑플랜(2010~2012년)'에서는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대, 가정내 보육지원 강화,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명시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2010). 지난해 말에 제시된 '제2차 보육 중장기 기본계획'에서도 입소대기시스템의 전국 확산, 시간연장형 서비스의 내실화 등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입소와 이용 불편 해소를 강조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b: 5). 지난해 6월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등 세부 대책도 마련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3: 6).

그러나 그 동안의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신·출산으로 인한 취업모의 경력 단절과 자녀 양육 시 어려움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기혼여성들이 자녀를 '맡고 맡길 곳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8.7%로 나타나(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 외, 2012: 124), 국공립어린이집의 대기 기간은 9.7개월에 달한다(이미화·서문희·이정원·도남희·권미경 외, 2012: 148-149). 게다가 2013년 이후 보편적 보육지원으로 실(實)수요층인 맞벌이 가구가 원하는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된다. 또한 여성에게 치중된 육아 부담도 완화되지 않아 2013년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약 3.3%(2,293명)에 불과하며(관계부처 합동, 2014a: 2), 2008년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가 도입되

었으나, 2013년 기준으로 736명이 이용한 데 그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4a: 3).

이 같은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여성고용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다가 출산·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 급락하여 40대 이후 다시 증가하는 M-curve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2005년 이후 본격화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무색하게도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합계출산율은 전년(1.30명)보다 0.11명이 감소한 1.19명으로, 2003년 수준인 초저출산 국가(합계출산율 1.3명 이하)로 회귀하였다(통계청, 2014a: 1).

최근 정부는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2014년 2월에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지원 방안으로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제 활성화,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 확충, 아이돌봄서비스를 확충하되 취업모가 우선 이용하도록 개편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4a: 6-9). 또한 지난 10월에는 '여성고용 후속 보완대책-일하는 부모를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관계부처합동, 2014b). 지난해 7월 정부가 2017년까지 여성고용률 70% 목표를 제시한 이후¹⁾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대책들은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의 기본 방향 및 정책 설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기존 정책들을 단순히 나열한 채 세부 사업의 강화에 머물고 있어 정책 효과는 여전히 의문시된다.

이 연구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일·가정 양립지원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시 어려움이 완화되지 않고 그 결과 여성고용 증진과 출산율 제고 등 정책 효과도 미흡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의 설계 전반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지속적으로 낮은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의 주된 원인은 미취학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점을 상기하여 현행 양육지원이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욕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특히 맞벌이 가구 내부의 차이 즉 맞벌이 가구 특성별 지원 방안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는 자녀 양육 실태와 요구 측면에서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자녀 특성, 근로 특성, 그리고 가구소득 등 이외 특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기 위해서는 대상별로 보다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본다.

1) 2017년까지 248만개(15~64세)의 신규 고용 창출 목표를 발표하고, 이들 중 여성일자리 167만개(67%)를 핵심과제로 제시함(관계부처합동, 2014b: 25).

2. 연구 내용 및 분석틀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특수성을 이해한다. 즉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에 따른 홀벌이 가구 대비 맞벌이 가구의 양육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정책 현황을 다루고, 정책 설계 차원의 한계점을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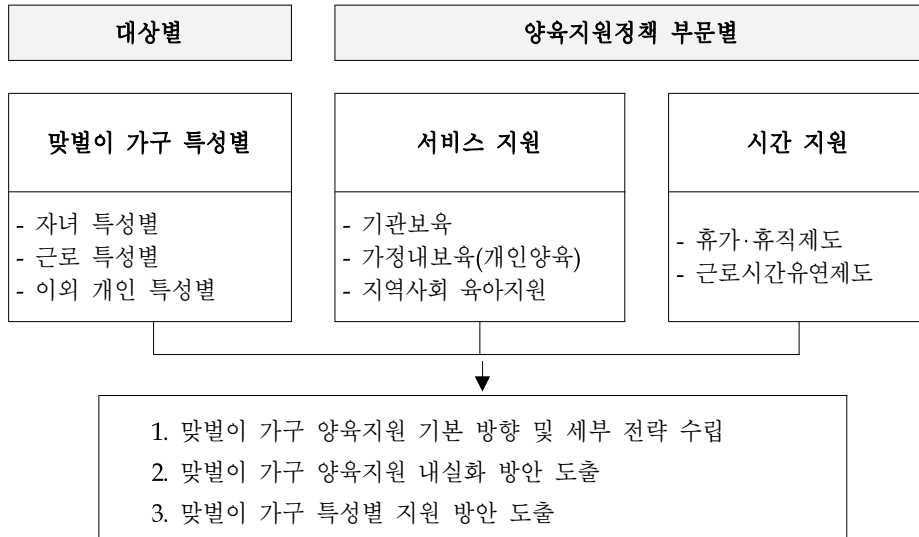
셋째, OECD 국가들의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 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특수성을 파악하고, 일·가정 양립지원의 주요 내용과 여성고용, 출산율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정책 효과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자녀 연령, 총 자녀수(또는 출생순위) 등 자녀 특성, 근무 형태, 근로 형태, 종사상 지위 등 근로 특성 그리고 가구소득, 연령, 학력, 거주지역 등 이외 특성별로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양육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한다.

다섯째, 서비스 공급 주체인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의 운영 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도출한다. 또한 기관보육·교육 이외의 맞벌이 가구 대상 지역사회내 육아지원서비스(직장맘지원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조사하여 확대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여섯째, 이들 연구결과를 토대로 맞벌이 가구 대상 목표와 기본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맞벌이 가구 일반에 적용되는 양육지원 내실화 방안과 맞벌이 가구 특성별 지원 방안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 [그림 1-2-1]과 같다. 대상별로는 맞벌이 가구 일반은 물론 맞벌이 가구 특성별 특히 1) 자녀 특성, 2) 근로 특성, 3) 이외 개인 특성별 양육지원 실태 및 요구에 주목한다. 이때 맞벌이 가구 대상 양육지원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 지원과 부모권 보장을 위한 시간 지원으로 구분하고, 서비스 지원은 1) 기관보육, 2) 가정내보육, 3) 지역사회 육아지원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를 종합하여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의 기본 방향과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내실화 방안과 맞벌이 가구 특성별 지원 방안을 각각 도출한다.



[그림 1-2-1] 연구 분석틀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맞벌이 가구의 양육지원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동향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종 정부 정책 자료를 조사하였다. 특히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의 기본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2011~2015년)’ 등 각종 기본계획과 종합계획, 최근 대책을 다루었다.

나.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양육지원 수요자인 맞벌이 가구와 주요 서비스 공급자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하였다.

1) 수요자 대상: 맞벌이 가구

가)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징

전국 지역의 영유아를 둔 취업모 총 1,736명을 대상으로 양육지원정책 및 제도 이용 실태 및 애로사항, 그리고 정책 수요를 조사하였다. 이때 표집은 맞벌이

이 가구의 자녀 연령과 근로 유형을 고려하였다. 즉 자녀 연령별 비교를 위해 각 연령별로 고르게 표집하였고, 근로 특성별 비교를 위해 시간제근로자와 야간 근로자 등은 최소 10%선을 초과하도록 임의표집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맞벌이 가구는 양부모에 한정하였다.

〈표 1-3-1〉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자녀 연령			직업		
0세	1,295	7.0	의회 의원, 고위 임직원, 관리자	9	0.5
1세	1,285	6.4	전문가	238	13.7
2세	290	16.7	기술공 및 준전문가	50	2.9
3세	292	16.8	사무종사자	1,175	67.7
4세	288	16.6	서비스종사자	133	7.7
5세	286	16.5	판매종사자	49	2.8
평균	62.0개월		농업,임업,어업,숙련종사자	5	0.3
영유아 구분			기능원, 관련기능자	20	1.2
영아	870	50.1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5	0.3
유아	866	49.9	단순노무 종사자	24	1.4
본인연령			기타	28	1.6
20대	47	2.7	거주지역		
30대	1,404	80.9	서울	582	33.5
40대 이상	285	16.4	부산	116	6.7
평균	35.4세		대구	92	5.3
월평균 가구소득			인천	135	7.8
200만원 미만	93	5.4	광주	52	3.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17	18.3	대전	73	4.2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71	21.4	울산	24	1.4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06	17.6	세종	4	0.2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34	13.5	경기	386	22.2
600만원 이상	415	23.9	강원	33	1.9
평균(표준편차)	471.2만원		충북	40	2.3
학력			충남	41	2.4
고등학교 졸업	151	8.7	전북	43	2.5
전문대 졸업	384	22.1	전남	23	1.3
4년제 대학 졸업	986	56.8	경북	38	2.2
대학원 졸업	215	12.4	경남	48	2.8
			제주	6	0.3
계				1,736	100.0

〈표 1-3-2〉 조사대상 가구의 근로 특성

단위: 명, %

구분	본인		배우자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근로 형태				
전일제	1,509	86.9	1,648	94.9
시간제	227	13.1	88	5.1
근로시간(평균근로시간)				
전일제	1,509	42.4	1,648	44.8
시간제	227	23.6	88	26.0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자	1,628	93.8	1,536	88.5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46	2.6	93	5.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9)	2.8	93	5.4
무급가족종사자	13	0.7	14	0.8
종사상지위				
상용직(1년이상의 근로계약)	1,395	80.4	1,359	78.3
임시직(1개월~1년미만)	119	6.9	52	3.0
일용직(1개월미만 또는 일당제)	19	1.1	2)	1.3
해당없음	203	11.7	303	17.5

나) 조사 내용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은 1) 양육지원 제도 및 정책 인지와 필요성 인식, 2) 영유아 자녀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만족도, 3) 직장내 가족친화제도 이용 실태 및 만족도, 4) 양육시 애로사항, 5) 양육지원 요구 등이다.

〈표 1-3-3〉 설문조사 내용-맞벌이 가구 조사

조사 영역	조사 항목
직업/근로 현황	- 직업, 근로 유형,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야근/모임 횟수 - 작업장 규모, 업종, 가족친화인증기업 여부
자녀 현황	- 총 자녀수, 자녀 연령, 출생순위
양육지원제도 및 정책 인지도/필요도	- 각종 정책 및 제도(산전후휴가 등 총 19개) 인지도 - 후속출산 도움 정도 - 일·가정 양립지원 도움 정도

(표 I-3-3 계속)

조사 영역	조사 항목
영유아 자녀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만족도	- 주양육자 - 기관 대기 현황: 대기 여부, 총 대기 기간, 대기기관 유형, 현재 기관 이용 중 타 기관 대기 여부 및 사유 - 기관 이용 변경 경험 및 사유/불만족 내용 - 육아지원서비스(어린이집 등 총 8개) 이용 현황: 이용 여부, 이용 빈도, 이용 만족도, 월 이용비용, 이용비용 부담 정도 - 사설기관 이용 사유 -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서비스별 필요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실태(육아지원사업 인지 여부/이용 경험/빈도/이용 만족도 및 불만족 내용 등) 이외 기관 이용 실태(이용 경험, 이용 기관, 이용 빈도, 이용 만족도) 및 세부내용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부모 대상> - 이용 기관 유형, 이용 사유, 기관 선택시 고려사항, 이용 시기, 대기 경험, 이용시간, 시간연장정보육 이용 실태 및 만족도, 항목별 이용 만족도 및 불만족 내용 등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부모 대상> - 이용 사유, 주양육자, 구인시 어려움, 비혈연 돌봄인력 만족도, 이용 시기, 이용시간, 이용비용 지불 방법/월평균 비용 등
직장내 가족친화제도 이용 실태 및 만족도	- 직장내 임신출산(산전후휴가 등 5개)/양육지원(휴직제도 등 5개) 시행률, 실제 이용가능성, 이용률, 이용 만족도 - 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이용 실태 및 수요(이용 시기, 총 기간, 희망 기간)
양육 시 애로사항	- 일·가정 양립 애로사항 - 근로시간 관련 양육 애로사항 - 일·가정 양립지원 필요도 - 자녀양육 참여시간(주중/주말): 본인, 배우자 - 긴급보육시 실제 돌봄자, 희망 돌봄자 - 경력단절 경험 및 해당 시기 - 육아기 중 가장 힘든 점
양육지원 요구	- 대상별 보육우선 제공 대상 중요도 - 대상별 종일제 보육 필요도 - 일·가정 양립 균형을 위한 지원 요구 - 양육지원제도별 자녀 양육시 필요도 - 후속출산 의향/미의향 사유 - 근로시간 변경 희망 여부 및 변경 희망 시간 - 아동연령별 적합한 양육 방식
응답자 일반사항	- 연령, 학력, 거주지역, 소득(본인, 가구)

2) 공급자 대상: 어린이집/유치원

가)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징

어린이집 850개소와 유치원 896개원 총 1,746개소를 대상으로 맞벌이 가구 대상 보육·교육서비스 운영 실태 및 애로사항, 그리고 개선 과제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 때 표집은 기관유형별 비교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고르게 배분하였으며, 설립유형별 최소한의 사례수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 유형의 경우는 임의표집하였다. 자료 처리는 모집단을 반영할 수 있도록 2014년 4월 기준 전국 지역의 기관유형별 공급률과 지역규모별 설치율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3-4〉 조사대상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일반적 특징(가중치 적용 전)

단위: 기관, %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기관유형			기관 소재지 지역규모		
어린이집	850	48.7	대도시	687	39.3
유치원	896	51.3	중소도시	580	33.2
			읍면	479	27.4
계	1,746	100.0			
어린이집			유치원		
소재지			소재지		
서울	176	20.7	서울	112	12.5
부산	30	3.5	부산	39	4.4
대구	38	4.5	대구	44	4.9
인천	48	5.6	인천	50	5.6
광주	29	3.4	광주	28	3.1
대전	28	3.3	대전	30	3.3
울산	17	2.0	울산	18	2.0
세종	9	1.1	세종	8	0.9
경기	180	21.2	경기	160	17.9
강원	27	3.2	강원	44	4.9
충북	27	3.2	충북	49	5.5
충남	39	4.6	충남	77	8.6
전북	33	3.9	전북	55	6.1
전남	34	4.0	전남	59	6.6
경북	65	7.6	경북	69	7.7
경남	44	5.2	경남	41	4.6
제주	26	3.1	제주	13	1.5

(표 I-3-4 계속)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기관규모(정원)			기관규모(정원)		
1~20명	248	29.2	1~49명	379	42.3
21~39명	114	13.2	50~100명	205	22.9
40~79명	250	29.4	101명 이상	312	34.8
80명 이상	238	28.0			
기관규모(현원)			기관규모(현원)		
1~20명	279	32.8	1~49명	431	48.1
21~39명	152	17.9	50~100명	233	26.0
40~79명	267	31.4	101명 이상	232	25.9
80명 이상	152	17.9			
계	850	100.0	계	896	100.0

나) 조사 내용

전국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은 1) 보육·교육서비스 대상 인식, 2) 맞벌이 가구 보육·교육서비스 운영 현황, 3) 운영 시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 등이다.

〈표 I-3-5〉 설문조사 내용-기관조사

조사 영역	조사 항목
기관 일반사항	- 기관유형, 기관 소재지/지역 규모, 정원/현원 - 평가인증 여부
보육·교육서비스 목표/ 우선제공 대상 인식	- 어린이집/유치원 우선입소 대상 - 종일제 보육·교육서비스 필요 대상 - 종일제 보육·교육 적합한 기관 및 선정 이유 - 보육·교육서비스의 일차적인 목표
맞벌이 가구 보육·교육서비스 운영 현황	- 입소 대기 아동 현황/맞벌이 가구 아동 비율 - 운영 시간/이용 비용 - 등하원 시간대별 전체아동수/맞벌이 가구 아동수 - 토요일 운영 실태 - 부모참여 기구/프로그램 운영 실태 - 맞벌이 가구 대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세부 내용 - 항목별 맞벌이 가구 만족도 평가/불만족 내용 - 맞벌이 가구 보육·교육 시 애로사항 전반 <어린이집 원장 대상> - 어린이집 시간연장형보육 운영 여부 및 미운영 사유 <유치원 원장 대상> -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여부 및 미운영 사유

(표 I-3-5 계속)

조사 영역	조사 항목
개선 요구	- 어린이집 특수보육 필요성 및 운영 의향/미운영 사유 - 시간연장형보육 운영 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 맞벌이 가구 보육지원 개선사항

다. 심층면담

1) 부모

특별한 요구를 지닌 것으로 예상되는 장시간 근로자, 비전형적 근로시간 근무자, 학업중인 자, 경력단절 유경험자의 양육 경험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인 면담 실시 일정과 면담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면담 실시 일정 및 내용

임금근로자(장시간근로자, 비전형적 근로시간 근무자) 3인, 비임금근로자 1인, 학업중인 여성 3인,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유경험자 1인을 대상으로 총 5차에 걸쳐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내용은 1) 주양육자, 2) 서비스 이용 실태 및 만족도, 3) 기업의 양육지원 이용 경험 및 이용 시 애로사항, 4) 일·가정 양립 갈등, 5) 맞벌이 가구 영유아 양육지원에 대한 요구 등이다.

〈표 I-3-6〉 심층면담 실시 일정 및 내용-취업모

횟수	시기	대상	내용
1차	8.14(목)	맞벌이 가구 여성 3인(학업중)	·양육 실태 및 애로사항 ·육아지원제도 이용 현황 ·일·가정 양립 갈등 ·양육지원 요구 등
2차	9.11(목)	맞벌이 가구 여성 1인 (비임금근로자이면서 장시간 근로자)	
3차	9.11(목)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 1인	
4차	9.13(토)	맞벌이 가구 여성 1인 (장시간 근로자/공기업)	
5차	10.27(월)	맞벌이 가구 여성 1인 (비전형적 근로시간 근무자)	
6차	11.3(월)	맞벌이 가구 여성 1인 (장시간 근로자/사기업)	

나) 면담 대상자 일반적 특성

현재 맞벌이 가구이거나 육아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둔 여성 총 8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들 연령은 만 32~40세이고, 학력은 모두 대졸 이상이며, 총 자녀수는 1~3명으로 다양하다.

〈표 1-3-7〉 심층면담 참여자 일반적 특성-취업모

번호	성별	연령(만)	최종학력	본인 직업(근로시간 특성)	자녀	
					수	연령
1	여	34	대학원이상	대학원생	2	33개월, 48개월
2	여	32	대학원이상	대학원생	1	23개월
3	여	32	대학원이상	대학원생	1	16개월
4	여	34	대학원이상	전문가 (주 50시간 근무자)	2	23개월, 42개월
5	여	35	4년제 대졸	주부 (경력단절 유경험자)	2	9개월(쌍생아)
6	여	33	4년제 대졸	사무종사자 (주 50시간 근무)	2	9개월, 48개월
7	여	40	대학원 이상	국악 연주자 (10-13시/13-22시)	3	40개월, 71개월, 초등학교 1학년
8	여	36	4년제 대졸	사무종사자 (주 50시간 근무/잡은 야근)	2	50개월, 78개월

2) 기관

기관 설립유형별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총 5명을 대상으로 총 2차에 걸쳐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내용은 1) 맞벌이 가구 이용 현황, 2) 유치원의 방과후과정과 어린이집 시간연장정보육 운영 실태 및 운영 시 애로사항, 3) 맞벌이 가구 육아지원 시 고려사항, 4) 맞벌이 가구 육아지원 강화를 위한 개선 요구 등이다.

〈표 1-3-8〉 심층면담 실시 일정 및 내용-유치원/어린이집 원장

횟수	시기	대상	내용
1차	7.2(수)	어린이집 원장 3인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맞벌이 가구 이용 현황 ·방과후과정/시간연장정보육 운영 실태 및 운영 시 애로사항 ·맞벌이 가구 육아지원 강화를 위한 개선 요구
2차	7.2(수)	유치원 원장 2인 (공립단설/사립유치원)	

라. 사례분석

1) 시간연장형보육/방과후과정 운영 사례

어린이집의 시간연장보육과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운영 사례를 발굴하여 제도적 보완책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관유형과 규모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어린이집 3개 기관과 유치원 4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표 1-3-9〉 사례조사 기관 일반 현황-어린이집/유치원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A	B	C	A	B	C	D
기관 유형	국공립	민간	가정	공립 병설	공립 병설	공립 단설	사립
소재지	서울시 성북구	서울시 관악구	서울시 구로구	서울시 관악구	서울시 성동구	서울시 노원구	서울시 강서구
규모(정원)	11학급 (116명)	6학급 (84명)	5학급 (20명)	6학급 (140명)	2학급 (52명)	6학급 (140명)	4학급 (120명)
맞벌이 아동수	93	51	19	70	40	46	40
이용아동 연령	0~5세	2~5세	0~2세	3~5세	4~5세	3~5세	3~5세
조사 시기	2014.9.	2014.8.	2014.9.	2014.8.	2014.9.	2014.8.	2014.9.

2)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 운영 사례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 중 맞벌이 가구 대상 운영 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 확산을 모색하였다. 해당 사례로는 1) 서울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2)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를 각각 선정하였다. 전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맞벌이 가구 육아지원사업이 활성화된 기관 중 하나이며, 후자는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별도의 종합서비스기관이므로 각각 선정하였다.

이들 기관의 센터장과 해당 사업 실무진을 대상으로 맞벌이 가구 대상 육아지원사업 추진 배경 및 운영 현황, 운영 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표 1-3-10〉 사례조사 실시 일정 및 내용-지역사회 육아지원 사례

횟수	시기	대상	내용
1차	7.12(화)	서울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및 실무진 1인	·맞벌이 가구 대상 육아지원사업 추진 배경 및 운영 현황 ·사업 운영 시 애로사항, 고려점
2차	8.14(목)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및 실무진 1인	

〈표 1-3-11〉 사례조사 심층면담 참여자 일반적 특성-지역사회 육아지원 사례

번호	성별	연령(만)	최종학력	전공	직급(역할)	현기관 근무기간
1	여	42세	대학원 이상	유아교육	센터장	6년 2개월
2	여	29세	4년제 대졸	사회복지	실무진	5개월
3	여	53세	4년제 대졸	사회복지	센터장	2년 6개월
4	여	36세	4년제 대졸	사회복지	실무진	2년 4개월

마. 전문가 자문회의

학계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 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문회의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정책 설계 전반과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내실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II. 연구의 배경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정책 설계를 근본적으로 재고하기 위해 여성고용률과 출산율 변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일·가정 양립지원 효과 차원에서 여성고용, 출산율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양육관련 특성을 홀벌이 가구와 대비하여 다루었다.

1. 일·가정 양립지원, 여성고용, 출산율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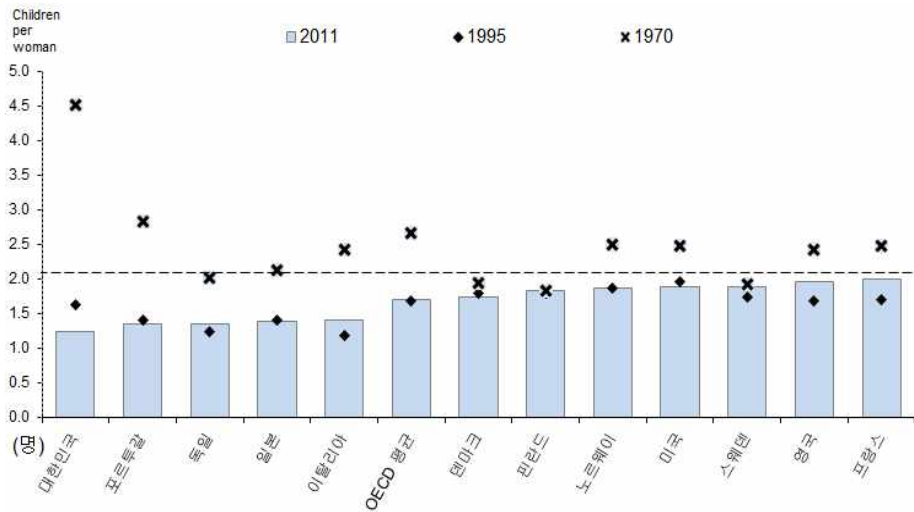
전 세계적인 여성취업률과 출산율 변화 추이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일·가정 양립지원 주요 내용 및 효과를 살펴보았다.

가. 여성취업률과 합계출산율 추이 변화

OECD 자료(2014)를 토대로 각국별 여성취업률과 합계출산율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11년 기준으로 대부분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에 못 미친다(OECD, 2014; 그림 II-1-1 참조). 그러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이를테면 2011년 합계출산율은 스웨덴과 프랑스의 경우 1995년에 비해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OECD,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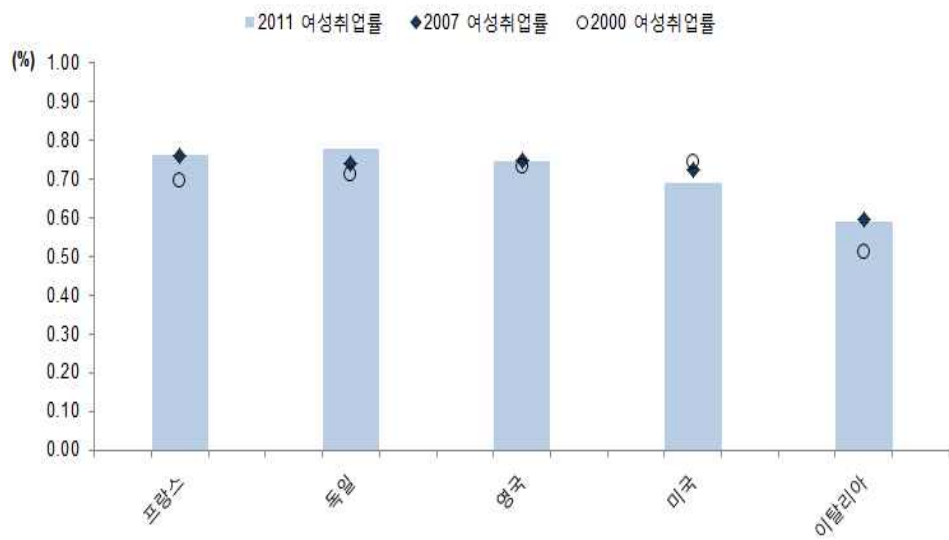
다음으로 25~54세 여성취업률과 15세 이하(미국은 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률은 대체로 2000년에 비해 2007년에 상승하였다(OECD, 2014; 그림 II-1-2 참조). 그러나 2007년 이후 유자녀 여성취업률은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여 미국은 크게 하락한 반면, 프랑스는 상승하였다.



[그림 II-1-1] 합계출산율 변화(1970, 1995, 2011)

주: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임.

자료: OECD(2014). Family database-SF2.1. OECD, Paris. p. 1. (출처: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 검색일 2014년 6월 16일)





[그림 II-1-2] 여성취업률과 유자녀 여성취업률 변화(2000, 2007,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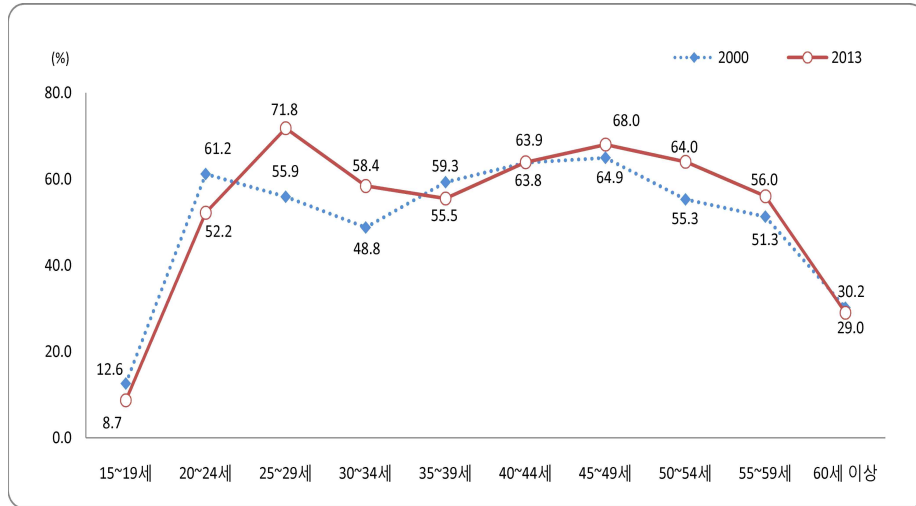
주: 여성취업률은 25~54세 여성 인구 중 취업자 비율임. 유자녀 여성 기준은 막내자녀가 15세 이하인 경우로 함. 단 미국은 14세 이하 아동을 기준으로 함.

자료: OECD(2014). Family database-LMF1.2. OECD, Paris. p. 3. (출처: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 검색일 2014년 6월 16일)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48.8%에서 2013년 50.2%로 정체되어 있다(통계청, 2014b: 23).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 의하면, 2012년 기준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50.3%이며, 이는 2005년과 2009년 대비 각각 1.7%p와 8.4%p 증가한 데 그치고 있다(김승권·박종서·김유경·김연우·최영준 외, 2012: 154).²⁾ 이처럼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M자 곡선으로 설명된다.

2013년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25세~29세가 71.8%로 가장 높고, 해당 비율은 2000년(55.9%)에 비해 15.9% 상승하였다(통계청, 2014b: 24). 그러나 결혼과 육아 등으로 30~34세는 58.4%, 35~39세는 55.5%로 감소하였다가 40대 초반부터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인구가 증가하는 M자형 패턴을 보인다(통계청, 2014b: 24; 그림 II-1-3 참조). 그런데 이러한 M자 곡선은 서구 국가들에서는 더 이상 관찰되지 않는다(여유진·김수정·김은지·최준영, 2013: 98). 최근까지도 이러한 경제활동 참여 곡선이 나타나는 국가는 OECD 국가들 중 일본이 거의 유일하다고 지적된다(여유진 외, 2013: 103).

2) 동 조사는 기혼가구 내 20~44세 기혼여성 4,7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김승권 외, 2012: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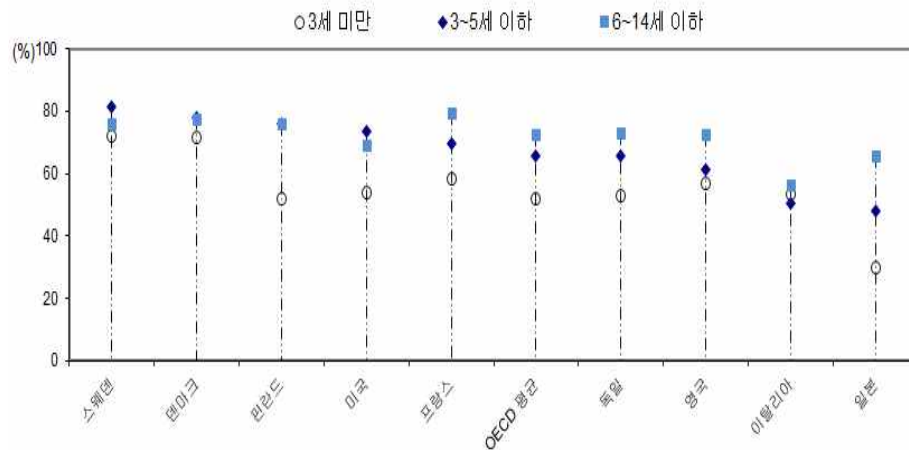


[그림 II-1-3]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2000, 2013)

자료: 통계청(2014b). 201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p. 24.

자녀 양육이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성 비경제활동 사유가 가사 및 육아라고 응답한 비율은 67~68%에 달하며, 이는 과거 양상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민무숙·오은진·이시균, 2010: 51). 단 비경제활동 사유는 연령대와 연도별로 변화하여 2000년대에 비해 2009년에는 30대의 육아로 인한 사유 비율이 59.0%로 20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인다(민무숙 외, 2010: 52). 가사와 육아로 인한 비경제활동 인구는 고졸 보다는 전문대졸과 대졸 집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다(민무숙 외, 2010: 53).

또한 막내 자녀 연령 기준으로 여성취업률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녀가 의무교육 연령(대부분 6세)에 이를 때 임금노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OECD, 2014; 그림 II-1-4 참조). 그러나 북유럽국가들과 같이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부문의 재정 투자 수준이 높은 경우는 막내 자녀 기준으로 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은 3~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와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OECD, 2014).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0~2세 자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절반 수준으로 하락시킨다(여유진 외, 2013: 81).



[그림 11-1-4] 막내자녀 연령에 따른 여성취업률

자료: OECD(2014). Family database-LMF1.2. OECD, Paris. p. 4. (출처: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 검색일 2014년 6월 16일)

자녀 유무는 소득계층별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분석된다(여유진 외, 2013: 78-80). 특히 미취학 자녀 여부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중산층 여성의 경우는 주된 변수로 작용한다(여유진 외, 2013: 79). 저소득층은 가구의 수지 균형상 일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고소득층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높은 수준의 기업 복지가 경제활동 참여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여유진 외, 2013: 79). 고소득층의 경우는 가사와 양육부담의 외주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영유아 자녀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인으로 해석된다(여유진 외, 2013: 80). 이 같은 해석에 의하면, 영유아를 둔 중산층 가구는 여성고용률을 좌우하는 핵심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나. 일·가정 양립지원과 정책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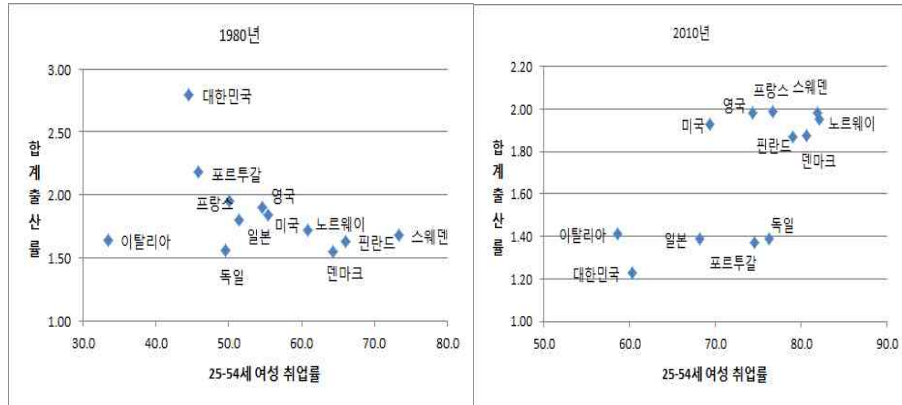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이 용이한 사회는 관대한 공적 보육서비스 제공,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이용하는 휴직제도, 그리고 일과 가정의 병행이 가능한 노동문화를 통해 가능하다(Fine-Davis, Fagnnani, Giovannini and Clarke, 2004: 236). 휴직제도를 통해 일하는 부모들이 경력단절없이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

도록 하고, 휴직 기간 동안에는 임금 손실을 보장해야 한다(Gornick and Meyers, 2003: 100). 또한 부모 모두가 돌봄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Gornick and Meyers, 2003: 101). 마지막으로 좀더 자란 아동을 둔 일하는 부모들의 경우는 부모를 대신하여 돌봐줄 시설이 없다면 계속하여 일할 수 없으므로 휴직 이후 이용가능한 공보육 시설이 요구된다(Gornick and Meyers, 2003: 102).

이는 시민권 이론에 기초한 2인 돌봄-소득자(dual-earner-dual-carer) 모델에 부합한다. Gornick과 Meyers(2003: 85)에 의하면, 2인 돌봄자 모델은 젠더 평등과 돌봄 제공 모두에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젠더 관계와 가족생활에서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내포한다(Gornick and Meyers, 2003: 85). 첫째, 여성과 남성 모두가 노동시장에서의 유급노동과 가정내 돌봄 노동을 공평하게 수행한다. 2인 소득자 모델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부모됨의 비용과 혜택을 공평하게 공유한다. 둘째, 매우 어린 자녀의 돌봄을 위한 실질적인 시간을 보장받는 것이다. 매우 어린 자녀의 보육은 가정에서, 좀더 자란 자녀의 돌봄은 공보육시설에서 제공된다.

일·가정 양립지원은 다음의 3가지 접근을 들 수 있다(Sweet, 2013: 100). 첫째 돌봄제공자를 임금노동에서 제외시킨다는 메카니즘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테면 초과근무 제한, 휴직제도 확대, 돌봄인력 고용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들 수 있다. 둘째, 경제활동 중인 부모가 가정내에서 돌봄에 참여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공보육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 전략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돌봄제공자가 고용 상태를 유지하면서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직장 일과 돌봄 모두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근로시간단축이나 육아휴직 시에 시간제 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취업률과 출산율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II-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 이전에는 음(-)의 관계에 있었으나, 1990년 이후에는 양(+)의 관계로 변화하였다(OECD, 2014). 즉 이전에는 여성 노동시장참가율이 비교적 낮은 나라에서 출산율이 높았으나, 현재는 여성 노동시장참가율이 높은 나라에서 출산율도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그림 II-1-5] 여성취업률과 합계출산율간의 관계(1980, 2010)

주: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입.

자료: OECD(2014). Family database-SF2.1. OECD, Paris. p. 5. (출처: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 검색일 2014년 6월 16일)

이는 OECD 국가들에서 여성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도가 높은 사회환경을 점차 갖추어 왔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된다(야마구치 가즈오, 2010: 126). ‘OECD의 고용예측’에 의하면³⁾ 이때 일·가정 양립도는 다음의 5가지 지표에 의해 산출된다. 즉 1) 3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시설 등 육아지원기관 이용률, 2) 정부가 보장하는 육아휴가, 3) 민간 고용주(정부가 보장하는 정도를 넘어)가 자발적으로 육아휴가, 아이가 병들었을 경우 휴업 등을 유급으로 제공하는 정도, 4) 플렉스타임 취업 정도, 5) 자발적 파트타임 취업 정도이다(야마구치 가즈오, 2010: 132).

나아가 이들 지표별로 정책 효과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⁴⁾, 육아와 일의 양립성(1, 2, 3번 지표)과 노동시장의 유연성(4, 5번 지표)의 증대는 공히 출산율을 높이거나 평균적으로 후자의 영향력이 전자의 영향력에 비해 2배나 크다고 주장된다(야마구치 가즈오, 2010: 152-153). 즉 ‘육아와 일의 양립도’는 출산율을 높이거나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과는 상호작용이 없고, 이 효과가 늘어나도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 증가의 출산율에 대한 음의 효과는 약화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3) 이 분석결과의 해당 연령은 이탈리아는 25~39세, 이외 17개국은 25~35세임.

4) 이들 양립도 지수는 ‘육아와 일의 양립’이 용이한 정도와 ‘노동시장이나 직장의 유연성’에 의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쉬운 정도로 구분되며, 전자에는 1), 2), 3)번 지표가, 후자에는 4), 5)번 지표가 포함됨.

다(야마구치 가즈오, 2010: 147-148). 반면 ‘직장이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의한 일과 가정의 양립 정도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밀접한 상호작용이 있어 이러한 양립도가 증가하면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이 출산율에 미치는 음의 효과가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서비스나 휴가·휴직제도 이외에도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나 여성고용 증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보다 면밀하게 접근하면, 일·가정 양립지원 효과성은 세부 정책의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해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의 설계에 따라 여성고용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은 앞서 언급한 공통적인 요소를 지니나, 그 범위와 지원의 성격은 국가들마다 상이하다(Hegewisch and Gornick, 2012: 3).

보육서비스가 전통적인 가족 모델을 지향하는지 또는 취업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 근로자로서의 지위 유지를 지향하는지는 보육시설의 운영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이진숙·신지연·윤나리, 2010: 102). 즉 보육시설의 반일제 운영은 부모로 하여금 임금노동을 축소하거나 포기하게 할 가능성을 높이거나 전일제 보육서비스 공급은 고용친화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또한 만 3세 이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프로그램은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된다(Misra, Budig, and Boeckmann, 2012: 28). 특히 공보육의 질이 높을수록 여성고용률이 높고, 이 효과는 만 3세 이전에 보다 두드러지는데, 이는 만 3세 이상의 아동은 이용가능한 보육프로그램 선택지가 많아지기 때문으로 보고된다(Misra et al., 2012: 28).

가정내보육 지원은 기관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으나, 기관보육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육서비스, 양육수당, 가정내 개별 양육 서비스이든 부모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윤홍식·송다영·김인숙, 2010: 100). 자유선택은 부모들이 국가-가족-시장간의 다양한 보육 조합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자는 취지로 제기되었다(윤홍식 외, 2010: 106). 즉 사회화된 공공서비스 강조에서 벗어나 가정내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방식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유선택에 대한 강조는 기본적으로 공보육시설의 확충이나 확대보다는 가정내 양육수당, 개인양육서비스 지원 등이 도입되어 부모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닌다(윤홍식 외, 2010: 109). 그러나 부모들의 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

권을 보장한다는 명목 하의 현금지원에 대해서는 사적 시장을 강화하거나 국가가 지원하는 육아지원서비스를 감축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Leira, 2002: 107).

다음으로 성공적인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잠재적 요소로서 ‘시간’이 강조되는데(Fine-Davis et al., 2004: 236), 이때 시간은 다양한 차원들을 포괄한다. 일차적으로는 노동시간으로, 하루 노동시간과 연간 노동시간이 포함된다(야마구치 가즈오, 2010: 41). 또한 시간 지원과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유연성도 중요하다고 언급된다(야마구치 가즈오, 2010: 41). 이를테면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수업 참관에 가야할 경우 직장생활과의 유연한 조정이 가능한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배우자의 통근시간도 중요시된다(Fine-Davis et al., 2004: 236). 긴 통근시간은 가족생활의 시간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일하는 부모의 시간 지원정책은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 강화되는 추세이다(Fine-Davis et al., 2004: 236). 영국에서는 2003년에 6세 미만의 자녀 또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를 둔 부모에게 유연근무가 가능한 권리를 보장하는 「유연근로법(Flexible Working Law)」을 제정하였다(야마구치 가즈오, 2010: 47). 네덜란드는 노동시간에 관해서는 고용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2000년에 「고용시간조정법(Adjustment of Hours Law)」을 시행하였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고용자는 기업으로부터 페널티를 받지 않고 스스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야마구치 가즈오, 2010: 48). 독일은 2001년에 「파트타임법」에서 파트타임 취업이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도록 성별을 불문하고 가정이나 개인 사정으로 풀타임 노동으로부터 파트타임 노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파트타임 취업자에게도 성과에 따라 승진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였다(야마구치 가즈오, 2010: 48).

이들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제도들과 더불어 일정 시간 노동을 중단하는 휴직제도의 경우는 그 설계에 따라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육아휴직은 여성들의 자녀 출산 이전에 근무하는 비율을 높이고 경력단절하지 않고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특히 휴직 기간에 따라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 무엇보다 긴 유급기간을 제공하는 국가일수록 여성고용률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 OECD 국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추가루 부여되는 휴직기간이 20주를 초과할 경우는 여성고용에 부정적이라고 보고된다(Hegewisch and Gornick, 2012: 8). 그 밖에도 학력 수준이

낮은 여성의 경우는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율이 낮다고 분석된다(Hegewisch and Gornick, 2012: 8). 전문성이 낮은 직업인 경우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임금도 낮은 수준이어서 직장복귀에 대한 보상이 적어 교육 비용이 급여를 상쇄시키기 때문이다(Hegewisch and Gornick, 2012: 6). 보다 주목할 바는 육아휴직은 불평등한 성별 역할 분화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장기간 육아휴직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야기하고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며 전통적인 성역할 분화를 강화시킨다고 지적된다(Misra et al., 2012: 28).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이용이 용이한 경우 고용주들은 여성의 고용과 승진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단적으로 유급휴가와 시간제 근무 시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장의 고용주들은 여성고용을 더욱 기피할 수 있다고 분석된다(Hegewisch and Gornick, 2012: 14). 또한 일하는 부모의 노동 시간 감소는 젠더중립적이지 않다. 남편의 노동시간은 18세 이하 자녀가 있고 그 수가 많아질수록 약간 증가하는 반면, 어머니의 노동시간은 줄어든다(Jacobs, 2010: 85). 즉 2000년을 기준으로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아버지는 해당 자녀가 없는 기혼남성보다 주당 약 0.7시간을 일하는 반면,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어머니는 해당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보다 주당 5.8시간이나 적게 일하며, 이런 현상은 1970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된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공보육서비스 지원은 남녀 불평등을 해소하는 보다 효과적인 전략으로 제안된다.

그런데 특히 영아보육의 경우는 휴직과 동전의 양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Misra et al., 2012: 37). 질 높은 영아보육이 제공될 경우, 일하는 부모의 출산 후 직장복귀는 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장기간 휴직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정책은 피드백 관계 즉 육아휴직이 길어지면 영아보육이 미비해질 수 있고, 영아보육이 확대되면 육아휴직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Misra et al., 2012: 37). 이처럼 휴직 기간이 길수록 취업모의 직장복귀는 지연될 수 있으나, 만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지원은 양육모의 직장복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시간제 일자리 또한 직장복귀를 촉진하는 효과를 지니나 이는 상근직 취업모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어 제한적이다.

한편 일·가정 양립지원은 출산을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다고 분석된다(Thévenon and Gauthier, 2012: 95). 엄밀하게 말해 이들 정책은 출산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출산 시기에는 보다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Thévenon and Gauthier, 2012: 95). 우선 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 여부는 출산 지연을 예방하여 합계출산율에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휴직제도는 둘째 자녀 출산 시에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는 첫째 자녀 출산 이후 둘째 자녀 출산에 이르는 시기를 단축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분석된다(Thévenon and Gauthier, 2012: 92). 노르웨이 사례에 의하면, 기관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주어지는 양육수당은 대체로 임금 수준이 낮은 취업모가 주로 선택하며, 둘째 자녀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다(Thévenon and Gauthier, 2012: 92). 또한 보육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은 출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보육재정 수준과 출산 시기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지적된다(Thévenon and Gauthier, 2012: 93).

이처럼 맞벌이 가구에 대한 양육지원은 단지 보육서비스 제공이나 부모가 직접 돌보는 휴직제도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시간 전반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등 노동문화의 변화는 물론 긴급보육 등 일상에서 노동시간을 조정하여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유연성을 포괄한다. 또한 보육서비스나 휴직제도는 그 정책 설계에 따라 젠더 또는 계층별 효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선 방안의 마련 시에 대상별로 보다 면밀한 접근을 요한다.

2.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특성

이 절에서는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201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서문희 외, 2012) 결과 등을 토대로 홀벌이 가구 대비 맞벌이 가구의 양육 실태 및 수요를 파악하였다.

가. 근로 특성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영유아를 둔 취업모의 비율은 약 39.5%이며, 영아를 둔 취업모의 비율이 34.2%로 유아인 경우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난다(서문희 외, 2012: 67). 이들 가구의 근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사상 지위

아동연령별로 모의 취업 상태를 살펴보면, 전일제 취업모의 비율은 1세 미만인 경우는 17.3%선에 불과하나 1세 이후부터 20.0%를 상회하여 증가세를 보인다(서문희 외, 2012: 15; 표 II-2-1 참조).

〈표 II-2-1〉 자녀연령별 모의 취업 상태(2012)

단위: %(명)

구분	전일제 취업중	시간제 취업중	학업 및 취업훈련중	전업주부	휴직 및 출산휴가중	계(수)
6개월미만	11.7	1.8	0.1	75.6	10.7	100.0(3,325)
6~12개월미만	17.3	2.4	0.2	75.8	4.4	100.0(3,044)
1세~2세미만	24.0	3.9	0.2	70.3	1.7	100.0(2,804)
2세~3세미만	27.3	4.6	0.2	66.3	1.5	100.0(2,227)
3세~4세미만	30.3	5.8	0.2	62.4	1.3	100.0(1,755)
4세~5세미만	34.0	7.6	-	57.7	0.7	100.0(1,289)
5세이상취학전	33.9	8.3	-	56.8	1.1	100.0(740)

출처: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51.

2010년도 여성가족패널조사 분석 결과에 의하면, 영아와 유아를 둔 여성 임금 근로자의 시간제 고용 비율은 각각 21.7%와 25.0%선이다(김종숙·이택면·강민정·유해미·윤자영, 2013: 24).⁵⁾ 또한 영아와 유아를 둔 여성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은 각각 63.3%와 50.4%로 자녀가 없는 경우(68.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김종숙 외, 2013: 26).

2013년 여성취업자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전년 대비 0.7% 상승한 74.7%로 남성(71.0%) 보다 약간 높다(통계청, 2014b: 17). 이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은 40.6%, 임시직은 27.5%, 일용직은 6.5%이며, 임시직 비율은 남성의 약 2배(13.7%)에 달한다. 또한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15.2%, 무급가족종사자는 10.1%를 차지한다(통계청, 2014b: 17).

또한 영유아를 둔 부모의 종사상 지위를 비교하면, 부(父)는 상용근로자가 70.2%이고 90.2%가 규칙적으로 출퇴근하며, 모(母)는 상용근로자가 23.1%이고 불규칙적으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30.2%에 달하여 뚜렷한 성별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서문희 외, 2012: 69).

5) 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2010년도)' 결과로서, 동 자료는 여성 10,000명이 최초 표집되어 3차 웨이브에는 7,477개의 여성표본이 포함되었으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막내자녀를 기준으로 함(김종숙 외, 2013: 19).

2) 근로시간

생활시간조사(통계청, 2009) 분석결과에 의하면, 영유아를 둔 맞벌이 부모의 근로시간은 부는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이 53.7%를 차지하며,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약 25%에 달한다(김종숙 외, 2013: 38에서 재인용; 표 II-2-2 참조). 영아를 둔 아버지의 경우는 60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이 더 높아져 약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종숙 외, 2013: 38에서 재인용; 표 II-2-2 참조). 또한 취업모가 평일 4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비율은 약 22.5%이고, 0~2세아를 둔 경우 해당 비율은 19.5%로 분석된다(김종숙 외, 2013: 39).

〈표 II-2-2〉 영유아를 둔 부모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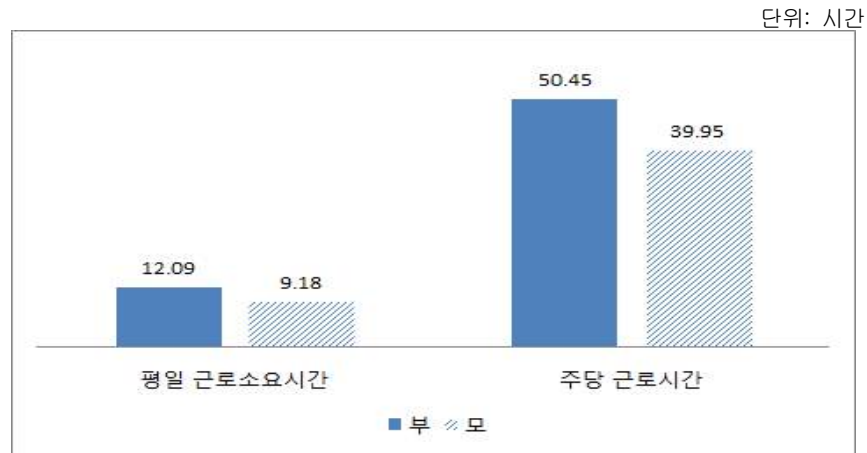
단위: %

근로 시간	전체 미취학 부모					0-2세 미취학 부모				
	부			모		부			모	
	한부모	맞벌이	홀벌이	한부모	맞벌이	한부모	맞벌이	홀벌이	한부모	맞벌이
미취업	35.82	0.21	0.26	53.16	1.53	61.61	0.63	0.58	56.55	0.81
<=15	0.38	1.87	1.16	2.93	8.91	-	0.64	1.49	0.95	5.95
<=30	2.57	1.47	2.19	6.80	15.36	-	2.53	2.18	2.42	10.32
<=40	8.97	17.79	17.93	8.47	28.07	7.33	18.47	19.91	5.64	37.56
<=60	33.17	53.73	58.54	25.66	38.35	16.29	45.07	53.28	34.44	37.19
60+	19.09	24.93	19.92	2.98	7.77	14.77	32.66	22.57	-	8.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출처: 김종숙 외(2013). 고용친화적 보육정책 개선방안 연구.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 p. 38.

한편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취업부모의 평일 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약 12시간 6분과 약 9시간 12분으로 남성이 약 3시간 더 길고, 주당 근로시간은 각각 약 50시간 30분과 약 40시간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10시간 30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서문희 외, 2012: 70; 그림 II-2-1 참조).

이처럼 맞벌이 가구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약 75%선이고 임시직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또한 주당 평일 기준으로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와 20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가 약 20%선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따라서 맞벌이 가구에 대한 접근은 다양한 근로시간은 물론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 등 다양한 근로 특성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림 II-2-1] 취업부모의 근로 및 근로 소요시간(2012)

자료: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70.

나. 양육 관련 특성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는 홀벌이 가구와 비교하여 양육 실태 및 수요 전반에서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1) 일·가정 양립 갈등

201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과 가정 양립의 장애 요인으로서는 전반적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높은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자녀양육 부담과 가사 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조희금·송혜림·박정운·권태희·김경화 외, 2010: 364). 특히 자녀양육 부담은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들에서 가장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인식된다.

〈표 II-2-3〉 일·가정 양립의 장애 요인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업무 과중	가족과의 시간부족	자녀 양육 부담	가사 부담	노부모 부양	남녀 불평등 근로환경과 차별적관행	기타	해당 없음 (어려움 없음)	계
전체	16.0	14.7	10.8	7.6	2.1	1.7	1.9	45.2	100.0(2,508)
맞벌이여부									
맞벌이	13.9	14.9	15.8	15.6	2.5	1.9	1.1	34.2	100.0(897)
홀벌이	17.8	18.7	7.9	2.8	2.0	0.3	2.6	47.9	100.0(1,098)
취학전 자녀유무									
있음	9.3	15.0	45.1	4.3	3.6	-	1.5	21.3	100.0(249)
없음	16.0	14.0	25.5	16.2	0.4	0.3	3.1	24.4	100.0(178)

자료: 조희금 외(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p. 364.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취업한 기혼여성 중 가정생활 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9.1%이며, 구체적으로 자녀양육 부담 29.2%, 가사 부담 21.7%,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12.3%, 직장 생활과 육아 병행 10.8% 순으로 나타난다(김승권 외, 2012: 167-168). 가구 및 개인 특성별로는 현존 자녀수에 따라 차이를 보여 일과 가정의 병행에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녀가 없는 경우는 48.4%이나, 자녀수가 1명인 경우 19.0%, 2명인 경우 15.5%로 감소세가 뚜렷하다(김승권 외, 2012: 169).

〈표 II-2-4〉 취업 여성(20~44세)의 자녀수별 일·가정 병행 어려움

단위: %(명)

구분	없음	자녀양육 부담	가사 부담	부부 공유시간 부족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직장 생활과 육아 병행	노부모 부양	기타	계(수)	$\chi^2(df)$
2005	8.4	46.4	-	3.6	-	39.9	-	2.5	100.0(1,841)	
2009	10.9	34.6	-	8.2	-	39.9	-	6.4	100.0(1,334)	
2012	20.9	29.2	21.7	3.8	12.3	10.8	0.2	1.1	100.0(2,370)	
자녀수										
0명	48.4	-	37.8	10.9	-	-	-	3.0	100.0(304)	
1명	19.0	38.8	11.7	2.5	12.9	14.4	-	0.6	100.0(641)	457.7(21)***
2명	15.5	30.8	23.2	2.9	14.5	11.9	0.4	1.7	100.0(1,207)	
3명	18.0	32.3	32.3	2.3	15.7	9.7	-	1.4	100.0(207)	

출처: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69.

*** $p < .001$

2) 서비스 이용 실태

맞벌이 가구가 기관을 처음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39.9%)로 나타난 반면, 홀벌이 가구의 경우 ‘사회성 발달’이 주된 사유로서 차이를 보인다(서문희 외, 2012: 537) 이는 0~5세 종일제 보육의 실수요자가 맞벌이 가구임을 확인시켜준다.

이들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어린이집과 조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유아의 경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은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조부모 의존성에서만 차이를 보인다(서문희 외, 2012: 546). 이는 맞벌이 가구가 기관보육과 병행하여 혈연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77.7%에 달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서문희 외, 2012: 546).

〈표 II-2-5〉 영유아 가구 맞벌이 여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영유아		
	맞벌이	외벌이	평균	맞벌이	외벌이	평균	맞벌이	외벌이	평균
기관보육·교육									
어린이집	63.0	40.8	51.9	45.6	40.0	42.8	53.5	40.4	46.0
유치원	0.2	0.3	0.3	47.4	48.6	48.0	25.8	23.2	24.5
반일반 이상	1.1	0.1	0.6	6.2	7.4	6.8	3.8	3.6	5.2
선교원	-	0.1	0.1	0.3	0.9	0.6	0.2	0.5	0.4
특기맞보습	1.3	0.9	1.1	29.0	21.7	25.4	16.3	10.8	13.6
지역아동센터 등	-	0.3	0.2	1.7	2.3	2.0	0.9	1.3	1.1
문화센터등 사설기관	6.7	10.5	8.6	5.0	7.1	6.1	5.7	8.9	7.3
시간제보육 등	0.6	0.8	0.7	1.6	0.9	1.3	1.1	0.9	1.0
개인양육지원									
친조부모	22.2	13.4	17.8	23.2	9.0	16.1	22.7	11.3	17.0
외조부모	32.3	12.2	22.3	21.7	8.6	15.2	26.6	10.5	18.6
친인척	3.7	2.0	2.9	3.4	2.8	3.1	3.5	2.4	3.0
비혈연	4.4	0.5	2.5	2.6	1.0	1.8	3.5	0.7	2.1
육아전문 파견인력	1.3	0.5	0.9	0.6	0.1	0.4	0.9	0.3	0.6

출처: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38.

기관 이용시간을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취업모의 경우는 미취업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원 시각은 이르고 하원 시각은 늦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취업모는 주로 오전 8시부터 8시반에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9시 이전에는 절반 가까이 등원시키는 반면, 미취업모의 자녀가 9시 이전에 등원하는 비율은 10.4%에 불과하다(서문희 외, 2012: 95-99). 또한 오후 6시 이후에 어

린이집에서 하원하는 비율은 취업모는 20.1%이나, 미취업모는 1.6%로 매우 낮다. 이 같은 기관 이용에 따라 취업모의 혈연개인양육서비스 이용률은 오전 7시부터 7시반에 10%를 초과하고 오후 5시 이후 26.9%로 높게 나타난다(서문희 외, 2012: 97).

〈표 II-2-6〉 취업모 자녀의 시간대별 이용 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단위: %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기관	혈연	비혈연
07:00~07:30	0.5	-	87.5	-	-	10.4	1.1
07:31~08:00	2.8	0.7	80.7	-	-	14.3	1.4
08:01~08:30	14.4	4.8	57.9	0.1	-	20.9	2.0
08:31~09:00	32.6	15.9	31.8	1.1	-	16.3	2.3
09:01~09:30	45.0	24.0	13.9	3.5	-	11.6	1.9
09:31~10:00	52.0	28.9	6.4	4.1	-	7.2	1.4
10:01~10:30	54.3	29.0	3.9	4.1	0.4	6.7	1.5
10:31~11:00	55.1	29.0	3.3	4.1	0.4	6.5	1.6
11:01~11:30	55.3	29.0	2.7	4.1	0.4	6.8	1.6
11:31~12:00	55.3	29.0	2.7	4.1	0.4	6.8	1.6
12:01~12:30	55.5	29.0	2.9	4.1	-	6.8	1.6
12:31~13:00	55.5	29.0	2.8	4.1	-	7.0	1.6
13:01~13:30	55.1	29.0	2.5	4.1	0.1	7.6	1.6
13:31~14:00	54.9	29.0	2.5	4.1	0.1	7.7	1.6
14:01~14:30	54.6	28.4	2.9	3.7	0.5	8.1	1.7
14:31~15:00	53.8	26.9	3.5	3.6	1.3	9.0	1.9
15:01~15:30	52.2	24.7	4.7	1.8	4.1	10.2	2.2
15:31~16:00	49.1	22.9	7.4	1.3	5.0	12.2	2.3
16:01~16:30	43.4	18.3	12.4	1.2	6.1	15.9	2.6
16:31~17:00	37.6	14.9	17.3	1.0	6.9	19.3	3.0
17:01~17:30	25.7	8.9	27.0	0.5	8.0	26.9	3.1
17:31~18:00	20.2	6.2	35.5	0.2	6.3	28.3	3.2
18:01~18:30	10.7	2.8	51.2	0.1	3.0	29.5	2.7
18:31~19:00	4.6	1.2	66.0	0.1	1.0	24.4	2.7
19:01~19:30	2.3	0.7	78.6	-	0.2	16.4	1.7
19:31~20:00	1.2	0.4	82.9	-	-	14.1	1.4
20:01~20:30	0.7	-	90.1	-	-	8.4	0.9
20:31~21:00	0.2	-	92.9	-	-	6.4	0.5
21:01~21:30	0.2	-	94.3	-	-	5.2	0.3
21:31~22:00	0.2	-	94.8	-	-	4.9	0.1
22:01~22:30	-	-	95.5	-	-	4.5	-

출처: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97.

또한 기관 희망 이용 시간은 어린이집의 경우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여, 취업모는 9시간 11분으로 미취업모에 비해 약 1시간 50분 길게 나타난다(서문희 외, 2012: 242; 표 II-2-7 참조). 유치원의 경우 맞벌이 가구는 8시간 33분으로 홀벌이 가구의 7시간 15분에 비해 1시간 18분 길게 나타난다(서문희 외, 2012: 544).

〈표 II-2-7〉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

단위: %(명)			
구분	취업	미취업	$\chi^2(df/t)$
5시간까지	2.1	5.3	
5-6시간	4.5	13.6	
6-7시간	8.6	28.0	
7-8시간	16.4	25.1	
8-9시간	21.4	11.2	-
9-10시간	20.4	5.8	
10-11시간	14.7	5.0	
11-12시간	2.2	0.7	
12시간 이상	9.7	5.3	
계(수)	100.0(613)	100.0(862)	
평균(표준편차)	9시간 11분(1시간54분)	7시간 42분(1시간 53분)	72.6***

출처: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242.

*** $p < .001$

다음으로 월 보육·교육비용은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비용 지불 영유아의 경우는 취업모와 미취업모가 각각 약 34만원과 21만원으로 약 13만원 차이를 보인다(서문희 외, 2012: 161; 표 II-2-8 참조). 보육·교육비용 뿐만 아니라 혈연 양육지원자에 대한 맞벌이 가구의 지불 비용도 홀벌이 가구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평균 약 32만원으로 나타난다(서문희 외, 2012: 547).

〈표 II-2-8〉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월 평균 보육·교육비용

단위: 천원, 명, %								
구분	전체 영유아				비용 지불 영유아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대비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대비비율
취업	307.6	332.4	(1,056)	6.5	336.5	333.4	(956)	7.1
휴직중	156.6	272.0	(152)	5.0	300.7	314.6	(78)	9.7
미취업	159.1	244.7	(2,115)	4.7	229.1	264.9	(1,430)	6.8
부재 등	187.5	237.3	(20)	10.0	206.9	241.2	(18)	11.1
F	70.5***				26.8***			

(표 II-2-8 계속)

구분	전체 영유아				비용 지불 영유아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대비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대비비율
2009년 조사	189.5	234.6	(3,303)	6.4	270.3	238.0	(2,316)	9.2
2004년 조사	157.6	174.8	(2,960)	6.4	235.0	165.4	(1,984)	9.6

출처: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61.

*** $p < .001$

3) 애로사항 및 수요

자녀양육이 어려운 이유로는 맞벌이 가구의 애로사항이 전반적으로 과중한 가운데, 특히 자녀 돌봄시간의 부족과 양육 및 교육관련 정보 부족이 주된 고충으로 지적된다(조희금 외, 2010: 414-421).

〈표 II-2-9〉 자녀 양육이 어려운 이유

이유	맞벌이		홀벌이		전체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아동돌봄시간의 부족	234	3.3	557	2.7	791	3.00
학습지도의 어려움	234	3.2	557	2.9	791	3.05
안전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	234	3.2	557	2.9	791	3.05
양육비와 교육비용 부담의 어려움	234	3.2	557	2.9	791	3.05
양육 및 교육관련 정보의 부족	234	3.3	557	3.2	791	3.25
자녀양육과정의 스트레스	234	3.1	557	3.2	791	3.15
체력적 한계	234	3.1	557	2.8	791	2.95
대리양육	234	3.0	557	2.6	791	2.80

주: 평균 값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으로 산출함.

자료: 조희금 외(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pp. 414-421 재구성.

맞벌이 가구의 육아지원 정책 수요도 홀벌이 가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보육·유아교육비 지원 확대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수요가 공히 높은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다양한 보육과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정책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서문희 외, 2012: 554), 현금지원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홀벌이 가구와는 구분된다.

〈표 II-2-10〉 맞벌이 여부별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정책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양육비 현금 지원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육아정보 상담 제공	보육의 다양성 확대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확대	유연 근무제 실시	기타	계
전체	19.7	32.6	18.1	11.5	0.7	7.7	6.1	3.5	0.1	100.0(2,528)
맞벌이	19.8	31.9	12.4	10.5	0.1	10.5	8.4	6.1	0.1	100.0(895)
홀벌이	19.9	32.7	21.2	12.3	1.0	5.8	4.9	2.1	-	100.0(1,581)
둘다 무직	11.1	44.4	25.9	3.7	-	13.0	1.9	-	-	100.0(47)

출처: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554.

3.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관련 요인

앞서 다룬 바와 같이 맞벌이 가구는 홀벌이 가구와 구분되는 양육 실태 및 애로사항, 그리고 수요를 지닐 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구 내부의 차별성도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양상, 양육 실태 및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일·가정 양립 갈등 및 애로사항 관련 요인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실태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개인·가족 특성, 근로 특성별로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 실태와 출산력 등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시 강조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승미와 이현아(2011)는 맞벌이 임금노동자 중 남녀의 차이에 주목하여 남녀의 생활시간 구조를 분석하고 관련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3차 국민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20세 이상 60세 미만 맞벌이 임금노동자 최종 2,799명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맞벌이 임금근로자의 생활시간 구조는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여, 남성은 일 중심, 여성은 가정 중심의 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미·이현아, 2011: 93). 둘째, 평일 총 노동시간은 남성은 9시간 48분, 여성은 10시간 41분으로 여성이 53분 더 길고, 토요일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1시간 21분 더 일하며, 일요일에는 여성이 2시간 25분 더 길게 노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미취학 자녀 유무는 가사노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남성도 시간 배분

을 조정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취업 여부나 근로 형태는 생활 시간의 배분과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이며, 특히 성별과 상호작용하여 기혼남녀의 시간 구조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미취학 자녀 유무와 같은 생애주기 변수 역시 생활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지적하였다(이승미·이현아, 2011: 94-95).

일·가정 양립 관련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한 연구들에서는 특히 근로 특성에 따른 차이가 강조된다.

김현식과 김지연(2012)은 15명 여성근로자와의 인터뷰와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취업모의 근로 특성 즉 종사상 지위와 근로시간 유형, 임금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출산 기피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 환경을 밝히고 있다. 유의미한 결과만을 언급하면, 종사상 지위와 관련해서는 자녀 출생 순위에 따른 상용직과 임시 일용직의 출산 확률의 차이는 없으나, 둘째 자녀의 경우는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경우 상용직은 출산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분석하였다(김현식·김지연, 2012: 128). 임금과 관련해서는 첫째 및 둘째 자녀 출산 모두에서 200만원 이상 임금을 받는 여성의 출산력이 100만원 미만 보다 출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출산을 제고를 위해서는 고임금이 가능한 여성 일자리를 개발하고 (재)훈련을 강화하여 인적 자본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여성의 임금수준 향상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현식·김지연, 2012: 131-134).

취업모의 근로 조건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로는 정영순, 어윤경, 그리고 임유진(201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18세 이하 자녀를 둔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 임금근로자를 시간제와 전일제로 구분하여 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상이함을 규명하여 근로 형태별로 차별화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자는 직업 만족도 등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두 집단의 개인·가족 특성, 근로 특성, 일·가정 양립 갈등 특성이 직업 만족도에 미치는 경로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본인 소득과 일과 가정 양립 갈등 요인이 주된 변인이며, 일·가정 양립 갈등은 전일제 가구에서 보다 주된 요인으로 드러났다(정영순 외, 2012: 236-240).

또한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을 직장 및 자녀양육 관련 자원과 지각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를 들 수 있다(이재림·손서희, 2013).

여기서는 맞벌이 여성의 자원 요인과 지각 요인을 다시 일과 가족의 두 축으로 구분하고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 갈등, 일 관련 자원 및 지각, 자녀양육 관련 자원 및 지각의 일반적 경향과 일과 자녀양육 관련 자원과 지각 요인 중 어떤 요인이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 갈등과 관련되는 지를 규명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다음이 제시된다(이재림·손서희, 2013: 108). 첫째, 맞벌이 여성은 일로 인한 가족생활의 갈등 정도가 가족생활로 인한 갈등 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일 관련 자원은 모두 일 → 가족 갈등(일로 인한 가족생활에서의 갈등)에 유의미한 관련을 보여 짧은 근무시간과 짧은 출퇴근 소요기간, 직장에서의 육아휴직 운영, 육아휴직 사용 경험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일 → 가족 갈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의 경우는 육아휴직을 운영하는 직장에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일 → 가족 갈등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재림·손서희, 2013: 109).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이 연구는 일-가족 갈등은 맞벌이 여성이 일과 관련하여 어떠한 자원을 사용 하는가 뿐만 아니라 일과 자녀 양육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가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더불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부모 모두에게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이재림·손서희, 2013: 110-111).

마지막으로 일·가정 양립 갈등에 영향을 주는 근로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나 자녀 양육과 관련된 가정 내 특성을 다룬 연구도 있다.

김준기와 양지숙(2012)은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사회적 지원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여기서는 관련 요인을 근로 특성 및 사회적 지지로 구분하고, 특히 사회적 지원 측면의 요인을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가족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일·가정 양립 갈등이 감소하고, 출산휴가, 직장 보육시설, 육아휴직은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으나 양성평등적인 직장분위기는 일·가정 갈등을 감소시키는 반면, 보육·교육서비스는 명확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준기·양지숙, 2012: 269-272). 따라서 이 연구는 전반적으로 양육지원이 중요하나 정책 및 제도 이용이 용이한 사회 환경의 조성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김준기·양지숙, 2012: 274-276).

이정은(2012)은 여성근로자의 직장가정 갈등 양상의 차별성에 주목하여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직장-가정 적합성 관련 변수로는 직무 안정성, 소득 적

절성, 직무 통제,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 양육 통제, 가족의 정서적 지지, 가족의 도구적 지지로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직장-가정 적합성은 그 정도가 가장 낮은 유형 1에서부터 유형 5까지로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이정은, 2012: 93-95). 첫째,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일·가정 양립에 있어 조직의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 및 지역사회 자원이 모두 부족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둘째, 직장가정 적합성이 높은 괜찮은 일자리에 속하는 경우는 가족의 정서적·도구적 지지 또한 매우 높은 양상을 보인다. 셋째, 직장에서의 근무 일정에 대한 재량권과 가족친화적인 조직 문화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다. 넷째, 배우자의 가사 및 양육참여가 전반적으로 낮고, 유형별 차이가 크지 않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촉진, 장시간 노동 관행 철폐,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의 확산, 근무시간 유연제 활성화, 보육서비스 확대 실시 등을 제안하였다(이정은, 2012: 95-97).

〈표 II-3-1〉 일·가정 양립 갈등 및 애로사항 관련 변인

구분	선행연구	변인		
		개인 특성	가족 특성	근로 특성
일·가정 양립 실태 (출산력)	이승미·이현아 (2011)	-성별	-미취학 자녀 유무	-노동 시간
	김현식·김지연 (2012)	-	-	-종사상 지위 -임금
일·가정 양립 갈등 (직업 만족도)	정영순·어윤경·임유진(2012)	-	-	-근로 형태 -소득
	이재림·손서희 (2013)	-	-	-근무/출퇴근시간 -육아휴직 운영/사용 경험
	김준기·양지숙 (2012)	-	-가족 지원	-육아지원 제도 -양성평등적 분위기
	이정은(2012)	-	-미취학 자녀 유무 -양육 통제 -가족의 정서적·도구적 지지	-직무 안정성 -소득 적절성 -직무 통제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

이들 연구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은 개인과 가족관련 특성은 물론 근로시간이나 종사상 지위 등 근로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시간 지원과 양성평등적인 돌봄 문화, 가족친화

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등이 중요시되므로 관련 정책의 실효성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본다.

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과 정책 수요 관련 변인

우선 맞벌이 가구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형태 및 요구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 육아휴직제 등 육아지원서비스의 유형과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유형에 따라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보육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허남재와 석재은(2011)의 연구는 보육료 지원이 취업모에 친화적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2007) 자료를 이용하여 영유아를 자녀를 둔 가구 중 어떤 특성을 지닌 가구가 보육료 지원의 혜택을 보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르면 모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공식 보육보다는 비공식 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영아인 경우는 유아에 비해 비공식 보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영아와 유아 대상 보육정책 방향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된다(허남재·석재은, 2011: 158-159).

한편 시간연장 보육에 대해서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시간연장보육 요구를 분석한 이완정(200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시간연장 보육 제공 기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 머물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구체적으로 취업모의 근로 조건과 보육관련 변인에 따라 시간연장 보육 수요가 다르므로 해당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어머니의 취업 상태와 자녀 연령을 고려하여 유의할당 방식으로 표집을 한 영유아기 외동이 자녀를 둔 취업모 1,221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활용하되,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을 나누고, 임금근로자내에서 시간제 근무자는 실제 비중보다 과대 표집하였다(이완정, 2009: 119). 연구결과에 의하면, 취업모의 근로조건에 따라 시간연장 보육 수요는 차이를 보인다(이완정, 2009: 124-125). 임금근로자로 근무하는 취업모는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일·자녀양육 양립의 부담감이 높고 이는 자녀 연령과 무관하게 일관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시간연장 보육에 대한 요구는 임시·일용직인 취업모가 상용직에 비해, 시간제로 일하는 취업모가 전일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를 통해 취업모의 보육 욕구를 파악한 연구도

이루어진 바 있다(김혜금, 2010). 이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의 종일제 보육시설 5곳과 24시간 보육을 운영하는 보육시설 10곳의 취업모 261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취업에 대한 태도와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이 보육시설 이용 시간과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 중인 경우와 24시간 보육을 운영 중인 보육시설을 이용 중인 취업모인 경우 취업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김혜금, 2010: 116-117). 또한 보육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 중인 취업모와 종일제 보육시설을 이용 중인 경우에 더 높은 평가를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24시간 운영되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취업모가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데 영향을 미치므로 민간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고, 시간연장과 24시간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김혜금, 2010: 116-117).

〈표 II-3-2〉 육아지원서비스 및 제도 이용 실태 및 요구 관련 변인

구분	선행연구	변인		
		개인 특성	가족 특성	근로 특성
양육지원 수요	김은정(2013a)	-일 지향성 -교육수준 -연령	-미취학자녀수 -막내자녀연령 -가계경제수준 -지원 정도	-업무자율성 -주당 근무일수 -근무 시간
보육 유형	허남재·석재은 (2011)	-학력	-자녀 연령	-근로 형태 -소득
시간연장 보육	이완정(2009)	-	-	-근로 조건 -종사상 지위 -근로 형태
기관 유형	김혜금(2010)	-	-	-
효과성 인식	김은정(2013b)	-성역할 의식 -교육 수준	-미취학자녀수 -부부간 생계 책 임 유형 -사회적 지원	-근무 시간 -소득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의 육아지원 수요와 관련해서는 정책 인지도와 이용 의향, 효과성 인식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진다.

김은정(2013a)은 일·가정양립 정책을 시간 지원 정책과 서비스 지원 정책으로

구분하여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 인지도와 이용 의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정책별 차별화된 수요를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시간 지원 정책으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재택근무 등 7가지 정책을, 서비스 지원 정책으로는 보육서비스, 아이돌보미서비스 등 6가지 정책을 포함하였다. 연구결과,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들은 전반적으로 시간 지원보다는 서비스 지원의 인지도가 높고 이용 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2013a: 636-638). 관련 요인으로는 시간 지원의 인지도는 취업여성의 개인적 특성이, 서비스 정책의 인지도는 직장 환경적 특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변의 양육지원이 미흡할수록 시간 지원의 이용 의향은 높은 반면, 주변의 양육지원이 많을수록 서비스 정책 이용 의향은 높다고 밝히고 있다. 직장 환경적 요인은 서비스 지원 정책의 이용 의향에만 영향을 미치며, 근무시간이 길수록 서비스 이용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취업 여성의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효과성 인식과 관련 요인을 파악한 김은정(2013b)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연구 결과, 개인적 특성(성역할 의식, 교육 수준), 자녀 및 가족관련 특성(미취학 자녀 수, 부부간 생계 책임 유형), 사회적 지원 특성(자녀양육도움 수혜 정도, 긴급도움 수혜 정도) 고용관련 특성(근무시간, 급여)이 정책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2013b: 189-193). 또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별로 주관적 효과 인식이 상이하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취학 자녀의 수가 많으면 근무용통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보다 크게 인식하고 휴직제도의 부정적 효과는 더 작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긴급 시에 주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이 있는 경우는 서비스 정책에 대해 부정적 효과 인식이 크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근무시간이 긴 경우는 서비스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고, 월 급여가 300만원 이하 집단에서 휴직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더 높게 인식하는 반면 사회서비스 정책의 부정적 효과는 더 낮게 인식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의 양육지원 제도 이용 및 수요는 개인적 특성, 자녀 및 가족, 직장관련 변인이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변수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맞벌이 가구 특성별로 해당 변인의 영향력이 어떻게 상이한지를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본다.

Ⅲ.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현황 및 한계점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영유아 대상 양육지원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서비스 지원에 속하는 기관보육과 가정내보육(아이돌봄지원사업), 그리고 시간 지원에 속하는 휴가·휴직제도와 근로시간유연제도의 주요 내용을 다루었다. 또한 정책 효과 차원에서 이들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1.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의 방향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지원을 명시한 각종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을 살펴보고, 그 밖에도 최근 발표된 세부 대책을 다루었다.

가. 기본/종합계획 중 지원 내용

우선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제4차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08~2012)⁶⁾에서는 그동안 취업모의 양육지원은 산전후 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 수준의 확대 및 해당 비용의 사회화 등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모성보호 부담을 전면 사회화하는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정착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노동부, 2008: 7).

핵심 전략으로 '일하는 엄마의 육아부담 대폭 경감'이 설정되고, 세부적으로는 1) 일하는 여성의 보육 부담 완화, 2)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출산육아 부담 완화, 3) 출산비용의 사회화 확대, 4)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제도 활성화 등이 제시된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확대, 직장보육시설 내실화와 더불어 가정과 조화로운 근로제도의 정착이 강조된다(노동부, 2008: 59).⁷⁾

다음으로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11년~2015

6) 제5차 계획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4차 계획을 다름.

7) 즉 2012년까지 주 40시간 근로시간 조기 정착,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일·가정 양립 지원금 운영, 기업 대상 인식 교육 강화, 일·가정 양립지원 관련 컨설팅 강화,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등이 제시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제 활성화, 가족간호 휴직제도 도입 추진, 선택적 탄력적 근무 등 다양한 근로 형태 확산 계획도 밝히고 있다(노동부, 2008: 59).

년)’에서는 ‘제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06년~2010년)’에 비해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지원이 더욱 강조된다(대한민국 정부, 2010: 2). 동 계획 중 맞벌이 가구를 겨냥한 양육지원 내용으로는 일·가정 일상화를 위해 휴가·휴직제도 개선, 유연한 근로환경 확산,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이 해당된다.

〈표 III-1-1〉 제1, 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중 저출산 대응 부문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모성보호 강화,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출산 육아 후 노동시장복귀 지원, 학교 사회교육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휴가·휴직제도 개선, 유연한 근로환경 확산(스마트 워크센터 도입 확산), 가족친화직장 환경 조성(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이행 강제 방안 도입)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신혼부부 출발 지원,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	결혼, 출산, 양육부담 완화: 자녀양육비용 확대(보육·교육비용 전액 지원), 육아지원인프라 확충(공공형 자유휘 어린이집 도입), 보육시설 운영시간 다양화, 영아돌봄시장 제도화(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방과후 돌봄 인프라 구축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자료: 대한민국 정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p. 53 재구성.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에서는 제1차 계획과 비교하여 개인과 가정의 삶의 질 만족도 제고가 강조되는데⁸⁾ 이들 중 맞벌이 가구 대상의 추진 계획으로는 가족가치 확산 차원의 남성 가족생활 참여 촉진과 가족친화적인 직장 및 지역사회 조성을 들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남성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남성의 가정내 역할 교육 강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한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확산 문화 조성,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돌봄 인력 및 서비스 기관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과 아이돌보미 양성관리시스템 구축), 시간연장보육 교사의 인건비 지원 확대, 유치원 종일제 운영 전국 확대, 국공립보육시설에 맞벌이 우선 입소 조치 강화 등이 제시된다(관계부처 합동, 2011: 65).

8) 제1차 계획의 정책 목표는 가족과 사회에서의 남녀간·세대간 조화 실현,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으로 제시됨(관계부처 합동, 2011: 11).

〈표 III-1-2〉 제1,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정책 과제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가족 돌봄의 사회화: 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직장·가정의 양립: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반 구축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가족친화적 직장/지역사회/가족생활 환경 조성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가족가치의 확산: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남성의 가족생활참여 지원 -자녀 돌봄 지원 강화: 자녀 돌봄 지원의 다양화, 부모 역량 지원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가족친화적인 직장/지역환경 조성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강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1).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 p. 11, p. 37 재구성.

다음으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무상보육에도 불구하고 시설과 가정양육 지원 차이, 가정양육 지원 부족 등으로 실(實)수요와 상관 없이 맞벌이 역차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층을 위한 방안을 강조한다. 세부적으로 입소대기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2014년 4월), 시간연장보육(시간연장, 24시간, 휴일보육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종일제 중심 무상보육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업주부, 맞벌이, 시간선택제 취업모 등 다양한 보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지원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b: 5).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부처별로 다양한 육아지원사업(보육료, 유아학비, 일시보육, 아이돌봄 등)을 부모에 대한 포괄보조지원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여 근로자 자녀양육지원을 강화하고, 2014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다양화와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추진한다(보건복지부, 2013b: 15). 이외에도 매년 150개소씩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17년까지 227개소를 구축하여 ‘아이사랑 planner’⁹⁾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13b: 18).

마지막으로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2011~2015)에서는 여성의 전 생애에 걸친 역량 강화와 활용의 극대화를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하나로서 일하는 여성의 돌봄 지원과 일·가정 양립지원 방안이 제시된다(여

9) 성장단계별 양육방식 조인 등을 가정에 직접 찾아가 1:1 컨설팅을 수행하는 전담 인력(보건복지부, 2013b: 18).

성가족부, 2013b: 3). 2013년 세부 추진 계획에 의하면, 일하는 여성을 위한 돌봄 서비스로는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개선과 맞벌이 가구 대상 1일 2~3시간의 시간제 돌봄 제공 확대,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한 지역돌봄 활성화를 추진한다(여성가족부, 2013b: 10-11). 또한 일·가정 양립지원 방안으로 가족친화 인증 참여 기업 확대, 가족친화포럼 운영과 가족친화컨설팅 지원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컨설팅 제공 등이 제시된다(여성가족부, 2013b: 11).

나. 세부대책 중 지원 내용

최근 발표된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는 2013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2013)과 2014년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 유지 지원 방안’(관계부처 합동, 2014a)을 들 수 있다.

우선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2017년까지 의무사업장 중 적어도 70% 이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세부 방안으로는 1)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 2)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3) 군대 어린이집 지원, 4)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체수단 정비, 5) 의무 이행수단의 실효성 강화가 제시된다(관계부처 합동, 2013). 즉 어린이집 설치 면적 만큼 용적율을 완화하고 실외놀이터와 조리실 설치 기준을 완화하며, 설치비 한도액을 현행 2억에서 3억원과 5억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설비비와 교사 인건비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며, 직장어린이집의 대체 수단인 보육수당을 장기적으로 폐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관계부처 합동, 2013: 5-9).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¹⁰⁾에서는 30대 이후 여성의 경력단절 원인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낮고, 비정규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우며, 근로시간 단축제의 이용 실적이 전반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불신과 초등 방과후 공급 부족을 지적한다(관계부처 합동, 2014a: 2-4). 이에 따라 임신·출산 지원 부문에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기존 40%에서 100%, 상한액도

10) 동 방안에서 생애주기별 주요 추진과제는 1) 모성보호 - 임신 출산, 2) 보육 돌봄 지원 - 영유아 초등, 3) 재취업 - 재취업 교육 및 시간선택제 확대, 4) 고용문화 개선 - 유연근무 환경 및 여성고용 촉진임(관계부처 합동, 2014a).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배우자 출산 90일 이내 육아휴직 신청 시 1달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비정규직 육아휴직 이용을 활성화한다(관계부처 합동, 2014a: 6). 또한 공공 대체인력 통합 구축을 추진하고,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중소기업의 경우 40만원에서 60만원, 대기업의 경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단축근무 기간을 연장이 가능하도록 단축 급여액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관계부처 합동, 2014a: 7). 또한 보육지원 부문에서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제 보육반 신설하여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씩 확충하며, 다수의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도 산업단지형 어린이집 지원에 준하여 지원한다.¹¹⁾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는 공급을 확대하고¹²⁾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취업모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관계부처 합동, 2014a: 9). 특히 영아종일제를 현행 0세에서 0~1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영아 양육을 가정양육으로 점차 유도하고, 아이돌봄 우선순위는 저소득취업모(1순위) → 일반가정 취업모(2순위) → 저소득 전업주부(3순위) → 일반가정 전업주부(4순위) 순으로 개편하여 취업모의 대기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다(관계부처 합동, 2014a: 9).

가장 최근에는 '여성고용 후속 보완대책(일하는 부모를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 방안)'이 수립되어 발표된 바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4b). 이는 정부의 여성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후속 방안으로서, 앞서 언급한 직장어린이집활성화 방안(2013. 6)과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2014.2)의 보완책으로 마련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4b: 1). 여기서는 특히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육아기 단축근무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확대, 무기대체인력지원금 요건 완화, 자동육아휴직 관행 확산, 보육체계 개편 모델 개발,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 활성화 등이 주요 개선 내용으로 제시되었으며, 그 밖에도 일·가정 양립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홍보 강화와 교육과정 반영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4b: 25).

다음으로 2014년에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여기서는 학

11) 현재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설치전환비 최대 6억원, 산업단지내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신축비 최대 15억원 지원함(관계부처 합동, 2014a: 8).

12) 돌보미 월평균 대기가구는 2013년 11월 기준으로 시간제 870가구, 종일제 349가구로 나타남(관계부처 합동, 2014a: 9).

급편성의 경우 유치원 실정을 고려한 독립편성 전일반, 재편성 방과후 과정으로 하고, 운영 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수업 일수는 유치원의 실정, 학부모의 요구, 예산 등을 반영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토요일 수요가 있을 경우 돌봄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방학 중 운영은 학부모의 요구와 유치원 실정을 고려하여 운영하되 지역내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다(교육부, 2014: 5-6). 운영 시간은 교육과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고, 방과후 과정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되, 유치원별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화가 가능하다고 제시된다. 운영시간 연장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방과후 과정 담당교사(기간제 교육)가 배치된 오후 6시 이후까지 운영을 권장하고, 토요 운영은 유치원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육내용은 특성화 활동¹³⁾ 위주의 방과후 과정 운영은 지양하고, 휴식 안전 영양 및 건강, 바깥놀이, 확장 심화 활동을 포함한 돌봄 위주의 활동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교육부, 2014: 6).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배치는 기간제 교원을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방과후 과정반 전담 교사 배치가 어려운 경우는 유치원 교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조교사를 채용하여 교육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교육부, 2014: 7).

이에 앞서 2009년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에서는 유치원 종일반 운영 내실화 방안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동 계획에 의하면, 종일제 운영은 심화 특성화 활동과 보육활동을 통합하여 운영하되, 종일제는 최소·최대 시간 제한없이 학부모의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제시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20). 또한 종일제 운영 내실화를 위해 종일제 운영 전담교사를 확보하고, 종일제 보조인력(3세대 하모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20). 종일제 운영은 수요자 맞춤형을 지향하되,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의 종일제 이용 우선권을 보장하고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무휴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운영 일수 조정이 가능하다고 제시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21).

한편 여성가족부는 2013년에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해소를 위한 시간제

13)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유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에서 운영하고, 반드시 교육과정 이후 방과후 과정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유아 1인당 주 5개 이내에서 시도교육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해당 비용의 산정은 가능한 방과후 과정비 지원금내에서 운영하여 수익자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제기하고 있다(교육부, 2014: 7).

아이돌봄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여성가족부, 2012).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아이돌보미를 양성하며, 민간 분야의 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민간 베이비시터의 교육 및 DB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아가 2014년에는 획일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현행 기본형 외에 종합형(기본형+가사서비스), 보육교사 파견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여성가족부, 2014b: 9).

여성가족부는 2014년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를 위해 가족친화인증 기준과 심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다(여성가족부, 2014e: 1).¹⁴⁾ 종전의 근로자 복지제도 중심의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일·가정 양립 제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인증기준을 차별화하였다(여성가족부, 2014e: 1). 즉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본 지표와 가점으로 구분하고 본 지표는 근로자 출산전후,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 등 일·가정 양립제도 중심으로 개선하였다. 근로자 가족돌봄 등 근로자 복지제도 및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항목을 가점으로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배점을 대기업에 비해 더 크게 하였다(여성가족부, 2014e: 2).

그 밖에도 여성가족부는 민간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확산을 추진 중이다. 특히 2014년에는 14만 기업 회원사를 보유한 대한상공회의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민간기업의 일·가정 양립 확산과 기업 대표의 인식 전환 등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c: 1-2). 또한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기업, 관련 전문가 등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2011년에 가족친화포럼¹⁵⁾을 창립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14년에는 탄력근무 사례를 발표하고, 그동안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가족친화기업 담당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여성가족부, 2014d: 1-2).

이들 세부 대책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 가족친화인증기업은 2014년 4월 현재 522개 기업으로, 이들 중 27개 기관(79개 사업)이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여성가족부, 2014e: 1).

15) 가족친화포럼의 주요 기능은 CEO 좌담회, 가족친화 사회공헌활동, CEO 특강, 회원기업 워크숍(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 공유) 등임(여성가족부, 2014d: 4).

〈표 III-1-3〉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관련 세부대책

구분	지원 내용	담당부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2013)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군대 어린이집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체수단(보육수당) 폐지 - 의무이행수단의 실효성 강화	관계부처 합동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단절 유지 방안(2014)	- 육아휴직 강화 - 공공대체인력 풀 확대 - 시간제 근로자를 위한 시간제 보육 반 신설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강화 - 영아종일제 돌봄 대상 아동연령 상향조정: 0세 → 0~1세 - 근로시간단축제도 강화	관계부처 합동
일하는 부모를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 방안: 여성고용 보완대책(2014)	-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확대 - 무기대체인력지원금 요건 완화 - 자동육아휴직 관행 확산 - 보육체계 개편 모델 개발 -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 활성화	관계부처 합동
방과후 내실화 방안(2014)	- 연중무휴 운영 권장 - 돌봄 중심 서비스 제공 권고 - 기간제 교사 우선 배치	교육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방안(2012~2014)	- 시간제 돌봄지원 확대 - 민간베이비시터 교육 및 DB 구축 - 아이돌봄서비스 다양화: 종합형, 보육교사 파견형	여성 가족부

2. 서비스 지원 정책

맞벌이 가구가 일하는 동안 자녀를 대신하여 돌봐주기 위한 보육서비스로서, 1)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기관보육과 2) 가정에서 아이돌보미가 제공 하는 가정내보육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다루었다.

가. 기관보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적으로 제공되는 종일제 보육서비스는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의 핵심 정책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종일제 보육은 취업 여부에 따른 이용 자격과 비용지원을 적용하지 않아, 맞벌이 가구 위주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부모들의 다양한 근로시간에 따른 보육 수요에 부합하기 위한 시간연장보육은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2014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4a)와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 보장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맞벌이 가구는 어린이집 입소 1순위자로 규정된다. 이 때 맞벌이 가구에 대한 적용은 ‘부모가 모두 일하는 부모의 영유아’로서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이며, 부 또는 모가 취업 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를 포함한다(보건복지부, 2014a: 75). 2012년 7월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4대 보험에 미가입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포함된다(보건복지부, 2012).¹⁶⁾

〈표 III-2-1〉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2014)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자녀(최저생계비 120%)
-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pp. 87-88.

16) 맞벌이 부모 인정 서류에 보험가입증명서를 필수로 첨부하도록 하여 4대 보험 미가입근로자가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점을 개선하고자 학습지교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중 1부로서 근로를 입증하고, 소득입증자료로서 고용 임금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라도 소득입증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보건복지부, 2012: 6).

2012년 7월부터는 이 같은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입소순위 적용 준수 기관을 기존의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정부지원 시설에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확대하여 적용하고(보건복지부, 2012: 5), 이를 위반할 시에는 「영유아보육법」(제56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이미화 외, 2012: 79), 입소 우선순위를 반드시 준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7.8%에 그치며, 특히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해당 비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4년에는 맞벌이 가구 등 실(實)수요층의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입소 대기 관리시스템의 전국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b: 2). 2013년 11월 8일부터 부산, 제주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 4월 2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b: 2).

2) 종일제 보육 의무화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구 등 보육이 반드시 필요한 부모들의 보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며, 평일에는 오전 7시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12시간을 운영하고, 토요일(07:30~15:30)에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a: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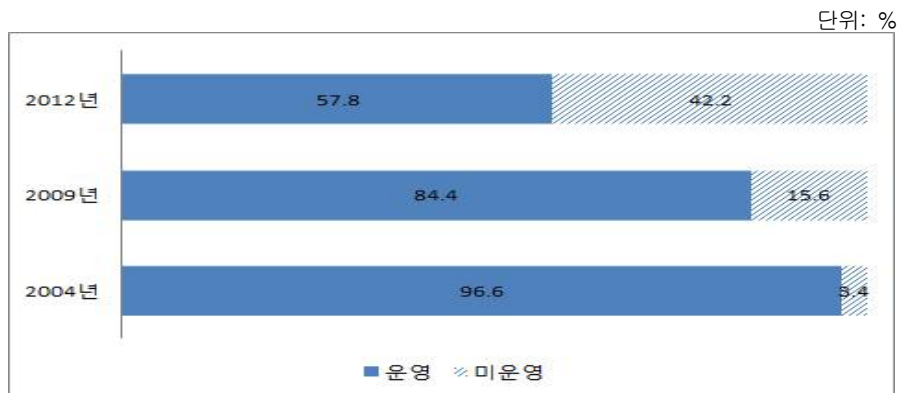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운영 일수 및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휴원 일수는 기관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 2014a: 90). 실제로 어린이집의 미휴원율은 79.1%이며, 휴원 시 휴원 일수는 3일 이내가 27.8%이나 15일 이상인 경우도 12.3%에 달하여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이미화 외, 2012: 91).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미휴원율이 90.4%로 가장 높고, 휴원 시 3일 이내인 비율이 54.6%를 차지하여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이미화 외, 2012: 91).

한편 2012년 기준으로 휴원 시 연간 휴원 일수는 10.2일로 2004년 9.3일과 2009년 6.6일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그림 III-2-1 참조). 이는 맞벌이 가구 입장에서 긴급보육 상황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게다가 2012년 토요일 보육의 운영 비율도 57.8%로 2004년, 2009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그림 III-2-2 참조).



[그림 III-2-1] 연간 휴원 일수 변화(2004, 2009, 2012)

출처: 이미화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91.



[그림 III-2-2] 토요보육 운영 비율 변화(2004, 2009, 2012)

자료: 이미화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89.

뿐만 아니라 실제 평일 운영시간을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기관에서는 12시간 운영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시간에 부합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이미화 외, 2012: 87). 그 결과 맞벌이 가구의 희망 이용 시간은 실제 이용 시간에 비해 47분이 긴 9시간 7분으로 나타나며(서문희 외, 2012: 539). 맞벌이 가구가 기관보육을 보완하여 혈연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77.7%에 달한다(서문희 외, 2012: 546).

한편 유치원의 운영은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규정되며, 교육과정은 오후

2시까지, 방과후 과정¹⁷⁾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3).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방과후 과정 운영 담당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검색일 2014년 4월 30일). 그 밖에도 방과후 과정의 편성 운영 사항은 유치원평가 항목에 포함된다(동법 제21조).

또한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 기준으로 원장이 정하되, 다만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2조;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검색일 2014년 4월 30일).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 실정에 고려하여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 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다양한 기관보육서비스 제공

모든 0~5세에 적용되는 어린이집 종일제 운영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과는 달리 맞벌이 가구의 근로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기본 운영 시간 이외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비용 지원은 각 보육서비스별로 시설 지원¹⁸⁾과 아동별 지원으로 구분되며,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고, 0세아는 보육 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의 경우는 1:7까지 고려된다(보건복지부, 2014a: 357).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이미화 외, 2012), 시간연장보육 운영 중인 시설은 전체의 약 24.6%이고, 24시간과 휴일보육의 해당 비율은 각각 1.0%와 2.5%에 불과하다(이미화 외, 2012: 207-220).

17) 2012년부터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종전의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개념을 삭제하고, 기본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돌봄활동을 '방과후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3).

18) 어린이집에 공통 지원은 인건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장애아 전문어린이집 등이 그 대상이다. 지원 기준은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의 경우는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원장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일부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 밖에도 대체교직원 인건비,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중소도시 대도시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의 취사부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4a: 333).

〈표 III-2-2〉 영유아 보육 시설 및 영유아 비율(2012)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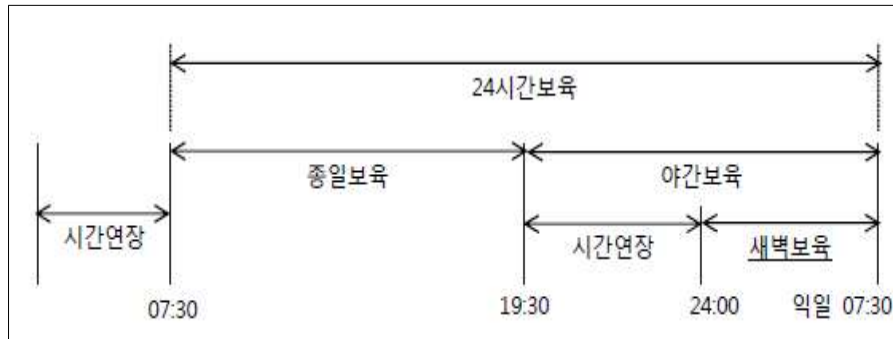
구분	시설				영유아		
	영아	유아	영유아	(수)	영아	유아	(수)
시간연장형보육	21.0	13.5	24.6	(4,000)	2.1	1.7	(175,873)
24시간보육	0.8	0.7	1.0	(4,000)	0.1(143)	0.1(102)	(175,873)
휴일보육	2.2	1.0	2.5	(4,000)	0.2(360)	0.2(358)	(175,873)

자료: 이미화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207-220 재구성.

*** $p < .001$

가) 시간연장형 보육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에는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 보육이 포함되며, 지원 대상은 만 0~2세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4a: 322). 보육료의 매월 지원 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하며, 야간 보육료와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4a: 322).



[그림 III-2-3] 시간연장형 보육 개념

주: 시간연장형 보육에는 24시간보육(종일보육+시간연장보육+새벽보육),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시간연장+새벽보육), 휴일보육이 포함됨.

출처: 보건복지부(2014a).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p. 354.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보육료는 시간당 2,700원, 장애아동은 3,700원(연령에 관계없이)을 지원하며, 토요일 지원은 15:30~24:00에 적용된다(보건복지부, 2014a: 322; 그림 III-2-3 참조).

한편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기존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로서, 국공립 및 정부지원 비영리시설의 경우는 부모의 취업 등으로 1명 이상이 보육시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⁹⁾ 지원 대상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로서, 시·군·구청장은 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시설과 평가인증을 통과하고 시간연장 보육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우선적으로 지정되며, 해당 시설에는 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4a: 355).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하며, 정부지원시설과 직장보육시설에는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에는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한다.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4a: 355).

주간 보육교사가 초과 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을 담당하였거나 단시간 보육교사를 채용한 경우에는 시간연장반별로 월 40만원을 지원하는데, 해당 지원은 시작 시간(19시 30분) 이후 시간연장 보육 아동을 2명 이상 보육한 경우에 한한다.²⁰⁾

나) 야간보육

야간보육(19:30~익일 07:30)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과,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만 야간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4a: 361).

야간보육료 지원 수준은 월 보육료 지원 단가²¹⁾와 동일하다.

19)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보건복지부, 2014a: 354).

20) 단,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및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지원시설은 1명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4a: 357).

21) 2014년도 보육료 지원단가는 다음과 같음(마음더하기 정책포털 <http://momplus.mw.go.kr>, 검색일 2014년 5월 30일).

다) 24시간보육

24시간보육 지원은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이나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을 이용하고 추가로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 제공된다(보건복지부, 2014a: 359).

시·도지사는 지역내 야간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정부지원 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대상은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 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이 경우 수면실 등을 위한 시설 환경비용(증개축 또는 개보수)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4a: 360). 이외에도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24시간 어린이집은 시간연장 보육교사와(19:30~24:00)와 새벽근무 보육교사(24:00~익일 07:30) 인건비를 각각 지원하되,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4a: 360-361).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민간 지정 시설은 보육교사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한다. 24시간 보육 시 보육료는 보육료의 200%한도 내에서 부모로부터 추가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라) 휴일(토요일 제외)보육

휴일보육 지원 단가는 정부지원 일 보육료²²⁾의 150%이며, 단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는 일 보육료의 100%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4a: 324).

시설 지원 대상은 일요일 및 공휴일을 보육하는 시설로서, 지원 대상은 국공립 법인시설(사회복지시설, 학교 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어린이집 포함) 및 직장 어린이집 중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이다. 보육교사 1인당 3인 이상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2014)〉

지원 대상	연령	지원 단가(원)		
		종일	야간	24시간
만 5세 이하 가구 (가구소득 기준과 무관)	만 0세	394,000	394,000	591,000
	만 1세	347,000	347,000	520,500
	만 2세	286,000	286,000	429,000
	만 3세	220,000	220,000	330,000
	만 4세	220,000	220,000	330,000
	만 5세	220,000	220,000	330,000

22)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 가능일수로 공휴일 제외)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 보육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 수당 일일 5만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4a: 364).

4)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을 말한다(보건복지부, 2014a: 5).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4a: 5).

직장어린이집은 2013년 12월 기준으로 시설 수로는 1.4%, 정원 기준으로는 2.5%를 차지한다(보건복지부, 2014c).

가) 설치의무

직장어린이집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고, 의무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14a: 6). 즉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어린이집 이용여부 또는 정부 보육료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령별 정부 보육료 단가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4년 1월 기준으로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는 만 0세 394천원, 만1세 347천원, 만2세 286천원, 만3~5세 220천원이고, 장애아는 월 394천원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 2014a: 7). 위탁보육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할 수 있는데, 위탁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14a: 7). 이는 보육수당에 상응하는 비용을 전제로 하며, 2014년에는 위탁률²³⁾이 30%를 충족한 경우에는 이행으로 간주하고 매년 10%씩 상향토록 한다(보건복지부, 2014a: 7).

또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와 관련하여 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조속히 시설을

23) 보육 수요 대비 위탁 인원을 의미함.

설치하도록 시·도지사가 직접 지도하며(보건복지부, 2014a: 8),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탁보육, 보육수당 지급 등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4a: 6). 이와 관련하여 2013년 1월 30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명단을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2013a: 1). 해당 조치는 사업주에게 명단 공표 대상임을 미리 공지하여 20일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명단을 확정하였다. 이후 명단 공표는 강력하게 시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설치의무 이행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장어린이집명단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연도 4월에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13a: 3)

2013년 12월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의 어린이집 설치 이행율은 49.5%로, 2012년 9월 대비 약 10% 증가하였으며, 미이행율은 18.3%로 나타난다(보건복지부, 2014c: 6; 표 III-2-3 참조).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장 유형별로는 국가기관의 설치율이 7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자체 50.3%, 기업(공사 등 포함) 47.6%이며, 미이행율은 학교와 기업이 각각 23.2%와 22.7%로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보건복지부, 2014c: 7). 사업장 규모별로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이행율이 높은 경향을 보여, 근로자 1,000인 이상 90.6%, 근로자 500인 이상~근로자 1,000인 미만 73.5%로 나타난다(보건복지부, 2014c: 8).

〈표 III-2-3〉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이행율(2006-2013)

단위: 개소(%)

연도별	의무사업장 (A=B+C)	이행(B)				미이행(C)
		계	설치	수당	위탁	
‘13년	1,074	877(81.7)	534	242	101	197(18.3)
‘12.9.30	919	683(74.3)	359	253	71	236(25.7)
‘11.6.30	832	604(72.6)	326	231	47	228(27.4)
‘10년	833	578(69.4)	312	208	58	255(30.6)
‘09년	790	523(66.2)	284	195	44	267(33.8)
‘08년	791	476(60.2)	269	160	47	315(39.8)
‘07년	791	440(55.6)	253	147	40	351(44.4)
‘06년	775	365(47.1)	199	132	34	410(52.9)

자료: 보건복지부(2013a). 보도자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최초 공표. p. 5; 보건복지부(2014c). 보도자료: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사업장 대폭 증가(2014. 4. 29). p. 6 재구성.

나)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 지원

근로자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비용을 무상지원하거나 용자로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2014) 자료 등에 의하면,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치비용 지원

지원 대상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이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전환비 및 교재교구비를 영아·장애아 시설 설치 여부 등에 따라 소요비용의 60~90%까지 차등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4a: 9). 시설전환비는 최고 3억원(공동형 최고 6억원,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최고 6억원, 산단형 최고 15억원), 교재교구비 최고 5천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대표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시설건립비, 매입비, 임차비, 개·보수비, 전환비 등을 저리로 융자해준다. 융자한도는 최고 7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연 1.0%, 대기업은 연 2.0%이다(보건복지부, 2014a: 9).

(2) 운영비 지원

지원 대상은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2) 「영유아보육법」 제 13조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 3)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있을 것, 4) 매월 말일 기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이상이거나 4분의 1이상이면서 피보험자 자녀의 수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이다(고용노동부, 2014: 31).

지원내용 및 수준은 보육교사, 시설장 및 취사부 1인당 월 8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의 경우는 어린이집 규모별로 월 120~520만원을 지원한다(고용노동부, 2014: 31).

그 밖에도 직장보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인력관리 및 지원, 운영모델 개발 및 운영 상담, 설치 및 상담지원 등을 지원한다(고용노동부, 2014: 32).

또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단 지역 등 근로자 밀집지역에 공공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me2.do/GIFL6MWB>, 검색일 2014년 6월 7일). 입소 대상은 만 0세부터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 2014년 현재 전국 24개소가 운영 중이다. 입소 우선순위는 1순위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2순위 '모가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3순위 '부가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4순위 그 밖의(조부모 가정 등)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이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me2.do/GIFL6MWB>, 검색일 2014년 6월 7일). 일반보육은 오전 7시반부터 오후 7시반까지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의 근무 환경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특수보육(영아보육, 야간보육, 휴일보육,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가정내보육: 아이돌봄지원사업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보육이 어려운 취업부로 자녀 대상의 1:1 개별 양육지원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a: 1). 도입 당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2009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2010년 영아종일제 돌봄이 도입되었으며, 2012년 「아이돌봄 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2013b: 4).

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는 자녀 돌봄에 한정되는 획일적인 서비스와 민간서비스에 비해 질적 수준이 미흡하고 맞벌이가 우선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2013년 이후 서비스 다양화와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층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왔다. 즉 2014년에는 정부지원 우선순위를 취업모 위주로 재편성하고, 2014년부터는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의 대상 연령을 종전 만 0세(생후 3개월~12개월)에서 만 1세 이하(생후 3개월~24개월)로 확대하였으며, 서비스 유형을 가사 추가형, 보육교사형으로 다양화하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여성가족부, 2014b: 1-2).²⁴⁾

2014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여성가족부, 2014a)를 토대로 사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4) 가사추가형은 아이돌봄서비스에 일부 가사서비스를 추가한 유형이고, 보육교사형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돌보미가 별도 개발된 전문프로그램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임(여성가족부, 2014b: 2).

1) 서비스 대상 및 지원내용

정부지원 대상은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인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기타 양육 부담이며, 전업주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여성가족부, 2014a: 11). 사업 내용은 시간제 돌봄과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로 구분된다. 영아종일제는 1일 10시간(월 200시간) 종일 서비스를 제공하며, 2013년에 총 3,693가구(3,893명)이 이용하였고, 2014년에는 4,244가구를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4b: 2).

가) 지원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는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 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 요금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4a: 9).

정부지원은 2014년부터 취업모 위주로 이루어지며 기존과 같이 1) 아동 연령, 2)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3) 가구소득, 4) 자녀 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시에 제공된다.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시간제는 정부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종일제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여성가족부, 2014a: 11).

2014년에는 지원 대상 우선순위가 종전 1) 취업 한부모가정(모자, 부자, 미혼모 포함), 2) 장애 부모 가정, 3) 맞벌이 가정, 4) 다자녀 가정, 5) 기타 양육 부담 가정으로 제공되던 바를 1) 취업한부모, 취업 및 맞벌이 저소득 가정, 2) 취업한부모, 취업 및 맞벌이 일반가정, 3) 장애부모 가정, 4) 다자녀가정,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6) 전업주부 저소득 가정, 7) 전업주부 일반가정으로 재편성되었다(여성가족부, 2014a: 1). 이 때 맞벌이 가구의 소득은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하여 산정하되, 단, 감액된 소득이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많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만큼만 감액 처리한다(여성가족부, 2014a: 28).

이와같이 관련 규정이 새롭게 정비됨에 따라 맞벌이 가구 등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었다(「아이돌봄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검색일 2014년 4월 30일).

〈표 III-2-4〉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2014)

- 취업한부모, 취업 및 맞벌이 저소득 가정
 -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취업(학업)으로 양육공백 발생시 (가)유형²⁵⁾으로 지원
- 취업한부모, 취업 및 맞벌이 일반가정
- 장애부모 가정
 - ※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
 -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 질병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 장애 부모, 다자녀 가정, 부모 질병에는 취업 증명 불필요
- 전업주부 저소득 가정
- 전업주부 일반가정

자료: 여성가족부(2014a). 2014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 1.

한편 타 정부 지원과의 중복이 금지되어 시간제 돌봄서비스의 경우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아동의 경우는 어린이집 이용 시간(09:00~17:00), 유치원(평일 09:00~14:00) 이용 시간, 그리고 주말과 시간 연장 등 보육 시간 중에는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여성가족부, 2014a: 29). 2013년부터 유치원 이용자는 14시 이후 시간제 돌봄 이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단기 방학 등 보육시설 미운영시간에는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 아동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다(여성가족부, 2014a: 30).

나) 서비스 내용 및 비용

(1) 시간제 돌봄

시간제 돌봄의 경우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이며, 정부 지원 시간은 연간 480시간 이내이다(여성가족부, 2014a: 35).

25)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월 241만원; 여성가족부, 2014a: 2)

〈표 III-2-5〉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금액(2014)

단위: 원

유형	소득기준 (전국 가구 평균소득, 4인 기준)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 부담
가형	50% 이하(월 241만원)	5,500	4,250	1,250
나형	50~70% 이하(월 3328만원)		2,250	3,250
다형	70~100% 이하(4인기준 483만원)		1,250	4,250
라형	100%초과		0	5,500

주: 연 480시간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2014a). 2014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 11.

서비스 이용 금액은 아동 1인 기준 시간당 5,500원이고, 아동이 1명 증가할 때마다 2,500원씩 증가한다(여성가족부, 2014a: 35). 심야(21:00~08:00)와 주말(토,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1천원이 할증되어 시간당 6,5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 지원금은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1,250~4,250천원을 차등 지원한다(시간당 단가 5,500원 기준; 표 III-2-5 참조).

(2) 영아종일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은 만 3개월 이상 만 12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1일 6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월 120시간~200시간 이하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 지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여성가족부, 2014a: 36)

서비스 이용 금액은 월 200시간 이용 기준으로 아동 1인당 월 110만원 미만이며, 정부지원금은 모든 소득계층에 지원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월 40~75만원을 차등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4a: 11; 표 III-2-6 참조).

〈표 III-2-6〉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금액(2014)

단위: 만원

유형	소득기준 (전국 가구 평균소득, 4인 기준)	이용 단가	0세 (15개월 이하)		1세 (16~24개월)	
			정부지원	본인 부담	정부지원	본인 부담
가형	50% 이하(월 241만원)	110	75	35	70	40
나형	50~70% 이하(월 338만원)	110	65	45	60	50
다형	70~100% 이하 (4인기준 483만원)		55	55	50	60
라형	100%초과		45	65	40	70

주: 연 480시간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2014a). 2014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 11.

아이돌보미가 2명 이상 돌보는 경우는 아동 1인 증가시마다 이용 단가가 50%씩 인상되며, 심야 및 주말에 이용하는 경우 할증요금이 적용된다(여성가족부, 2014a: 36).

(3) 특별서비스

특별한 상황이 초래된 경우 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긴급 보호, 기관 파견 돌보미, 전염성 감염 아동 대상 지원이다.

우선 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해 긴급 돌보미(월급제 돌보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정수의 긴급돌보미 배치가 가능하다. 이들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거리·교통상의 이유로 대부분의 돌보미가 파견을 기피하는 지역, 도시 지역의 경우는 주말 야간 등 이용자들의 요구는 집중되나 돌보미들이 파견을 기피하는 시간에 1~2일 단기 또는 일시로 투입되며, 월 60만원 고정급이 지급된다(여성가족부, 2014a: 48).

다음으로 기관에서 아동 돌봄의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간대에 아이돌보미를 활용할 수 있는데, 1회 3명의 돌보미가 2시간 활동했다면 6시간으로 적용하여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4a: 49).

마지막으로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 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4a: 50). 즉 시간당 6천원 중 정부지원 3천원, 본인 부담 3천원을 부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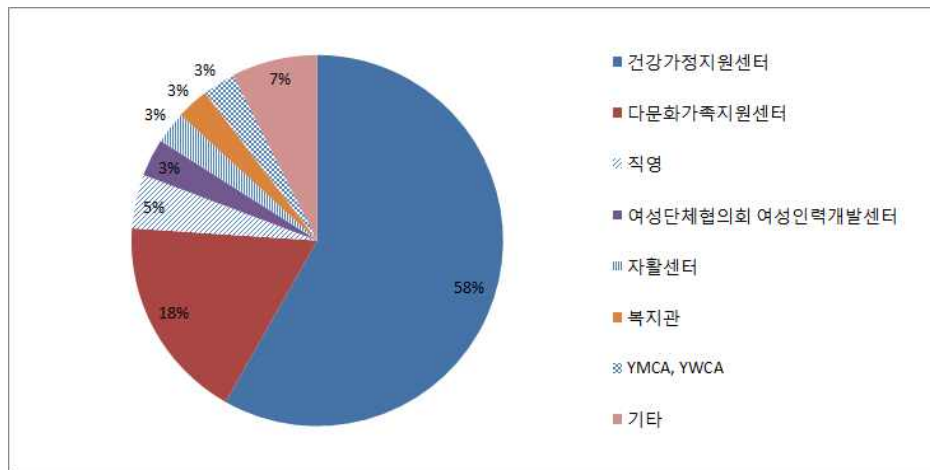
2) 서비스 관리

아이돌봄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교육 실시와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아이돌보미 제공자 신청 대상은 결격 사유가 없는 신체 건강하고 정신 상태가 양호한 활동 희망자이며(여성가족부, 2014a: 41), 아이돌보미 수급 조절을 위해 자격증 소지자 및 양성과정 이수자를 우선으로 채용한다. 그러나 2012년 말 기준,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아이돌보미는 전체 11,566명 중 931명으로 약 8%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2013: 8).

또한 아이돌보미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선발한 자 중 소정의 양성교육과정 및 현장실습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아이돌보미로 등록한 후 활동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대상은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 자격증 소지자, 2014년 새

로일하기센터의 직업훈련과정 중 아이돌보미 필수과목 연계 과정으로 구분되며, 교육시간은 80시간이다(여성가족부, 2014a: 51).²⁶⁾ 아이돌보미는 매년 정해진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활동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집합과정(20시간)은 2년에 1회 이수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개별 과정 보수교육(10시간)은 매년 이수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14a: 44).



[그림 III-2-4]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2014. 3)

자료: 조주은(2014).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p. 9.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관리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과 사업 지원기관에 대한 각종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a). 서비스 제공 기관은 2014년 3월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은 총 213개 기관이 운영 중이며, 구체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124개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8개소 이외에도 복지관 등에서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다(조주은, 2014: 8; 그림 III-2-4 참조).

이들 기관은 아이돌보미 모집 및 DB관리, 아이돌보미 활동일지 및 활동 상황 점검, 아이돌보미 교육 및 경력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그 밖에도 아이돌보미 간담회 또는 월례회의 실시, 아이돌보미 급여 지급, 아이돌보미 보험 가입 등을 처리해야 한다. 연간, 분기별 및 월별 서비스 연계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신청 접수 및 서비스 연계를 실시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14a: 62). 아이돌보미

26) 보육교사 등 자격증 소지자는 현장실습 10시간 이후 활동이 가능함(여성가족부, 2014a: 44).

연계 시에는 서비스 이용 아동과 돌보미와의 애착 관계 등을 고려하여 돌보미가 수시로 변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인근 지역 이용가정의 긴급 사유(비정기, 돌보미 부족 등) 발생 시에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인력 배치 및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과 사업 평가를 실시한다(여성가족부, 2014a: 63).

또한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과 서비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광역 거점기관을 두고 있다. 동 기관의 역할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실무자 업무 지원, 사업운영실적 관리, 서비스 만족도 조사, 평가 하위 10% 서비스 기관에 대한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 등이다(여성가족부, 2014a: 67).

3. 시간 지원 정책

일하는 부모들이 출산 이후에도 경력단절 없이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노동을 중단할 수 있는 휴가·휴직제도와, 일을 중단하지 않고 자녀의 돌보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휴가·휴직제도

출산에 따른 모성보호와 어린 자녀를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산전후 휴가제도, 배우자 휴가제도, 그리고 육아휴직제도를 운영 중이다.

산전후 휴가제도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 보호휴가를 부여하여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를 일컫는다(고용노동부, 2014: 8-11).

2001년 이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중을 살펴보면, 양 제도 모두 사용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육아휴직 사용 비중은 2007년 30%를 넘어서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약 49%에 달한다(박진희·이시균·윤정혜, 2013: 121; 표 III-1-9 참조).

마음더하기 정책포털(<http://momplus.mw.go.kr>, 검색일 2014년 5월 30일)과 고용노동부(2014) 자료에 의하면,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3-1〉 모성보호사업 활용 현황(2012)

단위: 개소, %

연도	사업장수 ¹⁾	여성근로자 비중 평균	출산휴가 사용 비중 평균 ²⁾	육아휴직 사용 비중 평균 ³⁾
2001	2,097	51.2	15.8	9.6
2002	9,735	54.0	25.2	12.7
2003	12,971	55.8	26.7	16.3
2004	15,613	56.2	27.4	19.3
2005	17,756	58.1	27.3	20.7
2006	24,362	60.0	28.4	25.1
2007	31,166	62.1	28.8	31.1
2008	34,778	63.0	28.7	41.8
2009	37,199	63.9	28.8	45.8
2010	41,420	64.9	28.5	48.3
2011	44,383	65.8	27.7	49.6
2012	45,566	66.0	26.8	48.8

주: 1) 고용보험적용 사업장 중 해당 연도에 출산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근로자가 1명 이상 있는 사업장 수임.

2) 출산전후휴가 사용 여성근로자가 1명 이상 있는 사업장의 전체 여성근로자 대비 출산전후휴가 사용자 비중으로 각 사업장별 비중의 평균임.

3) 출산전후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근로자 비중으로 각 사업장별 비중의 평균임.

출처: 박진희·이시균·윤정혜(2013). 고용보험DB를 활용한 노동시장분석. 한국고용정보원. p. 121.

1) 산전후 휴가제도

산전후 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산전후 휴가기간은 총 90일로 반드시 산후에 45일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90일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고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2012년 8월부터 예외적으로 1) 유사산의 위험(경험)이 있는 경우, 2)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유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전의 휴가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때에도 출산 후 45일은 보장되어야 한다(마음더하기 정책포털 홈페이지 <http://momplus.mw.go.kr>, 검색일 2014년 5월 30일).

2012년 기준으로 출산휴가 평균 사용 일수를 살펴보면, 법정 보장 기간인 90일 이상을 사용하는 비율은 65.9%로 나타나고, 30일 미만을 사용하는 비율은 1.7%에 불과하여 대체로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90일 이상을 사용하는 비율

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여 광공업과 건설업 부문과 30인 미만 기업에서 저조한 비율을 나타낸다(김영옥·김중숙·배호중, 2013: 26; 표 III-3-2 참조).

〈표 III-3-2〉 여성근로자 출산휴가 평균 사용일수(2013)

구분	전체 (사업자수)	단위: %(개)					
		30일 미만	30일~60일 미만	60일~90일 미만	90일	91일 이상	없음
전체	100.0(1,000)	1.7	5.3	12.5	56.1	9.8	14.6
업종							
광공업(제조업)	100.0(215)	2.3	6.0	13.0	52.1	14.4	12.1
건설업	100.0(166)	1.8	7.8	13.3	50.6	6.6	19.9
도소매,음식숙박업	100.0(201)	-	4.0	8.0	64.7	12.9	10.4
전기,운수,통신,금융	100.0(185)	1.6	3.2	18.9	49.7	10.8	15.7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100.0(233)	2.0	5.6	10.3	61.4	4.3	15.9
규모							
5-9인	100.0(301)	2.0	4.3	11.3	37.2	13.3	31.9
10-29인	100.0(251)	1.6	9.2	13.9	49.8	7.6	17.9
30-99인	100.0(215)	1.4	6.0	14.0	66.5	11.2	0.9
100-299인	100.0(131)	2.3	3.1	11.5	75.6	5.3	2.3
300인 이상	100.0(102)	1.0	-	10.8	80.4	7.8	-

자료: 김영옥·김중숙·배호중(2013).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13년). 고용노동부. p. 26.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게시일의 통상임금²⁷⁾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우선 지원 대상기업은 90일간 최대 405만원, 대규모기업은 30일간 최대 135만원을 지원한다(마음더하기 정책포털 홈페이지 <http://momplus.mw.go.kr>, 검색일 2014년 5월 30일). 이때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2002년 이후 급여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급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액 지급 수준도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표 III-3-3 참조).

27)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산정지침에 따라 판단한다(마음더하기 정책포털 홈페이지 <http://momplus.mw.go.kr>, 검색일 2014년 5월 30일).

〈표 III-3-3〉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현황(2012)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인원	지급액	비고
2002	22,711	22,602	월 통상임금 지급 - 30일간 135만원 한도
2003	32,133	33,522	
2004	38,541	41,610	
2005	41,104	46,041	
2006	48,972	90,886	월 통상임금 기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간 405만원 한도 - 대규모 기업: 30일간 135만원 한도
2007	58,368	132,412	
2008	68,526	166,631	
2009	70,560	178,477	
2010	75,742	192,564	
2011	90,290	232,915	
2012	93,394	241,900	

주: 출산전후휴가급여 인원은 초회수급인원임.

출처: 박진희 외(2013). 고용보험DB를 활용한 노동시장분석. 한국고용정보원. p. 111.

2)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는 출산일로부터 3일간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필요시 5일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 시 근로자에게 3~5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한다(고용노동부, 2014: 11). 사용 가능 기간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표 III-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우자 출산휴가의 유급 일수는 대체로 3일이 보장되고 있으나, 정규직만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이 57.7%에 달하여 제도 실효성 측면에서 종사상 지위로 인한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김영옥 외, 2013: 48).

〈표 III-3-4〉 배우자 출산휴가-유급일수(2013)

단위: %(개), 일

구분	계 (사업체수)	배우자 출산휴가 - 유급일수			평균유급일수
		1일	2일	3일	
전체	100.0(324)	0.6	2.8	96.6	3.0
업종					
광공업(제조업)	100.0(61)	3.3	4.9	91.8	2.9
건설업	100.0(44)	-	0.0	100.0	3.0
도소매,음식숙박업	100.0(75)	-	1.3	98.7	3.0
전기,운수,통신,금융	100.0(71)	-	5.6	94.4	3.9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100.0(73)	-	1.4	98.6	3.0

(표 III-3-4 계속)

구분	계 (사업체수)	배우자 출산휴가 - 유급일수			평균유급일수
		1일	2일	3일	
규모					
5-9인	100.0(17)	-	0.0	100.0	3.0
10-29인	100.0(35)	5.7	5.7	88.6	2.8
30-99인	100.0(92)	-	3.3	96.7	3.0
100-299인	100.0(90)	-	1.1	98.9	3.0
300인 이상	100.0(90)	-	3.3	96.7	3.0

자료: 김영옥 외(2013).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13년). 고용노동부. p. 47.

〈표 III-3-5〉 배우자 출산휴가-수혜자격(정규직 여부)(2013)

구분	계(사업체수)	단위: %(개)	
		정규직만 가능	비정규직도 가능
전체	100.0(324)	57.7	42.3
업종			
광공업(제조업)	100.0(61)	60.7	39.3
건설업	100.0(44)	52.3	47.7
도소매,음식숙박업	100.0(75)	62.7	37.3
전기,운수,통신,금융	100.0(71)	57.7	42.3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100.0(73)	53.4	46.6
규모			
5-9인	100.0(17)	88.2	11.8
10-29인	100.0(35)	94.3	5.7
30-99인	100.0(92)	72.8	27.2
100-299인	100.0(90)	66.7	33.3
300인 이상	100.0(90)	13.3	86.7

자료: 김영옥 외(2013).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13년). 고용노동부. p. 48.

3) 유산·사산휴가

여성 근로자가 유산 혹은 사산한 경우 휴가가 보장되며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고용노동부, 2014: 10). 이때 유사산은 자연유산 및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해 허용되는 임신중절수술만 허용되며 2012년 개정을 통해 기존 16주 이후 적용을 확대하여 16주 이전에도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마음더하기 정책포털 홈페이지 <http://momplus.mw.go.kr>, 검색일 2014년 5월 30일).

이때 급여는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지급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최대 405만원, 대기업은 최대 월 135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휴가 기간은 임신 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²⁸⁾

4)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의 적용 대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한한다(마음더하기 정책포털 홈페이지 <http://momplus.mw.go.kr>, 검색일 2014년 5월 30일). 2012년 8월부터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간제 사용 기간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여성이 6만 7,323명, 남성이 2,29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2013년 전제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의 비중은 3.3%로 10년 전인 200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통계청, 2014b: 29).

〈표 III-3-6〉 성별 육아휴직 이용 현황(2003-2013)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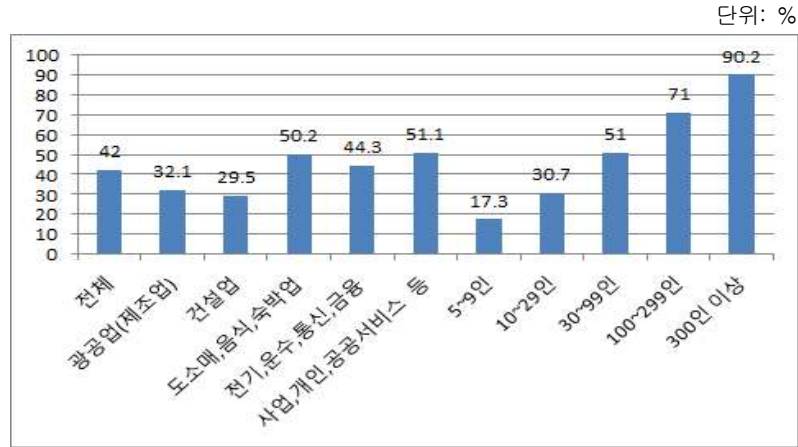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6816	9338	10701	13672	21185	29145	35400	41729	58130	64009	68616
여성	6712	9122	10488	13442	20875	28790	34888	40910	56728	62779	67323
구성비	98.5	98.1	98.1	98.3	98.5	98.8	98.6	98.0	97.6	97.2	96.7
남성	104	181	208	230	310	355	502	819	1402	1790	2293
구성비	1.5	1.9	1.9	1.7	1.5	1.2	1.4	2.0	2.4	2.8	3.3

주: 성별육아휴직자수는 연도별 신규 육아휴직자 수치임.

출처: 통계청(2014b). 201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p. 29.

2013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육아휴직제도 운영 현황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여, 광공업과 건설업 부문의 시행률은 각각 32.1%와 29.5%에 그치며, 30인 미만인 기업은 30%선이나, 300인 이상 기업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영옥 외, 2013: 79; 그림 III-3-1 참조).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적용률은 74%선에 그치고 있어 종사상 지위에 따른 적용 범위의 확대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표 III-3-7 참조).

28) 임신 기간이 11주 이내, 12주 이상 15주 이내, 16주 이상 21주 이내, 22주 이상 27주 이내, 28주 이상으로 구분되며 각각 유사산 날로부터 5일까지, 10일까지, 30일까지, 60일까지, 90일까지로 구분된다(고용노동부, 2014: 10).



[그림 III-3-1] 육아휴직제도 운영 사업체 비율(2013)

자료: 김영옥 외(2013).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13년). 고용노동부. p. 52.

<표 III-3-7>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적용제도 적용 여부(2013)

단위: %(개)

구분	육아휴직제도가 있으면서 비정규직이 있는 사업체		
	계	적용대상임	적용대상 아님
전체	100.0(150)	74.0(111)	26.0(39)
업종			
광공업(제조업)	100.0(19)	78.9(15)	21.1(4)
건설업	100.0(17)	70.6(12)	29.4(5)
도소매,음식숙박업	100.0(42)	50.0(21)	50.0(21)
전기,운수,통신,금융	100.0(27)	88.9(24)	11.1(3)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100.0(45)	86.7(39)	13.3(6)
규모			
5~9인	100.0(9)	55.6(5)	44.4(4)
10~29인	100.0(11)	63.6(7)	36.4(4)
30~99인	100.0(42)	83.3(35)	16.7(7)
100~299인	100.0(33)	69.7(23)	30.3(10)
300인 이상	100.0(55)	74.5(41)	25.5(14)

자료: 김영옥 외(2013).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13년). 고용노동부. p. 53.

육아휴직 급여는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시 지급되며, 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상한액은 1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이다(고용노동부, 2014: 18).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이외에도 근로자의 가족 돌봄을 위한 제도로써 자녀 등의 질병 등의 시에는 휴직을 신청하여 연간 최장 90일 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1회 사용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검색일 2014년 4월 30일).

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는 육아기 근로자들이 직장생활을 단절하지 않고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에 대한 조정이 가능토록 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마음더하기 정책포털 홈페이지 <http://momplus.mw.go.kr>, 검색일 2014년 5월 30일).

지원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가능하며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다(고용노동부, 2014: 20). 이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양자를 합하여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다. 이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는 한 허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동 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와 서면으로 근로 조건을 정하되, 해당 근로자가 임금, 연차휴가 등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고용노동부, 2014: 20). 그 밖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사업주는 연장근무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할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무가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²⁹⁾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통상임금의 40%)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고용노동부, 2014: 20). 즉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15시간만큼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의 40분의 15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적어도 근무시간에 비례한 급

2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육아휴직 급여액×(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여액 이상을 지급하여야만 한다.

2013년 일·가정 양립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동 제도를 시행 중인 기업은 7.1%에 불과하여 휴가·휴직제도에 비해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김영옥 외, 2013: 83).

〈표 III-3-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유무

구분	전체(사업자수)	단위: %(개)	
		있다	없다
전체	100.0(1,000)	7.1	92.9
업종			
광공업(제조업)	100.0(215)	8.4	91.6
건설업	100.0(166)	3.6	96.4
도소매,음식숙박업	100.0(201)	7.0	93.0
전기,운수,통신,금융	100.0(185)	9.2	90.8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100.0(233)	6.9	93.1
규모			
5-9인	100.0(301)	-	100.0
10-29인	100.0(251)	-	100.0
30-99인	100.0(215)	3.3	96.7
100-299인	100.0(131)	11.5	88.5
300인 이상	100.0(102)	48.0	52.0

자료: 김영옥 외(2013).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13년). 고용노동부. p. 83.

4. 한계점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현황에 의하면 다음의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맞벌이 가구는 홀벌이 가구와는 구분되는 특별한 양육지원 요구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양육지원 종합계획 등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이 미흡하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지원과 직결되는 ‘일·가정 양립지원 기본계획’조차 그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미비한 실정이다. 게다가 저출산 대응 등 주요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에서 일·가정 양립지원은 주요 전략으로 명시되나, 해당 목표는 각기 상이하여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일·가정 양립지원의 목표는 이를테면 저출산 기본계획에서는 출산율 제고,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가정생활의 만족도 제고,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에서는 여성의 역량 강화를 주된 목

표로 삼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목표들이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따져볼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맞벌이 가구의 양육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들의 관할 부처가 상이하여 해당 실적 및 성과를 총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보육사업은 보건복지부, 아이돌봄 사업은 여성가족부, 유치원과 방과후돌봄은 교육부, 육아휴직제도 등 기업내 양육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관할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그 성격상 긴밀한 연계를 요하며, 정책 효과 측면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 중이어서 종합적인 성과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둘째, 맞벌이 가구의 특성별 접근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맞벌이 가구는 근로 특성, 개인 및 가족 특성에 따라 양육 시 애로사항 및 그 수요도 매우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수요자 맞춤형 양육지원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구는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되어 맞춤형 지원의 핵심적인 대상으로 언급될 뿐, 맞벌이 가구 내부의 차이는 간과된다.

셋째,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은 시간 지원에 비해 서비스 지원 특히 기관보육에 치중된 경향이 뚜렷하나, 이들 서비스는 맞벌이 가구 보육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종일제 보육은 일하는 부모의 자녀양육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이나,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는 온전히 보장받기 어렵고, 종일제 운영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이용 자격이나 비용 지원이 취업과는 무관하여 기관 이용시간이 근로 시간과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된다.

이 같은 서비스 지원에의 치중은 최근 들어 가정내 보육의 확대로 보다 가세되고 있다. 취업과 무관하게 종일제 보육이 제공되는 기관보육과는 달리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 자격에서 맞벌이 가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나, 기관보육과는 달리 소득기준이 적용되어 보편적인 선택지로서 여전히 한계를 지닌다. 또한 장시간 노동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이 되는 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하고 필요한 이용 시간대에 충분한 인력이 제공되지 못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조주은, 2014: 29-39). 그 밖에도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됨에 따라 서비스 질 관리 측면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넷째, 시간 지원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므로 자녀 돌봄시간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실시율은 7.1%에

불과하며, 해당 기업은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한정된다. 또한 휴직 사용율은 그 증가세가 뚜렷하나 남성의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여성에게 치중된 육아 부담이 우려된다. 시간 지원 정책의 효과성이 양성평등적 활용에 좌우된다는 점을 상기하면 전반적으로 낮은 시행률과 더불어 이용 대상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는 것이다.

IV. 맞춤형 가구의 육아지원서비스 및 제도 이용 실태와 요구

이 장에서는 영유아를 둔 취업모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교육·보육 등 육아지원서비스와 육아휴직 등 양육지원제도 이용 실태 및 요구 전반을 파악한 후, 이를 자녀 특성, 근로 특성, 그리고 가구소득 등 이외 특성별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1. 맞춤형 가구 일반의 이용 실태와 요구

이 절에서는 맞춤형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영유아 대상 양육지원정책 전반의 인지도를 파악하고, 노동권 보장 차원의 서비스 지원과 부모권 보장 차원의 돌봄시간 지원으로 구분하여 이용 실태 및 만족도를 살펴본 후, 양육지원 전반의 수요와 개선 요구를 파악하였다.

가. 양육지원정책 인지도

양육지원 관련 제반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영유아 자녀가 있는 맞춤형 가구 취업모들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90% 이상의 높은 인지도를 보인 제도는 산전후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배우자출산휴가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임신·출산비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제도 순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반면 가족친화기업인증의 경우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8.1%에 불과하여 제도별로 인지도의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1〉 양육지원정책 인지도

구분	단위: %(명), 점			
	모름	대충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계(수)
임신·출산비지원	15.5	45.4	39.1	100.0(1,736)
난임시술비지원	31.9	46.3	21.9	100.0(1,736)
산모신생아도우미	22.9	49.7	27.4	100.0(1,736)

(표 IV-1-1 계속)

구분	모름	대충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계(수)
산전후휴가제도	4.6	50.9	44.5	100.0(1,736)
유사산후휴가제도	41.1	37.7	21.1	100.0(1,736)
배우자출산휴가	9.1	61.8	29.1	100.0(1,736)
근무중 수유	49.7	35.1	15.3	100.0(1,736)
육아휴직제도	5.9	46.8	47.3	100.0(1,736)
가족돌봄휴가제도	45.3	39.9	14.7	100.0(1,736)
근로시간단축	38.6	45.3	16.1	100.0(1,736)
탄력근무제	36.9	46.9	16.1	100.0(1,736)
가족친화기업인증	66.8	25.1	8.1	100.0(1,736)
직장어린이집	28.9	54.6	16.6	100.0(1,736)
입소대기시스템	34.2	42.5	23.3	100.0(1,736)
방과후돌봄지원	23.8	50.7	25.4	100.0(1,736)
시간연장보육료지원	31.7	44.6	23.6	100.0(1,736)
가정양육수당	16.2	46.0	37.8	100.0(1,736)
영아정기돌봄	36.3	47.3	16.4	100.0(1,736)
시간제돌봄	30.0	52.6	17.5	100.0(1,736)

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만족도

1) 이용 현황 전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만족도는 크게 1) 기관보육, 2) 가정내보육(개인 양육지원서비스), 3) 지역사회 부문으로 구분하여 다루었다. 각 서비스 유형별 이용 실태와 만족도를 파악하기에 앞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현황 전반을 살펴보면 다음 <표 IV-1-2>와 같다.

우선 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어린이집과 조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강한 가운데, 유치원과 방문서비스 등 교육서비스 이용률이 8~27%선으로 높게 나타나며, (민간)베이비시터와 아이돌보미 이용률은 약 5%선이다.

월 이용비용은 (민간)베이비시터 이용자의 경우 70만원선을 육박하고, 그 다음으로 조부모/친인척 약 44만원, 아이돌보미 약 34만원선 순이다. 또한 이 같은 비용 수준에 따라 비용 부담 정도는 민간베이비시터와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구에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다. 한편 민간서비스 즉 사설기관이나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28.8%,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시간에 맡기려고'와 '특기교육을 위하여'가 공히 25.5%로

나타나는데, 이는 일부 민간서비스 이용은 보육 기능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³⁰⁾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조부모와 친인척 돌봄에 대한 만족도가 4.1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기관보육·교육 즉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용 만족도가 공히 3.8점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IV-1-2〉 육아지원서비스 유형별 이용 현황

단위: %,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이용 실태			(수)
	이용률	전체(수)	이용 만족도	월평균 비용(만원)	비용 부담 정도	
어린이집	61.8	(1,217)	3.8	21.3	2.9	(786)
유치원	26.9	(1,217)	3.8	29.6	3.5	(342)
조부모/친인척	63.6	(1,217)	4.1	43.7	3.1	(808)
아이돌보미/가정보육사	5.0	(1,217)	3.6	33.7	3.7	(63)
(민간)베이비시터	5.4	(1,217)	3.5	70.4	4.0	(68)
반일제 이상 학원	8.0	(1,217)	3.4	17.2	3.6	(102)
사설기관(시간제)	14.5	(1,217)	3.5	12.3	3.3	(184)
개별/그룹지도, 방문서비스	20.5	(1,217)	3.5	11.9	3.3	(260)

주: 반일제 이상 학원은 영어유치원, 미술학원 등, 시간제 사설기관은 보습학원, 문화센터 등임.

이용률은 각 항목별로 '이용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이용 만족도는 '매우불만족'1점~'매우만족'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비용부담 정도는 '전혀부담안됨' 1점~'매우부담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한편 각 서비스별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대부분 매일(주 5일) 이용하고, 조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매일 받는 비율은 64.6%에 달한다. (민간)베이비시터의 경우는 매일 이용하는 비율이 42.6%로 절반 미만으로, 주 2~3회, 주 1회, 월 1회 미만 등 다양한 이용 빈도를 보인다. 이는 전반적으로 기관을 위주로 이용하되, 조부모 등 혈연과 비혈연 돌봄인력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상황을 암시한다.

30) 그 밖에도 자녀가 원해서 13.4%, 가족이나 주변에서 권해서 3.5%, 기타 3.3% 순으로 나타남 (사례수 396).

〈표 IV-1-3〉 육아지원서비스 유형별 이용 빈도

단위: %(명)

구분	매일 (주5일)	주 2~3회	주 1회	격주 1회	한달에 1회 미만	계(수)
어린이집	93.9	2.0	1.5	0.3	2.3	100.0(786)
유치원	91.8	2.6	2.0	0.9	2.6	100.0(342)
조부모/친인척	64.6	12.3	8.2	5.3	9.7	100.0(808)
(민간)베이비시터	42.6	14.7	14.7	13.2	14.7	100.0(68)
아이돌보미/가정보육사	33.3	17.5	15.9	9.5	23.8	100.0(63)
반일제 이상 학원	37.3	29.4	21.6	2.9	8.8	100.0(102)
사설기관(시간제)	23.9	22.8	46.2	3.8	3.3	100.0(184)
개별/그룹지도, 방문서비스	1.2	18.5	75.0	2.3	3.1	100.0(260)

주: 반일제 이상 학원은 영어유치원, 미술학원 등, 시간제 사설기관은 보습학원, 문화센터 등임.

실제로 기관 이용자의 경우 지원인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1%로 조사되었으며, 전일제 근로가구의 경우는 해당 비율이 48.7%로 더 높게 나타난다. 취업모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취업모 6, 7, 8), 자녀가 다수의 돌봄제공자에 의해 보육되는 것에 공통적으로 반대 의견을 보이므로 병행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은 시급한 개선을 요한다.

2) 기관보육교육

맞벌이 가구의 제도화된 기관보육·교육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대기 현황, 이용 기관유형, 이용 시간, 이용비용, 그리고 서비스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가) 대기 현황

대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앞서 맞벌이 가구의 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1순위 기준으로 집 혹은 직장과의 거리가 35.2%로 가장 중요시되며, 그 다음으로 원장/교사, 이용 시간, 기관 프로그램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결과를 영유아 일반을 다룬 전국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결과의 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과 비교하면(서문희 외, 2012: 146), 맞벌이 가구는 직장과의 거리가 추가적으로 고려되고, 이용 시간이 상대적으로 중시됨을 알 수 있다.

〈표 IV-1-4〉 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집 혹은 직장과의 거리	35.2	55.5
원장/교사	14.3	22.2
등/하원시각	13.4	21.6
기관 프로그램	7.8	13.5
주변의 권유/평판	6.6	14.2
국공립 기관 여부	4.0	7.4
이용비용	3.7	10.7
안전한 보호	3.5	11.5
내부 분위기	2.8	9.4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2.4	9.1
건강/영양(급식/간식 등)	1.9	8.5
형제가 같은 기관에 다님	1.6	4.6
기타	2.7	11.1
계(수)	100.0(1,039)	

주: 기타에는 차량운행 여부, 주변 환경, 기관평가(평가인증), 학급규모(아동수), 기관설비 등이 포함됨.

다음으로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입소·입학 시에 대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8%이며, 평균 대기 기간은 약 8개월로 조사되었다. 특히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대기 유경험율은 각각 약 75%, 약 67%에 달하며, 해당 기간도 각각 12개월, 약 11개월로 이들 기관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여준다. 또한 국공립유치원의 대기 기간은 12개월이 넘어 국공립어린이집보다도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결과는 공보육인프라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여준다.

현재 대기 중인 기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20.9%이고, 해당 기관 수는 평균 2.3개로 조사되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이 6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그림 IV-1-1 참조).

〈표 IV-1-5〉 이용 기관별 대기 여부/대기 기간

단위: %, 개월(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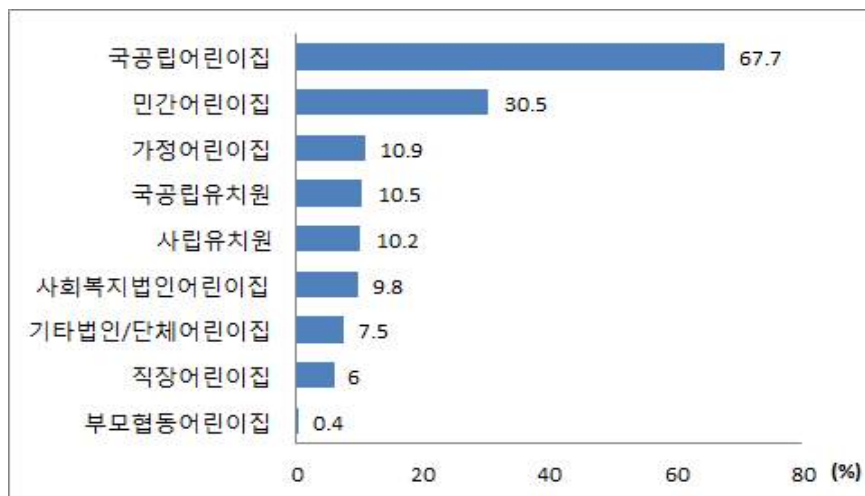
구분	대기 경험 비율	(수)	대기 기간(수)	t/F
전체	40.8	(1,039)	7.9(424)	
기관				
어린이집	42.5	(797)	8.3(339)	1.674
유치원	35.6	(239)	6.6(85)	

(표 IV-1-5 계속)

구분	대기 경험 비율	(수)	대기 기간(수)	t/F
어린이집				
국공립	66.9	(175)	10.6(117)	4.452***
사회복지법인	32.0	(50)	7.1(16)	
법인·단체	33.8	(77)	6.7(26)	
민간	35.8	(344)	7.5(123)	
가정	31.8	(129)	4.0(41)	
직장	75.0	(20)	12.4(15)	
부모협동	50.0	(2)	6.0(1)	
유치원				
국공립	34.8	(46)	12.4(16)	1.853
사립	35.8	(193)	5.3(69)	

주: 대기 경험 비율은 대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고, 대기 기간은 현재 이용 중인 기관에 입소·입학을 위해 대기한 기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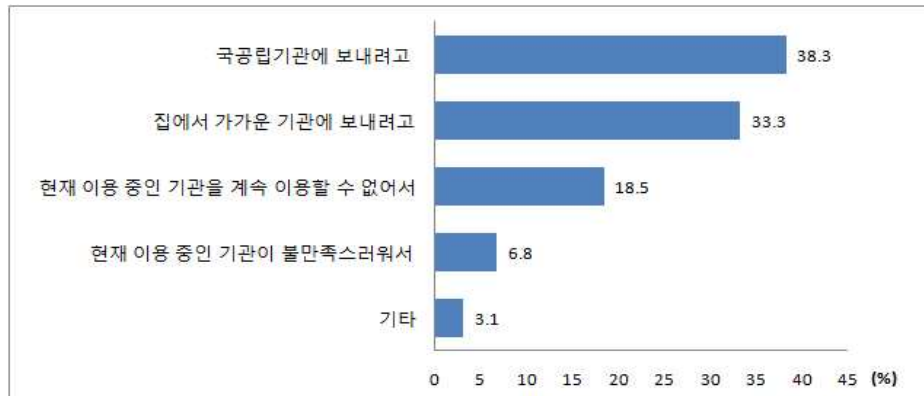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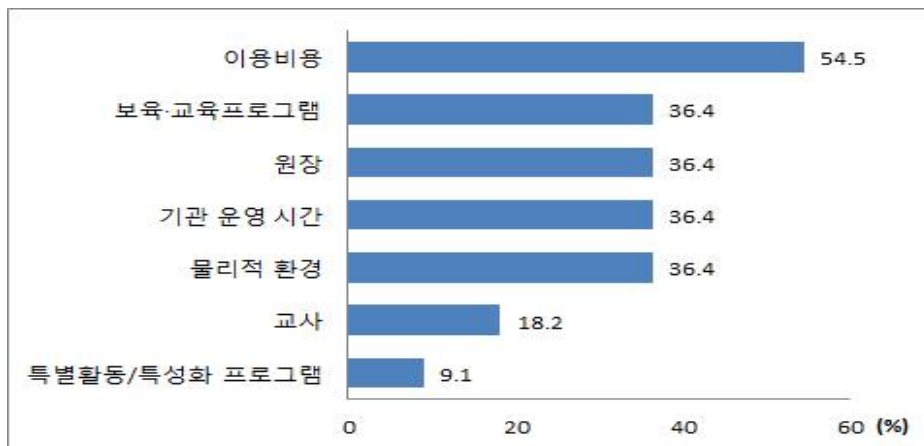
[그림 IV-1-1] 입소·입학 대기 신청기관

한편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 중인데도 타 기관에 대기 신청을 해 둔 응답자(162명)에게 해당 사유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국공립기관(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어서가 38.3%, 집에서 가까운 기관으로 옮기려고 33.3%,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을 계속 이용할 수 없어서(상급반 없음 등) 18.5%,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이 불만족스러워서 6.8% 순으로 조사되었다(그림 IV

-1-2 참조). 이들 응답 중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내용은 '이용 비용이 비싸서'였고, 다음으로는 보육·교육프로그램, 원장, 기관 운영시간, 물리적 환경 순으로 지적되었다(그림 IV-1-3 참조).



[그림 IV-1-2] 기관 이용 부모의 타 기관 대기 사유



[그림 IV-1-3] 타 기관에 대기 신청 중인 경우 현재 이용기관의 불만족 내용

나) 기관 이용 시기 및 적절성 인식

맞벌이 가구의 자녀가 최초로 기관을 이용한 시기를 조사한 결과, 0~5세 전체 평균 연령은 약 21개월이었으며, 0세아인 경우 해당 연령은 4.3개월로 나타났다.

다(표 IV-1-6 참조). 이는 근로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여 시간제 근로가구인 경우는 해당 시기가 23개월로 전일제 근로가구에 비해 약 3개월 늦고, 어머니가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는 약 22개월로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약 2개월 정도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7 참조).

〈표 IV-1-6〉 기관 최초 이용 시기

단위: 개월(명)

자녀 연령	영유아 구분	전체(수)
0세 4.3(40)	영아 12.7(339)	20.9(1,039)
1세 9.9(113)	유아 24.8(700)	
2세 15.9(186)		
3세 19.6(229)		
4세 25.9(228)		
5세 28.6(243)		
t/F 72.802	-17.932	

주: 각 연령별 평균임.

*** $p < .001$

〈표 IV-1-7〉 근로 형태별 기관 최초 이용 시기

단위: 개월(명)

가구 근로 형태	본인 근로 형태	근무 형태	전체
전일제+전일제 20.2(812)	전일제 20.6(870)	일반근무 20.7(900)	20.9(1,039)
전일제+시간제 23.4(227)	시간제 22.4(169)	교대근무 21.9(61)	
		야간근무 22.2(78)	
t/F -3.254	-1.572(1028)	0.638(1029)	

*** $p < .001$

한편 적절한 기관 이용 시기와 관련하여 해당 자녀 연령이 0세아와 1세아의 경우는 '너무 이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2.5%, 75.2%에 달하고, 2세아의 경우도 60%선을 육박한다. 이는 0세아와 1세아의 기관 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르다고 인식하며, 해당 인식은 3세아를 기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짐을 보여준다. 막내 자녀가 기관을 최초로 이용한 시기가 '너무 이르다'고 응답한 경우 당시 희망했던 양육 방식은 부모의 직접 돌봄이 80.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24.2%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내보육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한 것으로, 특히 영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선택권 강화에 보다 주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표 IV-1-8〉 최초 기관 이용 시기의 적절성 인식

단위: 개월, %(명)

최초 이용시 자녀 연령	너무 이르다	적절하다	너무 늦다	잘 모르겠다	계(수)
0세	72.5	25.0	-	2.5	100.0(40)
1세	75.2	20.4	1.8	2.7	100.0(113)
2세	60.2	33.9	0.5	5.4	100.0(186)
3세	53.3	41.5	0.9	4.4	100.0(229)
4세	43.9	50.0	0.9	5.3	100.0(228)
5세	45.3	48.6	1.2	4.9	100.0(243)

〈표 IV-1-9〉 기관 최초 이용 시기의 희망 양육 방식

단위: %, (명)

구분	부모 직접돌봄	조부모/친인척 돌봄	비혈연 대리양육자	기타	(수)
전체	80.3	24.2	3.0	0.4	(558)
최초 기관이용시 자녀 연령					
0세	80.8	21.5	3.1	.4	(260)
1세	76.6	26.9	4.1	-	(197)
2세	81.8	29.9	1.3	1.3	(77)
3세	100.0	15.0	-	-	(20)
4세	100.0	-	-	-	(4)
5세	-	-	-	-	
영유아 구분					
영아	79.4	24.7	3.2	0.4	(534)
유아	100.0	12.5	-	-	(24)

주: 해당 응답은 자녀가 최초로 기관을 이용한 시기가 '너무 이르다'라고 응답한 경우 당시 희망하는 양육 방식임.
다중응답 결과임.

다) 이용 기관 유형

현재 막내 자녀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 유형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의 이용 비율이 33.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사립유치원 18.6%, 국공립어린이집 16.8%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로 0, 1, 2세아의 경우는 민간어린이집 다음으로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영아의 경우 가정어린이집 위주로 이용됨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3세 부터는 유치원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여 5세에 이르면 해당 비율이 46.9%에 이른다.

〈표 IV-1-10〉 이용 기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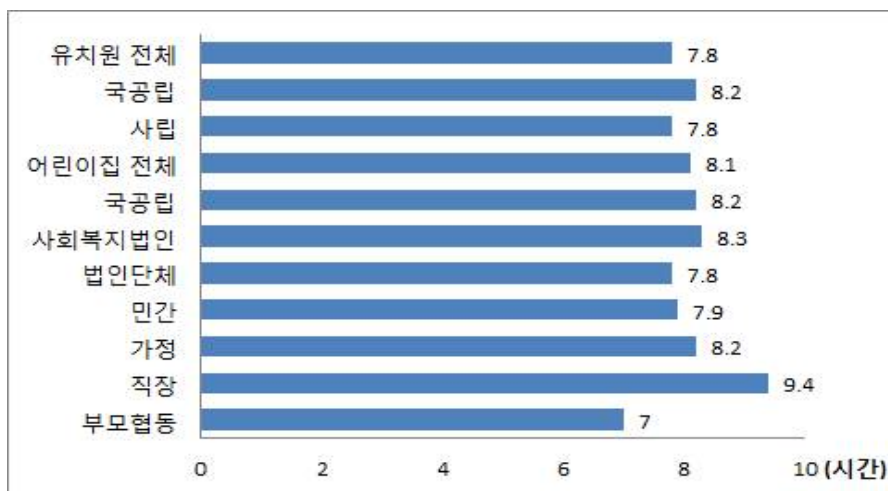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모름	계(수)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국/공립	사립		
전체	16.8	4.8	7.4	33.1	12.4	1.9	0.2	4.4	18.6	0.3	100.0(1,039)
자녀 연령											
0세	10.0	-	10.0	37.5	30.0	-	-	-	10.0	2.5	100.0(40)
1세	10.6	8.0	4.4	36.3	36.3	2.7	-	-	0.9	0.9	100.0(113)
2세	16.1	3.8	5.9	47.3	22.0	2.7	-	0.5	1.6	-	100.0(186)
3세	17.5	4.4	9.2	38.0	12.2	2.6	0.4	0.9	14.8	-	100.0(229)
4세	18.4	3.5	7.9	32.0	1.3	1.3	-	7.9	27.2	0.4	100.0(228)
5세	19.3	6.6	7.4	16.5	1.6	1.2	0.4	10.3	36.6	-	100.0(243)
$\chi^2(df)$	334.045***										

** $p < .01$, *** $p < .001$

라) 이용시간

평일 총 기관 이용 시간은 평균 8시간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자가 유사하였다. 본 조사대상 가구의 출퇴근 소요 시간은 평균 9시간 32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현재 기관 이용 시간은 근로시간보다 1시간 반 이상 짧은 셈이다.



[그림 IV-1-4] 이용 기관유형별 총 이용시간

어린이집 설립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약 9시간 20분으로 가장 길어 실제 근로시간에 가장 부합하였고, 부모협동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7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유치원의 경우는 국공립유치원 이용 부모가 약 8시간 10분으로 사립유치원 이용 부모 보다 약 20분 정도 길게 나타났다(그림 IV-1-4 참조).

등원 시각과 하원 시각의 경우는 각각 평균 오전 8시 36분과 오후 4시 24분으로, 실제 집에서 출발하는 평균 시각인 오전 7시 48분과 집에 도착하는 평균 시각인 오후 6시 24분과는 간극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 이용자의 등원 시각이 상대적으로 가장 빠르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이용자는 오전 10시 이후 등원시키는 비율이 10% 선을 넘는다. 국공립유치원 이용 부모는 오전 8~9시 사이에 등원시키는 비율이 58.7%로 가장 높은 반면,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오전 9~10시 사이에 등원시키는 비율이 5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1-11〉 이용 기관 유형별 평일 등원 시각

단위: %(명), 시

구분	오전 7시-8시 이전	오전 8시-9시 이전	오전 9시-10시 이전	오전 10시 이후	계(수)	평균 시각
전체	4.8	40.5	47.2	7.5	100.0(1,039)	8.6
기관						
어린이집	5.8	39.5	45.8	8.9	100.0(797)	8.6
유치원	1.7	43.9	51.5	2.9	100.0(239)	8.6
어린이집						
국공립	8.0	39.4	46.3	6.3	100.0(175)	8.5
사회복지법인	-	48.0	48.0	4.0	100.0(50)	8.6
법인·단체	3.9	36.4	50.6	9.1	100.0(77)	8.7
민간	5.5	35.8	48.5	10.2	100.0(344)	8.7
가정	6.2	45.0	36.4	12.4	100.0(129)	8.6
직장	10.0	65.0	25.0	-	100.0(20)	8.2
부모협동	-	-	100.0	-	100.0(2)	9.0
유치원						
국공립	-	58.7	41.3	-	100.0(46)	8.4
사립	2.1	40.4	53.9	3.6	100.0(193)	8.6

또한 평일 하원 시각은 전반적으로 오후 5~6시 하원 비율이 26.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오후 4~5시 사이, 오후 6~7시 사이가 각각 21.7%, 20.9% 순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 어린이집 이용자는 오후 4~5시, 오후 5~6시, 오후 6~7시

하원 비율이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 유치원 이용 부모는 오후 5~6시 하원 비율이 높고(31.8%), 오후 8시 이전에는 모두 하원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후 7시 이후 하원 비율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6.0%,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10%선으로 높게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국공립 기관 이용 부모의 하원 시각은 사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경향을 보인다.

〈표 IV-1-12〉 이용 기관 유형별 평일 하원 시각

단위: %(명), 시

구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4시 이전	오후 4-5시 이전	오후 5-6시 이전	오후 6-7시 이전	오후 7-8시 이전	오후 8-9시 이전	오후 9시 이후	계	평균 시각
전체	7.8	15.8	21.7	26.3	20.9	6.5	0.9	0.2	100.0(1,039)	16.4
기관										
어린이집	7.3	15.1	22.5	24.7	21.5	7.7	1.1	0.3	100.0(797)	16.5
유치원	9.6	18.0	19.2	31.8	18.4	2.9	-	-	100.0(239)	16.3
어린이집										
국공립	6.9	10.9	24.6	26.9	23.4	5.7	1.1	0.6	100.0(175)	16.6
사회복지법인	-	18.0	20.0	30.0	16.0	16.0	-	-	100.0(50)	16.9
법인·단체	6.5	18.2	23.4	28.6	15.6	7.8	-	-	100.0(77)	16.4
민간	7.8	18.3	24.4	21.8	18.0	7.6	1.7	0.3	100.0(344)	16.3
가정	10.1	10.9	18.6	23.3	29.5	7.0	0.8	-	100.0(129)	16.5
직장	5.0	-	-	35.0	50.0	10.0	-	-	100.0(20)	17.5
부모협동	-	50.0	-	50.0	-	-	-	-	100.0(2)	16.0
유치원										
국공립	8.7	10.9	17.4	41.3	17.4	4.3	-	-	100.0(46)	16.6
사립	9.8	19.7	19.7	29.5	18.7	2.6	-	-	100.0(193)	16.3

한편 위의 기관 이용 시간이 근로시간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취업모의 퇴근 시각 이전 자녀의 기관 하원 현황을 조사하였다. 우선 본인의 퇴근 시각 이후에 자녀를 하원시킨다고 응답한 비율은 18.2%에 불과하였다. 해당 비율은 특히 시간제 근로자가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높고, 일반근무자가 교대근무나 야간근무자보다 높았다. 이는 전일제 근로자, 교대근무, 야간근무자는 기관 운영시간이 근로시간과 부합하지 않아 양육 시에 고충이 있음을 암시한다.

본인의 퇴근 시각 이전에 하원시키는 주된 이유는 ‘집에 돌볼 사람이 있어서’(22.8%), ‘남아 있는 아이가 별로 없어서’(20.4%)로 나타났다. 특히 전일제 근로자이거나 야간근무자인 경우는 집에 돌볼 사람이 있어서 퇴근 시각 이전에 하원시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 밖에도 원장 또는 교사의 눈치가 보

여서 퇴근 시각 이전에 하원을 시킨다고 응답한 비율도 7.4%로 나타난다.

〈표 IV-1-13〉 퇴근 시각 이전 하원 비율 및 해당 사유

단위: %(명)

구분	집에 돌볼 사람이 있어서	남아 있는 아이가 별로 없어서	장시간 기관 이용을 원치 않아서	아이가 힘들어 해서	원장 또는 교사의 눈치가 보여서	타 시설 기관에 보내려고	기타	퇴근 시각보다 빨리 하원 시키지 않음	계(수)
전체	22.8	20.4	12.5	11.1	7.4	5.0	2.6	18.2	100.0(1,039)
가구 근로 형태									
전일제+전일제	25.1	19.5	11.5	10.5	8.1	4.9	3.0	17.5	100.0(812)
전일제+시간제	14.5	23.8	16.3	13.2	4.8	5.3	1.3	20.7	100.0(227)
본인 근로 형태									
전일제	24.3	19.7	11.6	10.8	7.8	5.2	3.0	17.7	100.0(870)
시간제	15.4	24.3	17.2	12.4	5.3	4.1	0.6	20.7	100.0(169)
근무 형태									
일반근무	22.8	20.6	12.6	11.1	6.7	4.9	2.9	18.6	100.0(900)
교대근무	18.0	16.4	18.0	16.4	9.8	4.9	-	16.4	100.0(61)
야간근무	26.9	21.8	7.7	6.4	14.1	6.4	1.3	15.4	100.0(78)

마) 시간연장정보육 이용 실태

시간연장정보육 등 시간연장정보육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이용 유경험율이 낮은 가운데, 시간연장정보육을 이용 중인 경우는 4.2%, 과거에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7.5%이었다. 휴일보육을 현재 이용 중인 비율은 1.5%, 과거에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선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14〉 시간연장정보육 이용 경험

단위: %(명)

구분	현재 이용중	과거에 이용 경험 있음	이용해본 적 없음	계(수)
시간연장보육	4.2	17.5	78.2	100.0(1,039)
야간보육	1.0	4.6	94.4	100.0(1,039)
24시간보육	0.5	2.5	97.0	100.0(1,039)
휴일보육	1.5	10.1	88.4	100.0(1,039)

오후 7시 30분~12시까지 이용하는 시간연장보육의 경우는 매일 이용하는 부

모가 약 30%선이며, 1회 평균 이용 시간은 약 2시간이었다. 또한 오후 7시 30분~익일 오전 7시 30분까지의 야간보육은 주 1회 또는 주 2~3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약 3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전 7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 보육하는 24시간 보육과 휴일보육은 주로 월 1회 또는 2회 이용하며, 평균 이용시간은 각각 3시간 42분과 5시간 48분으로 나타난다.

각 서비스별 이용 만족도는 시간연장보육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외 서비스는 '보통'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IV-1-15〉 시간연장형보육 이용 현황

단위: %, 시간, 점, (명)

구분	이용 빈도					이용 시간	이용 만족도	(수)
	주5회	주2-3회	주1회	월2회	월1회			
시간연장보육	29.5	22.7	20.5	15.9	11.4	1.9	3.7	(44)
야간보육	10.0	30.0	30.0	10.0	20.0	2.8	3.3	(10)
24시간보육	-	-	20.0	20.0	60.0	3.7	3.0	(5)
휴일보육	-	6.3	25.0	18.8	50.0	5.8	3.1	(16)

주: 이용시간은 1회 평균 이용시간을 산출한 결과임.

이용만족도는 '매우불만족' 1점~'매우만족' 5점으로 평정하여 산출한 결과임.

〈표 IV-1-16〉 시간연장형보육 이용 중단 사유

단위: %(명)

구분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직접양육이 가능해서	20.3(37)	8.3(4)	11.5(3)	16.2(17)
가족이 아이를 돌봐줄 수 있어서	13.2(24)	14.6(7)	3.8(1)	16.2(17)
아이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18.1(33)	22.9(13)	11.5(3)	9.5(10)
이용 아동이 적어서	1.1(2)	2.1(1)	-	6.7(7)
기관이 신뢰가 가지 않아서	0.5(1)	2.1(1)	3.8(1)	1.9(2)
원장 및 교사 눈치가 보여서	3.8(7)	-	3.8(1)	5.7(6)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어서	9.9(18)	4.2(2)	-	4.8(5)
비용 부담 때문에	2.2(4)	2.1(1)	3.8(1)	2.9(3)
(수)	(182)	(48)	(26)	(105)

한편 과거에 시간연장형보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직접 또는 가족이 양육하는 것이 가능해서가 주요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아이에게 부담이 되거나 이용하는 아동이 적어서였다(표 IV-1-16 참조). 그 밖에도 기관에 대한 불신이나 원장 및 교사의 눈치가 보여서 또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어서 등 비자발적인 이유도 지적되

었다. 이들 사유는 시간연장정보육을 전혀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지적된다(표 IV-1-17 참조).

〈표 IV-1-17〉 시간연장정보육 미이용 사유

단위: %(명)

구분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가족이 아이를 돌봐줘서	20.3(165)	22.6(222)	18.2(461)	20.6(189)
본인이 양육이 가능해서	13.0(106)	11.1(109)	9.2(93)	20.5(188)
아이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9.0(73)	7.6(75)	6.1(61)	3.4(31)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어서	7.6(62)	7.1(70)	7.1(72)	7.6(76)
원장 및 교사 눈치가 보여서	2.5(20)	0.3(3)	0.3(3)	1.1(10)
이용 아동이 적어서	2.0(16)	0.7(7)	0.3(3)	0.7(6)
기관이 신뢰가 가지 않아서	1.2(10)	2.8(27)	2.5(25)	0.9(8)
비용 부담 때문에	0.9(7)	0.3(3)	0.6(6)	0.4(4)
제도에 대해 몰라서	2.5(20)	2.7(27)	2.0(20)	1.7(16)
(수)	(813)	(981)	(1,008)	(918)

바) 이용 만족도

(1) 현재 이용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의 시설 및 환경 등에 대해 5점 척도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방학 운영 등 운영 일수에 대해 3.2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부모참여, 이용비용, 긴급보육 대응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표 IV-1-18〉 기관보육·교육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시설 및 환경	0.3	3.6	29.0	49.4	17.7	100.0(1,034)	3.8
교육·보육내용(프로그램)	0.6	2.5	27.0	49.7	20.2	100.0(1,032)	3.9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1.0	4.0	31.2	45.6	18.2	100.0(1,028)	3.8
교사의 전문성	0.9	6.4	34.0	41.1	17.6	100.0(1,032)	3.7
부모참여(부모교육 등)	1.6	5.6	43.2	37.3	12.4	100.0(1,027)	3.5
급·간식	0.5	6.1	34.4	40.4	18.6	100.0(1,027)	3.7
이용비용(보육료, 교육비 등)	3.2	13.1	34.6	30.2	18.9	100.0(1,027)	3.5
등원 시각	0.8	4.5	26.2	49.9	18.7	100.0(1,028)	3.8
하원 시각	1.4	8.5	27.8	44.6	17.7	100.0(1,028)	3.7
긴급보육 요청 시 대응 정도	2.6	9.6	39.5	34.9	13.4	100.0(998)	3.5
운영 일수(방학 운영 등)	2.7	13.8	35.3	33.5	14.7	100.0(1,029)	3.4

주: 이용만족도는 '매우불만족' 1점~ '매우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이용 중인 기관 유형에 따라 만족도를 비교하면, 어린이집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모협동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서는 이용비용과 운영 일수, 가정어린이집에서는 부모참여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표 IV-1-19〉 이용 기관 유형별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국공립	사회 복지	법인· 단체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	국/공립	사립
시설 및 환경	4.0	3.8	3.8	3.7	3.7	4.0	4.5	4.2	3.9
교육·보육내용(프로그램)	4.0	3.8	3.9	3.7	3.7	3.9	4.0	4.0	4.0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3.9	3.9	3.8	3.6	3.6	3.7	4.5	3.8	3.9
교사의 전문성	3.9	3.8	3.6	3.5	3.5	3.9	4.0	4.0	3.8
부모참여(부모교육 등)	3.7	3.8	3.5	3.4	3.2	3.7	4.5	3.7	3.7
급·간식	4.0	3.8	3.6	3.6	3.6	4.2	5.0	4.0	3.7
이용비용(보육료, 교육비 등)	4.0	3.7	3.5	3.2	3.5	4.3	4.0	4.4	3.1
등원 시각	4.1	3.9	3.7	3.6	3.7	4.2	3.5	4.1	3.8
하원 시각	4.0	3.9	3.7	3.5	3.6	4.1	4.0	3.9	3.7
긴급보육 요청 시 대응 정도	3.6	3.8	3.4	3.3	3.4	3.7	4.0	3.7	3.4
운영 일수(방학 운영 등)	3.8	3.8	3.4	3.3	3.3	3.9	4.0	3.8	3.2
전체	3.9	3.8	3.6	3.5	3.5	4.0	4.2	4.0	3.7
(수)	(173)	(49)	(76)	(343)	(129)	(20)	(2)	(46)	(193)

한편 불만족 내용으로는 다양한 교육·보육프로그램 부족, 과도한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이용 비용, 부모 여건이 고려되지 않는 등하원 시각, 갑작스런 휴무 등이 지적되었다.

〈표 IV-1-20〉 이용 기관 불만족내용

구분	불만족내용
시설 및 환경	- 시설·환경이 좋지 않다
교육·보육내용(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질/전문성/다양성/체계화 미비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질/전문성/다양성/체계화 미비 - 별도의 교재/교구/장난감 부족
교사의 전문성	- 교사의 관심/전문성/친절/신뢰도/사명감 부족
부모참여(부모교육 등)	- 주말,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는 등 부모의 여건, 생활패턴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아서

(표 IV-1-20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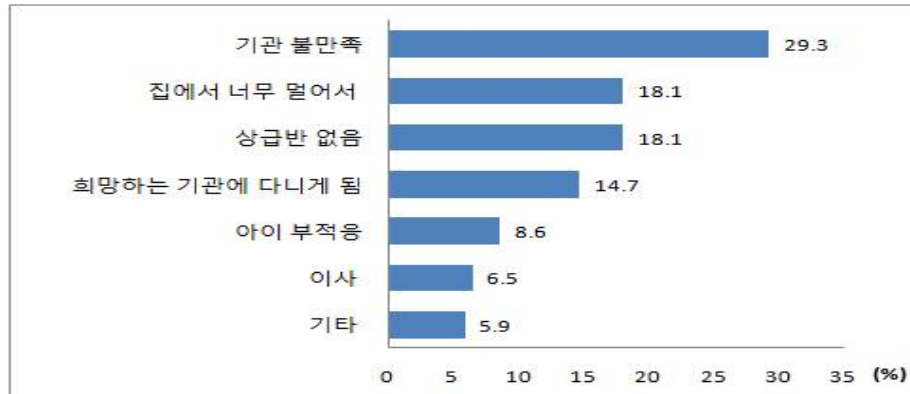
구분	불만족내용
급·간식	- 급간식 영양/질/메뉴/맛/ 배급시간 불만족
이용비용(보육료, 교육비 등)	- 이용비용이 비싸다
등원 시각	- 등원 시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 통학버스 운행시간이 다양하지 않다/운행하지 않는다
하원 시각	- 하원 시각이 빠르다/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 통학버스 운행시간이 다양하지 않다/운행하지 않는다
긴급보육 요청 시 대응 정도	- 프로그램 요청/신청을 불쾌해한다/받지 않는다 - 긴급교육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고 방학이나 휴일에 요청 불가
운영 일수(방학 운영 등)	- 갑작스런 휴무

(2) 기관 이용 중단 경험 및 사유

기관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기관 이용 중단 경험 및 해당 사유를 따져보았다. 중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0.1%이며, 중단 사유로는 기관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주요하고 (29.3%), 그 다음으로 '집에서 너무 멀어서'와 '상급반 없음'이 공히 18.1%, '희망하는 기관에 다닐 수 있게 되어서' 14.7%, '아이 부적응' 8.6% 순으로 조사되었다(그림 IV-1-4 참조).

이용 중단 사유가 기관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 해당 내용으로는 교직원에 대한 불만이 지배적이어서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44.1%, 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34.2%에 달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보육·교육프로그램과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각각 28.8%, 22.5%로 나타났고, 기관 운영시간과 근로시간이 맞지 많아서 기관 이용을 변경한 경우도 21.6%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이용비용이 비싸거나(19.8%), 특별활동/특성화활동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18.9%) 등도 기관 변경 사유로 지적되었다.

이들 결과를 종합하면, 기관보육에 대한 불만족은 운영 시간 및 운영 일수, 교사의 전문성, 프로그램, 접근성, 이용비용 전반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1-5] 기관 이용 중단 사유

3) 가정내보육(개인양육지원서비스)

맞벌이 가구의 가정내보육 즉 조부모 돌봄 등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 이용 사유, 주양육자, 그리고 이용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가) 서비스 이용 사유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 이용 주된 사유는 '기관 이용후 돌봄 사람이 필요해서'로 해당 비율은 약 60%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가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어려울까봐 36.4% 원하는 시간에 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서 20.3%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는 자녀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여, 0세아와 1세아의 경우는 '자녀가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까봐'라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해당 비율이 각각 69.1%와 61.4%에 달하며, 2세아의 경우도 38%로 평균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0~2세아의 경우는 기관보육보다는 가정내 양육이 선호됨을 말해준다. 그 밖에도 0세아와 1세아의 경우 희망하는 기관에 입소하지 못해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현행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의 적절성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IV-1-21〉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사유

단위: %(명)

구분	기관 이용 후 돌볼 사람이 필요해서	자녀가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까봐	원하는 시간에 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서	이용 비용이 부담 되어서	자녀가 원해서	이용 희망 기관에 대기자가 많아서	기타	(수)
전체	59.8	36.4	20.3	9.4	7.7	7.0	5.6	(858)
자녀 연령								
0세	33.0	69.1	26.6	13.8	3.2	12.8	6.4	(94)
1세	44.8	61.4	25.5	6.2	2.8	13.1	6.2	(145)
2세	62.0	38.0	20.9	8.6	4.9	7.4	3.7	(163)
3세	69.8	24.9	13.6	10.1	9.5	5.3	6.5	(169)
4세	73.9	18.8	19.6	12.3	10.1	2.2	5.8	(138)
5세	64.4	18.8	18.8	7.4	14.1	3.4	5.4	(149)
영유아 구분								
영아	49.0	53.7	23.9	9.0	3.7	10.7	5.2	(402)
유아	69.3	21.1	17.1	9.9	11.2	3.7	5.9	(456)

주: 다중응답 결과임.

〈표 IV-1-22〉 비혈연 대리양육자 구인 시 어려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어려운 편임	매우 어려움	계(수)	평균
전체	4.1	18.4	61.2	16.3	100.0(49)	2.9
영유아 구분						
영아	-	5.0	65.0	30.0	100.0(20)	3.3
유아	6.9	27.6	58.6	6.9	100.0(29)	2.7

주: 어려움 정도는 '전혀어렵지않음' 1점~'매우어려움'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다음으로 대리양육자가 비혈연인 경우에는 구인 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영아를 둔 부모의 경우 해당 비율은 9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영아를 둔 부모의 다양한 고충을 말해주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조부모와 비혈연 양육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IV-1-23 참조).

한편 구인 시 구체적인 애로사항으로는 공통적으로 구인 시스템의 미비와 대리양육자에 대한 신뢰도 우려 등이 언급되었고, 아이돌보미의 경우는 특히 대기기간이 길고 사전 예약이 어려운 점 등이 지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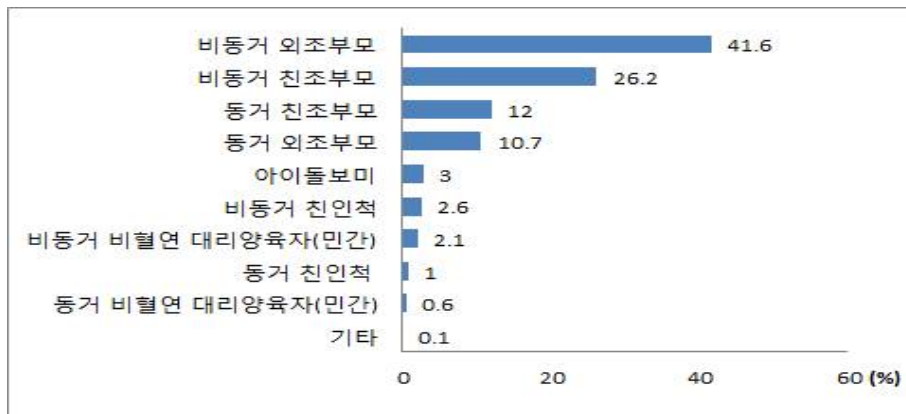
〈표 IV-1-23〉 비혈연 대리양육자 구인 시 애로사항

단위: (명)

구분	애로사항	수
아이돌보미	- 믿을만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 대리양육자 구인에 대한 인프라·체계 확립이 안되어 있다 - 대기시간이 길다/오래전에 사전예약을 해야한다 - 비용이 많이 든다	(18)
비동거 비혈연 대리양육자(민간)	- 믿을만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 대리양육자의 인성이 자녀와 성향이 맞는지 확인이 어렵다 - 대리양육자 구인에 대한 인프라·체계 확립이 안되어 있다 - 비용이 많이 든다	(15)
동거 비혈연 대리양육자(민간)	- 믿을만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 대리양육자의 인성이 자녀와 성향이 맞는지 확인이 어렵다 - 대리양육자 구인에 대한 인프라·체계 확립이 안되어 있다	(5)

나) 대리양육자

혈연 또는 비혈연 대리양육자를 이용 중인 취업모를 대상으로 자녀를 가장 많이 돌봐주는 대리양육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한 결과, 조부모가 압도적으로 많아 비동거 외조부모 41.6%, 비동거 친조부모 26.2%, 동거 친조부모와 동거 외조부모로 각각 12.0%, 10.7%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V-1-6]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 주 대리양육자

이처럼 높은 조부모에 대한 의존성은 현행 기관보육이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 지원 인력

이 부재할 경우 경력단절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다) 이용 만족도

비혈연 대리양육자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활동(돌봄서비스)내용, 부모와의 소통, 이용시간, 이용 일수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하는 편이나,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비혈연 대리양육자의 이용 만족도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 주된 사유로는 돌보미의 전문성 신뢰성 부족과 과도한 이용비용이 지적되었다(표 IV-1-25). 한편 혈연 또는 비혈연 대리양육자가 갑자기 못 오게 되는 상황의 발생 빈도를 조사한 결과, 가끔 있거나 자주 있는 경우가 각각 37.1%, 3.0%에 달하여, 긴급보육 시 고충이 예상된다(그림 IV-1-7).

〈표 IV-1-24〉 비혈연 대리양육자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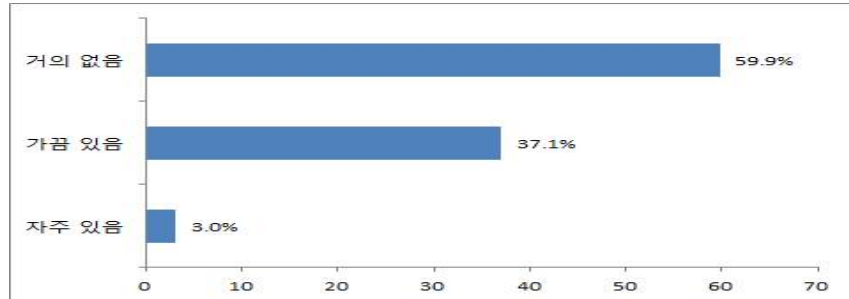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활동(돌봄서비스)내용	2.0	6.1	34.7	44.9	12.2	100.0(49)	3.6
부모와의 소통	8.2	8.2	38.8	16.3	55.1	100.0(49)	3.6
이용시간	4.1	8.2	32.7	34.7	20.4	100.0(49)	3.6
이용 일수	4.1	6.1	40.8	28.6	20.4	100.0(49)	3.6
물리적 환경	4.2	4.2	43.8	41.7	6.3	100.0(48)	3.4
돌봄 인력의 전문성	4.1	12.2	49.0	18.4	16.3	100.0(49)	3.3
긴급보육 요청 시 대응 정도	4.1	14.3	38.8	34.7	8.2	100.0(49)	3.3
이용비용	10.2	22.4	34.7	20.4	12.2	100.0(49)	3.0

주: 만족도 평균점수는 '매우불만족' 1점~'매우만족' 5점으로 평정하여 산출한 결과임.

〈표 IV-1-25〉 비혈연 대리양육자 불만족내용

단위: (명)

구분	(수)
돌보미의 전문성/신뢰성 부족	(17)
이용비용이 비싸다	(17)
시간조정의 어려움	(9)
돌보미의 개인 집에서 양육하는 등 환경요인에 대한 신뢰가 어려움	(3)
보육 신청 후 대기시간이 너무 김	(1)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	(1)



[그림 IV-1-7] 혈연/비혈연 대리양육자가 갑자기 못 오는 빈도

4)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

맞벌이 가구의 부모교육 등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의 필요도와 이용 실태는 다음과 같다.

가)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 필요도

기관보육·교육 등 보육지원 이외에 체험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의 필요도를 조사하였다.

자녀 양육 시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하여 취업모들은 모든 서비스 항목에 대해 대체로 높은 필요도를 나타냈다. 특히 아동발달검사, (어린이)도서관 대여, 아이돌봄서비스, 육아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나므로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강화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표 IV-1-26〉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 필요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수)	평균
(가족)체험프로그램	0.7	8.0	59.3	32.0	100.0(1,147)	3.2
부모교육	0.9	10.9	58.0	30.2	100.0(1,169)	3.2
부모상담	0.6	12.1	56.6	30.7	100.0(1,171)	3.2
육아정보제공	0.5	7.2	53.2	39.0	100.0(1,178)	3.3
아동발달검사	0.4	5.2	45.8	48.6	100.0(1,178)	3.4
품앗이 육아	1.5	24.2	49.0	25.3	100.0(1,122)	3.0
일시보육	2.0	20.1	45.1	32.8	100.0(1,132)	3.1
장난감 대여	1.9	14.3	47.8	36.0	100.0(1,182)	3.2

(표 IV-1-26 계속)

구분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수)	평균
도서 대여	0.9	8.4	46.4	44.2	100.0(1,191)	3.3
아이돌봄서비스	2.0	11.9	43.0	43.1	100.0(1,166)	3.3

주: 평균은 각 서비스에 대해 '전혀필요하지않음' 1점~'매우필요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지도/이용 실태

영유아 대상 육아지원사업의 대표적인 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지도와 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높은 필요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는 대체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도서와 장난감 대여 서비스에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각각 51.6%, 49.6%인 반면, 품앗이 육아(공동육아나눔터)와 일시보육의 인지도는 각각 15.5%, 16.8%에 불과하였다. 근로 형태별로는 전반적으로 시간제에 비해 전일제 근로자의 인지도가 낮으므로 이들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표 IV-1-27〉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지원사업 인지도

단위: %(명)

구분	가구 근로 형태		본인 근로 형태		전체
	전일제+전일제	전일제+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놀이)체험프로그램	33.6	41.4	33.6	44.2	35.2
부모교육	32.8	39.1	32.7	42.1	34.1
부모상담	31.2	40.2	31.5	42.1	33.0
육아정보제공	35.6	46.9	36.2	47.4	37.8
아동발달·진단검사	31.8	39.1	32.3	38.9	33.3
품앗이 육아(공동육아나눔터)	15.3	16.4	14.9	18.9	15.5
일시보육	17.0	16.0	16.8	16.8	16.8
장난감 대여	48.9	52.7	48.1	58.4	49.6
어린이도서 대여	50.4	56.3	50.3	58.9	51.6
(수)	(1,015)	(256)	(1,081)	(190)	(1,271)

다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제반 서비스를 인지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놀이)체험프로그램과 아동발달·진단검사를 제외한 이외 서비스들에 대하여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빈도는 (놀이)체험프로그램의 경우는 다양한 이용 빈도를 나타내므로 해당 지역의 수요에 보다 민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발달·진단검사 서비스는 분기별 1회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운영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표 IV-1-28〉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지원사업별 이용 빈도

단위: %(명)

구분	매일	주 2-3회 이상	주1회	월2회	월1회	분기별 1회	연2회	연1회	이용 경험 없음	계(수)
(놀이)체험프로그램	1.1	3.4	8.9	7.6	15.7	9.8	5.8	7.2	40.5	100.0(447)
부모교육	0.7	0.7	3.5	3.5	6.5	11.8	7.4	9.0	57.0	100.0(433)
부모상담	0.7	0.7	1.9	4.5	6.9	9.8	9.0	8.1	58.3	100.0(420)
육아정보제공	0.4	1.2	6.7	5.8	11.4	9.1	7.5	6.7	51.1	100.0(481)
아동발달검사	0.2	0.2	1.4	2.4	9.9	15.4	11.1	12.3	47.0	100.0(423)
품앗이 육아	0.5	1.0	2.5	4.1	9.1	6.6	2.5	2.5	71.1	100.0(197)
일시보육	0.5	0.9	3.3	4.7	12.1	7.9	4.7	4.7	61.2	100.0(214)
장난감 대여	0.6	0.2	3.6	7.0	10.8	7.9	6.3	7.0	56.6	100.0(631)
도서 대여	0.5	1.1	8.2	8.1	12.7	6.9	4.0	4.6	54.1	100.0(656)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육아지원사업 이용자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특히 장난감, 도서 대여와 체험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므로 이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자녀연령별로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0세 부모의 경우 장난감과 도서 대여를 제외하면 부모상담 등 이외 부문들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 0세아를 둔 맞벌이 가구 대상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표 IV-1-29〉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지원사업별 이용 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수)
(놀이)체험프로그램	3.5	3.9	3.9	3.7	3.8	3.8	3.8(265)
부모교육	3.3	3.8	3.8	3.7	3.4	3.8	3.7(185)
부모상담	3.1	3.9	3.9	3.6	3.5	3.5	3.6(175)
육아정보제공	3.2	3.7	3.8	3.7	3.4	3.9	3.6(233)
아동발달검사	3.4	3.6	3.8	3.7	3.6	3.8	3.6(222)
품앗이 육아	3.3	3.4	4.1	3.9	3.5	3.5	3.7(57)
일시보육	3.5	3.5	3.5	3.9	3.4	4.0	3.6(83)
장난감 대여	4.1	3.9	3.7	3.8	3.9	3.8	3.8(272)
도서 대여	4.0	3.7	3.9	3.9	4.0	3.9	3.9(301)

주: 이용 만족도는 '매우불만족' 1점~'매우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각 서비스별로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매우 불만족+불만족), 구체적인 불만족 내용은 다음 <표 IV-1-30>과 같다. 프로그램의 다양성/전문성/체계성의 부

족과 강사 전문성이 부족한 점이 주로 언급되었고, 특히 일시보육과 장난감 대여 서비스의 경우는 대기자가 너무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프로그램의 질적 강화 노력과 전반적인 서비스 확충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표 IV-1-30〉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지원사업 불만족내용

구분	불만족 내용	단위: 명 (수)
(놀이)체험프로그램	- 프로그램 다양성/전문성/체계성 부족 - 강사 및 기타 서비스의 신뢰성/전문성 부족	(8)
부모교육	- 프로그램 다양성/전문성/체계성 부족 - 시간 조정이 어렵다	(6)
부모상담	- 프로그램 다양성/전문성/체계성 부족 - 시간 조정이 어렵다 - 비용이 너무 비싸다	(10)
육아정보제공	- 다양성/전문성/체계성 부족 - 시간 조정이 어렵다	(5)
아동발달검사	- 프로그램 다양성/전문성/체계성 부족 - 강사 및 기타서비스의 신뢰성/전문성 부족 - 비용이 너무 비싸다	(10)
품앗이 육아	- 서비스의 신뢰성/전문성 부족 - 시간 조정이 어렵다	(3)
일시보육	- 강사 및 기타서비스의 신뢰성/전문성 부족 - 아이의 흥미 부족 - 대기자가 너무 많다	(8)
장난감 대여	- 서비스의 신뢰성/전문성 부족 - 대기자가 너무 많다	(11)
도서 대여	- 서비스의 신뢰성/전문성 부족-	(6)

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외 기관 이용 실태

지역내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외에서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에 불과하였다. 근로 특성별로는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제 근로자에 비해, 일반근무자가 교대 또는 야간근무자에 비해, 읍면지역 거주자가 도시 지역 거주자에 비해 이용 경험이 낮은 경향을 보여 해당 대상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표 IV-1-31〉 육아종합지원센터 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6.3	93.7	100.0(1,271)
가구 근로 형태			
전일제+전일제	5.8	94.2	100.0(1,015)
전일제+시간제	8.2	91.8	100.0(256)
본인 근로 형태			
전일제	6.0	94.0	100.0(1,081)
시간제	7.9	92.1	100.0(190)
근무 형태			
일반근무	5.7	94.3	100.0(1,085)
교대근무	12.7	87.3	100.0(71)
야간근무	7.8	92.2	100.0(115)
지역규모			
대도시	6.0	94.0	100.0(750)
중소도시	7.1	92.9	100.0(435)
읍면지역	4.7	95.3	100.0(86)

다음으로 해당 서비스 기관을 살펴보면, (놀이)체험프로그램, 부모교육, 부모상담, 일시보육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장난감 대여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품앗이 육아, 도서 대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용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도 아동발달검사와 육아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률은 어린이집·유치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표 IV-1-32〉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별 이용 기관

단위: %(명)

구분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주민 자치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계(수)
(가족)체험프로그램	17.4	13.2	19.4	21.5	26.4	2.1	100.0(144)
부모교육	23.9	12.7	17.2	9.7	35.1	1.5	100.0(134)
부모상담	19.5	15.3	13.6	9.3	41.5	0.8	100.0(118)
육아정보제공	31.0	8.2	10.9	17.4	31.5	1.1	100.0(184)
아동발달검사	29.6	9.5	6.5	12.6	26.6	15.1	100.0(199)
품앗이 육아 (공동육아나눔터)	11.1	19.4	22.2	25.0	19.4	2.8	100.0(36)
일시보육	13.8	13.8	18.5	18.5	30.8	4.6	100.0(65)
장난감 대여	40.0	6.0	18.5	25.7	3.8	6.0	100.0(265)
(어린이)도서 대여	25.8	2.9	20.1	35.5	10.8	5.0	100.0(279)
아이돌봄서비스	21.1	20.2	14.7	21.1	16.5	6.4	100.0(109)

주: 이용률은 각 항목별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다. (돌봄)시간 지원 제도 이용 실태 및 만족도

각 제도별 이용 실태와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근무중인 직장의 임신·출산과 양육지원제도의 시행 및 이용 현황 전반을 살펴보면 다음 <표 IV-1-33>과 같다.

우선 제도 시행률은 산전후휴가제도 69.3%, 여성 육아휴직제도 56.2%, 배우자출산휴가 33.5%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직장어린이집과 수유실 설치는 각각 11.6%, 13.2%로 저조한 시행률을 보였다. 직장에서 시행중인 제도에 한하여 실제 이용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산전후휴가, 여성육아휴직제도, 유사산휴가는 높은 반면,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이용 가능성은 가장 저조한 수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실제 이용률은 산전후휴가 이용자가 79.9%, 여성 육아휴직제도 47.7%, 수유실 이용 43.5%,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41.3%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 남성 육아휴직제도 이용률은 9.6%에 불과하였다. 제도별 이용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IV-1-33> 직장내 출산·양육지원제도 시행/이용 현황

단위: %, (명), 점

구분	제도 시행 여부				이용가능성	이용경험	이용 만족도						
	시행 합	시행 안함	모름	전체 (수)	평균 (수)	있음 (수)	전체 (수)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수)
산전후휴가	69.3	21.8	8.9	(1,186)	3.9 (822)	79.9 (777)	23.3	45.9	26.4	3.7	0.6	(621)	3.9
유사산휴가	29.3	39.6	31.0	(1,186)	3.5 (348)	13.7 (271)	21.6	37.8	32.4	5.4	2.7	(37)	3.7
배우자출산휴가	33.5	45.4	21.1	(1,186)	3.0 (397)	34.7 (337)	21.4	41.9	28.2	6.8	1.7	(117)	3.7
수유실 설치	13.2	74.5	12.3	(1,186)	3.2 (157)	43.5 (138)	15.0	53.3	28.3	3.3	-	(60)	3.8
근무중 수유	15.2	64.0	20.8	(1,186)	3.3 (180)	41.3 (160)	21.2	40.9	33.3	4.5	-	(66)	3.8
여성육아휴직제도	56.2	31.4	12.4	(1,186)	3.6 (667)	47.7 (618)	30.8	40.7	23.4	3.4	1.7	(295)	4.0
남성육아휴직제도	25.2	53.1	21.7	(1,186)	2.4 (299)	9.6 (251)	20.8	45.8	29.2	4.2	-	(24)	3.8
육아근로시간단축	15.9	62.6	21.5	(1,186)	3.1 (188)	31.2 (173)	31.5	44.4	20.4	3.7	-	(54)	4.0
탄력근무	17.3	65.1	17.6	(1,186)	3.1 (205)	35.1 (191)	22.4	47.8	23.9	6.0	-	(67)	3.9

주: 이용가능성 평균 점수는 '매우낮음' 1점~'매우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이용만족도 평균 점수는 '매우불만족' 1점~'매우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이용경험 전체수는 '해당 없음'이라고 응답한 자를 제외한 수치임.

1) 직장내 임신·출산지원제도 시행률/이용률

임신과 출산 시기에 시간을 지원하는 산전후휴가제도, 유산·사산휴가제도 등 임신·출산 지원제도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우선 각 제도별 시행률을 직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살펴보면, 대체로 직장규모가 클수록 시행률이 높고, 업종에 따라서는 수유실 설치 부문에서 차이를 보여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인 경우는 시행률이 22.6%로 상대적으로 높고 도소매·숙박업인 경우 4.8%에 머물고 있다.

〈표 IV-1-34〉 직장내 임신·출산지원제도 시행률

단위: %, (명)

구분	산전후 휴가	유산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수유실 설치	근무중 수유	(수)
전체	69.3	29.3	33.5	13.2	15.2	(1,186)
직장규모						
5인미만	43.2	12.3	10.5	4.9	7.4	(162)
5-9인	54.5	16.5	15.7	9.9	11.6	(121)
10-29인	65.7	21.1	26.0	6.9	11.8	(204)
30-99인	76.3	32.4	37.8	10.1	17.6	(278)
100-299인	80.7	32.9	39.1	11.8	15.5	(161)
300인 이상	80.8	46.9	53.8	29.2	21.5	(260)
$\chi^2(df)$	102.527(10)***	125.068(10)***	146.479(10)***	85.561(10)***	34.786(10)***	
업종						
광공업	75.5	30.9	31.7	7.2	14.4	(139)
건설업	64.4	28.8	28.8	8.2	13.7	(73)
도소매 / 숙박업	64.3	11.9	21.4	4.8	7.1	(42)
전기/운수/통신/금융	76.2	39.3	44.0	22.6	13.1	(84)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70.6	29.9	35.7	16.3	18.2	(412)
$\chi^2(df)$	12.374(8)	14.677(8)	12.856(8)	23.729(8)**	11.073(8)	

주: 각 제도별로 '시행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직장내 임신·출산지원제도 즉 산전후휴가, 유산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수유실 설치, 근무중 수유시간 제공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산전후휴가제도의 경우는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제에 비해 이용 가능성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특히 휴가제도 이용이 용이하다고 인식된다(표 IV-1-35 참조). 임신·출산지원제도를 시행 중인 경우 실제 이용률은 산전후휴가제도의 경우 시간제보다 전일제와 상용직 근로자에서 높게 나타났다(표 IV-1-36 참조).

〈표 IV-1-35〉 직장내 임신·출산지원제도 실제 이용 가능성

단위: 점, 명

구분	산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수유실 설치		근무중 수유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전체	3.9	(822)	3.5	(348)	3.0	(397)	3.2	(157)	3.3	(180)
본인 근로 형태										
전일제	3.9	(743)	3.5	(321)	3.0	(371)	3.2	(141)	3.4	(168)
시간제	3.4	(79)	3.1	(27)	2.7	(26)	2.6	(16)	2.4	(12)
t	4.100	***	1.979	*	1.3779		2.322	*	2.756	
종사상 지위										
상용직	3.9	(715)	3.5	(308)	3.1	(347)	3.2	(137)	3.3	(163)
비상용직	3.5	(53)	3.5	(20)	2.7	(22)	2.5	(11)	2.3	(3)
해당없음	3.7	(54)	3.6	(20)	2.7	(28)	3.1	(9)	3.2	(14)
F	6.022	**	0.072		1.873		1.910		1.105	
직장규모										
5인미만	3.6	(70)	3.2	(20)	2.9	(17)	2.6	(8)	3.6	(12)
5-9인	3.7	(66)	3.4	(20)	2.7	(19)	3.4	(12)	2.9	(14)
10-29인	3.8	(134)	3.4	(43)	3.2	(53)	2.9	(14)	3.4	(24)
30-99인	4.0	(212)	3.6	(90)	3.2	(105)	3.1	(28)	3.4	(49)
100-299인	3.8	(130)	3.6	(53)	2.8	(63)	2.8	(19)	3.0	(25)
300인 이상	4.1	(210)	3.5	(122)	3.0	(140)	3.4	(76)	3.4	(56)
F	3.894	**	0.638		0.993		1.542		1.130	

주: 이용 가능성 평균 점수는 '매우낮음' 1점~'매우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IV-1-36〉 직장내 임신·출산지원제도 이용률

단위: %, 명

구분	산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수유실 설치		근무중 수유시간	
	이용률	(수)	이용률	(수)	이용률	(수)	이용률	(수)
전체	79.9	(777)	13.7	(271)	43.5	(138)	41.3	(160)
가구 근로 형태								
전일제+전일제	82.2	(673)	14.6	(240)	45.0	(120)	42.5	(146)
전일제+시간제	65.4	(104)	6.5	(31)	33.3	(18)	28.6	(14)
$\chi^2(df)$	15.816	(1)***	na		0.867	(1)	1.018	(1)
본인 근로 형태								
전일제	80.9	(703)	14.0	(250)	43.9	(123)	42.3	(149)
시간제	70.3	(74)	9.5	(21)	40.0	(15)	27.3	(11)
$\chi^2(df)$	4.749	(1)*	na		0.083	(1)	na	

(표 IV-1-36 계속)

구분	산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수유실 설치		근무중 수유시간	
	이용률	(수)	이용률	(수)	이용률	(수)	이용률	(수)
중사상 지위								
상용직	80.2	(677)	14.5	(241)	44.6	(121)	42.5	(146)
비상용직	66.0	(50)	-	(15)	40.0	(10)	-	(2)
해당없음	90.0	(50)	13.3	(15)	28.6	(7)	33.3	(12)
$\chi^2(df)$	9.238(2)*		na		na		na	

주: 각 제도별로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na는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 $p < .05$, *** $p < .001$

2) 직장내 양육지원제도 시행률/이용률

육아기에 자녀 돌봄시간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제도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탄력근무제도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직장규모가 클수록 시행률이 높은 가운데, 특히 300인 이상 기업의 시행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전기·운수·통신·금융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경우 육아휴직제도의 시행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IV-1-37 참조).

양육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이용 가능성을 근로자 특성과 직장 특성에 따라 비교하면, 여성 육아휴직제도는 300인 이상 규모의 직장과 도소매·숙박업/전기·운수·통신·금융업/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직종에서 이용 가능성이 높은 조사되었다(표 IV-1-38 참조).

〈표 IV-1-37〉 직장내 양육지원제도 시행률

구분	단위: %(명)				
	여성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탄력 근무	(수)
전체	56.2	25.2	15.9	17.3	(1,186)
직장규모					
5인미만	24.1	8.0	8.0	14.8	(162)
5-9인	34.7	9.9	8.3	14.0	(121)
10-29인	47.5	18.1	11.8	12.7	(204)
30-99인	64.0	30.9	18.7	13.3	(278)
100-299인	67.1	23.6	15.5	14.3	(161)
300인 이상	78.1	43.5	24.6	30.0	(260)
$\chi^2(df)$	173.949(10)***	115.786(10)***	38.793(10)***	41.874(10)***	

(표 IV-1-37 계속)

구분	여성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탄력 근무	(수)
업종					
광공업	54.7	21.6	10.1	12.9	(139)
건설업	46.6	19.2	13.7	16.4	(73)
도소매 /숙박업	40.5	16.7	11.9	11.9	(42)
전기/운수/통신/금융	63.1	28.6	17.9	20.2	(84)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61.7	29.1	19.9	21.4	(412)
$\chi^2(df)$	19.769(8)*	15.741(8)*	12.711(8)	10.174(8)	

주: 각 제도별로 '시행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 $p < .05$, *** $p < .001$

〈표 IV-1-38〉 직장내 양육지원제도 실제 이용 가능성

단위: 점, 명

구분	여성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탄력 근무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전체	3.6	(667)	2.4	(299)	3.1	(188)	3.1	(205)
직장규모								
5인미만	3.4	(39)	2.2	(13)	3.4	(13)	3.3	(24)
5-9인	3.4	(42)	2.3	(12)	2.7	(10)	3.3	(17)
10-29인	3.3	(97)	2.5	(37)	3.3	(24)	3.2	(26)
30-99인	3.6	(178)	2.6	(86)	3.3	(52)	3.0	(37)
100-299인	3.4	(108)	2.1	(38)	2.9	(25)	3.1	(23)
300인 이상	3.7	(203)	2.4	(113)	2.9	(64)	2.9	(78)
F	2.575*		1.156		1.597		0.662	
업종								
광공업	3.2	(76)	2.0	(30)	3.1	(14)	3.0	(18)
건설업	3.4	(34)	2.1	(14)	3.3	(10)	3.3	(12)
도소매 /숙박업	3.7	(17)	2.4	(7)	3.4	(5)	3.6	(5)
전기/운수/통신/금융	3.7	(53)	2.1	(24)	3.1	(15)	2.8	(17)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3.7	(254)	2.7	(120)	3.2	(82)	3.0	(88)
F	2.614*		2.845*		0.154		0.705	

주: 이용가능성 평균 점수는 '매우낮음' 1점~'매우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양육지원제도를 시행 중인 경우 실제 이용 여부를 근로 특성과 직장 특성에 따라 비교하면 여성 육아휴직과 탄력근무제도는 가구 근로 형태, 모(母)의 근로 형태, 직장규모 그리고 업종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표 IV-1-39〉 직장내 양육지원제도 이용률

단위: %, 명

구분	여성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탄력 근무	
	이용률	(수)	이용률	(수)	이용률	(수)	이용률	(수)
전체	47.7	(618)	9.6	(251)	31.2	(173)	35.1	(191)
가구 근로 형태								
전일제+전일제	50.1	(525)	10.3	(214)	29.7	(158)	30.8	(156)
전일제+시간제	34.4	(93)	5.4	(37)	46.7	(15)	54.3	(35)
$\chi^2(df)$	7.792(1)	**	na		na		6.942(1)	**
본인 근로 형태								
전일제	48.6	(552)	9.9	(232)	29.9	(167)	30.4	(168)
시간제	40.9	(66)	5.3	(19)	66.7	(6)	69.6	(23)
$\chi^2(df)$	1.380(1)		na		na		13.656(1)	***
종사상 지위								
상용직	48.5	(534)	9.6	(219)	30.8	(156)	32.5	(169)
비상용직	40.0	(45)	-	(16)	33.3	(6)	58.3	(12)
해당없음	46.2	(39)	18.8	(16)	36.4	(11)	50.0	(10)
$\chi^2(df)$	1.244(2)		na		na		na	
근무 형태								
일반근무	48.3	(538)	9.7	(217)	32.1	(156)	33.9	(168)
교대근무	46.7	(30)	13.3	(15)	14.3	(7)	37.5	(8)
야간근무	42.0	(50)	5.3	(19)	30.0	(10)	46.7	(15)
$\chi^2(df)$	0.748(2)		na		na		1.003(2)	
직장규모								
5인미만	47.2	(36)	-	(11)	60.0	(10)	66.7	(21)
5-9인	41.0	(39)	10.0	(10)	40.0	(10)	53.3	(15)
10-29인	50.0	(94)	9.4	(32)	39.1	(23)	58.3	(24)
30-99인	44.9	(167)	12.7	(71)	36.7	(49)	28.6	(35)
100-299인	46.9	(98)	8.8	(34)	21.7	(23)	36.4	(22)
300인 이상	51.1	(184)	8.6	(93)	20.7	(58)	17.6	(74)
$\chi^2(df)$	2.288(5)		na		9.539(5)		27.726(5)	***
업종								
광공업	31.8	(66)	-	(22)	46.2	(13)	61.1	(18)
건설업	62.5	(32)	25.0	(12)	66.7	(9)	54.5	(11)
도소매 /숙박업	40.0	(15)	20.0	(5)	66.7	(3)	40.0	(5)
전기/운수/통신/금융	57.8	(45)	15.8	(19)	7.7	(13)	12.5	(16)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48.6	(243)	7.5	(106)	30.8	(78)	29.3	(82)
$\chi^2(df)$	11.744(4)	*	na		na		na	

주: 각 제도별로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na는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 $p < .05$, ** $p < .01$, *** $p < .001$

구체적으로 여성 육아휴직제도는 부모가 모두 전일제인 경우가 시간제에 비해 이용률이 더 높았고, 반면에 근로시간단축이나 탄력근무의 경우는 전일제에 비해 시간제 근로가구의 이용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탄력근무의 경우는 직장규모가 클수록 이용률이 낮은 경향을 보이므로 해당 기업의 실효성 강화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여 건설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 종사하는 경우 이용률이 각각 62.5%, 57.8%로 높았다.

3) 주요 제도의 이용 기간 및 수요

여성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용 기간은 평균 11개월이었고, 해당 기간을 만족한다는 비율은 약 절반 수준(52.9%)이었다.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자의 희망 이용 기간은 26.4개월로서 실제 이용 기간과 약 16개월의 격차를 보인다. 그런데 이 같은 휴직 기간 수요에의 대응은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늘어난 휴직 기간을 전부 여성이 추가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는 여성고용률과 성별 임금 격차 등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다룬 바와 같이 장기간 휴직에 대한 선호는 영아보육 질에 대한 우려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현행 휴직 기간을 연장하기 보다는 영아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더불어 가정내보육에 대한 선택권 강화 노력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여성 육아휴직제도는 직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이용 기간의 차이를 보여 기업별로 실제 적용은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전일제 근로가구, 본인이 전일제, 상용직, 그리고 일반근무자인 경우는 이용 기간이 약 11개월로 이외 경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고, 해당 기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표 IV-1-40〉 여성 육아휴직제도 이용 기간 및 수요

구분	이용 기간	이용 기간 충분성 충분함	(수)	단위: 개월, %(명)	
				희망 이용 기간 평균	(수)
육아휴직제도	10.9	52.9	(295)	26.4	(139)
가구 근로 형태					
전일제+전일제	11.2	53.6	(263)	26.9	(122)
전일제+시간제	8.4	46.9	(32)	22.9	(17)
$t/X^2(df)$	1.558	0.520(1)		0.905	

(표 IV-1-40 계속)

구분	이용 기간	이용기간 충분성 충분함	(수)	희망 이용기간	
				평균	(수)
본인 근로 형태					
전일제	11.1	53.7	(268)	26.8	(124)
시간제	8.6	44.4	(27)	22.7	(15)
$t/X^2(df)$	1.322	0.849(1)		0.879	
종사상 지위					
상용직	11.3	54.4	(259)	26.7	(118)
비상용직	7.3	33.3	(18)	25.3	(12)
해당없음	9.3	50.0	(18)	23.3	(9)
$F/X^2(df)$	1.737	3.073(2)		0.193	
근무 형태					
일반근무	11.3	53.8	(260)	27.0	(120)
교대근무	7.7	35.7	(14)	25.3	(9)
야간근무	8.2	52.4	(24)	19.5	(10)
$F/X^2(df)$	1.915	1.755(2)		0.922	
직장규모					
5인미만	13.1	76.5	(17)	11.0	(4)
5-9인	9.1	56.3	(16)	27.4	(7)
10-29인	8.2	53.2	(47)	26.8	(22)
30-99인	12.3	50.7	(75)	26.8	(37)
100-299인	8.2	39.1	(46)	26.0	(28)
300인 이상	12.4	56.4	(94)	27.4	(41)
$F/X^2(df)$	2.704*	7.972(5)		0.688	
업종					
광공업	7.5	57.1	(21)	30.1	(9)
건설업	10.3	60.0	(20)	22.8	(8)
도소매 /숙박업	20.3	66.7	(6)	15.0	(2)
전기/운수/통신/금융	9.0	61.5	(26)	29.8	(10)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12.4	52.5	(118)	29.4	(56)
$F/X^2(df)$	3.038*	1.292(4)		0.484	

주: 이용기간의 충분성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희망 이용기간은 이용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자에게 조사한 결과임.

* $p < .05$

조사대상 중 배우자가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 이용 기간은 평균 12개월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기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5.0%에 불과하였다. 이용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희망 기간은 약 18개월이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이용 기간은 평균 약 13개월이었다. 이들 중 해당 기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59.3%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기간이 충분

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희망 기간은 약 37개월이었다. 육아휴직제도에 비하여 희망 이용기간이 약 11개월 더 길게 나타나, 보다 관대한 적용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표 IV-1-41〉 남성 육아휴직제도/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이용 기간 및 수요

구분	이용기간	이용기간 충분성 충분함	(수)	단위: 개월, %(명)	
				희망 이용기간 평균	(수)
남성휴직제도	12.4	25.0	(24)	18.3	(18)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12.5	59.3	(54)	37.2	(22)

주: 이용기간의 충분성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희망 이용기간은 이용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자에게 조사한 결과임.

한편 각 제도별로 이용 시작과 종료 시의 자녀 연령을 조사한 결과, 여성 육아휴직은 약 3~13개월, 남성 육아휴직은 약 7~13개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는 약 13~24개월로 나타났다. 즉 현행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므로 주로 자녀가 만 1세에 도달하는 연령까지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이후 보다 더 길게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각 제도별 이용 현황과 일관된 결과로서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 직후에 주로 요구되며, 근로시간단축제도에 대한 수요는 그보다 더 길게 지속됨을 확인시켜준다.

〈표 IV-1-42〉 제도 이용 시 자녀연령

구분	이용시작 연령	이용종료 연령	단위: 개월, 명	
			(수)	
여성육아휴직제도	3.4	12.7	(295)	
남성육아휴직제도	7.3	13.1	(24)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13.4	23.8	(54)	

라. 양육 시 애로사항 및 수요

1) 적합한 양육방식

부모가 일할 경우 적합한 양육방식에 대해 취업모들은 아동 연령에 따라 상이한 인식을 보였다.

〈표 IV-1-43〉 부모가 일할 때 적합한 양육방식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부모 직접돌봄	66.4	60.4	49.1	38.9	23.8	18.6
조부모/친인척돌봄	17.6	21.9	24.2	33.1	13.8	11.8
어린이집 이용	10.8	13.0	21.4	18.7	36.6	25.1
가정내비혈연돌봄	2.6	3.3	3.9	6.0	2.9	2.6
유치원 이용	2.5	1.2	1.3	3.2	22.8	41.9
기타	0.2	0.2	0.1	0.1	0.1	0.1
$\chi^2(df)$	82.164(25)***					
계(수)	100.0(1,736)	100.0(1,736)	100.0(1,736)	100.0(1,736)	100.0(1,736)	100.0(1,736)

주: 1순위 응답 결과임.

*** $p < .001$

0세아와 1세아의 경우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를 육박하는 반면, 4세아와 5세아의 경우는 기관 이용이 우세하여 4세아의 경우는 어린이집, 5세아의 경우는 유치원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각각 36.6%와 41.9%였다. 그 밖에도 조부모/친인척 돌봄과 가정내 비혈연 돌봄인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 연령과 상관없이 비교적 고른 비율을 보여 0~5세아 전반에 걸친 수요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같은 인식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 선택권 보장을 지향하되, 아동 연령별로 우선순위를 달리하는 지원체계의 구축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대상별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우선 입소·입학 중요도를 5점 척도로 평가토록 한 결과,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부모가 4.1(5점 만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장애부모,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가족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3.3점으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표 IV-1-44 참조).

또한 종일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한 대상으로는 1순위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 자녀 42.5%,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 17.9%, 장애부모 자녀 15.6%, 기초생활수급자 12.2% 순이었다(표 IV-1-45 참조).

〈표 IV-1-44〉 대상별 어린이집/유치원 우선 입소·입학 중요도-맞벌이 가구

단위: %, (명), 점

구분	해당 비율	우선 입소/입학 중요도					계	5점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1	2.8	7.1	26.6	44.7	18.8	100.0(1,736)	3.7
차상위계층 자녀	4.6	3.6	8.1	30.1	42.4	15.8	100.0(1,736)	3.6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	3.6	2.1	5.0	22.6	44.6	25.7	100.0(1,736)	3.9
장애부모(장애 1,2급) 자녀	2.9	2.1	4.1	20.8	42.3	30.8	100.0(1,736)	4.0
다문화가족 영유아	3.3	7.7	13.2	36.2	31.8	11.1	100.0(1,736)	3.3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100.0	1.2	2.8	17.4	40.7	37.9	100.0(1,736)	4.1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8.5	2.5	8.0	32.2	38.7	18.6	100.0(1,736)	3.6
영유아 자녀가 2명인 가구	22.4	2.5	7.3	33.2	39.7	17.2	100.0(1,736)	3.6

주: 해당 비율은 각 항목별로 응답자가 '해당된다'고 응답한 비율임.

평균은 각 항목에 대해 '전혀중요하지않다' 1점~'매우중요하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표 IV-1-45〉 대상별 종일제 보육 필요도-맞벌이 가구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맞벌이 가정 자녀	42.5	62.6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	17.9	42.1
장애부모(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의 자녀	15.6	33.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2	21.0
차상위계층 자녀	5.0	13.8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의 자녀	3.6	12.3
영유아가 2자녀 이상인 가족	2.5	9.9
다문화가족 영유아	0.7	3.6
기타	0.1	0.2
계(수)	100.0(1,736)	

주: 종일제는 유치원은 최소 9:00~17:00, 어린이집은 최소 7:30~19:30 운영을 의미함.

2) 양육 시 애로사항

영유아 자녀 양육 시 어려움을 7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대하여 어려움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직장 일과 육아와의 병행'과 '직장일로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가 4.2점(5점 만점)으로 주된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이들 항목에서 어려움을 느낀다(어려움+매우 어려움)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약 84%에 달하여 (돌봄)시간 지원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양육 비용과 보육·교육비용 부담이 주된 어려움으로 지적되어 보편적 보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표 IV-1-46〉 영유아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직장)일과 육아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0.5	1.7	14.2	48.5	35.2	100(1,271)	4.2
(직장)일로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	0.3	2.2	13.5	44.8	39.1	100(1,271)	4.2
양육 비용(총 비용)이 부담스럽다	1.3	4.6	17.6	37.5	39.1	100(1,271)	4.1
기관 보육료·교육비가 부담스럽다	1.6	7.8	20.0	38.9	31.8	100(1,271)	3.9
급할 때(야간근무 등)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	3.3	14.7	19.5	31.4	31.1	100(1,271)	3.7
일하는 동안 아이를 맡길 데가 마땅치 않다	2.9	15.6	26.1	30.5	24.9	100(1,271)	3.6
자녀를 돌보느라 일할 시간이 부족하다	2.6	18.5	21.1	32.9	31.5	100(1,271)	3.4

주: 평균은 각 항목에 대해 '전혀그렇지 않다' 1점~'매우그렇다' 5점으로 평정하여 산출한 결과임.

한편 아이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는 '아이가 아플 때'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51.3%), 그 다음으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을 때, 직장일과 가사를 혼자 병행해야 할 때, 직장에서 육아관련 배려를 해주지 않을 때 등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아플 경우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남성의 육아참여와 가족친화적인 직장 환경의 조성이 동시에 요구됨을 말해준다.

〈표 IV-1-47〉 영유아 자녀 양육 시 가장 힘들었던 순간

단위: %, (명)

구분	비율	(수)
아이가 아플때	51.3	(652)
아이를 맡길 데가 없을 때	12.1	(154)
직장일과 가사를 혼자서 병행해야할 때	10.1	(128)
직장에서 육아관련문제를 전혀 배려해주지 않을 때	7.1	(90)
아이가 말을 안들을때/울때/떼 쓸때	5.6	(71)
양육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5.4	(69)
양육시간 부족으로 아이에게 소홀해질 때	4.6	(58)
업무량이 많을 때/바쁠때/회식/출장 등	3.8	(48)
사고가 났을때 등 갑작스러운 일 발생시	2.8	(36)
아이를 맡긴 조부모님이 힘들어 하실 때/갈등이 있을 때	2.4	(31)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사내 불이익/퇴사	1.8	(23)
기타	5.0	(64)
없음	3.1	(39)
(수)		(1,271)

주: 다중응답 결과임.

기타 응답은 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본인이 아플 때, 자녀 등하원 시각과 근로시간이 맞지 않아서, 보육기관 불신 등임.

이 같은 자녀 양육 시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모의 경력 단절은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2%이며, 해당 시기는 임신(47.6%)과 출산직후(32.4%)가 지배적이어서 해당 비율은 약 80%선을 육박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만 1세 이전 7.8%, 만 1~2세 6.4%, 만 3세~취학전 4.6%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경력단절 주된 사유로는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38.2%, 직장에서 퇴사를 강요해서 17.5%, 일 때문에 육아에 소홀할까봐 17.0% 건강이 좋지 않아서 13.8%, 소득보다 자녀 보육비용이 더 들어서 6.9%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용 범위가 임신 단계부터 확대 적용되고, 출산직후 양육 시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도록 직장문화의 개선과 더불어 해당 시기의 지원에 보다 주력해야 함을 말해준다.

또한 취업모의 경력단절 유경험율은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 대상별 경력단절의 원인 진단 및 예방 대책이 요구됨을 말해준다.

〈표 IV-1-48〉 경력단절 경험

단위: %, (명)

구분	경력단절 경험		직장 그만둔 시기						계(수)
	비율	전체(수)	임신 했을때	출산/ 출산 휴가후 바로	만1세 이전	만1- 2세때	만3세- 취학 전	기타	
전체	34.2	(1,271)	47.6	32.4	7.8	6.4	4.6	1.1	100.0(435)
본인 월소득									
100만원 이하	70.5	(146)	50.5	31.1	5.8	6.8	4.9	1.0	100.0(103)
200만원 이하	45.5	(495)	48.4	32.9	8.4	5.8	3.6	0.9	100.0(225)
300만원 이하	20.5	(365)	42.7	30.7	10.7	9.3	5.3	1.3	100.0(75)
400만원 이하	10.5	(133)	42.9	42.9	-	-	14.3	-	100.0(14)
400만원 초과	13.6	(132)	44.4	33.3	5.6	5.6	5.6	5.6	100.0(18)
학력									
고졸	50.0	(124)	48.4	30.6	3.2	4.8	9.7	3.2	100.0(62)
전문대졸	40.6	(308)	43.2	38.4	9.6	5.6	3.2	-	100.0(125)
4년제졸	31.1	(692)	49.8	29.8	8.8	7.9	3.3	0.5	100.0(215)
대학원졸	22.4	(147)	48.5	30.3	3.0	3.0	9.1	6.1	100.0(33)

주: 경력단절 경험 비율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임.

* $p < .05$, ** $p < .01$, *** $p < .001$

3) 일·가정 양립지원 요구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육아휴직 활성화 18.3%,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5.4%, 시차출근제(탄력근무제) 활성화 14.3%,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강화 13.0% 순으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면, 유연한 근로시간에 대한 요구 즉 시차출근제 활성화 27.9%,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23.7%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직접 양육을 위한 근로시간의 조정이 휴직제도와 기관보육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표 IV-1-49〉 일·가정 양립지원 요구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육아휴직 활성화	18.3	26.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5.4	23.7
시차출근제(탄력근무제) 활성화	14.3	27.9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강화	13.0	24.1
종일제 보육(7:30~19:30)·교육 운영 시간 준수	8.8	17.3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8.0	15.8
양육비(현금) 지원	5.5	14.2
장시간 보육(시간 연장, 야간보육 등) 기관 확충	5.4	16.3
기관(유치원/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	5.2	13.9
배우자(남편)와의 평등한 육아 분담	3.1	9.3
가정내 보육(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1.6	5.8
민간 베이비시터 지원 강화(비용 지원, 인력 관리 등)	1.1	3.6
기타	0.3	0.5
계(수)	100.0(1,736)	

긴급보육 시 즉 급작스런 야근이 발생하거나 자녀가 아플 때 희망하는 돌봄 자로는 야근 시에는 조부모나 친인척 이외에 기관을 희망하며, 자녀가 아플 경우는 부모가 직접 돌보기를 희망하는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과 가족돌봄휴가의 실효성이 요구됨을 말해준다.

〈표 IV-1-50〉 긴급 상황 시 희망 돌봄자

구분	야근 등	단위: %(명)	
		자녀가 아플 경우	
부모가 직접 돌봄	-	74.0	
조부모/친인척	71.3	20.6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	19.7	3.6	
친구 및 이웃	5.4	1.3	
비혈연 대리양육자	2.5	0.4	
기타	1.2	0.1	
계(수)	100.0(1,271)	100.0(1,271)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취업모의 62.2%가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자녀가 어릴수록 높게 나타나 0세 부모의 경우 희망하는 비율이 72.2%에 달하며,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자의 해당 비율은 각각 68.1%, 72.8%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현재의 근로시간 즉 전일제와 파트타임 근로를 유지한 채 근로시간을 육아와 병행이 용이하도록 조정하기를 희망하며, 전일제 근로자가 파트타임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약 31%이다(표 IV-1-51 참조).

근로시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 근로시간은 대체로 9시 이후에 시작하여 7시 이전에 종료하기를 희망하며, 특히 파트타임으로 변경하기를 희망한 응답자는 10시 이후 근무를 시작하여 오후 6시 이전에 종료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전일제를 희망하는 경우는 약 9~19시(주 45시간), 파트타임을 희망하는 경우는 10~18시(주 35시간) 정도를 희망하여 취업모들은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에의 요구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IV-1-52 참조).

〈표 IV-1-51〉 근로시간 변경 희망

구분	근로시간 변경 희망		변경 희망 근로유형					계(수)
	비율	전체 (수)	전일제 근무	파트타임 근무	현재의 전일제를 유지하되 근로시간만 변경	현재의 파트타임을 유지하되 근로시간만 변경	기타	
전체	62.2	(1,736)	5.4	30.4	57.9	5.4	0.9	100.0(1,079)
자녀 연령								
0세	72.2	(295)	9.9	30.5	53.5	5.6	0.5	100.0(213)
1세	65.6	(285)	6.4	32.6	57.2	2.7	1.1	100.0(187)
2세	62.8	(290)	3.3	33.0	60.4	2.7	0.5	100.0(182)

주: 근로시간 변경 희망 비율은 변경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경우임.

(표 IV-1-51 계속)

구분	근로시간 변경 희망		변경 희망 근로유형				
	비율	전체 (수)	전일제 근무	파트 타임 근무	현재의 전일제를 유지하되 근로시간만 변경	현재의 파트타임을 유지하되 근로시간만 변경	기타 계(수)
3세	61.0	(292)	4.5	31.5	57.3	5.1	1.7 100.0(178)
4세	53.5	(288)	2.6	28.6	57.8	10.4	0.6 100.0(154)
5세	57.7	(286)	4.2	25.5	62.4	6.7	1.2 100.0(165)
$X^2(df)$	25.987(5)	***	31.280(20)				
가구 근로 형태							
전일제+전일제	64.0	(1,421)	5.5	29.3	63.5	0.9	0.9 100.0(909)
전일제+시간제	54.0	(315)	4.7	36.5	28.2	29.4	1.2 100.0(170)
$X^2(df)$	10.963(1)	***	250.348(4)				
본인 근로 형태							
전일제	58.5	(1,509)	-	31.1	68.0	-	0.9 100.0(883)
시간제	24.2	(227)	9.1	-	-	87.3	3.6 100.0(55)
$X^2(df)$	1.410(1)		312.073(4)				
근무 형태							
일반근무	60.4	(1,451)	4.7	31.7	57.9	5.0	0.7 100.0(877)
교대근무	68.1	(116)	15.2	26.6	41.8	15.2	1.3 100.0(79)
야간근무	72.8	(169)	4.1	23.6	68.3	1.6	2.4 100.0(123)
$X^2(df)$	11.669(2)	**	45.213(8)				

** $p < .01$, *** $p < .001$

〈표 IV-1-52〉 변경 희망 근로 유형별 희망 근로시간

단위: 시, (명)

구분	시작 시각	종료 시각	(수)
전일제근무로 변경	9.2	6.9	(58)
파트타임 근무로 변경	10.0	5.8	(328)
현재의 전일제로 유지하되 근로시간만 변경	9.5	6.8	(625)
현재의 파트타임을 유지하되 근로시간만 변경	9.7	5.7	(58)

4) 후속출산 의향

후속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0%이며, 해당 비율은 총 자녀수가 1명인 경우 약 50%에 달한다. 이는 출산을 제고 차원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첫째아 출산 시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여야 추가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음을 암시한다. 한편 근로 형태에 따라서는 시간제 근로자의 후

속출산 의향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자녀 양육비용 부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 IV-1-53〉 후속출산 의향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31.0	69.0	100.0(1,736)
자녀 연령			
0세	39.7	60.3	100.0(295)
1세	36.8	63.2	100.0(285)
2세	36.6	63.4	100.0(290)
3세	29.1	70.9	100.0(292)
4세	22.2	77.8	100.0(288)
5세	21.3	78.7	100.0(286)
영유아 구분			
영아	37.7	62.3	100.0(870)
유아	24.2	75.8	100.0(866)
총 자녀수			
1명	49.9	50.1	100.0(843)
2명	13.9	86.1	100.0(790)
3명 이상	6.8	93.2	100.0(103)
가구 근로 형태			
전일제+전일제	32.0	68.0	100.0(1,421)
전일제+시간제	26.3	73.7	100.0(315)
본인 근로 형태			
전일제	31.3	68.7	100.0(1,509)
시간제	29.1	70.9	100.0(227)

한편 후속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는 '직장일과 양육의 병행이 힘들어서'가 41.5%로 가장 주요하였고, 다음으로는 '양육비용이 많이 들어서' 30.6%,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25.6% 순이었다. 이를 근로 특성과 가구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전일제 근로자는 시간제에 비해 직장일과 양육의 병행의 어려움이 후속출산에 보다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일반근무자에 비해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자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또한 200만원 이하 가구는 양육비 부담이 주된 이유가 되는 반면, 이들보다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는 직장일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이 후속출산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드러난다. 이는 출산율 제고 방안이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와 양육비 부담 완화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표 IV-1-54〉 후속출산 미의향 사유

단위: %(명)

구분	직장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힘들어서	양육 비용이 많이 들어서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기타	계
전체	41.5	30.6	25.6	2.0	0.3	100.0(1,198)
자녀 연령						
0세	49.4	28.7	20.8	0.6	0.6	100.0(178)
1세	46.1	23.3	28.9	1.7	-	100.0(180)
2세	43.5	31.5	22.3	2.2	0.5	100.0(184)
3세	42.5	30.9	24.2	1.4	1.0	100.0(207)
4세	35.7	34.8	26.8	2.7	-	100.0(224)
5세	34.7	32.4	29.8	3.1	-	100.0(225)
영유아 구분						
영아	46.3	27.9	24.0	1.5	0.4	100.0(542)
유아	37.5	32.8	27.0	2.4	0.3	100.0(656)
가구 근로 형태						
전일제+전일제	45.7	28.5	23.9	1.6	0.4	100.0(966)
전일제+시간제	24.1	39.2	32.8	3.9	-	100.0(232)
본인 근로 형태						
전일제	43.8	29.9	24.1	1.8	0.4	100.0(1,037)
시간제	26.7	34.8	35.4	3.1	-	100.0(161)
근무 형태						
일반근무	40.2	30.9	26.7	2.0	0.3	100.0(1,020)
교대근무	45.2	30.1	21.9	2.7	-	100.0(73)
야간근무	51.4	27.6	18.1	1.9	1.0	100.0(105)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16.4	40.3	38.8	4.5	-	100.0(67)
300만원 미만	39.3	36.5	23.3	0.9	-	100.0(219)
400만원 미만	41.3	31.8	24.0	2.5	0.4	100.0(242)
500만원 미만	41.3	33.8	23.0	1.4	0.5	100.0(213)
600만원 미만	47.7	29.1	21.5	1.2	0.6	100.0(172)
600만원 이상	45.6	21.1	30.2	2.8	0.4	100.0(285)

2. 맞벌이 가구 특성별 이용 실태와 요구

이 절에서는 육아지원서비스 및 제도 이용은 맞벌이 가구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여 맞벌이 가구 특성별 특히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자녀 특성, 근로 특성, 가구소득 등 이외 개인 특성별로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 보았다.

가. 자녀 특성별

자녀 특성별 특히 자녀 연령이나 출생순위에 따라 육아지원서비스 및 제도 이용 실태와 요구는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주양육자, 서비스 선택 사유 및 유형, 이용비용, 양육 시 애로사항과 요구 등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다.

1) 주양육자

막내 자녀 기준으로 주양육자는 자녀 연령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0세아의 경우는 조부모 돌봄이 지배적이어서 해당 비율은 약 60%선에 이르며, 어린이집 이용률은 28.2%에 그친다. 1세아는 어린이집 이용률이 급증하여 53.1%에 달하며, 해당 비율은 2세아 69.6%, 3세아 64.8%로 증가한다. 4세아에 이르면 어린이집 이용률은 감소하고, 유치원 이용률이 급증하여 33.5%에 이르고, 5세아의 경우 해당 비율은 46.8%로 증가하여 어린이집 이용률을 넘어선다. 조부모 이용률은 2세 이후 감소 추세가 뚜렷하여 20%미만으로 감소하나, 0~5세에 걸쳐 기관 이용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유사하게 민간 베이비시터 이용률도 최대 3%의 낮은 수준이나 연령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제도화된 가정내보육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은 대체로 저조하여 (민간)베이비시터 이용률 보다 낮다.

〈표 IV-2-1〉 자녀 특성별 주양육자

단위: %(명)

구분	어린이 집	유치원	조부모	기타 친인척	아이 돌봄/ 가정 보육사	베이비 시터 (민간)	반일제 학원	기타	계(수)	$\chi^2(df)$
전체	51.8	19.1	25.4	1.3	0.6	1.3	0.2	0.3	100.0(1,271)	
자녀 연령										
0세	28.2	5.1	59.0	3.4	2.6	1.7	-	-	100.0(117)	
1세	53.1	2.1	39.7	0.5	1.0	2.6	-	1.0	100.0(194)	
2세	69.6	1.3	27.2	0.4	-	1.3	-	-	100.0(224)	384.66(35)**
3세	64.8	13.1	18.4	1.2	1.2	0.4	0.4	0.4	100.0(244)	
4세	44.2	33.5	18.6	1.2	-	1.7	0.4	0.4	100.0(242)	
5세	40.4	46.8	10.4	1.6	-	0.8	-	-	100.0(250)	

(표 IV-2-1 계속)

구분	어린이 집	유치원	조부모	기타 친인척	아이 돌보미/ 가정 보육사	베이비 시터 (민간)	반일제 학원	기타	계(수)	$X^2(df)$
영유아 구분										
영아	54.6	2.4	38.7	1.1	0.9	1.9	-	0.4	100.0(535)	205.114(7) ^{***}
유아	49.7	31.3	15.8	1.4	0.4	1.0	0.3	0.3	100.0(736)	
출생 순위										
첫째아	45.4	15.7	35.0	1.3	0.8	1.3	-	0.5	100.0(617)	99.154(14) ^{***}
둘째아	57.2	23.3	16.2	1.4	0.3	1.4	-	0.2	100.0(580)	
셋째아 이상	62.2	14.9	17.6	-	1.4	1.4	2.7	-	100.0(74)	

*** $p < .001$

2)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가) 이용률/이용만족도

우선 기관보육·교육기관의 연령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특히 0세아와 2세아의 경우 가정어린이집의 이용률이 두드러져 각각 30.0%와 36.3%를 나타내는 반면 4세아부터는 유치원 이용률이 약 35%선을 육박한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현행 입소순위 적용에 따라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셋째아 이상인 경우는 해당 비율이 27.1%에 이른다(표 IV-2-2 참조).

어린이집의 이용률은 평균적으로 61.8%를 나타내는 가운데 2세아부터 이용률이 83%까지 증가하며, 유치원의 경우는 4세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해당 비율이 45.9%, 5세아는 60.0%를 나타낸다(표 IV-2-3 참조).

〈표 IV-2-2〉 자녀 특성별 이용 기관 유형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계(수)
	국· 공립	사회 복지 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	국/ 공립	사립	모름	
전체	16.8	4.8	7.4	33.1	12.4	1.9	0.2	4.4	18.6	0.3	100.0(1,039)
자녀 연령											
0세	10.0	-	10.0	37.5	30.0	-	-	-	10.0	2.5	100.0(40)
1세	10.6	8.0	4.4	36.3	36.3	2.7	-	-	0.9	0.9	100.0(113)
2세	16.1	3.8	5.9	47.3	22.0	2.7	-	0.5	1.6	-	100.0(186)
3세	17.5	4.4	9.2	38.0	12.2	2.6	0.4	0.9	14.8	-	100.0(229)
4세	18.4	3.5	7.9	32.0	1.3	1.3	-	7.9	27.2	0.4	100.0(228)
5세	19.3	6.6	7.4	16.5	1.6	1.2	0.4	10.3	36.6	-	100.0(243)

(표 IV-2-2 계속)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모름	계(수)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국/공립	사립		
영유아 구분											
영아	13.6	4.7	5.9	42.5	27.7	2.4	-	0.3	2.4	0.6	100.0(339)
유아	18.4	4.9	8.1	28.6	5.0	1.7	0.3	6.4	26.4	0.1	100.0(700)
출생순위											
첫째아	14.0	3.5	8.8	34.2	14.5	2.0	-	2.9	19.7	0.4	100.0(456)
둘째아	18.1	5.5	6.3	32.8	10.7	2.1	0.4	5.9	17.9	0.2	100.0(524)
셋째아 이상	27.1	8.5	6.8	27.1	11.9	-	-	3.4	15.3	-	100.0(59)

〈표 IV-2-3〉 자녀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이용 만족도

단위: %, 점(명)

구분	이용률		이용 만족도								평균	t/F
	이용 함	전체 (수)	매우 불 만족	불 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X ² (df)			
전체	61.8	(1,217)	1.7	3.9	28.4	48.5	17.6	100.0(786)		3.8		
자녀 연령												
0세	30.8	(117)	-	5.6	41.7	41.7	11.1	100.0(36)		3.6		
1세	58.2	(194)	3.5	3.5	31.0	46.9	15.0	100.0(113)		3.7		
2세	83.0	(224)	1.6	3.8	24.7	52.7	17.2	100.0(186)	30.620(20)	3.8	1.996	
3세	80.3	(244)	-	4.1	25.5	52.0	18.4	100.0(196)		3.8		
4세	56.2	(242)	2.2	2.2	38.2	44.1	13.2	100.0(136)		3.6		
5세	47.6	(250)	2.5	5.9	21.0	44.5	26.1	100.0(119)		3.9		
영유아 구분												
영아	62.6	(535)	2.1	3.9	28.7	49.6	15.8	100.0(335)	1.835(4)	3.7	-0.917	
유아	61.3	(736)	1.3	4.0	28.2	47.7	18.8	100.0(451)		3.8		

주: 이용률은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이용만족도 평균점수는 '매우불만족' 1점~'매우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한편 기관 이용 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0세아의 경우 기관에 대한 불만족이 66.7%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0~2세아의 경우 아이 부적응 때문에 기관 이용을 중단한 비율도 최소 10%를 넘어 3세아 이후 해당 비율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영아의 기관보육 이용 시에 초래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2-4〉 자녀 연령별 이용 중단 사유

단위: %(명)

구분	집에서 너무 많음	기관 불만족	희망하는 기관에 다닐 수 있게 됨	상급반 없음	아이 부적응	이사	다니던 기관 폐업	형제, 자매와 같은 기관 보냄	근무 시간 안맞음	기타	계(수)
전체	18.1	29.3	14.7	18.1	8.6	6.5	1.3	1.0	1.3	1.0	100.0(382)
자녀 연령											
0세	-	66.7	16.7	-	16.7	-	-	-	-	-	100.0(6)
1세	34.8	30.4	-	8.7	21.7	-	-	-	4.3	-	100.0(23)
2세	25.0	25.0	11.4	2.3	11.4	13.6	6.8	4.5	-	-	100.0(44)
3세	7.4	33.7	16.8	25.3	7.4	5.3	0.0	2.1	1.1	1.1	100.0(95)
4세	17.3	26.0	18.3	21.2	6.7	8.7	1.0	-	-	1.0	100.0(104)
5세	22.7	28.2	13.6	18.2	7.3	4.5	0.9	-	2.7	1.8	100.0(110)
영유아 구분											
영아	26.0	30.1	8.2	4.1	15.1	8.2	4.1	2.7	1.4	-	100.0(73)
유아	16.2	29.1	16.2	21.4	7.1	6.1	0.6	0.6	1.3	1.3	100.0(309)

나) 이용비용

우선 월평균 총 보육·교육비용은 평균 약 60만원선으로 자녀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특히 0세아와 1세아의 이용비용은 평균보다 높은 약 72만원과 65만원선으로 나타난다. 해당 수준은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감소하여 셋째아 이상에서는 약 46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5〉 자녀 특성별 월 평균 총 보육·교육비용

단위: 만원, (명)

구분	월 평균 이용비용	t/F	(수)
전체	60.4		(1,259)
자녀 연령			
0세	71.6		(113)
1세	64.5		(190)
2세	56.7	1.729	(223)
3세	55.2		(244)
4세	60.8		(240)
5세	60.2		(249)
영유아 구분			
영아	62.7	1.238	(526)
유아	58.8		(733)

(표 IV-2-5 계속)

구분	월 평균 이용비용	t/F	(수)
출생 순위			
첫째아	64.3	4.487*	(611)
둘째아	58.1		(577)
셋째아 이상	45.5		(71)

주: 월 평균 총 이용비용은 최근 3개월 평균 비용으로 산출한 결과임.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 $p < .05$

다음으로 서비스 유형별로는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부문에서 자녀 연령과 출생 순위에 따른 차이가 보다 두드러진다. 특히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 경우는 기관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0세와 1세아의 경우 평균 비용 약 44만원보다 10~20만원 높은 비용 지출을 보이며, 실제 부모들의 이용비용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2-6〉 자녀 연령별 개인양육서비스 비용 지불

단위: %, 만원(명)

구분	비용 지불 방법						월 이용 비용	
	정기적 지불	비정기적 지불	현물로 지불	지불 안함	숙식만 제공	기타	(수)	평균(수) t/F
전체	64.0	19.3	10.7	10.4	1.6	0.7	(858)	53.1(779)
자녀 연령								
0세	66.0	22.3	19.1	2.1	1.1	-	(94)	69.2(92)
1세	76.6	15.2	9.0	6.9	0.7	0.7	(145)	61.9(136)
2세	63.2	17.8	13.5	12.9	2.5	-	(163)	55.4(143) 7.133***
3세	63.3	20.1	8.3	8.3	2.4	1.8	(169)	44.6(153)
4세	61.6	19.6	8.0	12.3	1.4	0.7	(138)	49.2(122)
5세	54.4	22.1	9.4	16.8	1.3	0.7	(149)	43.7(133)
영유아 구분								
영아	68.7	17.9	13.2	8.2	1.5	0.2	(402)	61.2(371) 5.261***
유아	59.9	20.6	8.6	12.3	1.8	1.1	(456)	45.7(408)

주: 월 이용비용은 최근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이용비용을 현물로 지급한 경우 현금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결과임.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 $p < .001$

〈표 IV-2-7〉 자녀 특성별 조부모/친인척 월 평균 이용비용/이용부담 정도

단위: 만원, %, 점(명)

구분	월 평균 이용 비용	t/F	이용 부담 정도							X ² (df)	평균	t/F	(수)
			전혀 부담 안됨	부담 안됨	보통	부담 됨	매우 부담 됨	계					
전체	43.7		10.4	19.1	31.2	29.8	9.5	100.0		3.1		(808)	
자녀 연령													
0세	63.2		5.6	6.7	31.1	41.1	15.6	100.0		3.5		(90)	
1세	55.4		6.6	13.1	30.7	40.1	9.5	100.0		3.3		(137)	
2세	44.4	10.267***	8.6	22.4	34.9	25.0	9.2	100.0	43.268(20)**	3.0	6.094***	(152)	
3세	34.9		10.8	24.8	27.4	27.4	9.6	100.0		3.0		(157)	
4세	40.4		14.0	23.3	30.2	23.3	9.3	100.0		2.9		(129)	
5세	31.9		15.4	18.9	32.9	26.6	6.3	100.0		2.9		(143)	
영유아 구분													
영아	52.8	5.937***	7.1	15.3	32.5	34.3	10.8	100.0	19.035(4)**	3.3	4.139***	(379)	
유아	35.5		13.3	22.4	30.1	25.9	8.4	100.0		2.9		(429)	
총 자녀수													
1명	48.1		8.9	18.2	28.4	35.0	9.5	100.0		3.2	3.769*	(440)	
2명	38.2	5.368**	12.8	20.8	33.6	22.9	9.8	100.0	17.934(8)*	3.0		(336)	
3명 이상	40.0		6.3	12.5	43.8	31.3	6.3	100.0		3.2		(32)	

주: 월 평균 이용비용은 최근 3개월 평균 비용으로 산출한 결과임.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이용부담 정도는 '전혀부담안됨' 1점~ '매우부담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3) 애로사항 및 수요

전반적으로 0세아와 1세아 양육 시 애로사항이 과중한 가운데, 자녀 돌봄 시간의 부족이 주된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그 다음으로 비용 부담, 보육서비스 부족 등이 언급되었다.

〈표 IV-2-8〉 자녀 연령별 영유아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단위: 점, (명)

구분	직장과 육아 병행 어려움	자녀 돌봄 시간 부족	일할 시간 부족	일하는 동안 아이 맡길 데 부족	급할 때 아이 맡길 데 없음	보육 비용 부담	양육 비용 부담	(수)
전체	4.2	4.2	3.4	3.6	3.7	3.9	4.1	(1,271)
자녀 연령								
0세	4.2	4.2	3.5	3.9	4.0	4.1	4.3	
1세	4.3	4.3	3.4	3.7	3.9	4.0	4.1	

(표 IV-2-8 계속)

구분	직장과 육아 병행 어려움	자녀 돌봄 시간 부족	일할 시간 부족	일하는 동안 아이 를 데 맡 길 데 부족	급할 때 아이 맡 길 데 없음	보육 비용 부담	양육 비용 부담	(수)
2세	4.1	4.2	3.3	3.5	3.5	3.7	3.9	
3세	4.1	4.2	3.3	3.5	3.7	4.0	4.1	
4세	4.1	4.1	3.5	3.6	3.7	3.9	4.1	
5세	4.1	4.2	3.3	3.6	3.7	4.0	4.1	

주: 평균은 각 항목에 대해 '전혀그렇지 않다' 1점~'매우그렇다' 5점으로 평정하여 산출한 결과임.

양육지원정책 전반의 필요도를 자녀 연령별로 살펴보면, 일부 제도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육아휴직제도와 가정양육수당은 0세아와 1세아에서 두드러진 수요를 보이며, 직장어린이집과 입소대기시스템의 적용은 최초 기관 이용이 이루어지는 0세아에서 가장 높은 필요도를 나타냈다. 반면에 근로시간단축이나 탄력근무제, 시간연장보육료 지원 등은 자녀 연령에 따른 필요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영유아 전반에 걸친 적용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표 IV-2-9〉 자녀 연령별 양육지원정책 필요도

단위: 점, (명)

구분	자녀 연령						영유아 구분			전체	(수)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영아	유아	t		
출산전후휴가제도	4.6	4.5	4.5	4.5	4.4	4.5	4.5	4.5	2.143	4.5	(1,736)
유사산휴가제도	4.2	4.2	4.2	4.0	4.1	4.1	4.2	4.1	3.435**	4.1	(1,736)
배우자출산휴가	4.3	4.3	4.1	4.1	4.0	4.1	4.2	4.1	3.848***	4.2	(1,736)
임신·출산비지원	4.6	4.6	4.5	4.5	4.4	4.4	4.5	4.4	3.626***	4.5	(1,736)
난임시술비지원	4.1	4.2	4.1	4.1	4.0	4.1	4.1	4.1	1.913	4.1	(1,736)
산모신생아도우미	4.2	4.2	4.2	4.2	4.0	4.1	4.2	4.1	2.456*	4.2	(1,736)
근무중 수유	4.0	4.0	3.9	3.9	3.8	3.8	4.0	3.9	2.081	3.9	(1,736)
육아휴직제도	4.6	4.5	4.5	4.5	4.4	4.4	4.5	4.4	3.492***	4.5	(1,736)
가족돌봄휴가제도	4.4	4.2	4.3	4.3	4.1	4.3	4.3	4.2	1.518	4.3	(1,736)
근로시간단축	4.3	4.3	4.3	4.3	4.2	4.3	4.3	4.3	1.503	4.3	(1,736)
탄력근무제	4.3	4.3	4.3	4.3	4.2	4.4	4.3	4.3	0.497	4.3	(1,736)
가족친화기업인증	3.8	3.8	3.8	3.6	3.6	3.6	3.8	3.6	3.186**	3.7	(1,736)
직장어린이집	4.4	4.2	4.2	4.3	4.2	4.1	4.3	4.2	1.904	4.2	(1,736)
입소대기시스템	4.2	4.0	4.0	3.9	3.8	3.8	4.1	3.8	5.500***	3.9	(1,736)
방과후돌봄지원	4.3	4.2	4.2	4.2	4.2	4.2	4.2	4.2	1.440	4.2	(1,736)
시간연장보육료	4.3	4.3	4.2	4.2	4.2	4.2	4.3	4.2	1.949	4.2	(1,736)
시간제보육	4.2	4.1	4.2	4.1	4.1	4.0	4.1	4.1	1.949	4.1	(1,736)

(표 IV-2-9 계속)

구분	자녀 연령						영유아 구분			전체	(수)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영아	유아	t		
가정양육수당	4.4	4.4	4.3	4.1	4.0	4.1	4.4	4.1	6.533***	4.2	(1,736)
영아아이돌봄	4.1	4.0	4.0	4.0	3.8	3.9	4.1	3.9	3.215**	4.0	(1,736)
시간제아이돌봄	4.1	4.1	4.1	4.1	3.9	4.0	4.1	4.0	2.241*	4.1	(1,736)

주: 평균은 각 항목에 대해 '전혀불필요' 1점~'매우필요'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나. 근로 특성별

근로 특성 특히 총 근로시간(전일제/시간제), 근로시간 유형(일반/교대/야간), 종사상 지위(상용직/비상용직)에 따라 육아지원서비스 및 제도 이용 실태와 요구는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주양육자, 일부 서비스에 한하여 이용률, 이용시간 이용비용, 그리고 양육 시 애로사항과 수요 등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양육자

주양육자는 근로 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우선 전일제 근로가구와 취업모가 전일제로 일하는 경우는 시간제인 경우에 비해 기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조부모 의존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또한 특히 취업모가 야간근무자인 경우는 일반근무나 교대근무자에 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이 낮고 조부모가 주로 돌보는 비율이 38.3%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현행 기관보육이 전일제 근로자와 야간근로 등 비전형적인 근로자의 보육 수요에 부합하지 못함을 암시한다.

〈표 IV-2-10〉 근로 특성별 주양육자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조부모	기타 친인척	아이 돌봄/가정보육사	(민간) 베이비시터	반일제 학원	기타	계(수)	$\chi^2(df)$
전체	51.8	19.1	25.4	1.3	0.6	1.3	0.2	0.3	100.0(1,271)	
가구 근로 형태										
전일제+전일제	49.9	17.7	28.5	1.4	0.8	1.6	-	0.2	100.0(1,015)	42.096(7)***
전일제+시간제	59.4	24.6	13.3	0.8	-	0.4	0.8	0.8	100.0(256)	

(표 IV-2-10 계속)

구분	어린이 집	유치원	조부모	기타 친인척	아이 돌보미/ 가정 보육사	베이비 시터 (민간)	반일제 학원	기타	계(수)	$\chi^2(df)$
본인 근로 형태										
전일제	50.6	18.0	27.5	1.3	0.7	1.6	0.1	0.2	100.0(1,081)	28.680(7)***
시간제	58.4	25.3	13.7	1.1	-	-	0.5	1.1	100.0(190)	
근무 형태										
일반근무	52.5	19.7	24.2	1.3	0.6	1.2	0.1	0.3	100.0(1,085)	28.451(14)*
교대근무	59.2	15.5	22.5	-	1.4	-	-	1.4	100.0(71)	
야간근무	40.0	15.7	38.3	1.7	-	3.5	0.9	0.0	100.0(115)	

* $p < .05$, *** $p < .001$

이를 확인시켜주듯 기관 이용 시 병행하여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일제 근로인 경우가 시간제에 비해 평균보다 높은 이용 비율을 보인다. 해당 비율은 특히 야간근무자인 경우는 50%에 육박하며, 약 84%의 취업모가 조부모의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11〉 근로 특성별 기관 이용 병행 시 돌봄 제공자

단위: %, (명)

구분	돌봐주는 사람 여부		돌봐주는 사람							
	있음	전체 (수)	외 조부모	친 조부모	베이비 시터 (민간)	아이 돌보미	친인척	이웃/ 친구	기타	(수)
전체	44.1	(901)	50.4	40.6	6.0	4.5	4.5	2.3	3.0	(397)
가구 근로 형태										
전일제+전일제	48.7	(686)	48.5	42.5	6.3	4.2	4.8	2.1	2.1	(334)
전일제+시간제	29.3	(215)	60.3	30.2	4.8	6.3	3.2	3.2	7.9	(63)
본인 근로 형태										
전일제	47.0	(742)	49.3	42.4	6.0	4.3	4.6	2.0	2.3	(349)
시간제	30.2	(159)	58.3	27.1	6.3	6.3	4.2	4.2	8.3	(48)
근무 형태										
일반근무	43.6	(784)	50.3	40.6	5.8	4.1	4.1	2.3	2.0	(342)
교대근무	43.4	(53)	56.5	43.5	4.3	8.7	8.7	4.3	13.0	(23)
야간근무	50.0	(64)	46.9	37.5	9.4	6.3	6.3	-	6.3	(32)

주: 돌봐주는 사람 여부는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2)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가) 이용률/이용만족도

근로 형태별 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개인양육서비스 부문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전일제 근로가구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 혈연 돌봄의 경우 해당 비율은 67.8%에 달하며, 아이돌보미 5.5%, (민간)베이비시터 5.9%로 시간제에 비해 대략 2배 정도 높은 이용률을 보인다.

〈표 IV-2-12〉 근로 형태별 조부모/친인척 이용률/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률		이용 만족도							평균	t/F
	이용 합	전체 (수)	매우 불 만족	불 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chi^2(df)$		
전체	63.6	(1,271)	1.6	1.7	17.6	43.9	35.1	100.0(808)		4.1	
가구 근로 형태											
전일제+전일제	67.8	(1,015)	1.7	2.0	16.4	43.9	35.9	100.0(688)	7.202(4)	4.1	0.709
전일제+시간제	46.9	(256)	0.8	-	24.2	44.2	30.8	100.0(120)		4.0	

주: 이용률은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이용 만족도는 '매우불만족' 1점~'매우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표 IV-2-13〉 근로 형태별 아이돌보미 이용률/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률		이용 만족도							평균(점)	t/F
	이용 합	전체 (수)	매우 불 만족	불 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chi^2(df)$		
전체	5.0	(1,217)	-	6.3	41.3	39.7	12.7	100.0(63)		3.6	
가구 근로 형태											
전일제+전일제	5.5	(1,015)	-	7.1	39.3	41.1	12.5	100.0(56)	1.241(3)	3.6	0.056
전일제+시간제	2.7	(256)	-	-	57.1	28.6	14.3	100.0(7)		3.6	

주: 이용률은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이용 만족도는 '매우불만족' 1점~'매우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표 IV-2-14〉 근로 형태별 (민간)베이비시터 이용률/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률	이용 만족도								평균	t/F
	이용 합	전체 (수)	매우 불 만족	불 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chi^2(df)$		
전체	5.4	(1,217)	2.9	4.4	44.1	35.3	13.2	100.0(68)		3.5	
가구 근로 형태											
전일제+전일제	5.9	(1,015)	3.3	5.0	38.3	38.3	15.0	100.0(60)	7.069(4)	3.6	2.552*
전일제+시간제	3.1	(256)	-	-	87.5	12.5	-	100.0(8)		3.1	

주: 이용률은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이용만족도는 '매우불만족' 1점~'매우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나) 이용 시간

이용 시간은 기관보육·교육과 개인양육서비스 모두에서 근로 형태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기관의 등원 시각과 하원 시각을 살펴보면,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제에 비해 등원 시각은 이르고, 하원 시각은 늦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일제 근로 가구는 오전 9시 이전에 등원하는 비율이 약 49%이나, 시간제 근로 가구는 해당 비율이 약 31%에 그치고 있다(표 IV-2-15 참조). 하원 시각은 전일제 근로 가구는 평균 4시 24분으로 시간제에 비해 약 36분이 늦고, 오후 6시 이후에 퇴원하는 비율은 전일제 근로가구가 31.3%인 반면 시간제는 11.1%에 불과하였다(표 IV-2-16 참조).

〈표 IV-2-15〉 근로 특성별 어린이집/유치원 등원 시각-평일

단위: %, 시(명)

구분	오전 7시 -8시 이전	오전 8시 -9시 이전	오전 9시 -10시 이전	오전 10시 이후	계(수)	평균 시각
전체	4.8	40.5	47.2	7.5	100.0(1,039)	8.6
가구 근로 형태						
전일제+전일제	5.5	43.7	44.7	6.0	100.0(812)	8.5
전일제+시간제	2.2	29.1	55.9	12.8	100.0(227)	8.8
$\chi^2(df)$	28.993(3)**					
본인 근로 형태						
전일제	5.3	43.0	45.4	6.3	100.0(870)	8.5
시간제	2.4	27.8	56.2	13.6	100.0(169)	8.8
$\chi^2(df)$	24.071(3)**					

(표 IV-2-15 계속)

구분	오전 7시 -8시 이전	오전 8시 -9시 이전	오전 9시 -10시 이전	오전 10시 이후	계(수)	평균 시각
근무 형태						
일반근무	4.2	41.8	46.9	7.1	100.0(900)	8.6
교대근무	4.9	29.5	52.5	13.1	100.0(61)	8.7
야간근무	11.5	34.6	46.2	7.7	100.0(78)	8.5
$X^2(df)$	13.974(6)*					

* $p < .05$, *** $p < .001$

〈표 IV-2-16〉 근로 특성별 어린이집/유치원 하원 시각-평일

단위: %, 시(명)

구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4시 이전	오후 4시 -5시 이전	오후 5시 -6시 이전	오후 6시 -7시 이전	오후 7시 -8시 이전	오후 8시 -9시 이전	오후 9시 이후	계(수)	평균 시각
전체	7.8	15.8	21.7	26.3	20.9	6.5	0.9	0.2	100.0(1,039)	16.4
가구 근로 형태										
전일제+전일제	6.4	14.9	20.1	25.2	24.1	7.9	1.1	0.2	100.0(812)	16.6
전일제+시간제	12.8	18.9	27.3	30.0	9.3	1.8	-	-	100.0(227)	15.8
$X^2(df)$	48.915***									
본인 근로 형태										
전일제	6.7	15.5	20.8	25.2	23.1	7.5	1.0	0.2	100.0(870)	16.6
시간제	13.6	17.2	26.0	32.0	9.5	1.8	-	-	100.0(169)	15.7
$X^2(df)$	35.006***									
근무 형태										
일반근무	7.4	15.3	21.2	26.9	21.7	6.6	0.7	0.2	100.0(900)	16.5
교대근무	11.5	26.2	23.0	26.2	6.6	4.9	1.6	-	100.0(61)	15.9
야간근무	9.0	12.8	25.6	19.2	23.1	7.7	2.6	-	100.0(78)	16.6
$X^2(df)$	18.988(14)									

*** $p < .001$

다음으로 개인양육서비스의 이용 시간에서는 전일제 가구와 취업모가 전일제 근로자인 경우는 평일 기준 각각 8시간 48분과 8시간 56분을 이용하는 반면 시간제인 경우는 각각 5시간 35분과 5시간 20분으로 그 차이가 뚜렷하다. 또한 서비스 이용 시작 시간과 종료시간도 차이를 보여 전일제 가구인 경우는 오전 9시 35분에 시작하여 오후 6시에 종료하나, 시간제인 경우는 11시가 넘어서 시작하여 5시 이전에 종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개인양육서비스 비용지원 시에 근로 형태별 차등 지원이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2-17〉 근로 특성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시간

단위: 시간, 시, (명)

구분	평일 총 이용시간		시작 시각	종료 시각	(수)
	평균	t/F			
전체	8.4		9.9	17.8	(858)
가구 근로 형태					
전일제+전일제	8.8	6.096***	9.7	18.0	(731)
전일제+시간제	5.7		11.1	16.8	(127)
본인 근로 형태					
전일제	8.7	6.203***	9.7	18.0	(765)
시간제	5.4		11.5	16.8	(93)
근무 형태					
일반근무	8.2	7.170**	10.0	17.8	(723)
교대근무	6.8		10.2	16.4	(49)
야간근무	10.6		8.5	19.0	(86)

주: 평일 총 이용 시간은 평일 1일 기준 평균 이용시간으로 산출한 결과임.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 $p < .01$, *** $p < .001$

〈표 IV-2-18〉 근로 특성별 이용충단 기관 불만족내용

단위: %, (명)

구분	교사가 마음에 안들어서	원장이 마음에 안들어서	보육/교육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들어서	물리적 환경이 마음에 안들어서	기관운영 시간과 근무시간이 맞지 않음	이용 비용이 비쌌	특별활동 /특성화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들어서	기타	(수)
전체	44.1	34.2	28.8	22.5	21.6	19.8	18.9	5.4	(111)
가구 근로 형태									
전일제+전일제	44.0	31.0	28.6	22.6	22.6	17.9	19.0	6.0	(84)
전일제+시간제	44.4	44.4	29.6	22.2	18.5	25.9	18.5	3.7	(27)
본인 근로 형태									
전일제	43.0	30.1	29.0	20.4	22.6	19.4	18.3	6.5	(93)
시간제	50.0	55.6	27.8	33.3	16.7	22.2	22.2	-	(18)
종사상 지위									
상용직	45.1	33.0	27.5	16.5	24.2	19.8	17.6	5.5	(91)
비상용직	33.3	44.4	55.6	44.4	0.0	22.2	33.3	-	(9)
해당없음	45.5	36.4	18.2	54.5	18.2	18.2	18.2	9.1	(11)
근무 형태									
일반근무	46.4	35.7	28.6	22.6	17.9	20.2	20.2	6.0	(84)
교대근무	50.0	37.5	25.0	12.5	12.5	25.0	-	-	(8)
야간근무	31.6	26.3	31.6	26.3	42.1	15.8	21.1	5.3	(19)

주: 다중응답 결과임.

이용 시간과 관련하여 전일제 근로가구는 시간제에 비해 기관 이용 시 기관 운영 시간과 근무시간이 맞지 않는 고충을 보다 크게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관 이용 중단 경험에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의 불만족내용을 조사한 결과, 전일제 근로가구는 기관 운영시간과 근로시간과의 불일치로 기관을 변경한 비율이 22.6%로 나타난다(표 IV-2-18 참조). 또한 이러한 불만은 야간근무자에서 보다 심각하여 해당 비율은 42.1%에 달한다.

다) 이용비용

우선 월 평균 총 보육·교육비용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자녀 연령에 따른 차이에 비해 그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일제 근로가구는 월 평균비용은 약 65만원선이나, 시간제는 약 43만원으로 가구당 약 20만원 이상 격차를 보인다.

〈표 IV-2-19〉 근로 특성별 월 평균 총 보육·교육 이용비용

단위: 만원, (명)

구분	월 평균 이용비용	t/F	(수)
전체	60.4		(1,259)
가구 근로 형태			
전일제+전일제	64.7	6.269***	(1,009)
전일제+시간제	43.1		(250)
본인 근로 형태			
전일제	63.4	5.017***	(1,074)
시간제	43.3		(185)

주: 월 평균 총 이용비용은 최근 3개월 평균 비용으로 산출한 결과임.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입.

*** $p < .001$

다음으로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월 평균 이용비용은 전일제 근로가구는 56만원이나, 시간제는 34만원선으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지불 방식도 전일제 근로가구나 취업모가 전일제 근로자인 경우는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비율이 약 67%이나, 시간제의 경우는 해당 비율이 약 49%선이다. 이는 개인양육서비스 이용 시 전일제 근로가구의 과중한 양육 부담을 의미하므로 근로시간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및 비용 지원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표 IV-2-20〉 근로 특성별 개인양육서비스 비용 지불

단위: %, 만원(명)

구분	비용 지불 방법							월 이용 비용	
	정기적 지불	비정기적 지불	현물로 지불	지불 안함	숙식만 제공	기타	(수)	평균(수)	t/F
전체	64.0	19.3	10.7	10.4	1.6	0.7	(858)	53.1(779)	
가구 근로 형태									
전일제+전일제	66.6	18.6	11.1	8.8	1.5	0.8	(731)	56.0(674)	7.023***
전일제+시간제	48.8	23.6	8.7	19.7	2.4	-	(127)	34.3(105)	
본인 근로 형태									
전일제	66.0	19.0	10.7	9.3	1.6	0.8	(765)	55.2(701)	6.406***
시간제	47.3	22.6	10.8	19.4	2.2	-	(93)	33.5(78)	
근무 형태									
일반근무	64.2	18.9	10.7	10.4	1.4	0.8	(723)	52.4(657)	3.105*
교대근무	51.0	26.5	16.3	12.2	-	-	(49)	45.8(45)	
야간근무	69.8	18.6	8.1	9.3	4.7	-	(86)	63.3(77)	

주: 월 이용비용은 최근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이용비용을 현물로 지급한 경우 현금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결과임.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 $p < .05$, *** $p < .001$

구체적인 서비스별로는 조부모/친인척, 아이돌보미, 민간베이비시터 모두에서 전일제 근로가구의 월 평균 이용비용이 시간제에 비해 높고, 이용 부담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혈연 양육자의 경우 해당 비용은 전일제 근로가구의 경우는 약 46~47만원선이나, 시간제는 약 28~29만원으로 절반 수준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는 각각 약 40만원선과 16만원, 민간베이비시터의 경우는 약 75만원과 39만원으로 현격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표 IV-2-21~IV-2-23 참조).

〈표 IV-2-21〉 근로 특성별 조부모/친인척 월 평균 이용비용/이용부담 정도

단위: 만원, %, 점(명)

구분	월 평균 이용 비용	t/F	이용 부담 정도								평균 t/F		(수)
			전혀 부담 안됨	부담 안됨	보통	부담 됨	매우 부담 됨	계	$\chi^2(df)$				
전체	43.7		10.4	19.1	31.2	29.8	9.5	100.0			3.1		(808)
가구 근로 형태													
전일제+전일제	46.5	5.867***	9.4	18.8	31.0	31.4	9.4	100.0	8.173(4)		3.1		(688)
전일제+시간제	27.5		15.8	20.8	32.5	20.8	10.0	100.0			2.9	2.178*	(120)
본인 근로 형태													
전일제	45.5	4.514***	9.9	18.5	31.4	30.6	9.7	100.0	4.535(4)		3.1		(720)
시간제	28.6		14.8	23.9	29.5	23.9	8.0	100.0			2.9	1.996*	(88)

(표 IV-2-21 계속)

구분	월 평균 이용 비용	t/F	이용 부담 정도							X ² (df)	평균	t/F	(수)
			전혀 부담 안됨	부담 안됨	보통	부담 됨	매우 부담 됨	계					
종사상 지위													
상용직	43.9		9.7	19.1	31.4	30.3	9.5	100.0		3.1			(650)
비상용직	39.1	0.368	17.5	15.8	22.8	29.8	14.0	100.0	7.599(8)	3.1	0.578		(57)
해당없음	44.5		10.9	20.8	34.7	26.7	6.9	100.0		3.0			(101)
근무 형태													
일반근무	42.7		10.1	19.0	32.0	29.8	9.1	100.0		3.1			(684)
교대근무	41.9	2.164	13.0	21.7	28.3	30.4	6.5	100.0	5.149(8)	3.0	0.640		(46)
야간근무	53.1		11.5	17.9	25.6	29.5	15.4	100.0		3.2			(78)

주: 월 평균 이용비용은 최근 3개월 평균 비용으로 산출한 결과임.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이용부담 정도는 '전혀부담안됨' 1점~'매우부담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01$

〈표 IV-2-22〉 근로 특성별 아이돌보미 월 평균 이용비용/이용부담 정도

단위: 만원, %, 점(명)

구분	월 평균 이용 비용	t/F	이용 부담 정도							평균	t/F	(수)
			전혀 부담 안됨	부담 안됨	보통	부담됨	매우 부담됨	계				
전체	33.7		3.2	6.3	20.6	58.7	11.1	100.0	3.7		(63)	
가구 근로 형태												
전일제+전일제	35.9	1.262	1.8	7.1	19.6	58.9	12.5	100.0	3.7	1.277	(56)	
전일제+시간제	16.1		14.3	-	28.6	57.1	-	100.0	3.3		(7)	
본인 근로 형태												
전일제	35.4	1.031	1.8	7.0	19.3	59.6	12.3	100.0	3.7	1.532	(57)	
시간제	18.0		16.7	-	33.3	50.0	-	100.0	3.2		(6)	
종사상 지위												
상용직	33.6	0.352	3.4	6.9	20.7	56.9	12.1	100.0	3.7	0.132	(58)	
비상용직	17.5		-	-	-	100.0	-	100.0	4.0		(2)	
해당없음	47.7		-	-	33.3	66.7	-	100.0	3.7		(3)	
근무 형태												
일반근무	35.1	0.276	1.8	5.5	21.8	58.2	12.7	100.0	3.7	4.115*	(55)	
교대근무	25.6		-	-	20.0	80.0	-	100.0	3.8		(5)	
야간근무	21.7		33.3	33.3	-	33.3	-	100.0	2.3		(3)	

주: 월 평균 이용비용은 최근 3개월 평균 비용으로 산출한 결과임.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이용부담 정도는 '전혀부담안됨' 1점~'매우부담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표 IV-2-23〉 근로 특성별 (민간)베이비시터 월 평균 이용비용/이용부담 정도

단위: 만원, %, 점(명)

구분	월 평균 이용 비용	t/F	이용부담 정도						평균	t/F	(수)
			전혀 부담 안됨	부담 안됨	보통	부담됨	매우 부담됨	계			
전체	70.4		1.5	1.5	20.6	47.1	29.4	100.0	4.0		(68)
가구 근로 형태											
전일제+전일제	74.7	1.536	1.7	1.7	16.7	48.3	31.7	100.0	4.1	1.412	(60)
전일제+시간제	38.5		-	-	50.0	37.5	12.5	100.0	3.6		(8)
본인 근로 형태											
전일제	75.5	8.387***	1.6	1.6	15.9	49.2	31.7	100.0	4.1	2.334*	(63)
시간제	6.6		-	-	80.0	20.0	-	100.0	3.2		(5)
종사상 지위											
상용직	76.7	3.167*	1.6	-	18.0	47.5	32.8	100.0	4.1	4.645*	(61)
비상용직	7.5		-	50.0	50.0	-	-	100.0	2.5		(2)
해당없음	18.6		-	-	40.0	60.0	-	100.0	3.6		(5)
근무 형태											
일반근무	69.7	0.406	1.8	1.8	21.8	45.5	29.1	100.0	4.0	0.282	(55)
교대근무	45.0		-	-	-	100.0	-	100.0	4.0		(3)
야간근무	82.0		-	-	20.0	40.0	40.0	100.0	4.2		(10)

주: 월 평균 이용비용은 최근 3개월 평균 비용으로 산출한 결과임.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이용부담 정도는 '전혀부담안됨' 1점~'매우부담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3) 애로사항 및 수요

전일제 근로 가구와 취업모는 시간제에 비해 아침시간에 자녀를 맡기는 어려움과 저녁시간에 자녀를 맡기는 데 보다 큰 고충을 겪으며, 장시간 근로로 자녀를 돌보기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야간근무자는 저녁시간에 자녀를 맡기는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근로시간에 따른 자녀양육 시 고충은 직장 규모가 클수록 보다 더 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2-24〉 근로 특성별 근무시간 관련 일·가정 양립 애로사항

단위: 점, (명)

구분	아침시간에 자녀 맡기는 어려움	저녁시간에 자녀 맡기는 어려움	장기간 근로로 자녀 돌보기 어려움
전체	3.6	3.7	3.6

(표 IV-2-24 계속)

구분	아침시간에 자녀 맡기는 어려움	저녁시간에 자녀 맡기는 어려움	장기간 근로로 자녀 돌보기 어려움
가구 근로 형태			
전일제+전일제	3.7	3.7	3.7
전일제+시간제	3.4	3.5	3.4
<i>t</i>	3.180	3.194	4.033
본인 근로 형태			
전일제	3.6	3.7	3.7
시간제	3.4	3.5	3.4
<i>t</i>	2.418	2.253	3.793
근무 형태			
일반근무	3.6	3.7	3.6
교대근무	3.6	3.8	3.6
야간근무	3.7	3.9	3.8
F	0.344	4.131	2.303
직장규모			
5인미만	3.3	3.5	3.5
5-9인	3.5	3.6	3.6
10-29인	3.7	3.7	3.6
30-99인	3.7	3.6	3.6
100-299인	3.8	3.9	3.8
300인 이상	3.7	3.8	3.8
F	6.475	3.190	2.988
(수)	(1,271)		

주: 평균은 각 항목에 대해 '전혀그렇지않다' 1점~'매우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또한 일·가정 양립지원 필요도에서 전일제 근로가구는 시간제에 비해 가정내 보육 수요가 높고, 야간근무자는 근로시간 조정과 기관보육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가정내 보육지원의 우선지원 대상은 전일제 근로가구이며, 야간근로자에게는 육아와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야간보육 등 시간연장형보육 지원 대상의 적정성 제고가 요구됨을 말해준다.

〈표 IV-2-25〉 근로 특성별 일·가정 양립지원 필요도

구분	휴직 가능	근로시간 조정	기관보육 제공	단위: 점, (명) 가정내 보육 지원
전체	3.2	3.4	3.5	3.2

(표 IV-2-25 계속)

구분	휴직 가능	근로시간 조정	기관보육 제공	가정내 보육 지원
가구 근로 형태				
전일제+전일제	3.2	3.5	3.5	3.2
전일제+시간제	3.1	3.4	3.5	3.1
<i>t</i>	1.704	1.796	1.276	2.344*
본인 근로 형태				
전일제	3.2	3.5	3.5	3.2
시간제	3.2	3.4	3.5	3.2
<i>t</i>	-0.036	1.201	0.503	0.382
근무 형태				
일반근무	3.2	3.4	3.5	3.2
교대근무	3.2	3.4	3.6	3.2
야간근무	3.3	3.6	3.6	3.2
<i>F</i>	1.741	3.023*	3.465*	0.800
(<i>n</i>)	(1,271)			

주: 평균은 각 항목에 대해 '전혀필요하지않다' 1점~'매우필요하다'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다. 이외 개인 특성별

앞서 다룬 자녀 특성과 근로 특성 이외에 소득과 거주 지역규모에 따라 육아 지원서비스 및 제도 이용 실태와 요구는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주양육자, 일부 서비스에 한하여 이용률, 이용시간 이용비용, 그리고 양육 시 애로사항과 수요 등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양육자

주양육자는 본인 월소득이 높을수록 어린이집 이용률은 낮고, 유치원 이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특히 (민간)베이비시터 이용률은 본인 월소득이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8%로 현저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 취업모는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기관보육이 유일한 실정이므로 기관보육의 우선 입소 대상자임과 동시에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도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대상임을 확인시켜준다(표 IV-2-26 참조).

또한 기관을 이용하면서 병행하여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비율은 본인 월소득과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뚜렷하다.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원인력이 부재하여 보육 사각지대가 우려된다(표 IV-2-27 참조).

〈표 IV-2-26〉 소득별 주양육자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조부모	기타 친인척	아이 돌보미/ 가정 보육사	(민간) 베이비 시터	반일제 학원	기타	계(수)
전체	51.8	19.1	25.4	1.3	0.6	1.3	0.2	0.3	100.0(1,271)
본인 월소득									
100만원 이하	61.6	24.0	11.0	1.4	-	-	0.7	1.4	100.0(146)
200만원 이하	55.6	17.8	24.4	1.2	0.4	0.6	-	-	100.0(495)
300만원 이하	47.1	16.2	33.2	0.8	1.1	1.1	-	0.5	100.0(365)
400만원 이하	44.4	24.1	28.6	1.5	0.8	0.8	-	-	100.0(133)
400만원 초과	47.0	22.0	20.5	2.3	0.8	6.8	0.8	-	100.0(132)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57.4	23.5	16.2	1.5	1.5	-	-	-	100.0(68)
300만원 미만	56.0	18.5	23.8	1.2	-	0.4	-	-	100.0(248)
400만원 미만	54.9	20.8	21.6	0.4	0.8	0.8	-	0.8	100.0(264)
500만원 미만	55.3	16.2	26.0	0.9	0.4	0.9	0.4	-	100.0(235)
600만원 미만	47.1	20.9	26.7	1.7	0.6	2.9	-	-	100.0(172)
600만원 이상	43.7	18.3	31.3	2.1	1.1	2.5	0.4	0.7	100.0(284)

주: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표 IV-2-27〉 소득별 기관 병행 이용시 돌봄 제공자

단위: %, (명)

구분	돌봐주는 사람 여부		돌봐주는 사람							(수)
	있음	전체 (수)	외 조부모	친 조부모	(민간) 베이비 시터	아이 돌보미	친인척	이웃/ 친구	기타	
전체	44.1	(901)	50.4	40.6	6.0	4.5	4.5	2.3	3.0	(397)
본인 월소득										
100만원 이하	23.2	(125)	58.6	24.1	6.9	6.9	3.4	0.0	10.3	(29)
200만원 이하	40.8	(363)	50.7	42.6	3.4	3.4	5.4	4.1	4.1	(148)
300만원 이하	58.9	(231)	57.4	39.7	3.7	2.2	2.2	1.5	1.5	(136)
400만원 이하	47.3	(91)	32.6	48.8	14.0	11.6	2.3	2.3	2.3	(43)
400만원 초과	45.1	(91)	39.0	39.0	14.6	7.3	12.2	-	-	(41)

(표 IV-2-27 계속)

구분	돌봐주는 사람 여부		돌봐주는 사람							
	있음	전체 (수)	외 조부모	친 조부모	베이비 시터 (민간)	아이 돌보미	친인척	이웃/ 친구	기타	(수)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38.2	(55)	57.1	42.9	-	4.8	9.5	-	4.8	(21)
300만원 미만	38.9	(185)	55.6	30.6	8.3	5.6	2.8	2.8	4.2	(72)
400만원 미만	44.0	(200)	46.6	46.6	4.5	6.8	3.4	1.1	3.4	(88)
500만원 미만	38.1	(168)	54.7	34.4	3.1	3.1	4.7	4.7	4.7	(64)
600만원 미만	47.0	(117)	52.7	43.6	5.5	-	5.5	1.8	1.8	(55)
600만원 이상	55.1	(176)	44.3	44.3	9.3	5.2	5.2	2.1	1.0	(97)

주: 돌봐주는 사람 여부는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2)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가) 이용률

우선 기관 이용 시 대기 현황은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데, 대도시 지역에서는 유치원 입학이나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대기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47%에 달하나, 읍면지역은 22.2%로 절반 수준을 나타낸다. 해당 기간도 대도시 지역은 약 9개월, 읍면 지역은 약 6개월로 차이를 보인다. 이는 특히 대도시 지역의 심각한 대기 실정을 보여준다.

〈표 IV-2-28〉 거주 지역규모별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의 대기 유경험율/대기 기간
단위: %, 개월(명)

구분	대기 유경험율	(수)	대기 기간(수)	t/F
전체	40.8	(1,039)	7.9(421)	
지역규모				
대도시	47.4	(603)	8.9(284)	5.382**
중소도시	33.5	(364)	6.0(121)	
읍면지역	22.2	(72)	6.3(16)	

주: 대기 유경험율은 대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 $p < .01$

다음으로 월 가구소득에 따른 서비스 이용률은 (민간)베이비시터 부문에서 두드러진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특히 취업모의 월 소

득이 높을수록 이용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100만원 이하는 2.1%에 불과하나,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5.9%로 커다란 격차가 보이며, 이에 따른 만족도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 IV-2-29〉 이외 개인 특성별 (민간)베이비시터 이용률/이용 만족도

단위: %, 점(명)

구분	이용률	이용 만족도							평균	t/F
	이용 합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chi^2(df)$		
전체	5.4 (1,217)	2.9	4.4	44.1	35.3	13.2	100.0(68)		3.5	
본인 월소득										
100만원 이하	2.1 (146)	-	-	66.7	33.3	-	100.0(3)	12.750(16)	3.3	0.827
200만원 이하	2.8 (495)	-	7.1	57.1	28.6	7.1	100.0(14)		3.4	
300만원 이하	6.0 (365)	4.5	-	54.5	31.8	9.1	100.0(22)		3.4	
400만원 이하	6.0 (133)	-	12.5	12.5	37.5	37.5	100.0(8)		4.0	
400만원 초과	15.9 (132)	4.8	4.8	33.3	42.9	14.3	100.0(21)		3.6	
지역규모										
대도시	6.5 (750)	4.1	4.1	40.8	38.8	12.2	100.0(49)	3.387(8)	3.5	0.500
중소도시	3.7 (435)	-	6.3	56.3	25.0	12.5	100.0(16)		3.4	
읍면지역	3.5 (86)	-	0.0	33.3	33.3	33.3	100.0(3)		4.0	

주: 이용률은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이용 만족도는 '매우불만족' 1점~'매우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나) 이용비용

월평균 총 이용비용은 본인의 월소득이나 가구소득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용비용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즉 본인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약 31만원, 400만원 초과인 경우는 약 88만원으로 그 차이가 크고, 월 가구소득의 경우도 200만원 이하는 약 42만원, 600만원 이상은 89만원으로 2배 이상 높은 것을 알수 있다. 또한 이용비용은 지역규모별로도 차이를 보여 대도시 지역은 약 67만원, 읍면 지역은 절반 수준인 3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30〉 이외 개인 특성별 월 평균 총 보육·교육비용

단위: 만원, (명)

구분	월 평균 이용비용	t/F	(수)
전체	60.4		(1,259)

(표 IV-2-30 계속)

구분	월 평균 이용비용	t/F	(수)
본인 월소득			
100만원 이하	31.3	26.153***	(142)
200만원 이하	51.6		(491)
300만원 이하	69.6		(364)
400만원 이하	72.4		(132)
400만원 초과	87.7		(130)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42.2	24.093***	(66)
300만원 미만	45.0		(246)
400만원 미만	52.1		(260)
500만원 미만	53.3		(232)
600만원 미만	64.2		(171)
600만원 이상	89.1		(284)
지역규모			
대도시	66.6	16.552***	(742)
중소도시	55.1		(432)
읍면지역	33.6		(85)

주: 월 평균 총 이용비용은 최근 3개월 평균 비용으로 산출한 결과임.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 $p < .001$

서비스 이용비용에서 소득과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서비스 유형은 개인양육지원서비스로서 소득이 높고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조부모/친인척 돌봄 월 평균 이용비용의 경우 본인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약 25만원, 400만원 초과인 경우는 약 55만원으로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이는 지역규모별로도 차이를 보여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가 읍면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V-2-31 참조). (민간)베이비시터의 월평균 이용비용은 그 격차가 보다 뚜렷하여 본인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약 8만원, 400만원 초과인 경우는 111만원에 달하여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표 IV-2-32 참조).

〈표 IV-2-31〉 이외 개인 특성별 조부모/친인척 월 평균 이용 비용/이용부담 정도
단위: 만원, %, 점, (명)

구분	월 평균 이용 비용	t/F	이용 부담 정도							평균	t/F	(수)
			전혀 부담 안됨	부담 안됨	보통	부담 됨	매우 부담 됨	계	$\chi^2(df)$			
전체	43.7		10.4	19.1	31.2	29.8	9.5	100.0		3.1		(808)
본인 월소득												
100만원 이하	25.3	12.602**	23.6	25.5	27.3	16.4	7.3	100.0	32.786(16)*	2.6		(55)
200만원 이하	34.4		10.9	18.8	33.4	26.6	10.3	100.0		3.1	4.450**	(320)
300만원 이하	50.9		8.5	20.6	28.3	33.5	9.2	100.0		3.1		(272)
400만원 이하	57.2		7.1	13.1	25.0	44.0	10.7	100.0		3.4		(84)
400만원 초과	54.7		9.1	16.9	41.6	24.7	7.8	100.0		3.1		(77)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23.7	7.427**	17.1	17.1	37.1	22.9	5.7	100.0	27.466(20)	2.8		(35)
300만원 미만	35.0		10.2	25.2	32.7	23.8	8.2	100.0		2.9		(147)
400만원 미만	39.3		13.1	15.6	32.5	31.9	6.9	100.0		3.0	1.910	(160)
500만원 미만	42.2		9.9	22.5	26.1	31.7	9.9	100.0		3.1		(142)
600만원 미만	45.0		9.6	14.8	29.6	27.8	18.3	100.0		3.3		(115)
600만원 이상	56.6		8.1	17.7	32.5	33.5	8.1	100.0		3.2		(209)
지역규모												
대도시	46.6	5.532**	9.0	17.9	30.1	33.6	9.4	100.0	19.559(8)*	3.2	6.301**	(509)
중소도시	40.6		11.7	20.7	31.3	25.4	10.9	100.0		3.0		(256)
읍면지역	26.6		18.6	23.3	44.2	11.6	2.3	100.0		2.6		(43)

주: 월 평균 이용비용은 최근 3개월 평균 비용으로 산출한 결과임.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이용부담 정도는 '전혀부담안됨' 1점~'매우부담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IV-2-32〉 이외 개인 특성별 (민간)베이비시터 월 평균 이용비용/이용 부담
단위: 만원, %, 점(명)

구분	월 평균 이용 비용	t/F	이용부담 정도							평균	t/F	(수)
			전혀 부담 안됨	부담 안됨	보통	부담 됨	매우 부담 됨	계				
전체	70.4		1.5	1.5	20.6	47.1	29.4	100.0		4.0		(68)
본인 월소득												
100만원 이하	7.7	4.486**	-	-	66.7	33.3	-	100.0		3.3		(3)
200만원 이하	46.5		-	7.1	14.3	42.9	35.7	100.0		4.1	1.348	(14)
300만원 이하	56.5		4.5	-	18.2	45.5	31.8	100.0		4.0		(22)
400만원 이하	66.9		-	-	37.5	62.5	-	100.0		3.6		(8)
400만원 초과	111.3		-	-	14.3	47.6	38.1	100.0		4.2		(21)

(표 IV-3-32 계속)

구분	월 평균 이용 비용	t/F	이용부담 정도							평균	t/F	(수)
			전혀 부담 안됨	부담 안됨	보통	부담됨	매우 부담됨	계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65.0	2.937*	-	-	-	66.7	33.3	100.0	4.3	1.168	(3)	
300만원 미만	32.1		-	-	45.5	36.4	18.2	100.0	3.7		(11)	
400만원 미만	41.2		-	-	25.0	58.3	16.7	100.0	3.9		(12)	
500만원 미만	57.0		-	-	-	57.1	42.9	100.0	4.4		(7)	
600만원 미만	105.0		10.0	10.0	10.0	40.0	30.0	100.0	3.7		(10)	
600만원 이상	91.9		-	-	20.0	44.0	36.0	100.0	4.2		(25)	

주: 월 평균 이용비용은 최근 3개월 평균 비용으로 산출한 결과임.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입.

이용부담 정도는 '전혀부담안됨' 1점~ '매우부담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01$

3. 요약 및 시사점

앞서 다룬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양육 실태와 요구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서비스 지원 부문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는 어린이집과 조부모에 대한 의존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해당 비율은 각각 61.8%와 63.6%에 달하며, 특히 조부모 지원을 받는 비율은 1세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5세에 이르기까지 기관 이용률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영유아 전반에 걸쳐 병행 이용이 지배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히 전일제 근로가구나 취업모에서 두드러지며, 특히 야간근로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같은 이용 실태는 현행 기관보육이 전일제 근로자나 야간근로자 등과 같이 비전형적인 근로시간에 일하는 부모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함을 말해준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맞벌이 가구의 보육 수요에 부응하는 데 미흡하다는 사실은 기관 이용 후 사설기관의 이용률이 약 15~20%에 이르고, 해당 이용 사유로서 보육 기능이 강조되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현행 기관보육은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종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실질적인 운영 시간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시급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맞벌이 가구의 기관 선택 사항으로 지리적 접근성과 교사의 질이 중요시되고, 대기 기관 유형

중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므로 공보육인프라의 확충과 기관보육 서비스 질 제고가 핵심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기관보육이 맞벌이 가구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실은 과도한 개인양육서비스 이용비용을 야기한다. 해당 비용은 혈연과 비혈연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을 보이며, 실제 비용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월 이용비용이 각각 약 21만원과 30만원선인데 비해 조부모/친인척 지불 비용은 약 44만원, (민간)베이비시터 이용 비용은 약 70만원을 육박한다. 또한 개인양육서비스 이용 비용은 전일제 근로자거나 전일제 취업모, 그리고 야간근로자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개인양육서비스 이용 시 불만족 내용으로 과도한 이용비용과 돌봄인력의 전문성이 지적되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양육서비스의 이용은 기관보육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개인양육서비스의 이용 사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단적으로 기관 이용이 편치 않아서에 속하는 응답이 무려 약 96%선에 이르기 때문이다(다중응답). 이는 구체적으로 기관 이용후 돌봄 사람이 필요해서 59.8%, 원하는 시간에 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서 20.3%, 이용 비용이 부담돼서 9.4%, 이용 희망기관에 대기자가 많아서 7.0%로 나타나는데, 자녀가 어려서 기관 적응이 어려울까봐 36.4%, 자녀가 원해서 7.7%인 점을 감안하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는 한정적이라고 판단된다.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의 경우는 높은 필요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매우 낮으며, 이는 특히 전일제 근로자에서 더욱 그러하므로 전반적으로 서비스 접근성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즉 전일제 근로자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토요 운영 상시화 하는 등 맞벌이 가구의 필요도가 높은 프로그램이 해당 서비스기관에 상시 운영되도록 운영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시간 지원 부문은 주로 휴가, 휴직제도 위주로 활용되며, 0~5세 전반에 걸쳐 높은 수요를 보이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탄력근무제도의 시행률과 이용률은 모두 매우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기관보육 등 서비스 지원에 비해 시간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그런데 시간 지원의 강화는 다른 한편 우리나라의 특수성 즉 낮은 여성고용률과 극심한 성별 임금 격차 등을 고려하면, 젠더 차원의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여성에게 치중된 제도 이용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간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영아를 둔 부모의 경우는 해당 수요가 영아보육의 질과 직결되

는 측면이 있으므로 영아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 노력을 동시에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들 시간 지원과 서비스 지원에 대한 수요는 자녀 연령이나 근로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양상을 보인다. 즉 시간 지원에 대한 요구는 전일제 근로자와 야간 근로자에서 보다 높고, 휴직제도는 영아에서, 유연근무제도는 영유아 전반에서 요구된다. 반면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는 영유아 전반에 걸쳐 나타나지만, 가구소득이나 본인 소득에 따라 개인양육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은 차이가 있으므로 선택권이 취약한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우선지원과 기관 우선 입소 자격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녀 연령별로 선호하는 양육 방식이 다르고, 정책 효과 즉 출산을 제고와 일·가정 양립지원 측면에서 그 수요도 상이하다. 우선 선호하는 양육방식은 0세와 1세아(또는 2세아까지)의 경우는 부모의 직접양육에 대한 선호가 우세하며, 가정내보육에 대한 수요가 뚜렷하다. 이에 따라 영아를 둔 부모는 산전후 휴가제도, 휴직제도, 그리고 가정양육수당에서 높은 정책 선호도를 보인다. 반면 4세아부터 특히 5세아의 경우는 유치원에 대한 선호가 명확하고 실제 유치원 이용률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 같은 선호도는 주양육자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즉 자녀 연령별 주양육자는 0세의 경우 주양육자는 조부모가 지배적이어서 해당 비율은 59%로 나타나며, 1세 이후는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다가 5세아에 이르면 유치원 이용률이 어린이집의 이용률(40.4%)을 역전하여 46.8%에 이른다. 또한 기관 최초 이용 시기가 0세와 1세인 경우는 너무 이르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0%선을 훨씬 넘어서고 해당 시기에 희망하는 양육 방식은 대부분 부모의 직접 양육으로 나타나므로 0~1세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모권 보장에 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영유아를 둔 취업모의 경력단절 실태에 의하면,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의 범위는 임신·출산 단계를 적극적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 의하면, 약 34%에 이르는 경력단절은 주로 임신했을 때와 출산휴가 직후에 이루어지므로 일·가정 양립지원은 자녀 양육 시기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 시기부터 포괄되어야 그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 맞벌이 가구 대상 육아지원서비스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

이 장에서는 기관보육·교육 운영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고, 해당 서비스가 맞벌이 가구의 보육지원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어린이집 시간연장형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보육·교육서비스 이외의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 운영 사례를 다루었다.

1. 기관보육·교육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

기관보육·교육 운영 실태와 요구는 전국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며, 시간연장형보육과 방과후보육 운영 사례에 관한 분석은 해당 기관의 원장 및 담당 교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가. 보육 실수요자에 대한 인식

우선 입소·입학 대상으로는 전반적으로 맞벌이 가구가 4.4점(5점 만점)으로 가장 우선시된다고 인식하였고, 다음으로는 저소득층 한부모(4.3점), 장애부모 및 기초생활 수급자(4.1점), 다문화 가족(3.9점), 차상위 계층(3.8점), 3자녀 이상 다자녀(3.7점) 순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 어린이집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기관보육·교육 우선 제공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진 반면, 유치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한부모 등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구의 보육 욕구를 유사한 수준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표 V-1-1〉 대상별 우선 입소·입학 중요도-어린이집/유치원

단위: 점

구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한부모	장애 부모	다문화 가족	맞벌이 가구	3명 이상 다자녀	영유아 자녀 2명이상
전체	4.1	3.8	4.3	4.1	3.9	4.4	3.7	3.4

(표 V-1-1 계속)

구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한부모	장애 부모	다문화 가족	맞벌이 가구	3명 이상 다자녀	영유아 자녀 2명 이상
기관								
어린이집	4.1	3.8	4.3	4.1	3.9	4.5	3.8	3.5
유치원	4.0	3.7	4.0	3.9	3.7	4.0	3.5	3.2

주: 각 평균점수는 '전혀중요하지않음' 1점~'매우중요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다음으로 종일제 보육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맞벌이 가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59.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기관 운영자의 인식은 실제 맞벌이 가구들이 종일제 보육을 온전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과는 상충된다.

〈표 V-1-2〉 대상별 종일제 보육 필요도-어린이집/유치원장

단위: %(명)

구분	맞벌이 가구	저소득층 한부모	기초 생활 수급자	장애 부모	다문화 가족	차상위 계층	3명 이상 다자녀	영유아 자녀 2명 이상	기타	계(수)
전체	59.8	16.4	13.3	6.3	1.7	1.5	0.6	0.2	0.2	1000(1,746)
기관										
어린이집	59.9	17.2	12.6	6.1	1.8	1.5	0.5	0.2	0.2	100.0(850)
유치원	59.2	12.3	17.4	7.1	1.2	1.0	1.2	0.1	0.5	100.0(896)

주: 1순위 응답 결과임.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이 같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의 기관·보육교육서비스의 실수요자와 종일제 보육 수요자에 대한 인식은 앞장에서 다룬 맞벌이 가구의 응답 결과와 동일하다. 이처럼 맞벌이 가구는 종일제 보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육 실수요자로서 현행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적용이 요구된다.

나. 보육·교육서비스 운영 전반

1) 운영 일수/운영 시간

가) 운영 일수

기관의 운영 일수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연간 휴원 일수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은 평균 25.7일, 유치원은 37.1일로 유치원의 연간 휴원일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어린이집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의 휴원일이 민간에 비해 많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표 V-1-3〉 어린이집/유치원 연간 휴원 일수

단위: 일, (명)

어린이집			유치원		
구분	평균	(수)	구분	평균	(수)
전체	25.7	(850)	전체	37.1	(896)
국공립	37.2	(145)	국공립	37.6	(533)
사회복지법인	31.4	(93)	사립	36.5	(363)
법인·단체	21.9	(74)			
직장	29.7	(90)			
가정	28.1	(225)			
부모협동	51.3	(20)			
민간	18.3	(203)			
F	2.993 ^{**}		t	.171	

^{**} $p < .01$.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방학 운영 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방학을 운영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 기관 중 54.1%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국공립어린이집 중 방학을 운영하는 비율은 7.0%에 불과한 반면, 가정어린이집의 해당 비율은 63.1%로 높게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이 영아보육을 위주로 운영하고 상대적으로 취업모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V-1-4〉 어린이집 방학 운영 현황

단위: %(명), 회, 일

구분	운영 비율	전체 (수)	운영 현황		(수)
			연간 총횟수	연간 총일수	
전체	54.1	(850)	1.8	8.3	(335)
지역규모					
대도시	47.9	(366)	1.7	7.7	(132)
중소도시	60.9	(288)	1.9	8.5	(125)
읍면지역	48.1	(196)	1.9	8.8	(78)
$\chi^2(df)/F$	23.798(2) ^{***}		16.748 ^{***}	5.743 ^{**}	
국공립	7.0	(145)	1.8	8.8	(11)
사회복지법인	29.3	(93)	2.0	9.8	(27)
법인·단체	36.5	(74)	2.0	9.3	(27)

(표 V-1-4 계속)

구분	운영 비율	전체(수)	운영 현황		(수)
			연간 총횟수	연간 총일수	
직장	17.5	(90)	1.7	7.2	(16)
가정	63.1	(225)	1.8	7.9	(138)
부모협동	56.9	(20)	1.7	7.4	(11)
민간	52.7	(203)	1.9	8.9	(105)
$\chi^2(df)/F$	123.175	(6)	3.345**	3.652**	

주: 운영 비율은 방학을 '운영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유치원의 기본과정과 방과후과정의 방학 운영 비율은 각각 91.1%, 75.2%이며, 연간 총 일수는 약 36일과 17일에 달하여 어린이집에 비해 월등히 긴 방학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1-5〉유치원 기본교육과정 방학 운영 현황

단위: %(명) 회, 일

구분	운영 비율	전체 (수)	운영 현황		(수)
			연간 총횟수	연간 총일수	
전체	91.1	(896)	2.3	37.5	(816)
국공립	87.1	(533)	2.3	50.3	(469)
사립	95.6	(363)	2.3	24.6	(347)
$\chi^2(df)/t$	6.074*		0.211(251)	10.800***	

주: 운영 비율은 방학을 '운영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 $p < .05$, *** $p < .001$

〈표 V-1-6〉유치원 방과후과정 방학 운영 현황

단위: 명, %, 회, 일

구분	운영 비율	전체 (수)	운영 현황		(수)
			연간 총횟수	연간 총일수	
전체	75.2	(896)	2.2	17.2	(663)
국공립	74.6	(533)	2.2	22.5	(389)
사립	75.8	(363)	2.2	11.5	(274)
$\chi^2(df)/t$	0.045(1)		0.339(206)	5.244***	

주: 운영 비율은 방학을 '운영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 $p < .001$

다음으로 토요일에 기관을 운영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은 40.8%이고 유치원은 20.7%이었다. 해당 비율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75.9%로 가장 높고 민간어린이집 46.0%, 가정어린이집 32.6%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치

원의 경우는 국공립유치원에서는 7.9%만이 토요일에 운영하여 사립유치원의 운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1-7〉 토요일 운영 현황

단위: %(명)

구분	운영 여부				운영 시간		맞벌이 가구 비율	(수)
	운영	격주로 운영	미운영	계(수)	시작 시각	종료 시각		
전체	37.5	3.4	59.0	100.0(1,746)	7.6	14.8	80.6	(634)
기관								
어린이집	40.8	3.7	55.5	100.0(850)	7.6	15.0	80.1	(437)
유치원	20.7	2.0	77.3	100.0(896)	8.0	13.4	85.2	(197)
$\chi^2(df)/t$	45.986(2)***				-		-	
어린이집								
국공립	75.9	3.0	21.0	100.0(145)	7.2	15.0	76.3	(113)
사회복지법인	65.1	8.4	26.4	100.0(93)	7.5	14.4	77.7	(69)
법인·단체	53.8	3.9	42.3	100.0(74)	7.6	14.6	75.7	(43)
직장	22.1	3.1	74.8	100.0(90)	7.4	15.4	90.0	(23)
가정	32.6	3.8	63.6	100.0(225)	7.7	15.1	84.0	(84)
부모협동	26.4	0.0	73.6	100.0(20)	8.4	14.6	100.0	(4)
민간	46.0	3.3	50.6	100.0(203)	7.6	14.8	77.0	(101)
$\chi^2(df)/F$	na				-		-	
유치원								
국공립	7.9	0.9	91.5	100.0(533)	8.1	12.9	69.6	(57)
사립	34.8	3.5	61.7	100.0(363)	8.0	13.5	89.0	(140)
$\chi^2(df)/t$	na				-		-	

주: na는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부적절함을 의미함.

*** $p < .001$

나) 운영 시간

어린이집의 평일 운영 시간은 11시간 48분, 유치원은 9시간 42분이며,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좀더 일찍 시작하고 좀더 늦게 종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직장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이 12시간 30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난 반면, 유치원의 경우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운영 시간이 국공립에 비해 평균 1시간 36분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1-8〉 평일 운영 시간

단위: 시간, (명)

구분	총 운영시간	운영 시작 시각	운영 종료 시각	(수)
전체	11.4	7.4	19.1	(1,746)
기관				
어린이집	11.8	7.3	19.3	(850)
유치원	9.7	7.9	18.0	(896)
<i>t</i>	15.711***	-15.513***	12.808***	
어린이집				
국공립	12.5	7.1	19.8	(145)
사회복지법인	11.7	7.3	19.1	(93)
법인·단체	11.6	7.3	19.0	(74)
직장	12.5	7.1	19.7	(90)
가정	11.7	7.4	19.2	(225)
부모협동	11.7	7.2	19.1	(20)
민간	11.7	7.3	19.3	(203)
F	4.452***	2.964**	3.563**	
유치원				
국공립	9.0	8.0	17.3	(533)
사립	10.6	7.8	18.7	(363)
<i>t</i>	-7.076***	3.139**	-7.578***	

주: 1일 기준 평균임.

** $p < .01$, *** $p < .001$

평일 기준으로 기관의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은 주로 오전 7~8시 이전(66.0%), 유치원은 주로 오전 8~9시 이전(65.9%)에 시작하여 주로 오후 7~8시 이전에 종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7시 이후까지 운영하는 기관의 비율은 어린이집의 경우 73.2%를 차지하나, 유치원은 38.8%에 불과하였다. 또한 오후 9시 이후까지 운영하는 비율은 국공립어린이집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들 기관이 맞벌이 가구의 근로시간에 가장 부합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다수의 국공립유치원(83.0%)은 오후 3~6시에 운영을 종료하고, 사립유치원은 오후 6~9시에 운영을 종료하는 비율이 79.1%로 높아 어린이집과는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표 V-1-9〉 평일 운영 시작 시각

단위: %(명)

구분	오전 7시 이전	오전 7~8시 이전	오전 8~9시 이전	오전 9시 이후	계(수)
전체	1.9	58.5	36.6	2.9	100.0(1,746)

(표 V-1-9 계속)

구분	오전 7시 이전	오전 7~ 8시 이전	오전 8~ 9시 이전	오전 9시 이후	계(수)
기관					
어린이집	2.2	66.0	30.9	0.9	100.0(850)
유치원	0.4	20.2	65.9	13.5	100.0(896)
어린이집					
국공립	-	88.6	11.4	-	100.0(145)
사회복지법인	-	75.4	23.7	1.0	100.0(93)
법인·단체	-	68.3	31.7	-	100.0(74)
직장	6.7	74.7	18.7	-	100.0(90)
가정	2.6	61.3	34.8	1.3	100.0(225)
부모협동	-	80.6	19.4	-	100.0(20)
민간	2.0	68.3	29.3	0.4	100.0(203)
유치원					
국공립	-	9.3	77.1	13.6	100.0(533)
사립	0.9	32.2	53.6	13.3	100.0(363)

주: 1일 기준 평균임.

〈표 V-1-10〉 평일 운영 종료 시각

단위: %(명)

구분	오후 12시 이전	3~5시 이전	5~6시 이전	6~7시 이전	7~8시 이전	8~9시 이전	9시 이후	계(수)
전체	0.7	2.4	5.1	18.6	52.5	4.3	16.4	100.0(1,746)
기관								
어린이집	0.2	0.4	1.5	17.9	57.7	3.5	18.7	100.0(850)
유치원	3.0	12.9	23.5	21.7	25.8	8.2	4.8	100.0(896)
어린이집								
국공립	0.5	-	1.1	10.2	47.4	0.5	40.2	100.0(145)
사회복지법인	-	1.0	4.4	19.8	56.9	-	17.9	100.0(93)
법인·단체	-	-	4.1	26.7	53.4	-	15.8	100.0(74)
직장	-	-	2.1	8.6	47.4	15.7	26.1	100.0(90)
가정	-	0.7	1.6	19.1	58.2	4.0	16.5	100.0(225)
부모협동	-	-	2.8	8.3	77.8	2.8	8.3	100.0(20)
민간	0.7	-	0.9	17.2	59.3	3.3	18.8	100.0(203)
유치원								
국공립	1.5	23.0	39.1	20.9	8.1	5.5	1.9	100.0(533)
사립	4.6	1.8	6.3	22.5	45.4	11.2	8.1	100.0(363)

주: 1일 기준 평균임.

2) 맞벌이 가구 입소 관리

맞벌이 가구 아동이 입소할 때 증빙서류를 확인하는지에 대해 어린이집은 54.6%, 유치원은 40.4%가 확인한다고 응답하여 어린이집에서의 맞벌이 가구의 우선 입소가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해당 비율이 92.3%에 달하는 점을 제외하면, 그 관리가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맞벌이 가구 증빙 서류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주기는 '입소 시 한차례'가 약 6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맞벌이 가구 우선 입소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함을 알 수 있다.

〈표 V-1-11〉 맞벌이 가구 증빙서류 확인·관리 실태

단위: %(명)

구분	확인 여부		확인 주기						
	확인함	전체 (수)	입소시 한차례	1개월	2개월	6개월	1년	기타	계(수)
전체	52.3	(1,746)	66.9	1.2	8.3	9.5	11.7	2.4	100.0(922)
기관									
어린이집	54.6	(850)	68.3	1.2	9.0	9.1	10.0	2.4	100.0(540)
유치원	40.4	(896)	57.5	1.2	3.3	12.4	23.5	2.1	100.0(382)
$\chi^2(df)$	19.204(1)	***							
어린이집									
국공립	92.3	(145)	71.4	1.4	0.6	7.1	17.6	2.0	100.0(134)
사회복지법인	52.3	(93)	71.6	-	5.8	8.8	12.0	1.9	100.0(49)
법인·단체	59.7	(74)	77.4	-	4.2	7.1	11.3	-	100.0(44)
직장	89.0	(90)	43.6	4.7	3.6	15.0	25.5	7.5	100.0(80)
가정	50.5	(225)	68.2	1.3	14.4	6.5	7.8	1.9	100.0(119)
부모협동	16.7	(20)	-	-	-	16.7	66.7	16.7	100.0(4)
민간	53.5	(203)	68.7	0.8	4.5	13.3	9.6	3.1	100.0(110)
$\chi^2(df)$	66.731(6)	***							
유치원									
국공립	40.2	(533)	58.1	1.6	3.1	15.7	19.3	2.2	100.0(233)
사립	40.7	(363)	57.8	0.8	3.5	8.9	28.1	2.0	100.0(149)
$\chi^2(df)$	0.007(1)								

주: 확인함 비율은 맞벌이 가구 자녀의 입소/입학시 증빙서류를 직접 '확인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 $p < .001$

입학 시에 대상별 우선순위의 제도화가 미비한 유치원의 경우 그 적용을 보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맞벌이 가구 자녀를 우선 입학시키는 기관의 비율은 기본교육과정의 31.5%, 방과후 과정의 56.0%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치원 방과후과정 입학 시 우선 입학 대상의 적용은 사립유치원에까지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다.

〈표 V-1-12〉 유치원의 맞벌이 가구 자녀 우선입학 여부

단위: %(명)

구분	교육과정	방과후 과정	계(수)
전체	31.5	56.0	100.0(663)
국립	35.1	35.1	100.0(3)
공립단설	35.2	74.7	100.0(32)
공립병설	43.5	60.2	100.0(354)
사립법인	22.7	56.8	100.0(63)
사립개인	18.3	48.6	100.0(211)

주: 각 과정에서 맞벌이 가구 자녀를 '우선 입학시킨다'고 응답한 비율임.

3) 부모참여 프로그램 운영 현황

운영위원회 등 부모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대를 조사한 결과, 맞벌이 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 평일 야간이나 토요일 운영 비율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비율은 프로그램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오리엔테이션/교육설명회 및 수업참관/참여수업을 제외하면, 토요일에 운영하는 비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운영위원회나 부모간담회와 같이 기관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는 토요일에 운영하는 비율이 각각 8.7%와 14.8%로 저조한 수준을 보여 맞벌이 가구의 기관 참여 시 어려움이 예상된다.

〈표 V-1-13〉 부모참여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명), 회

구분	운영 비율	계(수)	운영 시간대					연간 운영횟수	(수)
			평일 오전	평일 오후	평일 야간	토요일	기타		
운영위원회	97.0	100.0(1,746)	13.8	44.5	30.8	8.7	2.3	2.9	(1,708)
강연회/특강	52.2	100.0(1,746)	22.7	30.9	25.1	18.7	2.6	1.8	(1,175)
오리엔테이션/교육설명회	96.2	100.0(1,746)	15.7	19.7	18.8	43.5	2.3	1.4	(1,711)
수업참관/참여수업	89.6	100.0(1,746)	45.6	14.8	6.1	30.8	2.7	2.3	(1,654)
부모상담	98.6	100.0(1,746)	2.4	62.7	24.8	3.1	7.0	2.3	(1,731)
부모간담회	48.6	100.0(1,746)	13.3	36.7	29.2	14.8	6.0	1.8	(957)

주: 운영 비율은 각 항목별로 '운영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평일 야간은 18:30 이후임.

다.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현황

1)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 운영 실태 및 애로사항

가) 운영 비율/필요성 인식/향후 의향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의 운영 여부, 필요성 인식, 향후 운영 의향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운영 비율은 시간연장보육 24.2%, 야간보육과 24시간보육이 공히 1.4%, 휴일보육 6.5%를 나타냈으며,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68.7%, 28.6%, 18.6%, 35.3%, 향후 운영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각각 53.7%, 9.3%, 5.1%, 16.7%로 조사되었다. 즉 시간연장보육 운영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야간보육과 휴일보육은 그 필요성과 향후 운영 의향에서도 매우 저조한 인식을 보였다. 이는 서비스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시간연장보육과 휴일보육이 고려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기관유형별로는 운영 비율은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비율이 두드러지나, 수요 측면 즉 필요성 인식이나 향후 운영 의향에서는 가정어린이집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므로 이의 함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V-1-14〉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 운영 여부/필요성/운영 의향

단위: %(명)

구분	운영 여부			운영 필요성	향후 운영 의향	계(수)
	운영중	운영한적 있음	운영 안함	있음	있음	
전체	24.2	15.0	60.8	68.7	53.7	100.0(850)
국공립	56.2	10.0	33.8	68.7	72.1	100.0(145)
사회복지법인	20.1	10.4	69.5	50.9	37.5	100.0(93)
법인·단체	18.6	10.2	71.3	68.9	36.3	100.0(74)
직장	36.2	6.5	57.3	73.7	61.4	100.0(90)
가정	21.1	14.6	64.3	70.8	57.4	100.0(225)
부모협동	8.3	20.8	70.8	48.6	45.8	100.0(20)
민간	24.2	17.6	58.2	66.9	47.2	100.0(203)

〈표 V-1-15〉 어린이집 야간보육 운영 여부/필요성/운영 의향

단위: %(명)

구분	운영 여부			운영 필요성 있음	향후 운영 의향 있음	계(수)
	운영중	운영한적 있음	운영 안함			
전체	1.4	8.3	90.3	28.6	9.3	100.0(850)
국공립	2.7	5.8	91.5	17.6	5.6	100.0(145)
사회복지법인	1.0	3.2	95.8	19.9	6.6	100.0(93)
법인·단체	-	4.5	95.5	26.5	4.2	100.0(74)
직장	3.4	5.7	90.9	16.7	6.7	100.0(90)
가정	1.3	9.0	89.7	31.3	10.4	100.0(225)
부모협동	-	5.6	94.4	16.7	2.8	100.0(20)
민간	1.5	8.3	90.2	27.8	8.8	100.0(203)

〈표 V-1-16〉 어린이집 24시간보육 운영 여부/필요성/운영 의향

단위: %(명)

구분	운영 여부			운영 필요성 있음	향후 운영 의향 있음	계(수)
	운영중	운영한적 있음	운영 안함			
전체	1.4	5.5	93.1	18.6	5.1	100.0(850)
국공립	4.9	5.5	89.6	6.2	2.6	100.0(145)
사회복지법인	2.2	3.2	94.6	12.8	2.2	100.0(93)
법인·단체	2.5	3.1	94.4	13.1	1.4	100.0(74)
직장	1.1	2.3	96.6	5.4	4.4	100.0(90)
가정	0.7	5.2	94.2	21.6	5.2	100.0(225)
부모협동	-	5.6	94.4	2.8	2.8	100.0(20)
민간	1.9	6.6	91.5	17.3	5.9	100.0(203)

〈표 V-1-17〉 어린이집 휴일보육 운영 여부/필요성/운영 의향

단위: %(명)

구분	운영 여부			운영 필요성 있음	향후 운영 의향 있음	계(수)
	운영중	운영한적 있음	운영 안함			
전체	6.5	17.0	76.5	35.3	16.7	100.0(850)
국공립	11.6	18.0	70.4	24.4	22.0	100.0(145)
사회복지법인	5.4	11.6	83.0	27.2	13.5	100.0(93)
법인·단체	6.8	20.8	72.5	36.6	16.5	100.0(74)
직장	7.8	13.1	79.1	16.6	15.6	100.0(90)
가정	5.2	15.8	79.0	37.5	16.9	100.0(225)
부모협동	2.8	18.1	79.2	33.3	27.8	100.0(20)
민간	7.7	19.1	73.1	35.1	15.6	100.0(203)

나) 미운영 사유

현재 시간연장정보육을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미운영 사유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과거에는 운영하였으나 현재 운영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현재 미운영하는 주된 사유는 ‘수요가 없어서’이고, 기관 운영의 측면에서는 ‘교사 채용 및 배치에 어려움’이 주된 사유로서 지적되었다.

〈표 V-1-18〉 어린이집 시간연장정보육 미운영 사유

		단위: 명
구분	미운영 사유	(수)
시간연장보육	- 수요가 없어서	(283)
	- 교사채용 및 배치 어려움	(88)
	- 해당 보육을 국가적으로 허가해주지 않아서	(20)
	- 운영상 직원 피로도와 재정적 어려움 쌓여서	(19)
	- 장시간 보육으로 아동이 힘들어해서	(8)
	- 필요하지 않은 유아들이 이용을 해서	(4)
	- 가정에서의 보육과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중요하므로	(3)
야간보육	- 수요가 없어서	(439)
	- 교사채용 및 배치 어려움	(100)
	- 장시간 보육으로 아동이 힘들어 함	(21)
	- 운영상 직원 피로도와 재정적 어려움 쌓여서	(21)
	- 해당 보육을 국가적으로 허가해주지 않아서	(14)
	- 가정에서의 보육과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중요하므로	(13)
24시간보육	- 수요가 없어서	(417)
	- 교사채용 및 배치 어려움	(82)
	- 운영상 직원 피로도와 재정적 어려움 쌓여서	(39)
	- 장시간 보육으로 아동이 힘들어서	(33)
	- 가정에서의 보육과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중요하므로	(23)
	- 해당 보육을 국가적으로 허가해주지 않아서	(18)
휴일보육	- 필요하지 않은 유아들이 이용을 해서	(1)
	- 수요가 없어서	(314)
	- 교사채용 및 배치 어려움	(116)
	- 운영상 직원 피로도와 재정적 어려움 쌓여서	(26)
	- 가정에서의 보육과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중요하므로	(24)
	- 해당 보육을 국가적으로 허가해주지 않아서	(9)
	- 장시간 보육으로 아동이 힘들어서	(4)
	- 필요하지 않은 유아들이 이용을 해서	(2)

다) 인력 배치

시간연장보육 시 인력 배치에 관해 조사한 결과, 시간연장보육교사 등 별도 전담 교사를 두는 기관은 68.4%이며, 주간교사가 초과근무를 하여 담당하는 경우는 24.3%로 조사되었다.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시간연장보육교사를 별도로 두는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서 94.1%로 가장 많았고, 주간교사가 겸임하는 경우는 민간어린이집이 48.6%로 가장 많았다. 한편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60%는 원장을 배치한다고 응답하였다.

배치 인력의 자격은 보육교사 1급인 경우가 60%이상이며, 보육교사 2급인 경우도 30% 이상이었다.

〈표 V-1-19〉 어린이집 시간연장형보육 인력 배치

단위: %(명)

구분	주간교사 겸임 (초과근무)	시간연장 교사 (별도전담교사)	보조 교사	원장	기타	(수)
전체	24.3	68.4	4.7	31.5	2.3	(239)
국공립	25.3	79.6	7.6	5.6	8.5	(79)
사회복지법인	11.0	94.1	15.0	5.9	-	(19)
법인·단체	41.6	66.7	-	14.5	-	(14)
직장	30.9	66.5	9.4	-	9.4	(32)
가정	6.3	64.2	3.2	60.0	-	(46)
부모협동	100.0	100.0	-	-	-	(1)
민간	48.6	67.7	4.7	7.5	2.8	(48)

〈표 V-1-20〉 어린이집 시간연장형보육 배치 인력 자격

단위: %(명)

구분	보육교사 3급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1급	유치원 2급 정교사	유치원 1급 정교사	원장	기타	(수)
주간교사 겸임	7.2	44.0	67.1	22.7	1.6	14.1	5.2	(67)
시간연장교사(별도)	12.7	38.0	61.8	7.4	5.1	7.3	7.0	(177)
보조교사	3.2	32.8	67.2	-	-	1.6	3.8	(15)

주: 다중응답 결과임.

라) 운영 시 애로사항

현재 시간연장형보육을 운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시 애로사항이 무엇 인지를 조사하였다. 시간연장보육의 경우는 재정적 어려움, 늦은 귀가로 인한

교사의 안전 문제, 교사 부족, 이용자가 적거나 비정기적이라서 항시 운영 불가 등이 주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야간보육은 교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24시간보육은 이용 아동의 안전 및 정서 불안 문제, 교사 부족, 휴일 보육은 교사 부족 및 재정적 어려움 등의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표 V-1-21〉 어린이집 특수보육 유형별 운영 시 애로사항

단위: 명

구분	애로사항	(수)
시간연장보육	- 재정적 어려움	(62)
	- 늦은 귀가로 인한 교사의 안전 문제	(37)
	- 교사 부족	(36)
	- 이용자가 적거나 비정기적이라 항시 운영 불가	(25)
	- 교사의 업무 피로도 축적 등 복지 저하	(19)
	- 이용 아동의 안전 및 정서 불안 문제	(15)
	- 추가보육 부작용(퇴근 후에도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 등)	(13)
야간보육	- 교사 부족	(4)
	- 늦은 귀가로 인한 교사의 안전 문제	(2)
	- 재정적 어려움	(2)
	- 이용 아동의 안전 및 정서 불안 문제	(2)
	- 교사의 업무 피로도 축적 등 복지 저하	(1)
	- 이용자가 적거나 비정기적이라 항시 운영 불가	(1)
24시간보육	- 이용 아동의 안전 및 정서 불안 문제	(3)
	- 교사 부족	(2)
	- 교사의 업무 피로도 축적 등 복지 저하	(1)
	- 재정적 어려움	(1)
	- 추가보육 부작용(퇴근 후에도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 등)	(1)
휴일보육	- 교사 부족	(19)
	- 재정적 어려움	(11)
	- 교사의 업무 피로도 축적 등 복지 저하	(5)
	- 추가보육 부작용(퇴근 후에도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 등)	(4)
	- 이용 아동의 안전 및 정서 불안 문제	(1)

2)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실태 및 애로사항

가) 운영 방식

유치원에서 방과후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운영 방식, 운영시간, 배치 교사의 자격을 조사하였다.

먼저 운영 방식에 있어서 오후 재편성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54.1%로 가

장 많았다. 그러나 기관유형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여 국립의 경우 70.3%가 독립 방과후반으로 운영하며, 공립단설/병설의 경우에도 독립 방과후반을 운영하는 비율이 50%이상인 반면, 사립법인/개인의 경우는 오후 재편성반을 운영하는 기관이 주를 이루었다.

〈표 V-1-22〉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방식

단위: %(명)

구분	독립 방과후반	오후 재편성반	독립 방과후반+ 오후 재편성반	계(수)
전체	37.6	54.1	8.4	100.0(663)
유치원				
국립	70.3	29.7	-	100.0(3)
공립단설	55.0	41.7	3.3	100.0(32)
공립병설	56.5	35.3	8.2	100.0(354)
사립법인	12.9	81.1	6.0	100.0(63)
사립개인	18.0	72.1	9.9	100.0(211)

나) 인력 배치

한편 방과후과정을 전담하는 교사의 자격을 조사한 결과, 국공립과 사립에서 모두 유치원 2급 정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기본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담임교사와 비교하였을 때 보육교사의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었다.

한편 기본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자격을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국공립은 유치원 1급 정교사가, 사립은 유치원 2급 정교사가 가장 많았다. 비담임의 경우에는 국공립에서는 유치원 2급 정교사와 보육교사 2급으로만 배치되어 있는 반면 사립에서는 다양한 자격의 교사들을 배치하고 있었다.

〈표 V-1-23〉 유치원 오후 재편성 방과후과정의 담당교사 자격

단위: %, (명)

구분	보육 교사 3급	보육 교사 2급	보육 교사 1급	유치원 2급 정교사	유치원 1급 정교사	유치원 원감	유치원 원장	기타	(수)
방과후 전체	5.4	21.2	14.3	74.6	33.1	9.3	8.7	9.9	(298)
전담 국공립	6.5	24.6	17.5	70.9	24.9	7.0	7.0	8.6	(111)
교사 사립	5.0	19.7	12.9	76.3	36.7	10.3	9.5	10.4	(181)
기본/ 전체	3.2	5.4	6.0	77.2	67.9	13.5	20.0	4.5	(133)
담임 국공립	2.9	2.9	2.9	21.2	86.7	13.3	10.8	8.3	(38)
교사 사립	3.3	6.2	7.0	95.7	61.7	13.6	23.0	3.3	(95)

(표 V-1-24 계속)

구분	보육 교사 3급	보육 교사 2급	보육 교사 1급	유치원 2급 정교사	유치원 1급 정교사	유치원 원감	유치원 원장	기타	(수)
기본/전체	3.5	21.9	11.6	68.9	29.5	8.8	12.6	17.0	(60)
비담임/국공립	-	50.0	-	100.0	-	-	-	-	(2)
교사/사립	3.6	21.0	12.0	68.0	30.4	9.1	12.9	17.5	(58)

주: 기본 담임/비담임 교사는 기본과정을 담당한 교사임.

다) 운영 시 애로사항

방과후과정 운영 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운영시설 미흡, 재정 부족 등 다양한 애로사항이 제기되었으나 교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31.2%로 가장 많았고, 교사의 업무량 과다 및 인건비, 복지 등 처우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20.0%로 나타났다.

〈표 V-1-24〉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시 애로사항

단위: %(명)

애로사항	전체	국공립	사립
교사 인력 부족	31.2(206)	31.8	30.3
교사의 업무량 과다 및 인건비/복지 등 처우 미흡	20.0(132)	15.5	26.3
운영시설 미흡(휴식공간, 교실 등)	9.2(61)	14.0	2.6
재정 부족(야간차량/급간식이용 비용 등)	7.3(48)	9.8	3.6
맞벌이 가구 엄밀한 확인 및 우선 지원	4.8(32)	3.6	6.6
돌발상황시(안전사고, 아이가 아플 때 등) 대응방안 부족	4.7(31)	4.9	4.4
시간연장/추가보육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	4.4(29)	3.4	5.8
장시간 보육으로 인한 원아의 피로도 상승 및 분리불안 문제	2.4(14)	3.4	1.1
주기적 교육/자격심사를 통한 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	2.1(14)	2.3	1.8
혼합연령 운영의 어려움	2.0(13)	2.3	1.5
방과후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1.8(12)	1.8	1.8
이용 원아수 부족이나 불규칙 이용으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	1.1(7)	1.0	1.1
부모와 아이가 우선적으로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	0.9(6)	0.8	1.1
교육방침에 대한 기관의 자율성 확보(부모 간섭의 최소화)	0.5(3)	-	1.1
지역사회와의 연계	0.2(1)	-	0.4
기타	10.9(72)	11.4	10.2
없음	12.3(81)	13.2	10.9
모름	7.9(52)	6.5	9.9
계(수)	100.0(661)	100.0	100.0

3) 개선 과제

맞벌이 가구의 보육지원을 위한 개선 사항을 조사한 결과, 교사 증원이 22.9%로 가장 우선시되었고, 가구 특성별 합리적 재정 지원, 등하원 시각의 유연한 적용, 방과후과정의 질 향상 등이 제기되었다.

기관유형별로는 자녀 정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의견은 가정, 국공립,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교사 처우 개선은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이외 유형들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제기되었다.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에서는 교사 인력 증원 및 처우 개선, 방과후과정 질 향상, 그리고 시설 개선 및 확장 등, 사립에서는 가구 특성별 합리적 재정 지원, 방과후과정 질 향상, 자녀 정서적 안정을 위한 노력, 교사 처우 개선 등이 개선 과제로 제기되었다.

〈표 V-1-25〉 맞벌이 가구 대상 보육지원 개선사항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어린이집								유치원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법인	직장	가정	부모 협동	민간	국공립	사립		
교사 인력 증원	22.9(357)	17.9	21.5	21.6	22.2	22.2	30.0	21.2	27.2	20.1	
가구특성별 합리적 재정 지원	11.6(202)	13.8	10.8	14.9	2.2	12.4	10.0	13.8	10.3	12.7	
등하원시간 유연 적용	8.5(149)	9.0	14.0	6.8	3.3	4.4	10.0	7.9	10.1	9.1	
방과후과정 질 향상(프로그램 개발 등)	7.6(132)	7.6	8.6	13.5	8.9	4.9	-	7.4	6.8	9.1	
자녀 정서적 안정을 위한 노력	6.8(119)	11.0	10.8	4.1	4.4	12.4	10.0	7.4	3.6	6.1	
부모 직접양육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6.1(106)	5.5	4.3	8.1	8.9	6.2	15.0	5.9	6.9	3.9	
교사 처우 개선(급여, 복지 등)	5.7(99)	5.5	14.0	10.8	2.2	10.7	10.0	6.9	1.5	5.5	
양호실/휴게시설 등 시설 개선 및 확장	4.4(77)	2.8	1.1	1.4	1.1	0.9	-	1.0	8.1	6.3	
맞벌이 가구에 대한 엄밀한 확인 및 우선 지원	3.0(53)	4.8	2.2	5.4	6.7	1.3	-	3.0	2.1	3.9	
맞벌이 가구 적극지원 기관 추가 지원	1.4(24)	2.1	1.1	-	1.1	1.8	-	2.5	1.1	1.1	
긴급보육시 지원 강화(질병 등)	1.3(23)	1.4	1.1	1.4	2.2	1.3	-	1.0	1.7	0.8	
교사의 자격 및 전문성 강화	0.1(2)	-	-	-	-	-	-	0.5	-	0.3	
기타	11.0(192)	10.3	9.7	16.2	16.7	7.1	10.0	16.7	10.9	8.5	
없음	13.0(227)	14.5	11.8	5.4	16.7	16.4	5.0	11.8	13.1	12.1	
모름/무응답	10.7(186)	10.3	9.7	9.5	14.4	8.9	10.0	9.9	9.6	13.5	
계(수)	100.0(1,74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간연장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을 조사한 결과,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수준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고, 취업모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용자격 제한, 대체인력 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있었다.

〈표 V-1-26〉 시간연장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구분	단위: %(명)	
	1순위	1+2순위
인건비 지원 단가 상향 조정	52.6	75.6
취업모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용자격 제한	22.8	43.6
대체인력 풀 구축	15.3	42.8
혼합연령반 운영 지침 마련(연령 구성 등)	7.5	25.7
기타	1.9	4.4
계(수)	100.0(826)	(826)

방과후 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교사 인력이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하고(37.1%), 주기적인 교육/자격심사를 통한 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등이 제기되었다.

〈표 V-1-27〉 유치원 방과후과정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개선사항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교사 인력 부족	37.1(245)	41.6	30.7
주기적 교육/자격심사를 통한 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	16.8(111)	16.8	16.8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14.4(95)	14.0	15.0
추가 재정지원(야간차량/급간식이용 비용 등)	8.9(59)	8.8	9.1
시설 지원(휴식공간 및 교실 등)	8.0(53)	7.8	8.4
교사의 업무량 과다 및 인건비/복지 등 처우 개선	7.6(50)	6.2	9.5
맞벌이 가구 엄밀한 검증 및 우선 지원	1.7(11)	1.3	2.2
부모와 아이가 우선적으로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	1.7(11)	1.3	2.2
교육방침에 대한 기관의 자율성 확보	1.1(7)	1.0	1.1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	0.9(6)	0.8	1.1
돌발상황시(안전사고, 아이가 아플 때 등) 대응방안 마련	0.3(2)	0.3	0.4
장시간보육으로 인한 원아의 피로도 상승 및 분리불안 문제 해소	0.3(2)	0.5	-
시간연장/추가보육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	0.3(2)	0.3	0.4
기타	7.4(49)	6.5	8.8
없음	2.3(15)	2.1	2.6
모름	12.9(85)	11.1	15.3
계(수)	100.0(661)	100.0	100.0

2. 시간연장형보육/방과후과정 운영 사례 및 시사점

맞벌이 가구 영유아 대상 기관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어린이집 시간연장형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기관으로는 기관유형별로 어린이집 3개소(국공립, 민간, 가정)와 유치원 4개원(공립단설, 공립병설(6학급/2학급), 사립)을 선정하였다. 또한 기관별 운영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담당 학급 교사로 하여금 평일 중 일 상적인 하루 동안 등·하원 아동 수, 학급(반) 운영 형태 및 교사 배치 등을 시간대별로 기록하게 하였다.

먼저, 각 기관의 운영 및 맞벌이 가구 아동의 현황은 <표 V-2-1>과 같다. 전체 아동 대비 맞벌이 가구 아동 수는 0~2세반을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에서 9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은 80.2%, 민간어린이집은 60.7% 수준이었다. 유치원 중에서는 공립병설(6학급)유치원은 60.3%, 공립병설(2학급)유치원은 76.9%로 어린이집과 비슷한 정도인 반면, 사립유치원은 36.4%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V-2-1〉 맞벌이 가구 보육·교육 현황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A(국공립)		B(민간)		C(가정)		A(병설)		B(병설)		C(단설)		D(사립)	
	반 수	현 원	반 수	현 원	반 수	현 원	학 급 수	현 원	학 급 수	현 원	학 급 수	현 원	학 급 수	현 원
0세	1	3/3	-	-	2	5/6	-	-	-	-	-	-	-	-
1세	3	11/15	-	-	2	7/7	-	-	-	-	-	-	-	-
2세	3	18/24	2	13/16	1	7/7	-	-	-	-	-	-	-	-
3세	2	24/31	2	15/30	-	-	2	14/26	-	-	2	8/36	1	10/30
4세	1	21/23	1	12/20	-	-	2	33/45	1	20/24	2	16/48	1	10/25
5세	1	16/20	1	11/18	-	-	2	23/45	1	20/28	2	22/56	2	20/55
합계	11	93/116	6	51/84	5	19/20	6	70/116	2	40/52	6	46/140	4	40/110

주: 현원은 맞벌이 가구 아동 수/전체 아동 수를 의미함.

가. 어린이집 시간연장형보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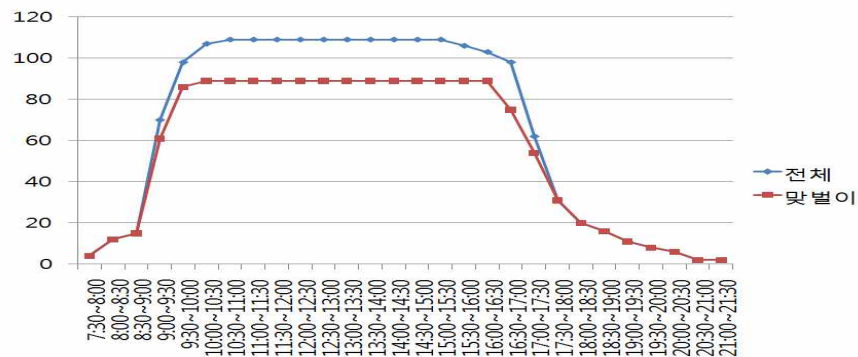
어린이집 3곳의 시간연장형보육 운영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주요 시간대별 반 운영 형태, 교사 배치, 등·하원 상황은 <표 V-2-2>와 같다.

〈표 V-2-2〉 어린이집 시간연장형보육 운영 사례

시 간	A어린이집			B어린이집			C어린이집				
	반	운영	교사배치	등·하원	반	운영	교사배치	등·하원	반	운영	교사배치
7:30~ 8:00	1~5세 통합	정규1/ 누리1	맞벌이 아동만 등원함 (15명)	2~5세 통합	정규1	대부분 맞벌이 아동 (15명)	0세반	정규1	맞벌이 아동만 등원함 (11명)		
8:00~ 8:30							0세반/ 1~2세 통합	정규2			
8:30~ 9:00							개별 (3개반)	정규3			
9:00 ~ 14:00	개별 (11개반)	정규11 (육아 휴직 대체 포함)/ 누리 1~2/ 비담임1	10:30경 등원 완료 (109명)	개별 (6개반)	정규6/ 누리1	10:30경 등원 완료 (84명)	개별 (5개반)	원장/ 정규4/ 비담임1	10:00경 등원 완료 (20명)		
14:00~ 15:00					정규6/ 시간 연장 1~2/ 서울형 비담임1			하원		원장/ 정규4/ 시간 연장1/ 비담임1	
15:00~ 15:30											
15:30 ~ 17:00											
17:00~ 17:30											
17:30~ 18:00											
18:00~ 18:30			2~4세 통합/ 5세반	시간 연장2/ 서울형 비담임1	0세반2/ 1세반1/ 2세반1	원장/ 정규3/ 시간 연장1	하원/ 맞벌이 아동만 남음				
18:30~ 19:00											
19:00~ 19:30											
19:30~ 20:00	1~5세 통합	정규2	맞벌이 아동만 남음	2~5세 통합	맞벌이 아동만 남음	0세반/ 1~2세 통합	원장/ 정규1/ 시간 연장1				
20:00~ 20:30	1~5세 통합	정규2	맞벌이 아동만 남음	2~5세 통합	시간 연장2	0~1세 통합	정규1/ 시간 연장1				
20:30~											

시간	A어린이집			B어린이집			C어린이집		
	반 운영	교사배치	등·하원	반 운영	교사배치	등·하원	반 운영	교사배치	등·하원
21:00									
21:00~21:30									
21:30~22:00									
22:00~2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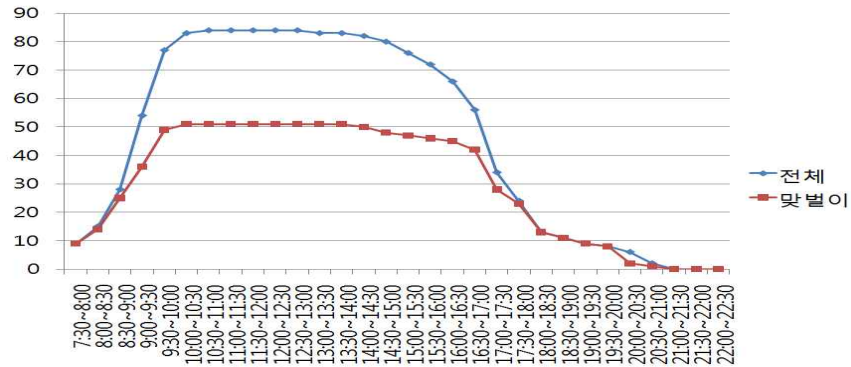
A국공립어린이집은 7:30부터 21:30까지 운영되며, 조사 당일 대다수 원아의 등원은 9:00~10:00에 이루어지고, 귀가는 15:30~16:30에 시작되며, 17:30에는 맞벌이 가구 자녀만 남겨진다. 반 구성은 9:00~18:00에는 연령별로 이루어지며, 정규교사 외 누리보조교사 등이 배치된다. 1~5세 통합반으로 운영하는 9:00 이전과 18:00 이후에는 모두 맞벌이 가구 자녀만 이용하며, 오전 통합반에는 정규교사 1명과 누리보조교사 1명, 오후 통합반에는 정규교사 2명이 배치된다. 시간연장보육 시에는 미술, 언어 및 대소근육 활동 등을 주제에 맞춰 계획하여 진행하거나 다양한 자유선택활동이 실시된다.



[그림 V-2-1] A어린이집의 시간대별 이용 아동 수

B민간어린이집은 7:30부터 22:30까지 운영되며, 현재 만 5세 시간연장반과 혼합연령 시간연장반을 운영 중이다. 조사당일 대부분의 아동이 10:30경에 등원을 완료하고 14:00부터 귀가를 시작하여 18:00경이면 맞벌이 가구 자녀들만 이용하게 된다. 반 구성은 8:30부터 17:30까지는 연령별로 이루어지며, 정규교사 6명과 누리보조교사 및 시간연장교사 등이 배치된다. 오전 시간연장반은 2~5세 통합반으로 운영되고 당일 당직교사인 정규교사 1명이 배치되며, 오후 시간연장반은

2~4세 통합반과 5세반으로 운영하다가 19:00 이후에는 2~5세 통합반으로 운영되고, 각반에는 시간연장교사가 배치된다. 시간연장보육 시에 2~4세반은 자유선택활동 위주로 운영되며, 5세반은 한글, 수, 한자 등의 특별활동을 진행된다.



[그림 V-2-2] B어린이집의 시간대별 이용 아동 수

C가정어린이집은 영아(만0~2세)만을 보육 중이며, 07:30부터 20:30까지 운영된다. 조사 당일 대부분의 아동이 8:30~9:30에 등원하여 일과를 보낸 후 15:00부터 귀가하였다. 반 구성은 9:00~17:30에는 개별반으로 이루어지며, 9:00이전에는 등원 상황에 따라 0세반, 0세반과 1~2세 통합반, 0, 1, 2세 개별반 순서대로 반이 운영되고, 17:30 이후에는 하원 상황에 따라 4학급 개별반, 0세반과 1~2세 통합반, 0~1세 통합반 순으로 운영된다. 시간연장보육 시에는 영아의 기본생활지도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활동이 계획된다. 이때 원장과 정규교사 4명이 각 학급을 담당하며, 비담임 1명과 시간연장교사 1명이 오후 시간에 배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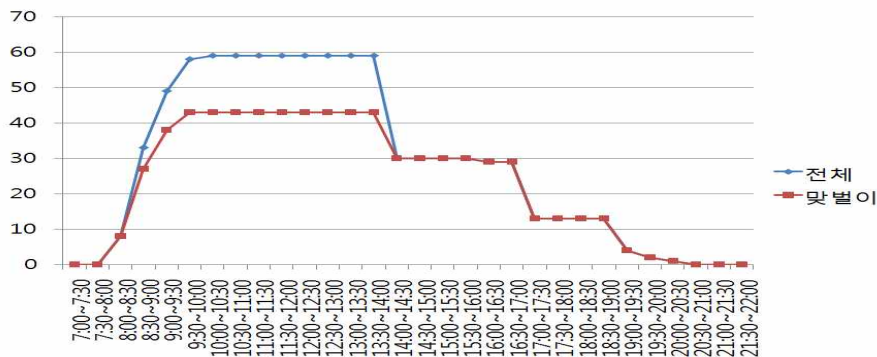


[그림 V-2-3] C어린이집의 시간대별 이용 아동 수

나. 유치원 방과후과정

유치원 4개원의 방과후과정 운영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주요 시간대별 학급 운영 형태, 교사 배치, 등·하원 상황은 <표 V-2-3>과 같다.

A공립병설유치원은 7:00부터 22:00까지 운영되며, 방과후과정은 60명,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은 20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7:00~18:00에 5세반은 개별학급으로 운영되나 그 전후로는 3~4세 혹은 3~5세 혼합연령학급으로 운영된다. 각 학급의 담임교사인 정규교사 6명 이외에도 방과후과정 교사 6명과 교육보조사, 엄마품돌봄강사, 하모니자원봉사자 각 1명이 배치된다. 방과후과정 시에는 심화프로젝트 활동이나 연령 특성에 따른 주제 활동 등을 다양하게 진행하며,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에서는 석식 지도를 비롯하여 개별 및 소그룹 지도가 이루어진다. 조사 당일 아동들은 8:00경에 등원을 시작하여 9:30경에는 모든 아동이 등원을 완료하였고, 14:00이후에는 맞벌이 가구 자녀만 이용하다가 20:30경 모두 귀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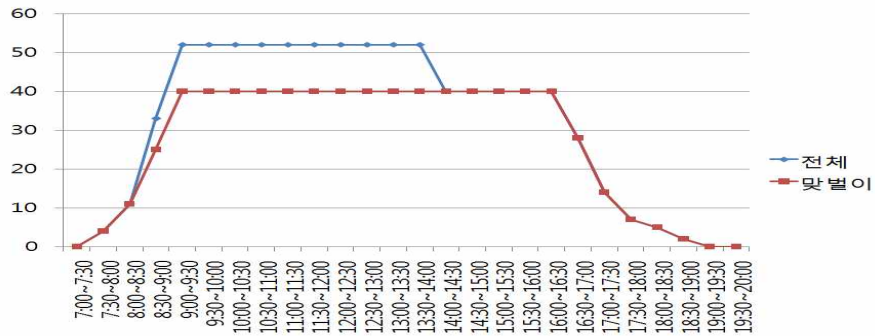


[그림 V-2-4] A유치원의 시간대별 이용 아동 수

주: 만3, 4, 5세 각 1학급씩 3개 학급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로서 전체 아동 수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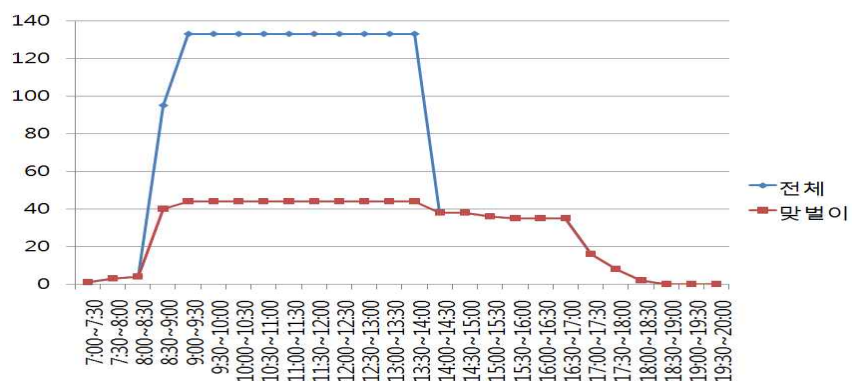
B공립병설유치원은 방과후과정을 운영 중이며, 맞벌이 가구 아동 40명이 이용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7:00~20:00이며, 조사 당일 7:30부터 등원하기 시작하여 9:00경에는 모든 아동들이 등원하였다. 오후 2시에 맞벌이 가구가 아닌 아동들이 모두 하원한 후 방과후과정이 시작되었고, 19:00 이전에 모두 하원하였다. 4, 5세 개별학급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교사는 정규교사 2명 외에 방과후과정 교사 4명과 교육보조사 1명, 하모니자원봉사자 1명이 배치된다. 방과후과정 시에는

주로 생활주제에 따른 교육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며, 일부 특성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그림 V-2-5] B유치원의 시간대별 이용 아동 수

C공립단설유치원은 맞벌이 가구 자녀 중 40명이 방과후과정을 이용 중이다. 7:00부터 20:00까지 운영되며, 8:30~14:00에는 개별학급으로, 그 외 시간에는 3~4세 혹은 3~5세 혼합연령학급으로 운영된다. 교사는 개별학급으로 운영하는 정규 시간에는 정규교사 6명과 교육보조 및 장애유아통합보조 3명, 하모니자원봉사자 1명이 배치되며, 이외 시간에는 방과후과정 교사 4명이 담당한다. 조사 당일 8:30 이전에는 소수의 맞벌이 가구 자녀(4명)만이 등원하였고 8:30~9:30에 모든 아동이 등원하였다. 오후 2시에 맞벌이 가구 자녀 6명과 이외 아동 모두가 하원하여 그 후에는 방과후과정이 운영된다. 방과후과정 시에는 기본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활동이나 특색활동, 휴식, 자유선택활동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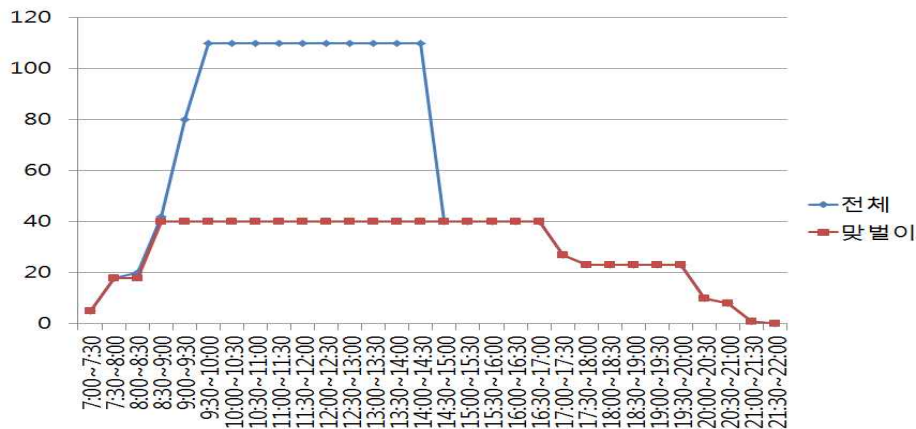
[그림 V-2-6] C유치원의 시간대별 이용 아동 수

〈표 V-2-3〉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사례

시간	A유치원			B유치원			C유치원			D유치원		
	학급 운영	교사 배치	등·하원	학급 운영	교사 배치	등·하원	학급 운영	교사 배치	등·하원	학급 운영	교사 배치	등·하원
7:00~7:30			맞벌이 아동만 등원함 (8명)		방과후2	맞벌이 아동만 등원함 (11명)		방과후1	맞벌이 아동만 등원함 (4명)	3-5세 통합	정규1	맞벌이 아동만 등원함 (18명)
7:30~8:00	5세반2/ 3-4세 통합2	방과후 2~3										
8:00~8:30			9:30경 등원 완료 (59명)		정규2/ 방과후 2~4	9:00경 등원 완료 (52명)		정규6/ 보조3	9:30경 등원 완료 (133명)	개별 (4학급)		9:30경 등원 완료 (110명)
8:30~9:00	개별 (6학급)	정규6/ 보조1										
9:00 ~ 14:00			하원/ 맞벌이 아동만 남음		방과후2/ 하모니1	하원/ 맞벌이 아동만 남음		방과후 3~4/ 하모니1	하원/ 맞벌이 아동만 남음	5세반/ 3-4세 통합	방과후2/ 하모니1	하원/ 맞벌이 아동만 남음
14:00~14:30	5세반2/ 3-4세 통합2	방과후 2~4/ 하모니1			방과후2			방과후2				
14:30 ~ 16:30			20:30경 모두하원									21:30경 모두하원
16:30~17:00												
17:00~18:00												
18:00~19:00												
19:00~20:00	3-5세 통합	엄마품 1/ 방과후1								3-5세 통합	정규1/ 엄마품1	
20:00~21:00												
21:00~22:00												

주. A유치원의 등·하원 아동 수는 만3, 4, 5세 각 1학급씩 3개 학급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로서 전체 아동 수 아님.

D사립유치원은 맞벌이 가구 자녀 40명이 이용하는 방과후과정과 맞벌이 가구 자녀 22명이 이용 중인 엄마표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7:00~22:00이며, 8:00~14:30에는 개별학급으로, 그 외 시간에는 3~4세 혹은 3~5세 혼합연령학급으로 운영된다. 조사 당일 맞벌이 가구 아동은 7:00부터 등원하기 시작하였으며, 9:30에는 모든 아동이 등원하였고, 14:30에는 맞벌이 가구 아동 40명이 남아 방과후과정이 시작된다. 또한 오후 5시부터는 엄마표 온종일 돌봄교실이 운영되어 21:30경에는 모든 아동이 하원하였다. 8:00이전에는 정규교사 1명을, 정규시간에는 정규교사 6명 외에 실습생 5명이 배치되며, 방과후과정에는 방과후 교사 2명과 하모니 자원봉사 1명이, 엄마표 온종일 돌봄교실에는 정규교사 1명과 엄마표 돌봄보조 1명이 담당한다.



[그림 V-2-7] D유치원의 시간대별 이용 아동 수

다. 시사점

앞서 다룬 어린이집 시간연장정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사례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하원 시각과 관련하여 등원 시각의 경우는 양 기관 모두에서 출근 시각에 비해 전반적으로 늦은 경향이 두드러진다. 또한 하원 시각의 경우는 유치원은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맞벌이 가구의 아동 이용이 일괄 이루어지나, 어린이집은 해당 시각이 기관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맞벌이 여부에 따라 일정 시각 또는 독립반을 구성하는 것이 부모의 취업 특성에 따른 보육 수

요에 보다 부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둘째, 맞벌이 가구 아동이 대부분 참여하는 시간연장형보육이나 방과후과정/엄마표 온종일 돌봄교실은 기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 질이 의문시된다. 시간연장보육이나 방과후과정/엄마표 온종일 돌봄교실의 프로그램은 기본보육·교육과정의 연장이나, 영어, 과학 등 특별활동이 이루어진다. 또한 유아들이 기본보육·교육과정에 이어 비교적 장시간 기관에 머물고 있음을 고려하여 낮잠이나 휴식, 간식이나 저녁식사, 자유놀이활동 등의 편안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이외 세부 내용은 각 기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해당 시간은 주로 혼합연령반으로 운영되므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일과 운영 전반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일괄 적용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방과후과정과 시간연장형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에서 추가 인력배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어린이집에는 대부분 시간연장교사만이 투입되는 반면, 유치원에서는 방과후 교사, 하모니자원봉사자, 돌봄교실보조 등의 인력이 방과후과정에 투입되어 정교사들은 정규시간만을 담당할 수 있었다. 또한 공립유치원에서는 방과후과정 및 엄마표 온종일 돌봄교실에는 정규반을 운영하는 교사와 구분되어 해당 시간만을 담당하는 교사가 별도 배치되었으나, 이외 기관에서는 정규교사의 연장 근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교사의 배치를 유도하고 보조인력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3.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 운영 사례 및 시사점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는 앞서 다룬 보육서비스 이외에도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지닌다. 이에 따라 1)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와 2) 영유아 대상 육아지원사업기관인 서울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육아지원서비스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전문상담 등 각종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서울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맞벌이 가구를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포괄한다는 점에서 주요 사례로서 선정하였다.

가. 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사례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생활과 임신, 출산, 육아를 병행하는 취업모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가정 양립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2012년 4월 (사)서울여성노동자회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같은 해 7월에 개소하였다.

센터장 및 관련 사업 실무자와의 심층인터뷰와 인터넷 등 각종 자료를 통해 핵심 목표와 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설립 배경

동 센터는 직장맘의 3가지 고충 즉 직장, 가족, 개인 차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상담 원스톱 연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주요 목표는 1) 직장맘의 임신·출산·육아기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2) 직장맘을 위한 직장내 고충 돌봄 심리정서, 교육, 문화, 건강 등 맞춤형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3) 직장과 사회의 일·가족양립제도 정착 및 문화 조성 4) 직장맘을 위한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5) 전국 최초의 직장맘지원센터로서 브랜드 사업 개발이다(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내부자료, 2014; 그림 V-3-1 참조).



[그림 V-3-1]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의 비전 및 목표

출처: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ingmom.or.kr>, 검색일 2014년 8월 1일)

또한 센터 사업 방향과 관련하여 동 기관의 센터장은 여성노동권 보장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강조한다. 즉 여성고용정책은 여성고용률 증진을 위한 경력단절후 재취업 위주가 아니라 경력단절 예방에 보다 주력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을 센터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2) 운영 방식

조직은 센터장 아래 운영위원회와 전문자문위원단을 설치하고, 기획총괄팀과 종합상담팀으로 구성된다. 주요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연 2회 진행되며, 전문자문위원단 회의를 연 4회 개최하여 원스톱 종합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하고 있다.

3) 사업 내용

주요 사업으로는 1) 원스톱 종합상담 2) 자녀돌봄지원 3) 직장맘 커뮤니티 지원 4) 일·가정 양립지원 5) 네트워크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우선 원스톱 종합상담은 구체적으로 직장맘 노동권 확보 및 모성보호 상담, 직장맘 출산·육아기 집중지원서비스, 직장맘과 사업주간의 분쟁해결 지원, 직장맘 대상 원스톱 연계정보 제공을 들 수 있다(그림 V-3-2~V-3-5 참조). 특히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종합상담의 특징으로는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근 노무사가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즉 경력단절이 주로 야기되는 시점을 파악하여 밀착 상담을 통해 경력단절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그 밖에도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동 분야 전문상담이 이루어지며, 직장맘에게 필요한 생활밀착형 연계정보 제공이 가능하다(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workingmom.or.kr>, 검색일 2014년 8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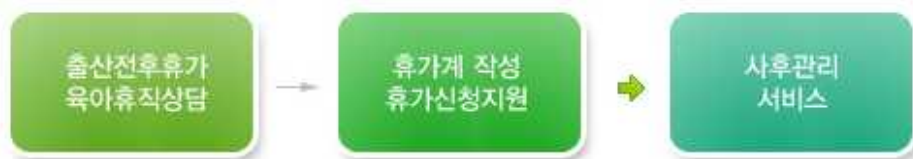
[그림 V-3-2]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주요사업-직장맘의 직장내 권리 확보, 임신출산에 대한 모성보호 상담

출처: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ingmom.or.kr>, 검색일 2014년 8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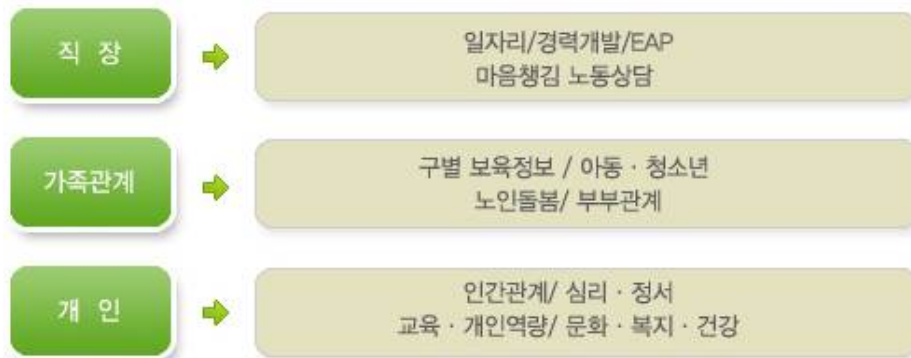
[그림 V-3-3]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주요사업-직장맘과 사업주간의 분쟁해결 지원

출처: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ingmom.or.kr>, 검색일 2014년 8월 1일)



[그림 V-3-4]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주요사업-직장맘의 출산·육아기 법적지원 서비스

출처: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ingmom.or.kr>, 검색일 2014년 8월 1일)



[그림 V-3-5]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주요사업-직장맘 대상 원스톱 연계정보 제공

출처: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ingmom.or.kr>, 검색일 2014년 8월 1일)

자녀돌봄지원은 2012년 마포구 신수동 주민센터와 직장맘지원센터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주민센터에서는 공간 지원을, 센터에서는 전문 돌봄인력 지원을, 그리고 지역내 식당에서는 저녁 급식을 지원하여 직장맘 자녀에게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늘봄교실’의 이용 대상은 직장맘의 초등 전학년 자녀이며, 이용 시간은 오후 5시~9시까지이고, 전문돌봄교사에 의한 숙제 지도, 급식 지도, 독서 지도, 학습 지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8월 현재 11명의 아동이 이용 중이다.

직장맘 커뮤니티 지원은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로 만난 직장맘 모임, 그 외(취업 준비 중, 예비 직장맘) 모임 등을 대상으로 모임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고(센터내 맘카페 공간 지원), 필요시 강사 등 교육지원, 커뮤니티 리더 간담회(연 1회) 등이 지원된다. 2014년 말 현재 7개구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회원들이 직접 운영계획서를 작성하면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비용 지원이 이루어진다. 내년에는 직장내 커뮤니티 사업을 특히 아버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직장맘 생(산적)수(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는 서울시 사업장 업종 또는 소재지별 직장맘 20~5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며, 직장맘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센터 사업은 센터 인력만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

한 분야의 전문가와 자문위원, 그리고 여성계, 노동계, 상담 분야 등 전문기관과 직장맘을 지원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성주간행사, 여성취업박람회 참석 등을 통해 참여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4) 성과 및 시사점

취업모 대상 원스톱 상담서비스는 특히 노무사 등에 의한 전문상담을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하며, 해당 상담을 통해 필요 시 변호사와 심리상담자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여성 노동권 보장 차원에서 그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커뮤니티 사업은 당사자 역량 강화 차원에서 그 효과가 강조된다. 즉 취업모 당사자들이 주체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가고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역량을 키우는 즉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커뮤니티 사업이 추진된다. 이 모임을 통해 취업모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선형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상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돌봄센터사업의 경우는 정부의 초등돌봄교실 확대 추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라서 실제 직장맘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므로 센터 운영자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된다. 특히 돌봄센터는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지원 성격이 강하여 돌봄센터에서 숙제 등을 해결하거나 가정으로 돌아가 부모와의 상호작용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모의 욕구에 부합한다고 언급된다.

한편 개선 과제로는 현재 센터는 서울시의 전액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해당 지원이 부재한 경우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일차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상근 노무사, 돌봄센터 운영 등 보육관련 상담을 위한 보육관련 경력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사회복지사나 노동이나 여성관련 기관 근무 경력자 등이 요구된다. 그 밖에도 기존의 지역사회내 육아지원기관과의 역할 중복이나 서비스 연계 등등 전달체계상의 효율화에 대한 고민도 제기된다. 현재 지역사회내 육아지원서비스 기관들이 취업모의 노동권 보장 차원의 서비스가 취약하고, 운영 시간 등의 측면에서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어 취업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나, 향후 이들 기관의 서비스 대상으로 포괄되어야할지 아니면 맞벌이

가구의 노동권 보장 등을 지원하는 별도의 전달체계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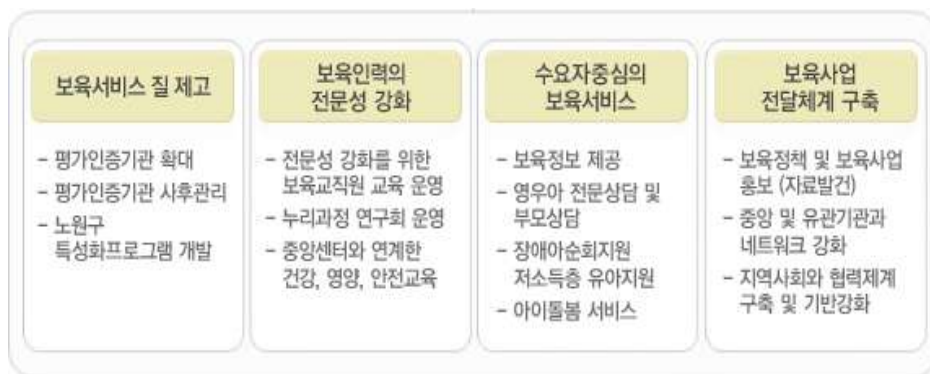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 노원구 사례

서울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08년 9월에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프라자)로 개소하여 장난감도서관(놀이야띠)과 보육정보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 위탁 체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센터장 및 관련 사업 실무자와의 심층인터뷰와 인터넷 등 각종 자료를 통해 설립 배경, 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설립 배경

동 센터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정보 제공과 어린이집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지원하며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주력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서울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2014: 4). 또한 젊은 엄마들의 육아 고민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을 직접 지원하는 센터로서 육아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에서 보육까지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V-3-6] 서울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과제

출처: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nwscc.or.kr>, 검색일 2014년 11월 15일)

2) 운영 방식

조직은 센터장과 이하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두고, 보육지원팀, 육아지원팀, 아이돌봄지원팀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는 보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자문위원은 부모교육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있다.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계점과 월계점을 운영하는데, 상계점은 장난감 도서관을 비롯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월계점은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세부 운영사항을 살펴보면, 이용 대상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 6세 미만 취학전 아동의 보호자이며, 연간 회비는 개인 회원은 15,000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아가족은 무료이다. 운영 시간은 상계점은 매주 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월계점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격주(1, 3주) 수요일은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 같은 토요일과 평일 야간 운영은 맞벌이 가구를 고려한 것으로 동 센터의 주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 사업 내용

주요 사업들 중 육아지원사업으로는 다음 [그림 V-3-7]과 같다. 즉 육아정보 제공, 영유아 발달 등에 관한 부모교육, 부모상담 및 전문상담, 놀이공간 제공 및 장난감 대여, 체험행사, 부모모임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사업 중 맞벌이 가구를 겨냥한 육아지원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아빠놀이터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동 프로그램은 3~7세 영유아와 아버지가 주요 대상이며, 배월 1회 운영하고, 언어, 음악, 신체 등의 통합적 활동을 통해 아빠와 자녀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부모-자녀 간의 유대감과 정서적인 안정감과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은 2012년에 시범으로 시작하여 자녀와 아버지에게 인기가 높아 꾸준히 진행 중이며 2013년까지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자녀와 아버지만 참여하도록 하여 아버지의 부모역량 강화를 기하고 있다. 특히 동 프로그램은 아버지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토요일에 운영된다. 상반기 실적에 의하면, 매회 적게는 18명에서 많게는 42명이 참여한다(서울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2014: 146). 특히 해당 프로그램이 토요일에 운영됨에 따라 장난감 대여 서비스와 함께 이용하는 맞벌이 부모가 많다고 한다.



[그림 V-3-7] 서울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지원 주요사업

출처: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nwsc.or.kr>, 검색일 2014년 11월 15일)

다음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중 ‘조부모 육아교실’이 운영되는데, 이는 맞벌이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양육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상반기 8회기씩(년간 16회기)을 운영한다. 손자녀 양육 시

필요한 육아관련 이론교육과 실제 육아에 도움에 되는 실제교육을 바탕으로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된다(서울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2014: 163).

운영자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들이 가장 원하는 서비스는 정보제공과 육아상담이며,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 연장 운영과 토요일 운영을 상시화하였다고 한다. 특히 토요일 이용은 맞벌이 가구들이 주를 이루며, 이때 이용자는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처럼 높은 토요일 수요에 따라 토요일에는 기존 3명 인력과 보조인력 2인을 추가 배치하여 지원한다.

그 밖에도 동 센터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운영 중인데, 해당 사업은 2014년에 7년차로서 매년 평균 350가구 이상 회원 가입이 증가하여 2014년 상반기 기준으로 회원수는 2,130가구에 이른다.

4) 성과 및 시사점

맞벌이 가구의 부모 역량 강화 특히 아버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조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는 접근이 용이하도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 전반이 고려되고 있다.

한편 맞벌이 가구를 위한 토요일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인력의 배치가 요구됨을 알수 있다. 특히 장난감 도서관 전담 인력과 토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담 및 보조인력은 필수적으로 배치될 필요가 있다. 동 센터 운영자에 의하면, 특히 주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는데, 인력과 예산이 미흡하여 해당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아버지들의 참여는 주말에 한하여 실질적으로 가능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토요일 운영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요구된다고 본다.

VI. 정책 방안

이 장에서는 앞서 다룬 일·가정 양립지원 효과성 논의, 맞벌이 가구 대상 육아지원서비스 및 제도 이용 실태 및 요구와 서비스 기관들의 육아지원서비스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의 기본 방향 및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1. 기본 방향 및 세부 전략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의 기본 방향

양육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그동안의 각종 기본계획들은 가족 전반이나 여성 일반을 대상으로 출산을 제고, 여성 역량 강화, 가족관계의 안정 등을 목표로 삼고 있어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의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맞벌이 가구들은 홀벌이 가구와는 구분되는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및 수요를 지니므로 이에 부합하는 별도의 양육지원 기본 방향의 정립이 요구된다고 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맞벌이 가구는 자녀 돌봄과 직장생활을 병행해야 하므로 일하는 동안 자녀 양육을 돌봐줄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거나, 특히 어린 자녀인 경우는 자신이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1) 서비스 지원과 2) 시간 지원으로 제시된다.

그런데 이들 지원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환경의 조성을 그 기반으로 한다.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52시간을 넘는 우리나라의 경우 맞벌이 가구들이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돌봄)시간을 지원하는 제도들의 이용 가능성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처럼 시간 지원제도들의 실효성이 낮을 경우 서비스 지원은 유일한 선택지이나, 장시간 노동에 따른

장시간 보육은 아동 권리에 반(反)할 우려가 있고, 더욱이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우는 만족할만한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실제로 노동환경의 개선을 간과한 채 서비스 지원에만 주력할 경우 해당 서비스는 아동이나 부모들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노동시장의 요구에 치중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단적으로 현행 시간연장형보육은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이나 부모들의 돌봄 권리 보장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장시간 노동에 보다 부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기관보육 지원 위주의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은 부모들의 돌봄 권리에 보다 주목하여 일·가정 양립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의 조성에 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은 서비스 지원의 내실화와 더불어 시간 지원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시간 지원의 확대 시에는 그에 따른 젠더 효과에 주의를 요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간 지원의 확대가 여성의 제도 이용률 증가를 낳을 경우, 여성에 대한 고용 기피와 성별 임금 격차 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휴직제도 이용률의 점진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저조하여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은 양성평등한 돌봄 권리의 보장 즉 (돌봄) 시간 지원 제도를 남성과 여성이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출산율과 여성고용 제고 측면에서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의 기본 방향으로 1) 일하는 부모의 돌봄 권리 증진을 통한 선택권 보장, 2) 남성의 부모권 강화를 통한 양성평등한 돌봄 문화의 실현, 3) 노동 환경의 개선을 통한 일·가정 양립 기반 확립을 들 수 있다. 이는 곧 맞벌이 가구들은 일할 권리와 자녀를 돌봄 권리를 동시에 보장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1) 일하는 부모의 돌봄 권리 증진을 통한 선택권 보장

맞벌이 가구의 양육지원은 노동시장의 요구에만 과도하게 부합하지 않고, 부모의 요구 즉 일하는 부모들의 자녀 돌봄에의 욕구에 동시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맞벌이 가구에 대한 맞춤형 양육지원은 부모의 일할 권리에만 치중되어 다양한 기관보육서비스 제공 즉 장시간 노동에 부합하는 시간연장형보육과 다양한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야간보육, 24시간보육을 강화하는 방식이 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의 주된 갈등은 '시간' 부족이며, 시간연장형보육에 대한 수요는 휴직제도나 근로시간단축제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영아의 경우는 적합한 양육방식으로는 '부모의 직접 양육'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일하는 부모들이 직장생활과 병행하여 자녀 돌봄 시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돌봄 시간을 제공하는 제도들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일할 권리와 자녀를 돌볼 권리간의 실질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2) 남성의 부모권 강화를 통한 양성평등한 돌봄 문화의 실현

앞서 제시한 (돌봄) 시간 지원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의 이용이 여성에게 치중될 경우는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이 여전하여 출산을 기피하고 경력단절이 초래되는 등 정책 효과가 의문시된다. 따라서 남성에게 여성과 동등한 돌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에게는 노동권 보장 차원에서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남성에게는 돌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양성평등한 노동권과 부모권을 동시에 실현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특히 시간 지원 제도의 경우 남성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보완책이 요구된다고 본다.

3) 노동 환경의 개선을 통한 일·가정 양립 기반 확립

맞벌이 가구의 양육지원은 곧 일·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므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환경의 조성은 실질적인 전제 조건임과 동시에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지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시간 지원 제도의 확산만으로는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와 더불어 노동시장 부문(기업 차원)의 일·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실천 노력을 유도하는 방안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나. 세부 전략

위에서 제시한 기본 방향의 실천을 위한 세부 전략으로는 서비스 지원과 (돌봄)시간 지원을 균형적으로 설계하고, 자녀 양육 실태와 수요 측면에서 주된 변수인 자녀 연령과 근로 특성별로 보다 면밀한 정책 설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1) 서비스 지원과 (돌봄)시간 지원의 균형적 설계

일반적으로 양육지원은 서비스 지원과 현금 지원으로 구분되나, 맞벌이 가구의 양육지원은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보육서비스, 휴직, 유연근무제도가 대표적이다.

우선 서비스 지원은 기관보육과 가정내보육으로 구분되는데, 현행 제도화된 기관보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한 육아지원서비스가 대표적이며, 제도화된 가정내보육으로는 아이돌봄사업이 유일하다. 서비스 이용률 측면에서 특히 어린이집 이용률은 0세와 1세아를 제외하면 지배적인 양상을 보인다. 또한 4세부터는 유치원의 이용률이 급증하여 해당 연령에는 유치원이 주양육자로서 인식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 이용은 맞벌이 가구의 보육 수요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우선 0세아와 1세아의 기관 이용은 주로 가정어린이집에 치중되어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의 높은 선호도에 부응하지 못한다. 또한 4세 이후부터는 사회성 발달이 중시되어 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나 유치원의 운영일수와 운영 시간 등은 맞벌이 가구의 보육 수요와는 거리가 있다. 이를테면 유치원 기본교육과정의 경우 방학 운영 기관의 비율은 91%로 대부분의 기관들이 방학을 운영하고, 더욱이 해당 연간 일수는 많게는 약 38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유치원의 총 운영시간은 어린이집에 비해 약 1시간 40분가량 짧고, 하원 시각은 빠른 경향을 보여 특히 전일제 근로가구나 취업모의 근로시간에 부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기관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노력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일괄 적용할 수 있는 종일제 및 시간연장보육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일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화된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이용률은 기관보육에 비해 현저히 낮은 5%선으로 조사되었다. (민간)베이비시터의 이용 비용은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의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므로 저소득층 가구 여성이나 저임금 여성인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외하면, 가정내보육에 대한 선택권은 사실상 보장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가정내 보육지원은 특히 0~1세아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므로 해당 연령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소득과 상관없이 가정내보육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이돌봄지원서비스의 우선제공 대상은 영아를 둔 맞벌이 가구임을 확인시켜준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시간 지원정책인 유연근무제는 자녀 연령으로 보아 영아 이전반에 걸쳐 요구되며, 특히 근로시간의 특성상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의 의

병행이 어려운 전일제 근로자거나 취업모, 특히 야간근로자에서 높은 수요를 보인다. 한편 이들 제도는 직장규모가 큰 경우는 시행률을 높으나 실제 이용률은 가장 저조한 경향을 보이므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해당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양육지원은 기관보육 위주였으며, 기업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간 지원은 상대적으로 간과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 다룬 바와 같이 맞벌이 가구의 양육 시 주된 애로사항은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지적되므로 기관보육 못지않게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 제공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부모의 직접 양육에 대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합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책 효과 측면에서 젠더 불평등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 즉 휴직제도와 마찬가지로 유연근무제도의 이용이 여성에게 치중될 경우는 여성들의 경력에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고, 나아가 여성고용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된다. 따라서 휴직제도와 마찬가지로 남성의 적극적인 제도 이용을 유도하여 남녀 모두 활발한 제도 이용이 이루어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시간 지원 제도 이외에도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기에 자녀 돌봄을 위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하도록 하는(일시)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은 새롭게 고려될만하다.

그 밖에도 부모상담 등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나므로 이를 일·가정 양립지원의 주요 부문으로 포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영유아 육아지원사업 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으로 맞벌이 가구를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어린이집 지원 이외에 가정내 양육을 지원하는 육아자원사업 기관으로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은 주로 가정내에서 양육하는 부모를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어 맞벌이 가구가 주요 대상으로 간과된 측면이 있다.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히 전일제 근로자거나 취업모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지원서비스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이들의 서비스 접근성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이들 논의를 종합하면, 맞벌이 가구의 양육지원 부문간 설계는 다음 <표 VI-1-1>과 같다. 즉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지원은 크게 1) 서비스 지원, 2) 시간 지원, 3)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 지원으로 구분되며, 각 부분별 세부 정

책은 앞서 다룬 자녀 특성, 근로 특성, 이외 특성별 주요 변인에 따라 우선순위를 달리 한다. 우선 서비스 지원에서 기관보육은 0~5세아 모두에 걸쳐 공히 적용되며, 종일제 보육은 전일제 근로가구 위주로 우선 제공되고, 저소득층과 대도시 지역 맞벌이 가구의 접근성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가정내보육은 기관보육은 0~1세아를 둔 전일제 맞벌이 가구가 우선 제공 대상이며, 비용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는 0~5세아에 적용되며, 전일제 근로가구와 읍면지역 맞벌이 가구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이들의 접근성 강화에 주력한다.

〈표 VI-1-1〉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정책 부문간 설계

	서비스 지원			(돌봄)시간 지원	
	↓			↓	
세부 정책	기관보육	가정내 보육	지역사회 육아지원	근로시간 단축 /탄력근무 /근로시간 선택	휴가/휴직
핵심 대상	0~5세아	0~1세아	0~5세아	0~5세아	0~1세아
	전일제 (종일)	전일제	전일제	전일제 /야간근무자	시간제

2) 맞벌이 가구 특성별 정책 설계

앞서 다룬 맞벌이 가구 대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영아와 유아 보다 면밀하게는 0~1세아, 2~3세아, 4~5세아를 둔 경우 각기 상이한 양육지원 수요를 지니므로 이를 반영한 정책 설계를 요한다. 또한 근로 특성 즉 전일제 근로가구 또는 취업모와 야간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자나 일반근무자에 비해 보다 면밀한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자녀 연령별로 0~1세아를 둔 맞벌이 가구는 기관보육이 너무 이르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자녀가 너무 어려서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우세하며, 무엇보다 해당 연령의 적합한 양육 방식으로 부모의 직접 양육이 선호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휴직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전일제는 물론 시간제 근로자와 직장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원치 않을 경우 가정내보육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표 VI-1-2 참조). 또한 2~3세아는 어린이집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4세부터는 유치원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경향을 보이므로 기관유형과 상관없이 종일제 보육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한편 시간 지원은 0~5세에 걸쳐 지속적으로 요구되므로 전반적인 강화 노력이 시급하다.

〈표 VI-1-2〉 자녀 연령별 정책 설계

자녀연령	기관보육	가정내보육	육아휴직	근로시간 조정
0~1세	어린이집	(↑)	(↑)	
2~3세	어린이집 유치원			
4~5세	어린이집 유치원(↑)			

다음으로 근로 형태별로는 전일제 근로가구와 전일제 취업모, 그리고 야간근무자의 일·가정 양립 갈등이 심하고 서비스 이용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므로 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VI-1-3〉 근로 특성별 정책 설계

근무 형태	기관보육	가정내보육	육아휴직	근로시간 조정
전일제 가구	종일제보육			
야간근무자				
시간제 가구	시간제보육			

전일제 근로자는 종일제 보육의 우선 제공대상이며, 야간근무자는 근로 시간의 특성상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이나 기관보육서비스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가정내보육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동시에 근로시간 변경에의 요구가 높으

므로 육아기에는 병행이 가능한 근로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표 VI-1-3 참조).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전일제 근로가구 및 취업모와 야간근로자에 비해 기관보육과 개인양육서비스 이용 시간이 짧고, 기관보육과 개인양육서비스 이용 시기도 상대적으로 늦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시간제보육 이용을 유도하여 전일제 근로가구 위주의 종일제 운영과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맞벌이 가구의 자녀 특성과 근로 특성을 종합하면, 각 대상별로 다음 <VI-1-4>의 정책 설계를 고안해볼 수 있다.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은 0~1세아를 둔 전일제 근로가구와 야간근무자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후속출산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휴직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가정내보육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한다. 또한 2세아 이후로는 종일제 기관보육의 내실화와 더불어 직장생활과 동시에 자녀를 돌봄 시간이 보장될 있도록 유연근무제도의 확산이 요구된다.

〈표 VI-1-4〉 자녀 연령별 × 근로 특성별 정책 설계

구분	전일제근로 가구	야간근로 가구	시간제근로 가구
0~1세	휴직/가정내보육	휴직/가정내보육	휴직
2~3세	기관보육 (종일제/어린이집) +근로시간조정	기관보육(종일제) +가정내보육 +근로시간조정	기관보육(시간제)
4~5세	기관보육 (종일제/유치원 ↑) +근로시간조정	기관보육 +가정내보육 +근로시간조정	기관보육(시간제)

2.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내실화 방안

맞벌이 가구 일반에 적용되는 양육지원 기반 조성 과 부문별 양육지원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의 기반 조성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의 체계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부처별로 추진되는 각종 세부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이들 사업의 성과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기구를 마련하며, 수요자 측면에서 맞벌이 가구 대상 종합서비스기관의 설치·운영이 요구된다.

1)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종합계획 수립

맞벌이 가구는 홀벌이 가구와 구분되는 양육 시 애로사항과 양육지원 수요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합하는 별도의 종합계획이 수립된 바가 없다. 현행 맞벌이 가구의 양육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들은 주로 여성인력 활용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를테면 가족정책 종합계획인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맞벌이 가구의 양육지원은 가정생활의 만족도 제고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 맞벌이 가구 고유의 양육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도록 규정된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경우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즉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

게다가 기존의 각종 기본/종합계획들과 세부 대책들에서 제시된 일·가정 양립지원 대책들은 각 사업들간의 관계가 모호하고, 우선순위 없이 단순히 나열된 경향이 있다. 각 세부 정책들마다 주요 대상이 다르고 정책 효과가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상별 핵심 목표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정책들간의 정합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양육지원은 부모들의 일할 권리(노동권)와 자녀를 돌볼 권리(부모권)가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세부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우선순위를 제시하며, 주요 사업의 경우 추진 단계별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보육인프라 설치율과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 등은 단계별 확대를 목표로 매년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 달성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2) 범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사업들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 걸쳐 있으므로 제시한 종합계획의 수립은 물론 각 사업간의 연계, 성과 평가에 이르는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범부처간 안정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각 부처에서 관할하는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사업들이 정책 효과 측면에서 상충되지 않고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야기되지 않도록 범부처간 총괄기구의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일·가정 양립지원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지원의 핵심 사업인 보육사업과 아이돌보미사업 등의 주관부처가 아니며, 여성의 노동권 보장과 더불어 부모권 보장 즉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전반을 포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검색일 2014년 4월 30일), 해당 부서는 주요 서비스 기관 즉 보육사업과 유아교육정책의 주관 부처가 아니므로 총괄 부서로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가정양립대책위원회(가칭)'를 별도로 설치·운영하여 체계적인 종합계획의 수립과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3) 맞벌이 가구 대상 종합서비스기관 설치·운영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50%에 머물고 있고, 특히 영유아를 둔 취업모의 비율은 이보다 낮은 약 40%선에 불과한 실정에서 경력단절없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겪는 다양한 고충들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앞서 다룬 지역사회내 육아지원서비스 사례에서와 같이 취업모들은 직장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한 다양한 고충들을 경험하며, 특히 산전후휴가와 휴직 등 돌봄시간을 제공받기 위한 노동 분야 전문상담은 실질적으로 경력단절 예방 효과를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역사회내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을 지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맞춤형 가족지원을 지향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맞벌이 가구는 이들 기관의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포괄되지 않는다. 즉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를 둔 가정내 양육자를 주

요 대상으로 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 일반에 대한 서비스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이들 사업 내용에는 맞벌이 가구가 경험하는 일·가정 양립 갈등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이들 기관들은 영유아를 둔 부모 일반이나 가족 일반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운영하는데도 재정 또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실정이므로 맞벌이 가구 대상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취업모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다양한 상담서비스와 취업모들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육아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 별도의 종합서비스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동 센터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사례에서와 같이 노동 분야 전문상담을 위한 상근 인력을 배치하고, 취업모들간의 소통을 지원하며, 신뢰할 수 있는 육아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기관은 영유아를 둔 부모들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취업여성을 주된 사업 대상으로 삼는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설치·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관련하여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는 여성근로자를 위한 육아 등을 위한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제처 홈페이지 <http://me2.do/GIFL6MWB>, 검색일 2014년 4월 30일). 또한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23조). 따라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취업모의 경력단절 예방과 육아관련 각종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시설이 적극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 기준과 운영 사항을 마련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나. 서비스 지원 내실화

서비스 지원을 기관보육, 가정내보육, 지역사회 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내실화 방안을 각각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기관보육의 맞벌이 가구 부합성 제고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구의 보육 수요에 부합하도록 운영 시간 등이 규정되나, 실제 맞벌이 가구는 조부모의 이용률은 어

린이집에 육박하는 비율은 보이며(63.6%), 서비스 만족도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현행 종일제 보육이 맞벌이 가구의 보육 수요에 부합하지 못함을 말해준다. 또한 유치원은 3세 이후 그 수요가 증가하나, 그 운영상 전일제 근로 가구의 보육 수요와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보육 실수요를 반영한 입소 우선순위 조정

맞벌이 가구는 일차적인 보육 실수요자로서 어린이집 입소 1순위자로 규정된다. 그러나 현행 어린이집 입소는 1순위자 대상자만 해도 9개 대상에 걸쳐 있어 맞벌이 가구의 우선 입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와 더불어 보육 실수요자는 저소득층, 장애부모,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맞벌이 가구와 취약계층 가구 영유아로 1순위 대상자를 축소하고 다문화가족과 다자녀 가구는 현행 순위를 조정함으로써 맞벌이 가구의 실질적인 우선 입소가 보장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중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삭제하여 2순위로 조정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자녀가 3명 이상이 가구의 영유아와 영유아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를 삭제하여 2순위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이러한 조정은 대기 문제가 심각한 대도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나) 입소관리 강화

맞벌이 가구 등 보육 실수요자의 어린이집 우선 이용이 가능하도록 2014년부터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이 운영 중이나, 실제 관련 서류 등의 증빙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특히 전일제 근로가구의 우선 입소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기관조사 결과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 증빙 서류를 확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2.3%에 그치고 있으며, 유치원의 경우 해당 비율은 약 40%선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확인한다고 응답한 기관에서도 입소 시에 한 차례 확인하는 비율이 약 67%를 차지하여 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맞벌이 가구 관련 증빙 서류 관리를 강화하여 종일제 보육이 필요한 전일제 근로가구의 기관 우선입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한다.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입소 시에 원장은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기자 명부 조정은 매 분기

별 시작 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4a: 88-89) 따라서 3월 입소 시에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증빙서류를 잘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매 분기별로 조정한 기록도 점검한다. 또한 현행 맞벌이 가구의 정의는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로자 즉 전일제 근로자이므로 이들에 대한 면밀한 선별이 이루어지도록 보육사업안내에 추가적으로 명시한다.

다) 연중 운영과 종일제 운영 정상화

현행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1일 12시간 운영과 연중무휴 등으로 맞벌이 가구의 보육 수요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일제 보육은 실질적으로 하루 기준으로 평균 8시간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며, 등하원 시각도 근로시간과의 부합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는 단적으로 퇴근 시각보다 자녀를 빨리 하원시킨다고 응답한 비율이 18.2%에 그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또한 이 같은 맞벌이 가구의 근로시간과 기관 운영시간과의 불일치는 기관 이용 시 병행 이용률을 높이고,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운영 일수와 운영 시간은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는 조정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4a: 90). 이는 실질적으로 운영시간의 단축이 가능함을 암시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평일 운영시간도 지도 점검 항목으로 포함하여 실질적인 12시간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또한 운영 일수에 대해서도 휴가 계획의 수립 공지와 근로자의 날 사전 보육 수요조사는 임의로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운영 지침에서 일괄 삭제한다.

취업모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에 의하면, 부모가 일하는 동안 자녀가 다수의 돌보제공자에 의해 양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되므로 기관 이용에도 불구하고 병행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종일제 기관 운영의 정상화가 일차적으로 요구된다.

이런 측면에서 유치원의 방학 일수와 운영 시간은 우려를 자아낸다. 본 연구 조사결과에 의하면, 유치원의 연간 방학 일수는 약 37일에 달하여 어린이집에 비해 약 11일이 길고, 기본교육과정에서 방학을 운영하는 비율은 약 91%에 달하여 맞벌이 가구의 긴급보육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특히 공사립 모두에 적용되는 유치원의 종일제 운영에 대한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이의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유치원에서 맞벌이 가구의 보육 수요에 부합하는 운영시간이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공보육인프라 접근성 강화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용 기관별 대기 현황에서 국공립기관의 대기 기간(국공립어린이집은 10.6개월, 국공립유치원은 12.4개월)은 이외 유형들에 비해 현저히 긴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현재 기관을 이용 중인데도 대기 신청을 해둔 경우 그 사유로서 ‘국공립기관에 보내려고’라고 응답한 비율은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국공립기관에 대한 맞벌이 가구의 선호도가 뚜렷하므로 해당 수요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 앞서 다룬 일·가정 양립지원 효과에 의하면, 공보육 접근성은 곧 질 높은 보육서비스와 저렴한 이용 비용을 의미하며, 특히 영아보육의 질은 취업모의 경력단절 예방의 주된 요소로서 지적된다. 이런 측면에서 공보육인프라는 영아보육에 보다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본다. 따라서 영아 대상 공보육인프라를 새롭게 고안하고, 취업모 위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만하다.

마) 시간연장형보육 운영 적절성 제고

맞벌이 가구의 다양한 근로시간을 고려한 시간연장형 보육은 시간연장보육과 휴일보육 이외에는 확대 적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기관조사결과에 의하면, 운영 비율은 시간연장보육 24.2%, 휴일보육 6.5% 순이었다. 또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시간연장보육 68.7%, 휴일보육 35.3%로 나타난다. 반면 야간보육과 24시간보육은 실제 이용률도 1.0%와 0.5%로 매우 저조하며, 향후 운영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9.3%와 5.1%에 불과하여 확대 적용 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맞벌이 가구들의 미이용 사유는 직접 돌봐줄 사람이 있거나 아이에게 부담되는 점 등이 지적되므로 시간연장형보육의 경우는 그 대상을 보다 면밀히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기관 차원에서 시간연장형보육의 미운영 사유로는 교사 채용 및 배치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기관 운영 사례에 의하면 해당 시간의 인력배치 현황은 서비스 질과 직결된다고 본다. 따라서 야간근로자 등의 보육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당 인력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는 학급당 해당 교사 1인이 배치된 경우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보조인력에 대한 추가 지원이 요구된다.

바) 맞벌이 가구의 기관 운영 참여 지원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등 부모참여 기구 및 프로그램에 맞벌이 가구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해당 운영 시간을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실시한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운영위원회, 부모상담, 부모간담회 등은 주로 평일 오전이나 오후에 이루어지고 있어 맞벌이 가구들이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을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운영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히 기관 운영사항에 관한 심의 의결이 이루어지는 운영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맞벌이 가구의 참여 비율을 명시하여 기관 운영 시 맞벌이 가구의 보육 수요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25조제2항에 의하면(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검색일 2014년 4월 30일),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보육 시간, 보육과정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데, 해당 위원회의 구성 시에 학부모 중 맞벌이 가구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서 보호자 대표로서 맞벌이 가구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명시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치원의 경우는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맞벌이 가구들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교원과 학부모로 구성되는 데(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검색일 2014년 4월 30일), 이때 맞벌이 가구의 참여 비율을 명시하도록 한다.

2) 가정내보육에 대한 부모 선택권 강화

일반적으로 가정내보육은 기관보육의 보완적 성격을 지니나, 우리나라에서는 조부모 양육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여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용비용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

0~1세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기관보육 보다는 가정내보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이때 본인이 직접 돌볼것인지 아니면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정내에서 보육할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휴직이나 가정내보육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는 기관보육에 대한 선택지도 제공되어야 하므로 영아보육의 이용가능성과 질적 수준 제고는 0~1세아 양육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다시 말해 휴직, 가정내보육서비스, 기관보육 중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선 휴직은 일하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으로, 현행 1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 조사결과에 의하면, 취업모들의 휴직 이용기간은 평균 11개월

이며, 희망 기간은 약 26개월로 1년 이상 추가적인 이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는 영아보육의 질과 직결된 것으로 2년이 경과하는 휴직 사용은 여성고용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행처럼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남녀 모두 평등한 제도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부모 두 사람이 모두 휴직을 이용한 경우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 타당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아빠의 달’ 즉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조치는 고무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지난 10월에 발표된 정부 대책에서 아이돌봄서비스의 방향을 영아종일제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한 점은 타당하다고 본다.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비용은 기관보육 이용 비용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민간)베이비시터의 경우는 한 달에 평균 약 70만원선이며, 조부모 돌봄 시에도 평균 약 44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소득에 따라 그 격차가 매우 심하여 저소득층의 경우는 민간베이비시터에 대한 비용 접근성이 매우 낮고, 본인 소득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 평균 111만원에 달한다. 따라서 아이돌봄서비스 특히 영아종일 돌봄서비스의 경우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비용 지원 소득기준도 상향 조정하여 고소득층의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3)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 접근성 보장

보육서비스 이외에 지역사회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는 그 필요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므로 접근성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특히 장난감과 도서 대여,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므로 이들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이용 빈도 조사에 의하면, 체험프로그램은 주 1회, 장난감과 도서 대여는 월 1회가 가장 주를 이루므로 최소한 해당 빈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서비스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다. 이를테면 기관의 각종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운영하여 맞벌이 가구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전일제와 야간근무자들은 시간제 근로자에 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률이나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므로 이들의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센터의 운영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앞서 살펴본 사례분석 내용에 의하면, 운영 시간은 평일 1회 야간 운영과, 토요일에 상시 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보육사업안내에 규정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항에 해당 내용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다. 시간 지원 내실화: 기업의 (돌봄)시간 지원 실효성 강화

본 연구의 일·가정 양립지원 요구로서 육아휴직 활성화는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이며, 그 다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근제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서 다룬 서비스 지원에 못지않게 시간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양육 시 가장 힘든 순간으로 지적된 ‘자녀가 아플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돌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도 근로시간 변경에의 욕구는 0세아 부모와 야간근무자에서 두드러지게 높는데, 이는 부모 직접 돌봄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육아휴직에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특히 시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에서도 이용률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낮은 수준을 보여 실제 이용 가능성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쉽지 않음을 암시한다. 동 제도의 실효성 미비에 대해 육아휴직과는 달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이 지적된다(이데일리, 2014). 「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의하면,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 운영상 중대한 지장이라는 정의는 모호하다고 지적된다(이데일리, 2014). 또한 적용 기간은 현행 1년 이내 범위는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0~1세아 한정된 휴직제도와는 달리 근로시간단축제도에 대한 수요는 0~5세에 걸쳐 있으므로 해당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과 별개로 운영하고, 휴직 기간보다 길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최소 2년으로 연장한다.

그런데 이 같은 시간 지원의 강화는 국가가 주체가 되는 서비스 지원과는 달리 기업이 그 주체가 되므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의 참여에 좌우된다. 따라서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기반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게는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당내용을 직원에게 공지하고 일반에도 공지하도록 한다(유해미·정주영·양유진, 2013: 174). 이때 기업내 가족친화제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명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친화 직장교육 대상에 담당 부서의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밖에도 가족친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족친화포럼을 내실화하되, 참여 기관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종별, 기업규모별로 운영하여 제도 운용 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다.

또한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족친화 인증기업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가족친화기업 인증 실적을 기관 평가 지표에 반영하되, 해당 평가 시에 남성의 제도 이용율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라. 기타

1) 정책 홍보 강화

취업모들의 양육지원정책 인지도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각 제도별로 인지도의 격차가 심하여 휴가와 휴직제도와 양육수당 등 비용지원정책의 인지도는 높은 반면 기업의 역할이 포함된 가족친화기업인증, 근로시간단축, 탄력근무 등에 대해서는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따라서 기업에서 추진하는 각종 양육지원에 대한 홍보 강화가 요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홍보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형식적인 일회성 홍보에 그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용 사례를 담은 운영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유해미 외, 2013: 175).

2) 남성 대상 양육지원 프로그램 강화

남성의 양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남성 대상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당 프로그램으로는 대표적으로는 아버지 교육(부모교육)과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주로 건강가정지원터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영유아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3) 조부모 대상 육아지원프로그램 지원

현행 기관보육이 맞벌이 가구의 보육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고, 휴직제도 등의 실효성이 낮음에 따라 맞벌이 가구의 조부모 의존도는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주양육자로는 어린이집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며, 이는 특히 영아를 둔 맞벌이 가구에서 두드러진다. 또한 기관이용과 더불어 병행하여 조부모의 돌봄이 이루어지는 비율도 현저히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조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육아관련 서비스 지원이 요구된다. 대표적으로 육아상담, 부모교육, 각종 참여프로그램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지원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조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맞벌이 가구 특성별 지원 방안

앞서 4장에서 다룬 바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 일반에 비해 자녀 특성상 영아를 둔 맞벌이 가구, 근로 특성상 전일제 근로가구와 시간제 근로자, 야간근무 등 비전형적인 근로시간에 일하는 가구, 이외 개인 특성상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는 각자 차별화된 양육 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가. 전일제 근로가구

전일제 근로가구 즉 두 사람 모두 전일제 근로자인 경우는 부모 둘 중 한사람이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에 비해 양육 시 어려움이 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종일제 기관보육이 힘든 실정에서 장시간 근로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그로 인해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장시간 근로시간으로 인해 자녀를 돌볼시간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사회내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나 이용률도 낮아 이들에 대한 접근성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나. 0~1세아를 둔 맞벌이 가구

영아를 둔 맞벌이 가구는 기관 위주의 양육지원으로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지가 미흡하다는 면에서 양육 시 다양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즉 이들은 특히 휴직 제도에 대한 선호가 높고, 0세아와 1세아의 월 교육·보육비용은 약 72만원 선으로 가장 높고,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비용도 평균보다 10~20만원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로 인해 양육시 애로사항은 0세아와 1세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 특히 보육시설의 부족과 긴급보육 미흡 등이 지적되므로 영아의 경우 맞벌이 가구의 기관 우선입소를 철저히 보장하고, 영아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에 주력하며, 자녀가 아픈 경우 등 긴급보육시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현실화하여 사용이 용이하도록 한다. 즉 현행 가족돌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이 되어야 활용할 수 있어 실제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

저소득층 가구는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할 비용이 부족하여, 조부모 등 지원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제도화된 각종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으로 규정된다. 즉 제도화된 지원 이외에 추가적인 돌봄지원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특히 질 높은 기관보육은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영아를 둔 가구의 경우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여성들의 휴직이 가능하도록 그 재원을 조세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라. 비전형적 근로 가구

야간근로 등 비전형적인 근로시간에 일하는 맞벌이 가구는 현행 종일제 보육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개인양육지원서비스와 병행 이용률이 높고, 해당 비용 수준도 매우 높아 비용 부담도 과중하다고 인식된다. 이들은 일차적으로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자 하며, 개인양육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현행 아이돌봄서비스는 근로시간으로 이용하는데 제한적이다. 따라서 심야(21:00~08:00)에 제공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해당 인력은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필요한 근로가구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대근무와 야간근로가구인 경우는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므로 해당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보육 일과 운영에 대한 지침 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4).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 만들기.
- 관계부처 합동(2011).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
- _____ (2013).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2013. 6).
- _____ (2014a).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2014. 2. 4).
- _____ (2014b). 여성고용 후속 보완대책-일하는 부모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 방안.
-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
- 교육과학기술부(2012). 보도자료: 3~4세 누리과정 확대 및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 완료(2012.2.27.)
- 교육부(2014).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안).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 전문위원(2013). 아이돌봄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김현숙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 김승권·박종서·김유경·김연우·최영준·손창균·윤아름(2012).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옥·김종숙·배호중(2013).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13년). 고용노동부.
- 김은정(2013a).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지원 인지도와 이용의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617-642.
- _____ (2013b).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긍정적 효과성과 부정적 효과성 인식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5(2), 168-198.
- 김종숙·이택면·강민정·유해미·윤자영(2013). 고용친화적 보육정책 개선방안 연구.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
- 김준기·양지숙(2012). 기혼여성의 일-가정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사회적 지원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0(4), 251-280.

- 김현식·김지연(2012).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의 차이와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금(2010). 보육시설 유형과 이용시간에 따른 취업모의 취업에 대한 태도 및 보육서비스 질에 관한 인식. 대한가정학회지, 48(7), 111-118.
- 노동부(2008).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08-2012).
-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2014). 2014년 상반기 사업보고서.
- 대한민국 정부(2010).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 민무숙·오은진·이시균(2010).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지원 서비스 발전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진희·이시균·윤정혜(2013). 고용보험DB를 활용한 노동시장분석. 한국고용정보원.
- 보건복지부(2010). 아이사랑플랜 2010년 시행계획.
- _____ (2012). 보도자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보육지침 개정 시행(2012.7.3).
- _____ (2013a). 보도자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최초 공표(2013. 1. 31).
- _____ (2013b). 보도자료: 2014년 제2차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2013. 12. 31).
- _____ (2014a).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 _____ (2014b). 보도자료: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입소 더욱 수월해진다(2014. 4. 18).
- _____ (2014c). 보도자료: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 사업장 대폭 증가(2014. 4. 29).
-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2014). 내부자료.
- 야마구치 가즈오(山口一男)(2010). 일과 가정의 양립과 저출산. 이충남 역. 서울: 보건사회연구원.
- 여성가족부(2012). 보도자료: 2013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2012. 9. 25.).
- _____ (2013a). 보도자료: 아이돌봄서비스가 다양해지고 돌봄 취약 계층에 우선 찾아갑니다(2013. 11. 26).

- _____(2013b).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2011~2015) 2013년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
- _____(2014a). 2014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 _____(2014b). 보도자료: 2014년도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지원대상 확대 및 서비스 유형 다양화(2014. 1. 28).
- _____(2014c). 보도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발걸음 빨라져(2014. 3. 5).
- _____(2014d). 보도자료: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 근무환경 만들기 위해 기업들 한자리 모여(2014. 3. 26).
- _____(2014e). 보도자료: 일·가정 양립 강화를 위한 가족친화인증 기준 개선(2014. 4. 30).
- 여유진·김수정·김은지·최준영(2013).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해미·정주영·양유진(2013). 일·가정양립을 위한 남성의 자녀양육지원 실태와 개선 방안.
- 윤홍식·송다영·김인숙(2010).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만. 경기: 공동체.
- 이미화·서문화·이정원·도남희·권미경·양미선·손창균·김경미(2012). 201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이승미·이현아(2011). 맞벌이 임금노동자 남녀의 생활시간구조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9(5), 81-96.
- 이완정(2009). 취업모의 일-자녀 양육 양립 부담감과 영유아기 자녀를 위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요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4), 117-126.
- 이재림·손서희(2013).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 갈등: 직장 및 자녀양육 관련 자원과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1), 93-114.
- 이정은(2012).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의 직장-가정 적합성: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유형 분류. 가족과 문화, 24(1), 71-104.
- 이진숙·신지연·윤나리(2010). 가족정책론. 서울: 학지사.
- 정영순·어윤경·임유진(2012). 취업모 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전일

- 제와 시간제 비교. 한국사회정책, 19(3), 215-245.
- 조주은(2014).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조희금·송혜림·박정윤·권태희·김경화·김주현·김혜영·윤소영·윤진숙·이진숙·정민자(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통계청(2014a). 보도자료: 2013년 출생통계(2014. 8. 26).
- 통계청(2014b). 201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여성가족부.
- 허남재·석재은(2011). 한국의 보육료 지원은 취업모 친화적인가. 사회복지정책, 38(2), 139-163.
- Fine-Davis M., Fagnani J., Giovannini D., & Clarke H. (2004). Fathers and Mothers: Dilemmas of the Work-Life Balance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Gornick J. C., & Meryers M. K. (2003). Families That Work: Policies for Reconciling Parenthood and Employment.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 Hegewisch A., & Gornick J. C. (2012). "The impact of work-family policies on women's employment: review of reseach from OECD counties". Work and Family Policy: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s. Routledge.
- Jacobs A. (2010). 시간을 묻다: 노동사회와 젠더. 국미애·김창연·나성은 역. 한울.
- Leira A. (2002). Working Parents and the Welfare State. Cambrige University.
- Misra J., Budig M., & Boeckmann I. (2012). "Work-family policies and the effects of children on women's employment hours and wages". Work and Family Policy: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s. Routledge.
- OECD(2014). Family database-LMF1.2, SF2.1. OECD, Paris(출처: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 검색일 2014년 6월 16일).
- Sweet S. (2013). "Global perspectives on the work·family interface". The Work-Family Interface. SAGE.
- 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Family policies in developed

counties: a 'fertility-booster' with side-effects". Work and Family Policy: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s. Routledge.

[참고사이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me2.do/GlFL6MWB>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nwscc.or.kr>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부 마음더하기 정책포털 홈페이지 <http://momplus.mw.go.kr>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workingmom.or.kr>

[신문기사]

이데일리(2014. 10. 17). “실효성 제로” 무용지물된 육아기시간단축제도 .

Abstract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Childcare Support for Children of Dual Income Families

Haemi Yoo Yun Jin Bae Moonjeong Kim

Despite of strengthened support for work-family compatibility, total birthrate of Korea is only 1.19 babies and women's economic activity rates stay at 50% level. Based on these backgrounds, this study investigated how well the current work-family compatibility support fits to the needs of dual income families, and proposed substantiality enhancement measures, customized by characteristics of dual income families with children. For this, a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among 1,736 working mothers with children, 850 kindergartens, and 896 daycares. Also, this study analyzed cases of current operation status of time-extended care at daycare and after-school care at kindergarten, and childcare support services at local community.

First, current utilization status and demands of childcare support services and system for dual income families are as follows. Overall, dependence on daycare and grandparents was predominant, and there were high expenses of private childcare support service, such as approximately 700,000won for a private babysitter. Use time of institution was average 8 hours which did not correspond with working hours, and there was a relatively low satisfaction level in the aspects of days of operation, parent's participation, fees, and emergency childcare. While main reason of using at-home childcare

was predominantly to be used along with institution childcare, it seemed 0-1 year olds had difficulty in adjusting to institutions and 90% of sub childcaring person was grandparents. Childcare support services of local community showed high demands in child developmental test, book lending, and childcare information, and awareness level of the services among full-time working families was low. (Childcare)time support system was used mainly as a vacation/leave of absence and the system was not fully implemented in small businesses. As for appropriate childcare method of working parents, direct childcare by parents was favored at overwhelmingly high percentage, and main difficulties in childcare were difficulty in managing work and childcare simultaneously and insufficient time for childcare.

Next, the current status of childcare and education institutions' operation and demands are as follows. There was a difference in yearly closing days, specifically approximately 26 days for daycare and approximately 37 days for kindergarten. Rate of documentary evidence verification at the time of admission was only 54% at daycare and 40.5% at kindergarten. Also, due to high percentage of parent participating programs being conducted on weekday afternoons, there is a concern of limited participation of dual income families. Percentage of time-extended care and holiday care operation were 24.2% and 6.5% each, and the need for operation was presented relatively higher in the forementioned services. As for improvement tasks for strengthening childcare support for dual income families, teacher allocation, allowance support fit to characteristics of family, flexible operation hours, enhanced after-school program quality were suggested.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political measures. Basic direction of childcare support for dual income families includes 1) ensuring caring rights of working parents ; 2) pursuing childcare rights and responsibility in terms of gender equality; and 3) establishing working environment of work-family compatibility. Balanced structure of support service and (childcare)time service and customized planning by family characteristics were proposed as detailed strategies. Specific substantiality enhancement measures for dual income family's childcare support are as follows: increasing effectiveness of work-family compatibility plan, establishing systematic ground such as a performance and result management system for the relevant services, strengthening institution admission management, normalizing institutions' working hours, enhancing substantiality of all-day care operation such as increasing effectiveness of time-extended care operation, strengthening the right of choice for at-home childcare such as strengthening support on all-day childcare for 0-1 year olds, increasing accessibility of childcare support services of local community such as regular operation of Total Childcare Support Center on Saturdays, and enhancing substantiality of corporate's (childcare)time support system such as vitalizing the shorter working hour system. Furthermore, the study proposed customized support measures for dual income families with 0-1 year olds who have problems of work-family compatibility, full-time working families, untypical working families, and dual income families with low income.

Keyword: Dual income family, work-family compatibility support, low birthrate countermeasure, childcare support for children

부 록

부록 1. 심층면담 질문지: 기관 대상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부모 대상

부록 3. 맞벌이 가구 양육 실태 및 요구 조사 질문지: 부모 대상

부록 4. 맞벌이 가구 대상 보육·교육서비스 운영 실태 조사 질문지:
기관 대상

부록 1. 심층면담 질문지: 기관 대상

심층면담 질문지-기관 대상

육아정책연구소

맞벌이 가구 대상 보육서비스 운영 현황 및 개선 요구

1. 보육서비스 목표 및 효과 인식

- 1) 기관보육서비스의 주된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동 연령별(영아/유아) 보육서비스 목표의 상이성에 대한 인식
 - 주요 보육수요자에 대한 인식
 -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지원 역할 중요도 인식
- 2) 보육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주 이용자: 가구/아동 특성
 - 주요 수요자: 가구/아동 특성
- 3) 보육서비스의 주요 정책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일하는 부모의 노동권 보장 효과 중요도 인식: 일·가정 양립지원 중요도 인식
 - ※ 아동 발달, 출산율 제고 대비
- 4) 주요 목표와 효과 측면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상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요 목표와 효과
 - 주 이용자

2. 맞벌이 가구 자녀 보육 현황 및 애로사항

- 1) 현행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순위 대상자 적정성: 맞벌이 가구의 우선순위 적정성
 - 대기 아동 현황 및 경향성: 맞벌이 가구 대기 현황 비교
- 2) 무상보육과 전면 양육수당 도입이 맞벌이 가구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영아 무상보육 이후 변화 양상(2012년~)
 - 전 계층 양육수당 도입 이후 변화 양상(2013년~)
 - 누리과정 도입 이후 변화 양상(2012, 2013년~): 5세/3~4세
 - ※ 대기 순, 이용 시간(등하원시각 포함) 등

3) 귀 어린이집의 맞벌이 가구 보육 현황은 어떠합니까? - 아동 연령별 맞벌이 가구 이용 비율 - 종일제 보육 운영 실태: 보육이용시간의 맞벌이 가구 부합성 인식 - 토요 보육/연중무휴 운영 실태: 운영 여부, 필요성 인식 - 방과후 보육 운영 현황: 보육 아동 규모/가구 특성/필요성 인식
4) 귀 어린이집의 맞벌이 가구 대상 별도 보육서비스 제공은 무엇입니까? - 맞벌이 가구의 기관보육 시 애로사항에 대한 인식 정도: 기관 참여 요구 등 - 맞벌이 가구 보육 시 주안점 - 맞벌이 가구 대상 별도 프로그램 제공 여부/세부 내용
5) 귀 어린이집에서 맞벌이 가구 대상 보육서비스 제공 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3. 취약보육(시간연장/24시간/휴일) 운영 현황 및 개선 요구				
1) 각 유형별 보육 운영 현황은 어떠합니까?				
구분	운영 여부	보육 현황 규모/대상	필요성 인식	애로사항
시간연장				
휴일보육				
24시간보육				
2) 운영 방식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행기관 지정 방식/거점운영				
3) 시간연장 보육 수요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4) 지원 요건 및 수준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사 대 아동 비율 1: 5 -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별도 채용 시 - 기존 교사 담당 시 월 40만원				

4. 맞벌이 가구의 보육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관 운영상 개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종일제 보육 내실화: 등하원 시각 등
2) 취약보육 운영 내실화
3) 기타 부모 대상 프로그램 운영: 부모참여 행사 등

5. 맞벌이 가구 보육관련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가정내 보육 연계 및 개선 요구: 기관보육/개인양육지원서비스 병행 이용 시
2)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연계 강화

3) 맞벌이 가구 적정 기관 유형: 직장보육, 영아전담 등

4) 기타 정책 과제

<어린이집 원장용>

면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보다 나은 보육을 위하여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명	()어린이집
기관 유형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 민간 ☐ 가정 ☐ 직장
기관 소재지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최종 학력	☐ 고졸 미만 ☐ 고졸 ☐ 전문대졸 ☐ 4년제대학졸 ☐ 대학원 이상
성별 / 연령	☐ 남 ☐ 여 / 만 () 세
현기관 근무기간	근무 기간 : 년 개월
총 경력(교사)	근무 기간 : 년 개월
전공	☐ 유아교육 ☐ 보육 ☐ 아동학 ☐ 사회복지 ☐ 기타()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부모 대상

심층면담 질문지-부모용

육아정책연구소

맞벌이 가구의 양육 실태 및 요구

1. 주양육자

- 1) 일하는 동안(또는 학업중)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기관보육 이용 여부 및 이용 현황: 이용 기관 유형, 이용 시간 등
 - 자녀 연령별 주양육자 변화 대한 인식
 -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지원 역할 중요도 인식
- 2) 자녀의 하루 일과(평일/주말)는 시간대별로 어떠합니까?
- 3) 자녀 연령에 따라 주 양육자는 변화하였습니까?
 - 자녀 연령별 양육 실태 변화: 주양육자 변화 및 희망 양육 방식
 - 향후 양육 방식 변화 의향 및 사유
- 4) 자녀 연령에 따라 이상적인 양육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녀 연령별 이상적인 양육 방식
 - 해당 연령별 구체적인 사유
- 5) 기관보육/가정내 보육을 이용 중이거나 과거에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과거에 이용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현재 이용 중인 기관보육이나 가정내 보육서비스를 변경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2. 서비스 이용 실태 및 만족도

- 1) 현재 이용 중인 육아지원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모두 답하여 주십시오
 - 이용 경험이 있는 서비스의 이용 목적은 각각 무엇입니까?
 - 이용 경험이 있는 서비스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무엇입니까? 만족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떠합니까?
- 2) 기관보육을 이용 중인 경우/가정내보육 이용 중인 경우
 -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은 언제부터 이용하기 시작하셨습니까?

- 현재 이용 중인 보육서비스의 만족도는 어떠합니까?(접근성, 이용 시간, 이용 비용, 교사, 프로그램 등) 만족/불만족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대기 현황 등) - 현재 이용 중인 보육서비스는 직장생활(학업, 직업훈련)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지역사회내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보육정보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프라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영유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이용한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이용 빈도와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4) 자녀 양육 시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지원인력 현황: 조부모 등 - 비용 지불 여부 - 만족도

3. 기업의 양육지원 이용 경험 및 이용 시 애로사항

- 1) 현 직장에서 시행중인 자녀 양육지원제도는 무엇입니까?
 - 휴가휴직제도, 직장보육시설, 근로시간단축제도 등
 - 제도 이용 가능성은 어떠합니까?
- 2) 근로시간 및 유형에 따른 양육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3) 직장에서 시행 중인 제도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4. 일·가정 양립 어려움 / 양육 시 애로사항

- 1) 직장(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가장 어려움 점은 무엇입니까?
 - 보육서비스, 시간, 배우자의 협조 등
- 2) 직장(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어려워서 중단하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3)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자녀 연령별

5.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정책적 요구는 무엇입니까?

- 1) 기관보육/가정내보육 부문
- 2) 기업 지원 부문: 휴가휴직제도 등
- 3) 지역사회내 육아지원 부문
- 4) 기타 정책 과제

6.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시간 지원, 보육서비스 제공 중 연령별로 필요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2) 기관보육(종일제 보육, 취약보육 등)
3) 가정내 보육 지원
4) 기타 지역사회내 육아지원: 장난감 대여, 부모 상담, 부모교육 등

부록 3. 맞벌이 가구 양육 실태 및 요구 조사 질문지: 부모 대상

맞벌이 가구 양육 실태 및 요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 실태를 파악하고 일·가정 양립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조사표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유해미 부연구위원(02-398-7708, nowyoo@kicce.re.kr)

배윤진 부연구위원(02-398-7745, byj@kicce.re.kr)

김문정 연구원(02-398-7719, moon@kicce.re.kr)

육 아 정 책 연 구 소

<응답자 확인 사항>

귀하는 맞벌이 가구입니까? → 맞벌이 가구만 조사 진행 ※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휴직 중인 경우는 취업 중에 포함 ※ 시간제 근무자 포함(최근 3개월 이상)
귀하는 미취학 자녀(만 0~5세아)가 있습니까? → 있는 경우만 조사 진행

※ 맞벌이 가구의 근로 현황

※ 다음은 귀하와 배우자(남편)의 직업 및 근로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인		배우자	
1) 직업	① 의회 의원, 고위 임직원, 관리자	② 전문가		
	③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④ 사무종사자		
	⑤ 서비스 종사자	⑥ 판매종사자		
	⑦ 농업, 임업, 어업 숙련종사자	⑧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⑨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⑩ 단순노무 종사자		
	⑪ 기타(군인, 학생 등)			
2) 근로 형태/ 시간	본인	☐ 전일제	주당 () 시간/평일 기준	
		☐ 시간제	주당 () 시간	
	배우자	☐ 전일제	주당 () 시간/평일 기준	
		☐ 시간제	주당 () 시간	
※전일제: 주당 40시간 이상 ※시간제: 주당 40시간 미만(주당 15시간~39시간)				
3) 종사상 지위	본인		① 상용직(1년 이상의 근로계약) ② 임시직(1개월~1년 미만) ③ 일용직(1개월 미만 또는 일당제) ④ 해당사항 없음	
	배우자			
	본인		① 임금근로자 ②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③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④ 무급가족종사자	
	배우자			
4) 출퇴근 시각 /야근, 모임 횟수 등	구분		본인	배우자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평일 기준		()시 ()분	()시 ()분
	집에 도착하는 시각/평일 기준		()시 ()분	()시 ()분
	교대 근무 여부		☐ ①예 ☐ ②아니오	☐ ①예 ☐ ②아니오
	야간 근무 여부		☐ ①예 ☐ ②아니오	☐ ①예 ☐ ②아니오
	야근(시간외 초과근무)일수(1주일 기준)		평균 () 회	평균 () 회
	회식/모임 일수(1주일 기준)		평균 () 회	평균 () 회
	휴일/공휴일 근무 횟수(1개월 기준)		평균 () 회	평균 () 회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이하 모든 질문은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막내 자녀 연령: 만 () 세

출생순위: () 번째 자녀

I. 양육지원 제도 인지 및 필요성 인식

※ 귀하의 총 자녀수와 연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자녀수	총 자녀수 ()명	
2) 자녀 연령	출생 순위	연령
	자녀1 (첫째 자녀)	() 년 () 개월
	자녀2 (둘째 자녀)	() 년 () 개월
	자녀3 (셋째 자녀)	() 년 () 개월
	자녀4 (넷째 자녀)	() 년 () 개월

다음은 우리나라의 양육지원 정책 및 제도의 인지도와 도움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귀하는 각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2) (문 1-1에서 ②와 ③에 응답한 경우) 귀하는 각 제도가 추가 출산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3) (문 1-1에서 ②와 ③에 응답한 경우)귀하는 각 제도가 (직장)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1-1. 인지도	1-2. 추가 출산 도움 정도	1-3. 일·가정양립 도움 정도
		① 모름 ② 대충 알고 있음 ☞ 1-2번으로 ③ 잘 알고 있음 ☞ 1-2번으로	① 전혀 도움 안됨 ② 도움 안됨 ③ 도움되는 편임 ④ 매우 도움됨 ⑤ 해당사항없음	① 전혀 도움 안됨 ② 도움 안됨 ③ 도움되는 편임 ④ 매우 도움됨 ⑤ 해당사항없음
1	출산전후 휴가제도			
2	유산·사산휴가 제도			
3	배우자(남성) 출산휴가제도			
4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7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유급 수유시간)			
8	육아휴직제도			
9	가족돌봄휴가제도			
10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11	시차출근제(탄력근무제)			
12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			
13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14	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			
15	(유치원) 방과후 돌봄(종일제) 지원			
16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17	가정양육수당 지원			
18	영아 정기돌봄(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19	시간제돌봄(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II. 영유아 자녀 양육 실태 (※ 막내 자녀 기준)

2. 귀하가 일하는 동안 자녀를 주로 돌보는 기관 또는 사람은 누구(어디)입니까? (1개만 응답)

- ☐ ① 어린이집 ☐ ② 유치원 ☐ ③ 조부모
☐ ④ 기타 친인척(조부모 제외) ☐ ⑤ 아이돌보미/가정보육사 ☐ ⑥ 베이비시터(민간)
☐ ⑦ 반일제 학원 ☐ ⑧ 기타(구체적으로:)

2-1. (문 2번에서 ① 어린이집 또는 ②유치원에 다닌다고 응답한 경우)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이 나 유치원의 이용과 병행하여 자녀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 ☐ ① 예 ➡ 2-1-1번으로
☐ ② 아니오

2-1-1. (문 2-1번에서 있다고 응답한 경우) 기관 이용과 병행하여 자녀를 돌봐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해당 되는 사람을 모두 응답합니다.(다중응답)

- ☐ ① 외조부모 ☐ ② 친조부모 ☐ ③ 아이돌보미
☐ ④ 베이비시터(민간) ☐ ⑤ 친인척(조부모 제외) ☐ ⑥ 이웃/친구
☐ ⑦ 기타(구체적으로:)

3. 귀하는 입소 또는 입학하기 위해 대기 신청 중인 기관(또는 서비스)이 있습니까?

- ☐ ① 예 ➡ 3-1, 3-2번으로
☐ ② 아니오

3-1. (문 3번에서 대기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 신청 중인 대기 기관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총 () 개

3-2. (문 3번에서 대기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 대기 중인 기관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대기 신청 중인 기관에 모두 표기해 주십시오.(중복 응답)

- ☐ ① 국·공립어린이집 ☐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③ 기타법인·단체어린이집
☐ ④ 민간어린이집 ☐ ⑤ 가정어린이집(놀이방) ☐ ⑥ 직장어린이집
☐ ⑦ 부모협동어린이집 ☐ ⑧ 국/공립유치원 ☐ ⑨ 사립유치원
☐ ⑩ 기타()

3-3. (문 2번에서 ① 어린이집 또는 ②유치원에 다닌다고 응답한 경우) 현재 기관 이용 중인데도 다른 기관에 대기 신청을 해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집에서 가까운 기관으로 옮기려고
☐ ②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이 불만족스러워서 ➡ 3-3-1번으로
☐ ③ 국공립 기관(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어서
☐ ④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을 계속 이용할 수 없어서(상급반 없음 등)
☐ ⑤ 기타(구체적으로:)

3-3-1. (문 3-3번에서 ②번에 응답한 경우) 불만족스러운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응답합니다.(다중응답)

- ☐ ① 이용 비용이 비싸서
☐ ② 원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 ③ 교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 ④ 기관 운영 시간이 근무시간과 맞지 않아서
☐ ⑤ 보육·교육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
☐ ⑥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
☐ ⑦ 물리적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서
☐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4. 이 자녀(막내 자녀)는 이전에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다가 그만 다닌 적이 있습니까?

- ☐ ① 예 (그만 다닌 기관 수 _____ 개) ➡ 41, 42번으로
☐ ② 아니오

(문 4번에서 있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기관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4-1 ※ 그만 다닌 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는 가장 최근에 그만둔 기관을 응답합니다.

- ☐ ① 국·공립어린이집 ☐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③ 기타 법인·단체어린이집
☐ ④ 민간어린이집 ☐ ⑤ 가정어린이집(놀이방) ☐ ⑥ 직장어린이집
☐ ⑦ 부모협동어린이집 ☐ ⑧ 국/공립유치원 ☐ ⑨ 사립유치원
☐ ⑩ 기타(_____)

4-2 (문 4번에서 있다고 응답한 경우)기관(유치원/어린이집)을 그만 다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만 다닌 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는 가장 최근에 그만둔 기관에 대하여 응답합니다.

- ☐ ① 집에서 너무 멀어서
☐ ② 기관이 불만족스러워서 ➡ 42-1번으로
☐ ③ 희망하는 기관에 다닐 수 있게 되어서
☐ ④ 기관에 상급반이 없어서
☐ ⑤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4-2-1 (문 4-2번에 ②번에 응답한 경우) 불만족스러운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응답합니다.(다중응답)

- ☐ ① 이용 비용이 비싸서
☐ ② 원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 ③ 교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 ④ 기관 운영 시간이 근무시간과 맞지 않아서
☐ ⑤ 보육·교육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
☐ ⑥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
☐ ⑦ 물리적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서
☐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5. 귀하 막내 자녀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귀하는 현재 다음 기관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 2) (문 5-1에서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이용 빈도는 어떠합니까?
- 3) (문 5-1에서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이용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 4) (문 5-1에서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월 평균 이용 비용은 얼마입니까?
- 5) (문 5-1에서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문 5-4번의 월 평균 이용 비용은 얼마나 부담되십니까?

※ 이용 빈도/이용 비용은 지난 3개월 평균으로 응답합니다. 이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구분	이용 여부				
		5-1. 이용 여부 /평일(월~금)	5-2. 이용 빈도	5-3. 이용 만족도	5-4. 월 평균 이용 비용(원) ※ 지난 3개월 평균	5-5. 이용 부담 정도
		①이용함 ☞ 5-2번으로 ② 이용안함	①매일 (주5일) ②주 2~3회 ③주 1회 ④격주 1회 ⑤한달에 1회 미만 ☞ 5-3번으로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 5-4번으로		①전혀 부담 안됨 ②부담 안됨 ③보통 ④부담됨 ⑤매우 부담됨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조부모/친인척					
4	아이돌보미/가정보육사					
5	베이비시터(민간)					
5	반일제 이상 학원 (영어유치원, 미술학원 등)					
6	보습학원/문화센터 등 사설기관(시간제)					
7	개별/그룹지도, 방문서 비스학습지 등					
	총 비용(합계)					

6. (문 5-1번에서 반일제 이상 학원, 보습학원/문화센터, 방문서비스를 이용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
사실 학원이나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1가지)**는 무엇입니까?

- ☐ ① 특기교육을 위하여 ☐ ②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 ③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시간에 맡기려고 ☐ ④ 자녀가 원해서
☐ ⑤ 가족이나 주변에서 권해서
☐ ⑥ 기타(구체적으로:)

※ 문 7번에서 문19-1번은 막내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 중인 부모만 응답합니다.

7.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기관(어린이집/유치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 ① 국·공립어린이집 ☐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③ 법인·단체어린이집
☐ ④ 민간어린이집 ☐ ⑤ 가정어린이집(놀이방) ☐ ⑥ 직장어린이집
☐ ⑦ 부모협동어린이집 ☐ ⑧ 국/공립유치원 ☐ ⑨ 사립유치원
☐ ⑩ 모름

8. 귀하의 자녀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1개만 응답)

- ☐ ① 자녀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 ② 사회성 발달(또래 관계 등)을 위하여
☐ ③ 특기교육을 위하여 ☐ ④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 ⑤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 ⑥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 ⑦ 보육료·교육비가 전액 지원되어서 ☐ ⑧ 기타()

9. 귀하께서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1, 2순위를 선택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① 원장/교사 ☐ ② 등·하원시간 ☐ ③ 집 혹은 직장과의 거리
☐ ④ 이용 비용 ☐ ⑤ 기관 프로그램 ☐ ⑥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 ⑦ 건강·영양(급식·간식 등) ☐ ⑧ 학급 규모(아동 수) ☐ ⑨ 내부 분위기
☐ ⑩ 안전한 보호 ☐ ⑪ 국공립 기관 여부 ☐ ⑫ 기관 설비
☐ ⑬ 차량 운행 여부 ☐ ⑭ 주변의 권유·평판 ☐ ⑮ 주변 환경
☐ ⑯ 기관평가(평가인증 등) ☐ ⑰ 형제가 같은 기관에 다님
☐ ⑱ 기타()

10. 귀하께서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한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총 이용 기간은 얼마입니까?

이용 시작 시기	총 이용 기간
자녀가 () 개월 부터	() 년 () 개월

11. 이 자녀(막내자녀)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처음으로** 이용한 시기는 언제 입니까?

자녀가 ()개월 때부터 다니기 시작함
--

11-1. 문 11번의 자녀가 최초로 기관을 이용한 시기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너무 이르다 ☒ 11-1-1번으로 ☐ ② 적절하다
☐ ③ 너무 늦다 ☐ ④ 잘 모르겠다

11-1-1. (문 11-1번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자녀가 기관을 최초로 이용한 시기에 희망하던 양육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 ☐ ① 부모가 직접 돌봄 ☐ ② 조부모(또는 친인척) 돌봄
☐ ③ 비혈연 대리양육자(아이돌보미 등) 돌봄
☐ ④ 기타(구체적으로:)

11-1-2. 문 11-1-1번의 희망하는 방식 대로 양육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에만 응답합니다.

희망 양육 방식	미이용 사유
부모가 직접 돌봄	
조부모(또는 친인척)가 돌봄	
비혈연 대리양육자(아이돌보미 등)가 돌봄	
기타:	

12. 현재 이용 중인 기관(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어오기 위해 대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예 ☒ 12-1번으로
☐ ② 아니오

12-1 (문 12번에서 대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대기 기간(실제 입학·입소시까지)은 얼마 동안 입니까?

총 () 개월

13. 자녀가 평일에 1)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시간(평균)과 2) 등원/하원 시각은 각각 언제입니까?

평일 이용 시간	등원 시각	하원 시각
총() 시간	() 시 () 분	() 시 () 분

☐ ① 예 ☐ ② 아니오

하루 () 시간/평일 기준

① 남아있는 아이가 얼마 없어서 ② 집에 돌볼 사람(조부모 등)이 있어서

③ 타 시설기관(학원 등)에 보내려고 ④ 장시간 기관 이용을 원치 않아서

⑤ 원장 또는 교사의 눈치가 보여서 ⑥ 아이가 힘들어 해서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⑧ 퇴근 시각보다 빨리 하원시키지 않음

☐ ① 매주 이용함 **☞ 16-1번으로** ☐ ② 가끔 이용함(한달에 1~2회) **☞ 16-1번으로**
☐ ③ 이용하지 않음

토요일 이용 시간	등원 시각	하원 시각
총() 시간	() 시 () 분	() 시 () 분

17. 귀하의 특수보육 이용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17-1. 귀하는 각 항목별로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17-2. (문 17-1에서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이용 빈도는 어떠합니까?

17-3. (문 17-1에서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1회 평균 몇 시간을 이용합니까?

17-4. (문 17-1에서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이용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구분	17-1. 이용 여부	17-2. 이용 빈도	17-3. 이용 시간	17-4. 이용 만족도
		① 이용 중 ☞ 17-2번으로 ② 과거에 이용 경험 있음 ☞ 18번으로 ③ 이용해 본적 없음 ☞ 18번으로	①매일(주5일) ②주 2~3회 ③주 1회 ④한달에 2회 ⑤한달에 1회	1회 평균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	시간연장보육 (19:30~24:00)				
2	야간보육 (19:30~ 다음날 7:30)				
3	24시간보육 (7:30~ 다음날 7:30)				
4	휴일보육 (토요일은 제외한 휴일)				

(문 17-1번에서 ②와 ③번을 응답한 경우) 1) 과거에 이용하였다가 현재 이용하지 않거나 2) 이용해본적이

18.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해당되는 항목에만 응답합니다.

구분	미이용 사유	
	(②번을 응답한 경우) 과거에 이용하였으나 현재 미이용	(③번을 응답한 경우) 이용해 본 적이 없음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 보육		

19. 귀하는 현재 이용 중인 기관(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다음 각 항목별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⑥ 해당 사항 없음
1) 시설 및 환경						
2) 교육·보육내용(프로그램)						
3)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4) 교사의 전문성						
5) 부모참여(부모교육 등)						
6) 급·간식						
7) 이용 비용(보육료, 교육비 등)						
8) 등원 시각						
9) 하원 시각						
10) 긴급보육 요청 시 대응 정도						
11) 운영 일수(방학 운영 등)						

- 19-1. (문 19번에서 ①과 ②에 응답한 경우) 각 항목별로 불만족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에만 응답합니다.

구분	불만족 내용
1) 시설 및 환경	
2) 교육·보육내용(프로그램)	
3)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4) 교사의 전문성	
5) 부모참여(부모교육 등)	
6) 급·간식	
7) 이용 비용(보육료, 교육비 등)	
8) 등원 시각	
9) 하원 시각	
10) 긴급보육 요청 시 대응 정도	
11) 운영 일수(방학 운영 등)	

※ 문 20번에서 문 27-1번은 막내 자녀가 개인양육지원서비스(혈연/비혈연 대리양육자)를 이용 중인 부모만 응답합니다.
(기관 이용과 병행 이용 시에도 해당됨)

20. 귀하가 개인양육지원서비스(조부모/친인척 등 혈연, 비혈연 대리양육자 등)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응답합니다.(중복 응답)

- ☐ ① 자녀가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까봐
☐ ② 기관 이용 후 돌볼 사람이 필요해서
☐ ③ 원하는 시간에 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서(자녀를 기관에 보내지 않음)
☐ ④ 이용 희망 기관에 대기자가 많아서 ☐ ⑤ 자녀가 원해서
☐ ⑥ 이용 비용이 부담되어서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1. 다음 중 자녀를 가장 많이 돌봐 주는 가족/친인척이나 비혈연 대리양육자는 누구입니까?

- ☐ ① 동거 친조부모 ☐ ② 동거 외조부모 ☐ ③ 비동거 친조부모
☐ ④ 비동거 외조부모 ☐ ⑤ 동거 친인척 ☐ ⑥ 비동거 친인척
☐ ⑦ 동거 비혈연 대리양육자(민간) ☐ ⑧ 비동거 비혈연 대리양육자(민간) ☐ ⑨ 아이돌보미
☐ ⑩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2. (문 21번에서 ⑦번, ⑧번, ⑨번에 응답한 경우) 현재 자녀를 돌봐주는 비혈연 대리양육자를 구하는 데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 ☐ ① 전혀 어렵지 않음 ☐ ② 별로 어렵지 않음
☐ ③ 어려운 편임 ☒ 22-1번으로 ☐ ④ 매우 어려움 ☒ 22-1번으로

22-1. (문 22번에서 ③와 ④번을 응답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 해당되는 항목에만 응답합니다.

구분	애로사항
동거 비혈연 대리양육자(민간)	
비동거 비혈연 대리양육자(민간)	
아이돌보미	

23. (문 21번에서 ⑦번, ⑧번, ⑨번에 응답한 경우) 귀하는 현재 이용 중인 개인양육서비스에 대해 각 항목별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⑥ 해당 사항 없음
1) 물리적 환경						
2) 활동(돌봄서비스)내용						
3) 돌봄인력의 전문성						
4) 부모와의 소통						
5) 이용 비용						
6) 이용 시간						
7) 긴급보육 요청 시 대응 정도						
8) 이용 일수						

- 23-1. (문 23번에서 ①과 ②에 응답한 경우) 각 항목별로 불만족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해당 항목에만 응답합니다.

구분	불만족 내용
1) 물리적 환경	
2) 활동(돌봄서비스)내용	
3) 돌봄인력의 전문성	
4) 부모와의 소통	
5) 이용 비용	
6) 이용 시간	
7) 긴급보육 요청 시 대응 정도	
8) 이용 일수	

24. 귀하께서 **현재 이용 중인**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총 이용 기간은 얼마입니까?

이용 시작 시기	총 이용 기간
자녀가 () 개월	() 년 () 개월

25. 이 자녀(막내자녀)가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처음으로** 이용한 시기는 언제 입니까?

자녀가 ()개월 때부터 이용하기 시작함

26. 귀하께서 조부모/친인척이나 비혈연 대리양육자에게 자녀를 맡기는 1) 시간(평일 하루)과 2) 이용 비용은 각각 어떠합니까?

1) 이용 시간	평일 이용 시간	시작 시각	종료 시각
	총 () 시간	() 시 () 분	() 시 () 분
2) 이용 비용	☐ ① 정기적으로 지불 ☐ ② 비정기적으로 지불 ☐ ③ 현물로 지불 ☐ ④ 숙식만 제공 ☐ ⑤ 지불 안 함 ☐ ⑥ 기타()		
	월 평균 ()원 ※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산하여 평균을 내주십시오. ※ 지난 3개월 평균 기준		

27. 자녀를 돌봐 주는 사람(조부모/친인척이나 비혈연 대리양육자)이 갑자기 못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 ☐ ① 자주 있음 ➡ 27-1번으로 ☐ ② 가끔 있음 ➡ 27-1번으로
☐ ③ 거의 없음

- 27-1. (문 27에서 ①과 ②에 응답한 경우) 귀하는 자녀를 돌보아 주는 사람이 갑자기 못 오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 ☐ ① 부모가 직접 돌봄 ☐ ② 자녀의 형제·자매에게 부탁
☐ ③ 조부모/친인척에게 부탁 ☐ ④ 친구/이웃에게 부탁
☐ ⑤ 어린이집 일시보육 이용 ☐ ⑥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서비스 기관 이용
☐ ⑦ 아이돌보미 이용(파견 요청) ☐ ⑧ 기타(구체적으로:)

28. 귀하의 지역내 육아종합지원센터(구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프라자)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귀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2) (문 28-1번에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귀하는 다음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 3)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용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구분	28-1. 인지 여부	28-2. 이용 경험/빈도	28-3. 이용 만족도
		① 알고 있음 ☞ 28-2번으로 ② 모름	①매일주 5일 이상 ②일주일에 2-3회 이상 ③일주일에 1회 ④격주에 1회 ⑤한달에 1회 ⑥분기별 1회 ⑦6개월에 1회 ⑧연간 1회 ☞ 28-3번으로 ⑨이용 경험 없음 ☞ 29번으로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⑥ 해당사항 없음
1	(놀이)체험프로그램			
2	부모교육			
3	부모상담			
4	육아정보제공			
5	아동발달/진단검사			
6	품앗이 육아(공동육아나눔터)			
7	일시보육			
8	장남감 대여			
9	어린이 도서 대여			

(문 28-3번에서 ①과 ②번에 응답한 경우) 각 서비스별로 불만족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28-3-1. 무엇입니까?

※ 해당 항목에만 응답합니다.

	구분	불만족 내용
1	(놀이)체험프로그램	
2	부모교육	
3	부모상담	
4	육아정보제공	
5	아동발달/진단검사	
6	품앗이 육아(공동육아나눔터)	
7	일시보육	
8	장남감 대여	
9	어린이 도서 대여	

29. 육아종합지원센터(구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프라자) 이외에, 이 자녀(막내 자녀)가 지역내
에서 양육지원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29-1번으로

☐ ② 아니오

29-1. (문 29번에 있다고 응답한 경우) 1) 해당 기관은 어디입니까? 2)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셨습니다?

	29-1-1. 기관명 (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9-1-2. 서비스 내용 (예시: 부모교육, 부모상담, 육아정보제공 등)
1		
2		
3		

30. 귀하의 지역사회내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30-1. 각 프로그램별로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30-2~4번의 경우 각 프로그램별로 2개 이상의 기관을 이용한 경우 주로 이용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30-2. (문 30-1에서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이용 빈도는 어떠합니까?

30-3. (문 30-1에서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이용 기관은 어디입니까?

30-4. (문 30-1에서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이용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구분	30-1. 이용 경험	30-2. 이용 빈도	30-3. 이용 기관	30-4. 이용 만족도
		①있음 ☞ 302번으로 ②없음	①매일주 5일 이상 ②일주일에 2~3회 이상 ③일주일에 1회 ④격주에 1회 ⑤한달에 1회 ⑥분기별 1회 ⑦6개월에 1회 ⑧연간 1회 ☞ 303번으로	①육아종합지원센터, (기존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프라자) ②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센터 ③사회복지관 ④주민자치센터 ⑤어린이집/유치원 ⑥기타(구체적으로) ☞ 304번으로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⑥해당사항 없음
1	(가족)체험프로그램				
2	부모교육				
3	부모상담				
4	육아정보제공				
5	아동발달 검사				
6	품앗이 육아 (공동육아나눔터)				
7	일시보육				
8	장남감 대여				
9	(어린이) 도서 대여				
10	아이돌봄서비스				

31. 귀하는 이 자녀(막내자녀)의 양육을 위해 다음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구분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⑤ 해당 서비스 모름
1	(가족)체험프로그램					
2	부모교육					
3	부모상담					
4	육아정보제공					
5	아동발달 검사					
6	품앗이 육아 (공동육아나눔터)					
7	일시보육					
8	장남감 대여					
9	(어린이) 도서 대여					
10	아이돌봄서비스					

32. 문 31번에 제시된 육아지원서비스 이외에 귀하께서 막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육아지원서비스를 기입해 주십시오.

	희망 서비스 내용
1	
2	
3	

※ 문33에서 문34-1번은 임금근로자만 응답합니다.

III. 직장내 가족친화제도 이용 실태 (※막내 자녀 기준)

33. 다음은 직장의 출산 및 자녀 양육지원 제도의 시행 여부,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33-1. 귀하의 직장에서는 다음 각 제도들을 시행 중입니까?

33-2. (문 33-1번에서 시행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 귀하는 다음 각 제도들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33-3. (문 33-1번에서 시행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 실제 사용 가능성은 얼마나 되십니까?

33-4. (문 33-3에서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이용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구분	33-1. 제도 시행 여부	33-2. 실제 사용 가능성	33-3. 이용 여부	33-4. 이용 만족도
		① 시행 중 ☒ 33-2번으로 ② 시행 안함 ③ 모름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 33-3번으로	① 있음 ☒ 33-4번으로 ② 없음 ③ 해당 사항 없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임신·출산기 지원>					
1	출산전후휴가 제도				
2	유산·사산휴가 제도				
3	배우자(남성)출산휴가제도				
4	수유실 설치				
5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유급 수유시간)				
<영유아기 지원>					
6	여성 육아휴직제도				
7	남성 육아휴직제도				
8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9	시차출근제(탄력근무제)				
10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34-1. (문 33번에서 여성 6.육아휴직제도/7.남성 육아휴직제도/8.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 1) 제도 이용 기간(휴직 기간/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얼마 동안이었습니까?
- 2) 각 제도별 사용 기간 중 자녀는 몇 살이었습니까?
- 3) 해당 기간은 원하는 만큼 사용한 것입니까?
- 4) (문 34-1-3에서 ②아니오 라고 응답한 경우)희망하는 기간은 얼마 동안입니까?

구분	34-1-1. 사용 기간 (개월)	34-1-2 사용 기간 중 자녀 연령/개월	34-1-3. 사용 기간 충분성	34-1-4. 희망 사용 기간(개월)
			① 예 ② 아니오 ☞ 34-1-4번으로	
여성휴직제도		() 개월~ () 개월		
남성휴직제도		() 개월~ () 개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 개월~ () 개월		

IV. 영유아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 막내 자녀 기준)

35. 귀하는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직장)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2	(직장)일로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					
3	자녀를 돌보느라 일할 시간이 부족하다					
4	일하는 동안 아이를 맡길 데가 마땅치 않다					
5	급할 때(야간근무 등)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					
6	아이를 맡기는 데 드는 비용(보육료·교육비)이 부담스럽다					
7	아이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총 비용)이 부담스럽다.					

36. 귀하는 다음 항목들에 대해 겪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① 전혀 힘들지 않다	② 힘들지 않다	③ 보통	④ 힘들다	⑤ 매우 힘들다
1	이른 출근 시각(근로 시작)으로 아침시간 에 자녀를 맡기는 어려움					
2	늦은 퇴근 시각(근로 종료)으로 저녁시간 에 자녀를 맡기는 어려움					
3	장시간 근로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움					

37. 귀하는 이 자녀(막내자녀)를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데 다음 항목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필요 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1	자녀를 직접 돌보기 위해 휴직할 수 있다				
2	긴급 시 등에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일하는 동안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기관(보 육시설)을 제공한다				
4	가정에서 대리양육자가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38. 귀하와 배우자는 각각 자녀를 돌보는 데 하루 몇 시간을 할애하십니까?

※ 포함되는 시간: 밥, 간식 먹이기, 목욕시키기, 놀이 시간(실내외) 등 자녀 양육 관련 일과 시간
포함되지 않는 시간: 가사노동시간(청소 등), 자녀가 교육·보육기관(어린이집 등)에 머무는 시간
※ 최근 한달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본인	주중(월~금요일)	하루 평균 () 시간
	주말(토/일요일)	하루 평균 () 시간
배우자	주중(월~금요일)	하루 평균 () 시간
	주말(토/일요일)	하루 평균 () 시간

39. 다음은 귀하께서 자녀 양육 시 겪을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1-1. 부모님이 야근 등의 직장일로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는 주로 누가(어디서) 자녀를 돌봐 주니까? ☐ ① 조부모 및 친인척 ☐ ② 비혈연 대리양육자 ☐ ③ 친구 및 이웃 ☐ ④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 ☐ ⑤ 기타()	
1-1-1. 부모님이 야근 등의 직장일로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는 주로 누가(어디서) 자녀를 돌보기를 희망하십니까? ☐ ① 조부모 및 친인척 ☐ ② 비혈연 대리양육자 ☐ ③ 친구 및 이웃 ☐ ④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 ☐ ⑤ 기타()	
1-2. 자녀가 아플 때는 주로 누가(어디서) 자녀를 돌보아주니까? ☐ ① 부모가 직접 돌봄(휴가, 조퇴, 재택근무 등) ☐ ② 조부모 및 친인척 ☐ ③ 비혈연 대리양육자 ☐ ④ 친구 및 이웃 ☐ ⑤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 ☐ ⑥ 기타()	
1-2-1. 자녀가 아플 때는 주로 누가(어디서) 자녀를 돌보기를 희망하십니까? ☐ ① 부모가 직접 돌봄(휴가, 조퇴, 재택근무 등) ☐ ② 조부모 및 친인척 ☐ ③ 비혈연 대리양육자 ☐ ④ 친구 및 이웃 ☐ ⑤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 ☐ ⑥ 기타()	

40. 귀하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40-1, 40-2번으로** ② 없다

40-1.(문 38번에서 있다고 응답한 경우) 직장을 그만둔 때는 언제였습니까? ※ 여러 번 경험한 경우는 최초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임신했을 때 ☐ ② 출산·출산휴가 후 바로 ☐ ③ 만 1세 이전 ☐ ④ 만 1~2세 때 ☐ ⑤ 만 3세~취학 전까지 ☐ ⑥ 기타()	
40-2. (문 38번에서 있다고 응답한 경우) 직장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여러 번 경험한 경우는 최초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근로소득 보다 자녀를 맡기는 비용이 더 들어서 ☐ ② 직장에서 퇴사를 강요해서 ☐ ③ 일 때문에 육아에 소홀할까 봐 ☐ ④ 직장이 맘에 들지 않아서 ☐ ⑤ 자녀를 믿고 맡길 곳(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 ⑥ 건강이 좋지 않아서 ☐ ⑦ 기타(구체적으로:)	

41. 귀하께서 이 자녀(막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V. 양육지원 요구

42.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우선적으로 입소(입학) 순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귀하는 다음의 가구 특성에 해당되십니까?
 - 2) 귀하는 유치원 입학 또는 어린이집 입소 시에 다음 기준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우선적으로 입소 또는 입학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기준에 따라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42-1. 본인 해당 여부	42-2. 우선 입소/입학 중요도				
		① 해당됨 ② 해당안됨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함	⑤ 매우 중요함
1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최저생계비 이하)						
2	차상위계층 자녀 (최저생계비 120% 이하)						
3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						
4	장애부모(장애 1급, 2급)의 자녀						
5	다문화가족 영유아						
6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7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8	영유아가 2자녀인 가구						

귀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종일제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1, 2순위를 선택하여 번호를 표기해 주십시오.

43. ※ 종일제는 유치원의 경우 교육과정(9:00~14:00)+방과후 과정(14:00~최소 17:00)
/ 어린이집의 경우 7:30~19:30에 해당합니다.

1순위 ()	2순위 ()
---------	---------

- ①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자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근거)
- ③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보호 대상)
- ④ 장애부모(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의 자녀
- ⑤ 다문화가족 영유아(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1 근거)
- ⑥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맞벌이 가정 자녀
- ⑦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의 자녀
- ⑧ 영유아가 2자녀 이상인 가족
- ⑨ 기타(구체적으로:)

44. 귀하는 맞벌이 가구가 (직장)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1, 2순위를 선택하여 번호를 표기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② 육아휴직 활성화
- ③ 시차출근제(탄력근무제) 활성화
- ④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 ⑤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강화
- ⑥ 종일제 보육(7:30~19:30)·교육 운영 시간 준수
- ⑦ 장시간 보육(시간연장, 야간보육 등) 기관 확충
- ⑧ 기관(유치원/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
- ⑨ 가정내 보육(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 ⑩ 민간 베이비시터 지원 강화(비용 지원, 인력 관리 등)
- ⑪ 배우자(남편)와의 평등한 육아 분담
- ⑫ 양육비(현금) 지원
- ⑬ 기타(구체적으로:

45. 다음은 우리나라의 양육 지원 정책입니다. 각각의 항목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요.

	구분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1	출산전후 휴가제도					
2	유산·사산휴가 제도					

3	배우자(남성) 출산휴가제도					
4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7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유급 수유시간)					
8	육아휴직제도					
9	가족돌봄휴가제도					
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1	시차출근제(탄력근무제)					
12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					
13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14	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					
15	(유치원) 방과후 돌봄(종일제) 지원					
16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17	시간제 보육서비스					
18	가정양육수당 지원					
19	영아 정기돌봄(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20	시간제돌봄(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 정책 제도 설명>

	정책·제도명	세부 내용
1	출산전·후 휴가제도	임신 여성 근로자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음
2	유산·사산휴가 제도	자연유산인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기간 부여함
3	배우자(남성) 출산휴가제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5일까지 휴가를 청구할 수 있음. 3일은 유급
4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기간 동안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 50만원 상당의 전자바우처-고운맘카드-제공
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자에 한하여 인공수정 시술비 1회 지원, 체외 수정 시술비 4회 지원
6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가정으로 산후관리사 파견
7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유급 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근무 중 수유시간을 부여함

8	육아휴직제도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6세 이하-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시기와 기간을 정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을 수 있음)
9	가족돌봄휴가제도	가족(자녀, 노인 등)이 질병, 사고 등으로 돌 봐야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
10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대신 최대 1년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1	시차출근제(탄력근무제)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12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	가족친화제도(자녀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13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하는 사업주에게 설치비용을 무상 및 용자 지원함. 직장 어린이집 설치형태에 따라 지원종류 및 내역이 달라짐)
14	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	어린이집에서 수기로 관리하던 입소대기자 명부를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공동 관리하고 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입소 순번을 공개하는 제도
15	(유치원) 방과후 돌봄(종일제) 지원	유치원 이용아 중 방과후과정 이용시 지원. 공립 5만원, 사립 7만원까지 지원)
16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오후 7시반 이후(시간연장,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등)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
17	시간제 보육서비스	종일제 어린이집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받고 이용시간 만큼 보육료를 내는 제도
18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5세 이하 전 계층에게 월 연령별로 100,000~200,000원 지급)
19	영아 정기돌봄(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만 3개월 이상 영아를 대상으로 1일 6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파견되는 돌보미(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제도
20	시간제 돌봄(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만 3개월부터 1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가정으로 파견되는 돌보미(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제도

46. 귀하는 현재 추가 출산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46-1번으로**

46-1. (문 46번에서 추가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추가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① 직장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힘들어서 ☐ ② 양육 비용이 많이 들어서

☐ ③ 건강상의 이유로

☐ ④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 ⑤ 기타(구체적으로:)

47. 귀하는 이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변경을 원하십니까?

☐ ① 예

☞ 47-1번으로

☐ ② 아니오

47-1. (문 47번에서 근로시간을 변경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하기를 희망하십니까? 희망하는 근로 유형과 근로시간을 응답해 주십시오.(한 개만 선택)

근로 유형	근로시간
☐ ① 전일제 근무로 변경	()시부터 ()시 까지
☐ ② 파트타임 근무로 변경	()시부터 ()시 까지
☐ ③ 현재의 전일제를 유지하되 근로시간만 변경	()시부터 ()시 까지
☐ ④ 현재의 파트타임을 유지하되 근로시간만 변경	()시부터 ()시 까지
☐ ⑤ 기타: 구체적으로	()시부터 ()시 까지

48. 귀하는 부모가 모두 일을 할 경우, 가장 적합한 양육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 연령별로 아래 <보기>에서 1, 2순위를 선택하여 기입해주시시오.
 ※ 2순위가 없는 경우는 2순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 보기 >		
① 부모가 직접 돌봄(육아휴직)	② 가정에서 조부모/친인척이 돌봄	
③ 가정에서 비혈연인력(아이돌보미 등)이 돌봄	④ 어린이집 이용	
⑤ 유치원 이용	⑥ 기타(구체적으로:)	
연령(해당 개월)	1순위	2순위
만 0세(0~12개월 미만)		
만 1세(12~24개월 미만)		
만 2세(24~36개월 미만)		
만 3세(36~48개월 미만)		
만 4세(48~60개월 미만)		
만 5세(60개월~취학전)		

49. 귀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서비스의 가장 **일차적인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기관별로 응답해 주십시오.(1개만 응답)

구분	일차적인 목표
어린이집	
유치원	

- ☐ ① 취약계층(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 아동 보호
☐ ② 일하는 부모의 자녀 양육지원
☐ ③ 아동의 건전한 교육·육성
☐ ④ 기타(구체적으로:)

※ 응답자 및 배우자의 일반적 특성

※ 귀하와 배우자(남편)의 연령 등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인	남편
1) 연령(만)	()세	()세
2) 학력	☐ ① 고등학교 졸업 ☐ ② 전문대학(2,3년제) 졸업 ☐ ③ 4년제 대학 졸업 ☐ ④ 대학원 졸업	☐ ① 고등학교 졸업 ☐ ② 전문대학(2,3년제) 졸업 ☐ ③ 4년제 대학 졸업 ☐ ④ 대학원 졸업

3) 거주 지역	()시/도 ()구/시 ()군	
3) 월 평균 소득(세전)	본인소득	()만원
	가구소득	()만원

※ 귀하와 배우자(남편)의 작업장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작업장 규모	본인		☐ ① 5인 미만 ☐ ② 5 ~ 9 인 ☐ ③ 10 ~ 29인 ☐ ④ 30 ~ 99인 ☐ ⑤ 100 ~ 299인 ☐ ⑥ 300 ~ 499인 ☐ ⑦ 500인 이상
	배우자		
2) 업종	본인		① 광공업(제조업) ② 건설업 ③ 도소매·숙박업 ④ 전기·운수·통신·금융 ⑤ 사업·개인·공공서비스 ⑥ 기타 등
	배우자		
3)가족친화인증 기업 여부	본인		☐ ① 인증 기업임 ☐ ② 인증 기업 아님 ☐ ③ 모름 ☐ ④ 해당사항 없음
	배우자		

부록 4. 맞벌이 가구 보육·교육서비스 운영 실태 조사 질문지: 기관 대상

맞벌이 가구 대상 보육교육서비스 운영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 실태를 파악하고 일·가정 양립 정책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귀 기관의 보육·교육서비스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조사표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유해미 부연구위원(02-398-7708, nowyoo@kicce.re.kr)

배운진 부연구위원(02-398-7745, byj@kicce.re.kr)

김문정 연구원(02-398-7719, moon@kicce.re.kr)

육 아 정 책 연 구 소

※ 일반 사항

1. 귀 기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느 기관에 속합니까?

☐ ① 어린이집 ☒ 1-1)번으로 ☐ ② 유치원 ☒ 1-2)번으로

1-1) 다음은 귀 어린이집의 운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설립연도	() 년		
2. 소재지	()시/도 ()시/군/구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세종 ☐ ⑨ 경기 ☐ ⑩ 강원 ☐ ⑪ 충북 ☐ ⑫ 충남 ☐ ⑬ 전북 ☐ ⑭ 전남 ☐ ⑮ 경북 ☐ ⑯ 경남 ☐ ⑰ 제주		
	☐ ① 국공립 ☒ 3-1)번으로 ☐ ② 사회복지법인 ☐ ③ 법인·단체등 ☐ ④ 직장 ☐ ⑤ 가정 ☐ ⑥ 부모협동 ☐ ⑦ 민간		
3-1)국공립 위탁방식	☐ ① 직영 ☐ ② 법인위탁 ☐ ③ 개인위탁 ☐ ④ 단체위탁 ☐ ⑤ 기타		
4. 특수보육 지정 여부 및 이용아동수 (해당사항 모두 체크)	☐ ① 영아전담 ()명 ☐ ② 시간연장형 ()명 ☐ ③ 시간제 일시보육 ()명 ☐ ④ 24시간 보육 ()명 ☐ ⑤ 방과후통합 ()명 ☐ ⑥ 방과후전담 ()명 ☐ ⑦ 장애아통합 ()명 ☐ ⑧ 장애아전담 ()명		
5. 정원/현원	정원 () 명		현원 () 명
6. 반별 아동수/ (해당사항 모두 체크)	구분		전체 아동수(명)
	☐ ① 0세반		
	☐ ② 만 1세반		
	☐ ③ 만 2세반		
	☐ ④ 만 3세반		
	☐ ⑤ 만 4세반		
	☐ ⑥ 만 5세반		
	☐ ⑦ 혼합반 1(세)		
	☐ ⑧ 혼합반 2(세)		
	☐ ⑨ 총 합계		
7. 교직원 수 (해당사항 모두 체크)	☐ ① 원장 ()명 ☐ ② 정규교사 ()명 ☐ ③ 시간연장 보육교사 ()명 ☐ ④ 새벽근무 보육교사 ()명 ☐ ⑤ 방과후 보육교사 ()명 ☐ ⑥ 누리보조교사 ()명 ☐ ⑤ 기타 ()명		
8. 휴원일수(연간)	연간 총 ()일 ※ 2013년 기준(일요일, 공휴일 제외)		
9. 평가인증 여부	☐ ① 평가인증 받음 ☐ ② 평가인증 받지 않음		
10. 방학 운영 ※2013년 기준	☐ ① 없음 ☐ ② 있음 → 연간 총 () 회 / 연간 총 기간 ()일		

1-2) 다음은 귀 유치원의 운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설립연도	() 년		
2. 소재지	()시/도 ()시/군/구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세종 ☐ ⑨ 경기 ☐ ⑩ 강원 ☐ ⑪ 충북 ☐ ⑫ 충남 ☐ ⑬ 전북 ☐ ⑭ 전남 ☐ ⑮ 경북 ☐ ⑯ 경남 ☐ ⑰ 제주		
3. 설립 유형	☐ ① 국립 ☐ ② 공립단설 ☐ ③ 공립병설 ☐ ④ 사립법인 ☐ ⑤ 사립개인		
4. 방과후 과정 (기존 중일반) 운영 현황	☐ ① 운영함 ➞ 4-1)번으로 4-1) 이용 아동 ()명 ☐ ② 운영 안함		
5. 엄마품 온종일 돌봄 운영 현황	☐ ① 운영함 ➞ 5-1)번으로 5-1) 이용 아동 ()명 ☐ ② 운영 안함		
6. 정원/현원	정원 () 명 현원 () 명		
7. 반별 아동수 (해당사항 모두 체크)	구분 전체 아동수(명) 맞벌이 가구 아동수(명)		
	☐ ① 만 3세반		
	☐ ② 만 4세반		
	☐ ③ 만 5세반		
	☐ ④ 혼합반 1(세)		
	☐ ⑤ 혼합반 2(세)		
	☐ ⑥ 총 합계		
8. 교원 수 (해당사항 모두 체크)	구분 인원수(명)		
	☐ ① 원장		
	☐ ② 원감		
	☐ ③ 정규교사(기간제 담임 포함)		
	☐ ④ 특수교사		
	☐ ⑤ 방과후 과정(중일제) 교사(기간제 포함/특성화 강사 제외)		
	☐ ⑥ 기타(구체적으로:)		
9. 휴원일수(연간)	연간 총 ()일 ※ 2013년 기준 / 일요일, 공휴일 제외		
10. 방학 운영 ※2013년 기준	교육과정 ☐ ① 없음 ☐ ② 있음 → 연간 총 () 회 / 연간 총 기간 ()일		
	방과후 과정 ☐ ① 없음 ☐ ② 있음 → 연간 총 () 회 / 연간 총 기간 ()일		
	엄마품 온종일 돌봄 ☐ ① 없음 ☐ ② 있음 → 연간 총 () 회 / 연간 총 기간 ()일		

※ 교육과정은 기존 기본과정/방과후 과정은 기존 종일제임 → 이하 일괄 적용

1. 보육·교육서비스의 목표와 우선제공 대상

1. 귀하는 귀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서비스의 일차적인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 ☐ ① 취약계층 아동 보호
- ☐ ② 일하는 부모의 자녀 양육지원
- ☐ ③ 아동의 건전한 교육·육성
- ☐ ④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 귀하는 귀 기관의 입소 또는 입학 시에 다음 기준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우선적으로 입소 또는 입학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기준에 따라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중요함	⑤ 매우 중요함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부모(장애 1급, 2급)의 자녀					
다문화가족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귀하는 종일제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3. 우선순위에 따라 1, 2순위를 선택하여 번호를 표기해 주십시오.

※ 종일제는 유치원의 경우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 어린이집의 경우 7:30~19:30 운영에 해당

1순위 ()	2순위 ()
---------	---------

- ①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자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근거)
- ③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보호 대상)
- ④ 장애부모(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의 자녀
- ⑤ 다문화가족 영유아(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1 근거)
- ⑥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⑦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⑧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⑨ 기타(구체적으로:

4. 귀하는 부모가 모두 일을 할 경우, 가장 적합한 양육 방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 연령별로 아래 <보기>에서 1, 2순위를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보기 >

- ① 부모가 직접 돌봄(육아휴직)
- ② 가정에서 조부모/친인척이 돌봄
- ③ 가정에서 비혈연인력(아이돌보미 등)이 돌봄
- ④ 어린이집 이용
- ⑤ 유치원 이용
- ⑥ 기타(구체적으로:)

구분	1순위	2순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II. 맞벌이 가구 보육·교육지원 현황

5. 귀 기관에는 현재 입소/입학 대기 중인 아동이 있습니까?
 ※ 국/공립유치원인 경우 교육과정(기존 기본과정) 또는 방과후 과정(기존 종일제)중 하나 이상에서 대기 아동이 있는 경우는 “있다”에 응답합니다.

☐ ① 있다 ➡ 5-1번으로

☐ ② 없다 ➡ 6번으로

➡ 국/공립유치원 중 교육과정(기존 기본과정)에 대기 아동이 있는 경우 5-1번으로

➡ 국/공립유치원 중 방과후 과정(기존 종일제)에 대기 아동이 있는 경우 5-2번으로

(문 5번에서 입소/입학 대기 아동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대기 중인 아동은 몇 명입니까?

- 5-1. 전체 대기 아동수와 맞벌이 가구 대기 아동수를 아동연령에 따라 각각 기입해 주십시오.
 ※ 국/공립유치원인 경우는 교육과정(기존 기본과정)의 대기 현황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 대기 중인 아동수가 많아 연령별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전체 대기 아동수와 맞벌이 가구 아동수의 총 합계만 표기합니다.

구분	전체 대기 아동수(명)	맞벌이 가구 대기 아동수(명)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총 합계(만 0~5세)		

(국/공립유치원인 경우)(문 5번에서 방과후 과정(기존 종일제)에 입학 대기 아동이 있다고

- 5-2. 응답한 경우) 대기 중인 아동은 몇 명입니까?
 전체 대기 아동수와 맞벌이 가구 대기 아동수를 아동연령에 따라 각각 기입해 주십시오.
 ※ 대기 중인 아동수가 많아 연령별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전체 대기 아동수와 맞벌이 가구 아동수의 총 합계만 표기합니다.

구분	전체 대기 아동수(명)	맞벌이 가구 대기 아동수(명)
만 3세		
만 4세		
만 5세		
총 합계(만 3~5세)		

6. 귀 기관 이용 아동의 등원 시각과 하원 시각을 기준으로 각 시간대별로 해당 등원/하원 아동은 몇 명입니까? 각 해당 시간대별로 전체 아동수와 맞벌이 가구의 아동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전체 아동수(명)	맞벌이 가구 아동수(명)
등원 시각	오전 7시~9시 이전		
	오전 9시~10시 이전		
	오전 10시 이후		
하원 시각	오후 2시~3시 이전		
	오후 3시~5시 이전		
	오후 5시~6시 이전		
	오후 6시~7시 이전		
	오후 7시~8시 이전		
	오후 8시~9시 이전		
	오후 9시 이후		

귀 기관의 평일 운영 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7. 1) 평일 하루 기준으로 총 운영 시간은 얼마입니까?
2) 평일 하루 기준으로 기관 운영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총 운영 시간/1일 기준	시작 시각	종료 시각
총() 시간	() 시 () 분	() 시 () 분

8. 귀 기관은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 ☐ ① 운영 중임 ☒ 8-1, 8-2, 8-3번으로 ☐ ② 격주로 운영함 ☒ 8-1, 8-2, 8-3번으로
☐ ③ 운영하지 않음 ☒ 9번으로

(문 8번에서 토요일에 운영한다고 응답한 경우) 토요일에 기관을 이용하는 전체 아동수와

- 8-1. 맞벌이 가구 아동수는 각각 몇 명입니까?

※ 2014년 6월 평균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토요일 이용 전체 아동수(명)	맞벌이 가구 아동수(명)

8-2. (문 8번에서 토요일에 운영한다고 응답한 경우) 토요일 운영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시작 시각	() 시 ()분 부터
종료 시각	() 시 ()분 까지

8-3. (문 8번에서 토요일에 운영한다고 응답한 경우) 토요일 운영 시에 기관에 배치된 교사 수는 총 몇 명이고, 해당 교사는 각각 누구입니까?

교사	구분	근무 교사
		① 당직교사(담임교사) ② 비담임교사(보조교사) ③ 원장/원감 ④ 기타: 구체적으로
총 () 명	교사 1	
	교사 2	
	교사 3	
	교사 4	

9. 맞벌이 부모들이 퇴근 시각보다 빨리 자녀를 하원시키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1순위 ()	2순위 ()
---------	---------

- ① 남아있는 아이가 얼마 없어서 ② 집에 돌볼 사람(조부모 등)이 있어서
- ③ 타 사설기관(학원 등)에 보내려고 ④ 부모들이 장시간 기관 이용을 원치 않아서
- ⑤ 원장 또는 교사의 눈치가 보여서 ⑥ 아이가 힘들어 해서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⑧ 퇴근 시각보다 빨리 하원시키지 않음
- ⑨ 모르겠음

10. 귀 기관의 등원과 하원 시에 아동을 데리고 오는 사람(또는 기관)으로는 누가 가장 많습니까?
해당 되는 번호를 선택하여 각각 기입해 주십시오.

등원 시 ()	하원 시 ()
----------	----------

〈보기〉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조부모 ④ 친인척
⑤ 비혈연 대리양육자(베이비시터 등) ⑥ 타 기관(사설 학원 등)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1. 귀 기관의 **부모가 참여하는** 기구나 프로그램의 운영 횟수 및 운영 시간은 언제 입니까?

구분	11-1. 연간 운영 횟수 ※ 2013년 기준	11-2. 운영 시간
		① 평일 오전 ② 평일 오후 ③ 평일 야간(18:30분 이후) ④ 토요일 ⑤ 기타
1)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위원회		
2) 강연회, 특강		
3) 오리엔테이션, 교육설명회(입학전)		
3) 수업참관/참여수업		
4) 부모상담(담임교사 상담 등)		
5) 부모간담회		
6) 기타(구체적으로:)		

12. 귀 기관에서는 **맞벌이 가구만을 대상으로** 특별히 마련한 프로그램이나 운영상 고려(배려)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구분	12-1. 운영/고려(배려)사항 여부	12-2. 세부 내용
	① 있음 ☞ 12-2번으로 ② 없음	
별도 프로그램		
운영상 고려/배려사항		

13. 귀하는 귀 기관에서 맞벌이 가구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제공해야 할 프로그램이나 운영상 고려(배려)할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구분	13-1. 필요성 여부	13-2. 세부 내용
	① 필요함 ☞ 13-2번으로 ② 필요 없음	
별도 프로그램		
운영상 고려/배려사항		

14. 귀하는 귀 기관을 이용 중인 **맞벌이 가구**들이 다음 항목에서 얼마나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란에 표기해 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 시설 및 환경					
2) 교육·보육내용(프로그램)					
3) 교사의 전문성					
4) 부모참여(프로그램)					
5) 급·간식					
6) 이용비용(보육료, 교육비)					
7) 등원 시각					
8) 하원 시각					
9) 긴급보육 요청 시 대응					
10) 운영 일수					

- 14-1. (14번에서 ①과 ②에 응답한 경우) 각 항목별로 맞벌이 가구들이 불만족한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에만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불만족 내용
1) 시설 및 환경	
2) 교육·보육내용(프로그램)	
3) 교사의 전문성	
4) 부모참여	
5) 급·간식	
6) 이용비용(보육료, 교육비)	
7) 등원 시각	
8) 하원 시각	
9) 긴급보육 요청 시 대응 정도	
10) 운영 일수	

15. 귀 기관에서는 맞벌이 가구 자녀의 보육·교육 시에 다음 항목들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구분	① 전혀 어렵지 않음	② 별로 어렵지 않음	③ 다소 어려움	④ 매우 어려움
1) 이른 운영 시작 시각				
2) 늦은 운영 종료 시각				
3) 아이가 아플 경우				
4) 긴급보육 발생 시(야간근무 등)				
5) 연중 운영(방학 없음 등)				
6) 토요일 운영				
7) 가정과의 연계				
8) 장시간 운영에 따른 교사 인력 배치				
8) 야간근무 시 교사의 안전보장				
10) 장시간 운영에 따른 급·간식 인력(조리사 등) 배치				

16. 귀 기관은 맞벌이 가구 보육지원을 위해 다음 기관들과 연계한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16-1. 연계 경험 여부	16-2. 연계횟수/연간	16-3. 주요 연계 내용
	① 있음 ☞ 16-2, 16-3번으로 ② 없음		
1) 육아종합지원센터(보육정보센터)			
2) 유아교육진흥원			
3)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지원센터			
4) 사회복지관			
5) 주민자치센터			
6) 보건소			
7) 인근 병원			
8) 도서관			
9) 경찰서			
10) 기타(구체적으로:)			

17. 귀 기관에서 맞벌이 가구 자녀의 보육·교육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선택)

- ☐ ① 부모와의 소통
☐ ② 부모의 일·가정 양립 애로사항
☐ ③ 아동의 건강 상태
☐ ④ 아동과의 애착 형성
☐ ⑤ 기타(구체적으로:)
☐ ⑥ 특별한 고려사항 없음

귀 기관에서 운영 중인 운영위원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18. 1) 귀 기관에서는 유치원운영위원회(유치원)/어린이집운영위원회(어린이집)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2) (문 18-1번에서 운영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 전체 위원(위원장 포함)수는 몇 명입니까?
 3) (문 18-1번에서 운영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 전체 위원 중 맞벌이 가구는 몇 명입니까?

구분	18-1. 운영 여부	18-2. 전체 위원수(명)	18-3. 위원 중 맞벌이 가구수(명)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유치원운영위원회	☐ ① 운영 중임 ☞ 19-2, 19-3번으로 ☐ ② 운영 안함		

19. 맞벌이 가구 자녀의 입소/입학 시에 맞벌이 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직접 확인하십니까?

- ☐ ① 확인함 **☞ 19-1번으로** ☐ ② 확인 안함

- 19-1. (문 19번에서 증빙서류를 확인한다고 응답한 경우) 증빙서류를 얼마나 자주 확인하십니까?

- ☐ ① 입소 시에 한차례
☐ ② 1개월 단위로
☐ ③ 2~3개월 단위로
☐ ④ 6개월 단위로
☐ ⑤ 1년 단위로
☐ ⑥ 기타(구체적으로:)

II. 맞벌이 가구 보육지원을 위한 개선 및 요구 사항

20. 귀하는 귀 기관이 맞벌이 가구의 보육지원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1. 귀하는 귀 기관이 맞벌이 가구의 보육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국가가 기관에 추가로 지원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 22~27번은 어린이집 원장님만 응답합니다.

다음은 특수보육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귀 기관에서는 현재 다음의 특수보육을 운영 중입니까?
 2) 귀하는 다음의 특수보육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귀 기관은 다음의 특수보육을 지속적으로/향후 운영할 의향이 있습니까?

※ 시간연장: 19:30~24:00

※ 야간보육: 시간연장+새벽보육(24:00~익일 07:30)

※ 24시간 보육: 07:30~익일 07:30

구분	22-1. 운영 여부	22-2. 필요성 여부	22-3. 지속/향후 운영 의향
	① 운영 중임 ☐ 22-1-1)번으로 ② 운영한 적 있음 ☐ 22-1-2)번으로 ③ 운영 안함 ☐ 22-1-3)번으로	① 필요함 ② 필요하지 않음	① 있음 ② 없음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 22-1-1. (문 22-1번에서 시간연장보육을 운영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 시간연장보육 시 교사(인력) 배치와 해당 교사(인력)의 자격은 어떠합니까? (소지 자격 모두 기입)

구분	인력 배치	자격
	① 주간교사가 겸임(초과 근무) ② 시간연장교사(별도 전담교사) ③ 보조교사 ④ 원장 ⑤ 기타: 구체적으로	① 보육교사 3급 ② 보육교사 2급 ③ 보육교사 1급 ④ 유치원 2급 정교사 ⑤ 유치원 1급 정교사 ⑥ 어린이집 원장 ⑦ 기타: 구체적으로
교사1		
교사2		
교사3		
교사4		

+

- 22-1-2. (문 22-1번에서 ②번을 응답한 경우) 과거에 운영하였다가 현재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해당되는 보육 유형에만 응답합니다

구분	미운영 사유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 보육	

- 22-1-3. (문 22-1번에서 ③번을 응답한 경우) 현재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해당되는 보육 유형에만 응답합니다.

구분	미운영 사유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 보육	

23. (문 22-1번에서 시간연장보육을 운영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 중 1) 주간에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한 아동과 2) 귀 기관의 주간보육을 연장하여 이용하는 아동은 각각 몇 명입니까?

※ 2014년 6월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아동수(명)
주간에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한 아동	
주간보육을 연장하여 이용한 아동	
시간연장보육 이용 총 아동 (※ 문 1-4) 번의 ②번에 응답한 아동수와 동일한지 확인함)	

24. (문 22-1번에서 24시간보육을 운영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 다음 항목은 24시간 보육 운영 사항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귀 기관은 어떠하다고 평가하십니까?

	구분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1	(영)유아가 수면하기에 적합한 수면실을 구비하고 있다			
2	조·석식, 급간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3	자체 야간 보육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있다			

25. 각 보육 유형별로 운영 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현재 운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응답합니다.

구분	운영 시 애로사항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 보육	

26. 귀하는 시간간장보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1, 2순위를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① 보육료 지원 한도액 기준(한달 60시간 이내)
- ② 보육료 지원 수준(시간당 2,700원, 장애아동 3,700원)
- ③ 보육료 지원 기준 시간(19:30~24:00)
- ④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 기준(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 한함)
- ⑤ 주간 보육교사의 초과 근무 시 지원 수준(월 40만원)
- ⑥ 주간 보육교사의 초과 근무 시 지원 요건(시간연장 보육아동 2명 이상 보육 시)
- ⑦ 지원 대상 선정요건(평가인증 통과, 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 우선 실시 등)
- ⑧ 기타()
- ⑨ 모름

27. 귀하는 시간연장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1, 2순위를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① 인건비 지원 단가 상향 조정
☐ ② 취업도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용자격 제한
☐ ③ 대체인력풀 구축
☐ ④ 혼합연령반 운영 지침 마련(연령 구성 등)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⑥ 모름

※ 문 28~36번은 방과후 과정(기존 종일반)을 운영 중인 유치원만 응답합니다.

28. 귀 기관에서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기존 종일반)의 입학 사정 시에 맞벌이 가구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학시키고 있습니까?

교육과정	☐ ① 선착순으로 입학시킴	☐ ② 우선 입학 시킴
방과후 과정	☐ ① 선착순으로 입학시킴	☐ ② 우선 입학 시킴

29. 귀 기관의 방과후 과정 운영 형태는 어떠합니까?

- ☐ ① 독립 방과후 반 ☒ 31번으로 이동
 ☐ ② 오후 재편성반 ☒ 30번으로 이동
☐ ③ 독립 방과후 반+오후 재편성 반 ☒ 30번으로 이동

30. (문 29번에서 오후 재편성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응답한 경우)오후 재편성반에 배치된 교사는 다음 중 누구입니까? 해당 교사별로 해당 번호를 선택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소지 자격 모두 기입)

구분	배치 인력	교사 자격	
	☐ ① 방과후 과정 전담교사 ☐ ② 기본교육과정 담임교사 ☐ ③ 기본교육과정 비담임교사 ☐ ④ 기타: 구체적으로	☐ ①보육교사 3급 ☐ ③보육교사 1급 ☐ ⑤유치원 1급 정교사 ☐ ⑦유치원 원장	☐ ②보육교사 2급 ☐ ④유치원 2급 정교사 ☐ ⑥유치원 원감 ☐ ⑧기타: 구체적으로
교사 1			
교사 2			
교사 3			
교사 4			

31. 귀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운영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시작 시각	() 시 ()분 부터
종료 시각	() 시 ()분 까지

32. 귀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이용 비용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연령 구분	국가 부담 비용(원)	부모 부담 비용(원)	총비용(원)
만 3세			
만 4세			
만 5세			

33. 다음은 방과후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귀 기관은 어떠하다고 평가하십니까?

	구분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1	낮잠에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			
2	방과후 과정반도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교육안을 토대로 운영하고 있다.			
3	방과후 프로그램에 신체보호활동(낮잠, 휴식, 간식시간 등)을 포함하고 있다			
4	유치원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지구순찰대 협조 등)			

34. 방과후 과정(기존 종일반) 운영 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35. 귀하는 방과후 과정(기존 종일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6. 귀하는 방과후 과정(기존 종일반)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보고 2014-25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IV)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8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삼신인쇄 02) 2285-5756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5941-02-8 93330